

오토피아

2005년 겨울 제20권 제1호

목 차

■패권적 국가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손재식	1
■유비쿼터스 문명과 사이보그 시대의 사회적 쟁점	민경배	29
■지구화와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세계질서	이화용	49
■공공의 적은 바로 “그들”인가?: 반미 논쟁을 통해 본 기계적 자유주의와 감상적 집단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비판	임성호	65
■국제 테러리즘과 문화적 갈등	신동련	89
■배타적 과학주의와 전면적 상대주의 비판 - H. Putnam의 논거를 중심으로	정연교	113
■‘노동의 종말’과 새로운 사회정책	엄규숙	127
■국가체제 배타성의 극복: 주권과 안보개념을 중심으로	홍기준	143
■초국가적 민주주의의 패러독스: 오스트리아의 사례	유영학	169
■조영식 박사 세계평화론의 주요개념 재조명	박상식	193
■대안정보사회를 위한 사회운동의 과제	임정근	241
■청소년에게 조명된 가족공동체	유도진	257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	이동수	283
■후기 근대 민주주의와 지구시민권: 이론 구축을 위한 탐색	서유경	303
■21세기를 지향하는 헤겔적 국제정치 패러다임 이론: 인정의 메커니즘을 통해	권기봉	329
■성(性) 중심적 사회의 와해: 조화를 지향하는 공동체	하영애	353
■국민국가의 위상과 전망: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송병록	385
■한류와 문화세계창조의 가능성	홍용희	403

패권적 국가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손재식*

1. 머리말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창립된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에는 설립자 조영식 박사가 작사한 삼정서헌가(三正書軒歌)가 있다.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긴 이 노래의 서두(序頭)는 「만물은 변하여 정체(停滯)하는 일이 없고」로 시작된다. 정확하게 간파한 진리의 말씀이다. 모든 물질은 변하고 또 변한다. 수백만 종 또는 수천만 종에 이르는 수많은 동식물과 미생물이 변하고 인체가 변하고 산천이 변한다. 인류가 생을 영위하고 있는 지구도 그 표층뿐만 아니라 심층까지도 부단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우주공간에 널려 있는 수천억조 이상의 무수한 별들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생명체를 포함한 물질의 형상에 관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삼라만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거나 지극히 느린 변화의 가능성만을 보이고 있다. 수백만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친 진화와 인지의 발달, 그리고 도덕이론과 문명의 찬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의 욕망은 원시시대나 고대보다 더 다양화되고 더 고도화되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욕망으로서는 권력욕을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자기 뜻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거나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지닌다. 명령받기 보다는 명령하기를, 복종하기 보다는 복종시키기를

* 경희대학교 국제평화연구소 소장

2 오토피아

원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된 염원이다. 이와 같은 욕망의 표출현상은 국내의 지역조직과 직능조직, 그리고 공조조직과 사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작은 조직이건 큰 조직이건 그 조직의 안팎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 매력 있는 일이다. 이는 유형·무형의 각종 이익의 확보와 결부되거나 자기 또는 자기 집단의 이상추구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정당 간에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요하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제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자국이 타국보다 우월한 힘을 지니고 국제정치무대에서 강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인간 본성의 발로다. 이는 패권국가이거나 패권국가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의 국민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외국인들에 대한 당해국가의 지배와 권익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국주의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20세기 초반까지 강대국 내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에 의해 높이 찬양되었던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패권주의와 패권다툼은 바로 여기에 그 뿌리가 있다. 과연 패권적 국가주의는 21세기에 그 용인(容認)이 불가피한가? 그 실익(實益)은 무엇이고 어떠한 폐해가 있으며 그 대안은 무엇인가?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지대한 관계가 있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개괄적이거나 여기에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패권주의의 폐해

추상적 사고나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야생동물들은 패권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에서도 패권다툼은 있다. 먹이를 확보하기 위해 자기 영역을 수호 또는 확장하려는 투쟁을 하기도 하고 군서생활을 하는 동물들의 경우 우두머리가 되려는 싸움을 하기도 한다. 공격력이 강한 동물이 공격력이 약한 동물들을 지배하거나 잡아먹는 약육강식은 동물세계의 보편적 현상이다. 이는 본능적·충동적 행동이다.

그러면 지능이 발달하고 문명을 창조하고 합리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인간들의 세계는 어떠한가? 불행하게도 패권을 추구하는 점에서는 동물과 대차(大差)가 없다. 생존경쟁이나 발전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노

력은 개인적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는 과거 자기 또는 자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된 경우도 있었다. 선진국가들이 그 발전된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미개지역에 보급하는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自任)한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제문제의 해결에 강대국이 지도적 역할을 해온 것이나 비록 강제적 방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정치집단의 통합과정에 있어서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흡수하여 보다 큰 정치공동체를 형성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권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큰 폐해가 따른다.

첫째, 패권주의는 전쟁을 발생시킨다.

패권주의는 필연적으로 투쟁을 수반한다. 자국의 영토 확장과 지배적 지위의 획득은 타자와 충돌을 일으키고 대결을 불가피하게 한다. 패권주의는 살생에 능한 많은 전쟁영웅과 호걸들을 탄생시켰다. 개인간이나 국가내 집단간의 경우에는 비폭력적인 투쟁이 가능하였지만 국가간 투쟁의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전쟁수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쟁은 인류사회의 최대 비극이다. 전쟁은 거의 모든 비극을 압축적으로 나타낸다. 전쟁은 귀중한 인명의 살상, 재화의 파괴, 난민발생, 국민경제의 붕괴, 심신의 고통과 슬픔, 자원낭비, 독재화 등 갖가지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한다. 1900년부터 1987년 사이만 해도 250개 전쟁과 대량학살공격으로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해되었고 그 이전에는 2천년 동안만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살육되었다. 심지어 유혈분쟁이 감소했어야 할 냉전종식 후에도 6백만 명이 전쟁으로 사망하였다.¹⁾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약 1천만 명이,²⁾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약 5천만 명이,³⁾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사상자수 각각 약 5백만 명),⁴⁾ 이라크-이란전쟁(사상자수 약 1백만 명)⁵⁾ 등을 포함한 170개 이상의 전쟁에서 3천 5백만 명이 사망하였다.⁶⁾ 나폴레옹전쟁 중에는 여러 전투에서 약

1) Global Action Steering Committee, c/o. Institute for Defence and Disarmament Studies, *Global Action to Prevent War – A Coalition-Building Effort to Stop War, Genocide & Internal Armed Conflict*, Program Statement, September 2000, Rev.15, p.3.
 2) <http://brd3.chosun.com/bemil/view.html?tb=BEMIL025&pn=1004&num=7678>.
 3) http://www.rokmcnyusa.net/technote/read.cgi?board=pds&y_number=166.
 4) <http://www.pyung.co.kr/goji/040729.htm>, <http://100.naver.com/100.php?id=74733>.
 5) http://segero.hufs.ac.kr/scripts/article_view.asp?JNAME=IANR&ISSUEID=104&SECID=027.
 6) Global Action Steering Committee, 전계서 p.5.

4 오토피아

77만 1천 명의 사상자가 속출하였다.⁷⁾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최전선 군인의 희생이 90% 이상을 점하였으나 그 뒤에는 점차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이 증가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전쟁사상자수의 약 90%를 차지하였다.⁸⁾ 이는 현대전이 총력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다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공습 등으로 전투요원과 민간인 사이의 구분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비단 침략을 당한 쪽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침략자 측에도 피해를 준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이 패전하거나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나폴레옹전쟁, 독일의 개전으로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 독일·이탈리아·일본 등의 침략으로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 북한의 남침에 기인된 한국전쟁, 이라크의 공격으로 말미암은 이라크-이란전쟁이 그러한 예들이다. 따라서 패권을 추구하는 침략전쟁은 부도덕한 일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다.

역사상 강대국들은 전쟁에 더 많이 개입하였으며 특히 유럽의 경우 더 두드러진다. 퀴시 라이트(Quincy Wright)에 의하면 1480년부터 1940년 사이에 발발한 2,600개 주요전쟁 중에서 유럽 국가들이 개입한 것은 프랑스가 47%, 오스트리아·헝가리 34%, 영국·소련 22%, 터키 15% 그리고 스페인이 12%를 차지하였다. 1914년 이래 25개 국가간 전쟁 중 19개 전쟁에 주요국가가 개입한 것도 그 한 예다. 자국안보에 다른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소국가보다 안보역량이 큰 강국들이 군사동맹형성에 더 적극적인 것은 또 다른 한 예다. 제국주의는 대상국 또는 국민들에 대한 정복전쟁과 제국주의 국가 상호간의 식민지 획득 전쟁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정복 후 식민지에서의 독립전쟁을 발생시키고 독립 후에는 국내 정치집단 간에 술한 내전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독립전쟁으로는 네덜란드에 대한 4년간의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프랑스에 대한 8년간의 알제리아 독립전쟁과 그 밖의 많은 민족해방전쟁들을 들 수 있다. 이렇듯 패권주의 또는 제국주의는 전쟁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둘째, 패권주의는 피정복·피식민지자들에게 막심한 고통을 준다.

이는 전쟁으로 말미암은 희생과 식민통치에 의한 억압이라는 이중적 고통이다. 패권주의·제국주의로 인한 국권상실, 탄압, 인권유린, 민족정기와 민족문화의 훼손, 민족적 자존심의 유린 등 그 피해를 계량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가 심대하다. 특히 한민족은 일제식민통치 하에서 창씨개명(創氏改名)과

7) <http://blog.naver.com/azureciel.do?Redirect=Log&logNo=422685>.

8) Global Action Steering Committee, 전계서 p.5.

일본어 사용 그리고 신사참배까지 강요당하였다. 일제 식민통치 35년은 한민족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민족적 시련과 고난이 극에 달하였던 암흑기였고 식민지화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민족분단·국토분단의 비극까지 경험하여 오고 있다.

패권주의는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우월감·자존심·공지 등 만족감을 느끼게 하지만 지배당하는 주민들은 모멸감·원한·굴욕감·적개심·공포감·좌절감·욕구불만 등을 갖게 한다. 이는 저항과 유혈분쟁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독립한 뒤에는 후일 보복전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제국주의적 정복은 야만인 또는 미개지역의 개화라는 미명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용 원료 및 노동력의 확보와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실리를 취한 사례가 적지 않았거니와 원료와 노동력은 저가로 조달하고 본국에서 제조된 공산품은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 식민지에서는 수탈과 착취를 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제국주의국가들이 그들의 제국을 해체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식민지는 정치적 독립을 회복하였으나 경제적 의존상태는 모면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현대의 이른바 신식민주의는 토착지배계층을 통한 간접지배의 형태로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는 중미와 미국, 서아프리카와 프랑스, 동아프리카 및 카리브와 영국의 관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해외직접투자는 대부분 선진국에 집중되고 후진국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의 절대액은 증가했지만 그 상대적 규모에 있어서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다.

셋째, 패권주의는 군국주의를 낳는다.

패권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므로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하게 된다. 이는 군비경쟁과 무기의 과잉비축, 군사적 긴장의 고조, 불신, 군수산업의 번성 등 여러 가지로 낭비적이고도 위험한 현상을 자아낸다. 세계군사비 지출은 냉전종식 후 약 10년간 감소되었다가 1998년 이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03년에는 11% 늘어난 9,560억불을 시현하였는데 이는 2002년의 증가율 6.5%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특히 세계인구의 16%를 차지하는 고소득국가들의 군사비지출액은 전 세계 군사비지출액의 75%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국가들의 외채총액 보다 많으며 2001년도 개발원조액의 10배나 된다. 2001년 9월 11일의 테러공격이후 급격히 증가한 미국의 군사비는 전 세계 군사비의 47%를 차지하며 이에 일본, 영국, 프랑스와 중국을 합한 5대 군사비 지출국은 64% 그리고 15대 군사비 지출국은 세계 군사비 총액

6 오토피아

전체의 82%를 점하고 있다. 한편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 다음에 중국, 인도 그리고 러시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2003년도 주요국가의 군사비는 미국 417.4억불(전체의 47%), 일본 46.9억불(5%), 영국 37.1억불(4%), 프랑스 35억불(4%), 중국 32.8억불(4%), 독일 27.2억불(3%)이나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중국 151억불, 인도 64억불, 러시아 63.2억불, 프랑스 38.4억불, 영국 35억불, 일본 32.8억불, 독일 30.4억불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⁰⁾

이와 같이 강대국들은 막대한 군사비 부담을 하는 한편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이득을 늘리기 위하여 자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기에 더하여 수출할 무기까지 대량생산하여 외국에 판매하고 있다. 무기수출 규모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중국 순으로 나타나 있다.¹¹⁾ 후진국의 5세 미만 아동들이 기아와 예방할 수 있는 질병 등으로 매년 천만명 이상 사망하고 있고¹²⁾ 지구환경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재원을 인명살상무기 생산 또는 취득에 투입하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부조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패권을 추구한 제국주의 국가는 패망하거나 쇠퇴한 경우가 적지 않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국주의 국가가 부침(浮沈)을 거듭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혹은 부패, 불안정, 내부분열 또는 결속력 이완으로 혹은 주요자원의 고갈, 경제력 및 군사력의 상대적 약화와 약세를 틈탄 외침으로 수많은 제국이 쇠망의 길을 걸었다.

고대에는 근동에서 기원전 25세기 경에 수메리안 제국이 건설되었으나 아카드 왕국에 의하여 대체되었고 기원전 20세기에는 이 제국도 이란 고원에서 침입해 온 구티인에 의해 멸망하였다. 기원전 18세기에는 바빌로니아 제국이 등장하여 약 200년간 계속되었으나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차츰 쇠약해져, 기원전 14세기에 미타니와 아시리아인들에 의해 정복되었다.

주위의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였던 고대의 최강국 이집트는 기원전 3천년 경

9)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Recent Trend in Military Expenditure; http://www.sipri.org/contents/milap/milex/mex_trends.html 참조.

10) 상계자료 참조.

11) <http://www.mnd.go.kr/jungchaek/baekseo/2001/3-2-3.htm> 참조.

12) The World Bank, 2004/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4, p.7.

정복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기원전 천 4백년 경에는 미타니 및 히타이트와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으나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바 있는 아시리아에 의하여 정복되었다. 한편 아시리아는 나보폴라사르와 메디아인의 동맹군의 공격을 받아 기원전 612년 수도 니네베의 함락과 더불어 멸망하였다. 미타니는 기원전 14세기 후반에 분열상태에 빠져 기원전 13세기에 히타이트의 침입과 아시리아의 배반으로 멸망하였다.

기원전 고대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나라가 되었던 페르시아 제국은 그 영토 전체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완전히 유린되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 인구 천만 명 가운데 2백만 명만 페르시아인 이었고 나머지는 이민족이었다.¹³⁾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한 그리스는 기원전 5백년부터 4백년까지 황금기를 누렸으나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붕괴되어 다시는 그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로마시로부터 흥룡하여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정복한 후 이탈리아 반도와 지중해 연안 전체를 지배함으로써 고대 서양 최대의 제국이 된 로마는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약 500년간 팩스 로마나(Pax Romana) 시대를 구가하였으나 훈족, 서고트족, 반달족 등 주변민족과 무슬림 사라센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사라센 제국은 7세기에서 15세기말까지 흥왕하였으나 이슬람교단 내의 세력다툼으로 분열되었고 끝내는 붕괴되었다. 12세기에 30개국에 걸쳐 1,850만 명의 학살을 수반하면서 형성된 몽골제국은 당시 알려진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였으나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와해되고 말았다. 이어서 등장한 제국들도 단명에 그쳤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은 15세기부터 18세기 중엽 사이에 아메리카 대륙과 인도, 동인도제도 및 아프리카 등지를 정복하여 제국을 건설하였고 특히 영국은 팩스 브리타니카(Pax Britanica) 시대를 열만큼 세계 최대의 제국을 구축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복속 하에 있던 식민지들의 독립으로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천년제국을 꿈꾼 나치 독일과 대동아 공영권의 미명을 내세운 제국주의 일본도 수천만 명의 인명살상을 초래한 오명만 남긴 채 불명예스러운 패전을 경험하였다. 냉전 종식 후에는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소련 제국도 무력으로 강제 통합되었던 14개국이 분리·독립함에 따라 15개국으로 분할되었다. 과거에 타민족을 강제 병합했던 국가들은 지금도 분류와 저

13) Daisy More, John Bowman, *Imperial Vision: The Rise and Fall of Empires – Clash of East and West*, HBJ Press, 1980, p.11.

8 오토피아

항이 끊이지 않거나 그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제국들은 군사력 또는 전쟁을 통하여 형성되고 전쟁 또는 내부 봉기로 말미암아 붕괴되었다. 명심하여야 할 역사적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 패권주의는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으로 항상 긴장과 불안정 그리고 대결적 양상이 계속된다. 이는 상호 경계심, 경쟁심과 견제심리의 작용으로 원만한 국제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소간, 미·중간, 중·일간, 일·소간, 중국·인도간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편, 패권주의는 그 성질상 국제관계에서 불공정한 규범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제법 중에는 당사국 간의 군사력과 경제력 등 국력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시기에 이루어진 불평등조약이 적지 않다. 힘의 정치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패권국가가 우월한 힘을 배경으로 자국에 보다 유리한 국제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강국의 힘에 의지할 필요가 있는 약소국은 그 약한 입지와 협상력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안보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 분야에서도 강국 또는 강한 국제조직이 허브(Hub) 또는 중심이 되고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스포크(Spoke) 또는 수레바퀴의 살 같은 협정이 체결되어 오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패권주의는 일방주의에 경도되기 쉽다. 특히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닌 초강대국의 경우에는 단독 또는 소수동맹국 및 우방국의 힘으로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다자주의를 무시하고 행동하기 쉽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약화를 초래하고 합의를 기초로 한 범세계적 국제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와 아울러 패권주의는 타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현상을 낳는다. 패권주의 국가 구소련은 1956년 헝가리에 침공하여 그 자유화 기도를 분쇄하였고 1968년에는 체코에 대하여 같은 행동을 취하였으며 1981년에는 폴란드를 위협하고 1979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였다. 영국,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1956년 이집트를 침략하여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였고 미국은 1984년 니카라과항에 기지를 부설하였으며 1989년에는 파나마에 침공함으로써 그 주권을 침해한 바 있다.

3. 국가주의의 한계

국가는 긴 역사를 지닌다. 국가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소규모 정치공동체에서 대규모 정치공동체로 통합되어 오면서 무력사용에 의한 강제 흡수 또는 약소 종족에 대한 유력 종족의 정복을 수반하기도 하였다. 국가는 역사가 긴 만큼 그 기반도 공고하고 그 효용도 높다. 지금 지구상에는 약 2백 개의 국가가 있다. 국가는 나라의 집인 동시에 지구사회에서 가장 강한 종합공동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등 여러 성격을 지닌 복합공동체가 바로 국가다. 방대한 조직과 인력, 막대한 재원과 막강한 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안녕과 복지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 이들 공공서비스들은 그동안 복지사회의 이상아래 그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꾸준히 계속해 왔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불구자와 생활능력이 없는 빈민들의 구제, 노인연금, 실업수당, 무주택자를 위한 저임대주택의 공급, 노인주택 제공, 탁아 및 육아시설, 노인과 불구자를 위한 가정양호, 복지수당 지급과 구급서비스 등이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글귀가 표현하듯이 복지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국민의 복리를 위한 거의 모든 영역의 공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안보, 경제개발, 철도, 공항, 전기, 통신, 우편, 교육, 도로, 교통안전, 가스공급, 상수도 급수서비스, 범죄예방·진압, 화재의 예방·진압, 재해의 방지·복구, 환경위생, 식품위생, 오물수거·처리, 하수처리, 소비자보호, 대기오염·수질오염의 방지, 개발통제, 묘지·화장장, 건축규제, 고용증대 등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듯 국가는 국민의 필요를 상당부분 충족할 수 있는 거대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나 많은 문제들의 복잡화와 그 공간적 확대 그리고 국가간 상호의존 관계의 증대와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개개국가가 개별적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첫째, 국경을 넘는 광역적(廣域的) 문제는 각 국가가 단독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지구환경의 오염이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으나 이 문제의 심각도는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다. 이는 각 국가들

10 오토피아

이 그동안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입증한다. 바람과 대기와 흐르는 물에 국경이 없듯이 오염물질에는 국경이 없다. 따라서 발생원이 아닌 국가들도 오염의 피해를 보게 되는가 하면 오염배출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은 공해의 지역적 분산으로 그 방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설사 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는 일국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는 인구증가, 열대림 개간, 과잉벌목, 화석연료 과다 사용,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장매연의 증가, 과소비와 자원낭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확실한 것은 높은 생산 및 소비수준으로 자원을 과잉채취·사용하는 선진국이나 지나친 산야와 수림개간을 하는 후진국이나 다같이 이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필요한 조치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¹⁴⁾ 현상 때문에 개개국가의 독자적 행동에 일임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둘째, 평화와 안전은 개개 국가별로 엄밀히 분할하기가 어렵다. 타국에서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면 자국의 평화와 안전도 직접적·간접적으로, 또는 단기적·장기적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 상호의존관계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각국이 고립해서 단독으로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다. 이는 한 나라의 평화는 다른 모든 나라들의 평화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협력이 간절히 필요한 분야가 바로 평화다. 테러와의 대결에서 심지어 초강대국 미국까지도 각국의 협력 없이는 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를 명백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군비축소와 군비통제도 국제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쓰나미 지진 참사에서 보듯이 일부 국가들에 한정된 지진이지만 각국에서 방문한 수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참화를 입었고 또한 피해국가들과 교역 및 투자를 하는 국가들이 많으므로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는 국제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안보는 상호안보 또는 공동안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 개별주의·단독주의는 통용될 수 없다. 일방주의가 타당성을 지닐 수 없는 것도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셋째, 국가들 중에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나라가 많다. 수십만 또는 수백만 명의 아사자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연년세세(年年歲歲) 국제기구와 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도 해마다 수많은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국가들

14)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1968): 1243-1248.

이 이 부류에 속한다. 소규모 재해가 발생해도 외국의 지원 없이는 구호와 복구를 못하고 있는 국가, 전염병이 대량 발생해도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국가, 국가 내부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국가, 폭력범죄가 창궐해도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 내부분열과 상쟁으로 치안상태가 극도로 혼란한 국가, 외침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정치외교적·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 등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넷째, 각종문제의 세계화는 국가능력의 한계를 뚜렷이 하고 있다.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무역의 세계화, 민주주의의 세계화 등 긍정적 현상과 함께 범죄의 세계화, 환경악화의 세계화, 전염병의 세계화, 테러의 세계화 등 부정적 현상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현존 국가들은 능률적 단위로서의 지위를 상실해 가고 있다. 국제적인 조직 범죄와 테러는 초국가적인 정보망, 수사망과 검거조직이 없이는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불법입국·불법체류·불법취업, 범죄자 도피 등의 근절도 어려운 과제다. 아울러 인구 10억 5천만 명의 거대국가 인도와 인구 2억 명의 대국 인도네시아가 쓰나미 지진 이재민의 구호와 재해복구에 큰 재정적·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개개국가의 능력적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가능력의 한계는 곧 국가주의의 한계를 의미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는 세계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문제의 해결에도 그 능력적 한계를 노증하고 있으므로 국제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주의 또는 국가중심주의에 집착하는 한 그 성과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 국가주의는 국가주권을 고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주권의 폭넓은 이관이나 제한을 전제로 하는 수준의 국제협력은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제법상의 주체가 되는 국가는 독립권, 국내사항에 관한 행동의 자유권, 자기보존권, 자위권 및 긴급방위권, 평등권, 위엄보존권, 국제교통권 등 기본권을 가지나 대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권이다. 이 자유권에는 전쟁을 할 자유도 포함된다. 국가주권의 존재는 경우에 따라서 세계를 무질서와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 국가주권제도가 치러내는 대가는 바로 전쟁과 불안정과 약육강식적 현상이다.

첫째, 국가 상호간에 강제 적용되는 법체제가 결여되어 있어 국가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내에서와 같은 사법적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국제사법

12 오토피아

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모든 국가에 대한 강제관할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당사국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당사국 간의 합의로 재판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판결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는 강제 집행력이 없다. 만일 국내에서 범죄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고 공소에 응하여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에 불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사회질서는 무너지고 오로지 폭력이 난무하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다.

둘째,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권능이 취약하여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주권국가들의 동의나 합의가 없으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협력이 없으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에는 거부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1개 상임이사국만 거부하여도 유엔의 집단안전보장기능은 마비가 된다. 전원합의체는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긴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다. 유엔현장상 유엔은 회원국가의 주권에 대한 제한을 추구하지 않게 되어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파견도 분쟁당사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파견 후에도 이들이 요구하면 철수하게 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까지 통합이 되어 가고 있는 EU도 헌법안 채택에 25개 회원국의 전원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외교안보와 사법 및 경찰에 관한 정책 결정도 회원국 합의제로 되어 있다. 이는 국가주권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이다.

셋째, 개개국가가 각기 자국의 안전보장에 모든 책임을 지는 체제로 되어 있는 한 군사력 확보는 불가피하므로 국가간 군비경쟁과 전쟁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게 된다. 국가는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포함한 국익추구를 그 존립목적으로 하며 이는 국력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따라서 국익의 수호와 극대화를 위하여 각 국가들은 군사력 강화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매우 낭비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익을 훼손할 수도 있다.

국가들이 국가지상주의에 집착하는 한 세계평화의 구현은 백년하청(百年河清)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이익보다 더 큰 이익 즉, 인류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배타주의의 문제점

국가주의가 지나치면 배타주의가 강화된다. 민족주의가 지나쳐도 배타주의를 동반한다. 또한 종교도 광신화되면 배타심을 잉태·노증한다. 배타주의는 남이나 남의 집단을 배척하고 자기 또는 자기집단만의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자기 또는 자기집단의 정치적·종교적 신념만을 고집하는 것이다.

배타주의는 국제협력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인 동시에 전쟁의 주된 원인이 되는 요소다. 종족적 차이, 종교적 차이, 문화적 차이, 그리고 정치적 차이를 부각시켜 서로 배격하는 것이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은 지나간 역사가 잘 말해 주고 있다. 전쟁을 치룬 이라크와 이란은 민족적으로 아랍과 페르시아라는 차이가 있고 또한 종교적으로 수니파 무슬림(당시의 집권층)과 시아파 무슬림이라는 차이가 있다. 유혈분쟁이 끊이지 않은 이스라엘과 아랍은 종족적 차이와 민족적 차이가 아울러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은 주로 힌두와 무슬림 간의 종교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북아일랜드에서의 유혈분쟁도 천주교도인 아일랜드계와 개신교도인 비아일랜드계 사이의 종교적·민족적 차이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인종청소도 인종적·종교적 차이의 소산이다. 17세기에 유럽을 황폐화시켰던 30년 전쟁도 천주교도 대 개신교도 간의 싸움이었고 중세의 십자군 전쟁도 유럽 기독교 대 아랍 회교도 간의 종교전쟁이었다. 민족적 정열과 종교적 열광상태는 배타성으로 연결되기 쉽고 심지어 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종교전쟁은 역사상 전쟁 중에서 가장 참혹한 양상을 띠었다.

민족주의는 대내적으로 동포애, 조국애,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희생정신 등을 발현시키고 민족적 단결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대외적으로 국수주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 차별의식과 같은 배타성을 수반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민족적 차이에 따른 기피 또는 경원, 증오, 시기, 불신, 적대감, 차별대우는 많은 경우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되어 왔다. 그동안 민족주의에 기인된 전쟁으로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위한 내전, 민족의 재결합을 위한 전쟁, 실지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 민족국가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 타국에 거주하는 동족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 등을 들 수 있는데 민족주의적인 전쟁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국가수보다 몇 배 많은 민

14 오토피아

족운동과 몇십 배 많은 종족수의 존재, 그리고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는 배타주의적 민족의식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세계의 큰 종교적 갈등은 주로 기독교와 회교 간에 발생하였으며 많은 경우 정치적 분쟁과 전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기독교도와 회교도간의 분쟁은 1,300년간이나 계속되었다.¹⁵⁾ 오늘날 민족적·종교적 차이에 기인된 분쟁은 주로 내전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내전으로 인한 사상자수는 국제전으로 말미암은 사상자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전쟁의 양상이 훨씬 더 참혹하였다.

2003년 11월 말 현재로 분쟁지역의 단계별 분포는 진행분쟁 84, 종료분쟁이 17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주 9, 아프리카 34, 중동 13, 아시아 20, CIS 10, 유럽 15개로써 충돌분쟁은 콜롬비아 내전, 콩고 분쟁, 라이베리아 내전, 부룬디 내전, 소말리아 내전, 알제리 내분, 우간다 내전, 수단 내전, 앙골라 분쟁, 나이지리아 내분, 팔레스타인 분쟁, 레바논 내전, 터키 쿠르드족 분쟁, 네팔 내분, 인도네시아 분리운동, 카슈미르 분쟁, 필리핀 내전, 인도 분리운동, 미얀마 분쟁, 스리랑카 내전, 러시아-체첸 분쟁, 마케도니아 내분, 코소보 독립분쟁 등이 있다.¹⁶⁾

배타주의는 비단 무력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형태로도 표출된다. 이민거부 또는 이민의 엄격한 제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과 취업에 대한 철저한 규제, 높은 무역장벽의 구축을 통한 수입제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강한 규제, 외국 문화산업 유입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외국 교육기관과 외국 의료기관 설립의 금지 등 그 종류는 다종다양하다. 국가간 협력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체 또는 지역공동체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역내(域內)에서는 배타주의를 극복하는 가운데 상호개방·교류·협력을 추진 또는 강화하고 있으나 역외(域外)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지역협력은 역내국가에만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고 역외 국가들에게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방식을 취해옴으로써 경제블럭간 또는 특정 경제블럭과 그 블럭 밖에 있는 국가간에 대립·마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국

15) Kim, Ki Sung, *Ethnic-Religious Conflict, Nationalism and Tolerance* (경희대학교 국제 평화연구소 발행 *Proceedings of the Global Convention on Tolerance, Restoration of Morality and Humanity*에 수록), 1996, p.238.

16) <http://www.kida.re.kr/shell-cgi/woww/wowwdataread.pl?board=wowwspecial/&y-nu> 참조.

내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는 장벽구축을 통하여 발현되므로 많은 경우 상대편의 보복조치를 유발하고 서로 되받아치는 보복의 악순환이 야기될 수 있다. 국가들에 의한 세계분열에 더하여 지역들에 의한 세계분열이 첨가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각 지역에서 체결되어 온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과 공동시장 형성은 다분히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블럭인 EU와 NAFTA의 경우를 그 예로 들면 양대 블럭간에는 무역장벽문제를 놓고 분규가 빈발하였으며 특히 EU와 NAFTA의 주도국인 미국사이에는 농업시장의 개방문제를 위요하고 자주 마찰을 빚어왔다. NAFTA의 탄생 자체가 역외국가에 대한 시장개방을 제한하고 EU에 대응한다는 대항적·대결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으며 EU도 NAFTA, 특히 초강대국 미국의 힘에 맞설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한다는 심리가 은연중에 작용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만일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인 EU와 NAFTA가 대외적으로 배타적·차별적 정책을 계속 견지한다면 다른 지역협력체들도 이에 따르게 될 것이고 따라서 세계는 지역블럭별로 분열되어 상호배타적·폐쇄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5. 새로운 세계질서의 모색

오늘날 세계는 눈부신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변화의 중심 속에는 세계화가 포함되어 있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이에 따른 교통·통신수단의 혁신, 정보혁명, 시간거리의 단축, 세계 자본시장의 폭발적 증가, 초국가적 생산망의 확산, 급속도로 증대되는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등은 세계화를 저항할 수도 역전시킬 수도 없는 도도한 흐름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으로 말미암은 통신의 세계화는 시장의 세계화를 용이하게 하고 직접적 세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호, 불호간에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경제, 문화와 정치의 세계화는 새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

세계화를 불가피한 세계현상으로 받아들인다면 필요한 것은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그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부채위기, 극심한 무역불균형과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지구적 차원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즉 세계화는 결코 이를 무통제 상태에 방임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는 세계시장,

특히 자본시장의 규제와 공정한 무역제도의 수립·시행, 후진국 부채금리의 하향조정, 후진국 개발원조의 확충 등에 의하여 실시될 수 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세계화 과정은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생활의 편익증진과 같은 순기능을 발휘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간·기업간의 과잉경쟁과 갈등, 그리고 소득과 생활조건의 국가간, 지역간의 격차확대와 같은 역기능도 파생시켰다. 세계화의 혜택을 최대한 향수한 국가와 개인들이 있는가 하면 세계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나 개인들도 있는 것이다. 물론 약육강식 현상을 수반하는 세계화는 억지되어야 하고 공존공영을 가능케 하는 세계화는 조장되어야 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의 세계화는 주로 패권적·배타적 국가중심주의로부터 발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같은 세계관으로써는 갖가지 세계적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한편, 제3세계국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른 나라들의 협조하고도 배타적인 국가주의에서 비롯되기도 하였으나 그들 스스로의 능력부족과 국가경영실패에서 오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관리체제를 갖춘 지구적 차원의 공동체가 발전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최고의 단계는 공동사회다. 지구공동사회의 건설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인류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도다. 한편, 지구공동사회는 배타적 국가체제의 타파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배타적 국가체제를 극복하고 지구공동사회를 형성하게 되면 인류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다. 첫째,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재래식 무기도 공공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양으로 감축할 수 있다. 둘째, 군비해제에 따라 절약되는 연간 약 9천 5백억불 가량의 천문학적인 군사비 중의 상당부분을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후진국의 대대적인 경제·사회개발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지구적 차원의 사회정의가 상당한 정도 구현됨으로써 지역간·민족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따라서 전쟁과 테러공격의 위험도 해소되거나 크게 감소될 수 있다. 넷째, 각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현재의 저개발국가의 개발수준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도산업국가들도 그 제품의 수출이 증가되어 지속적이고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비록 지역간 소득 재배분으로 현재 부국들의 소득수준이 다소 저하되더라도 지구환경의 보전과 개선, 대규모 전쟁위험의 해소, 군사비 부담의 대폭감소 등이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는 실보다 득이 더

많아지게 된다. 다섯째, 지구생태계 보전, 지구자원의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개발·이용, 대체자원의 개발, 인구 증가의 억제 등을 지구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여섯째, 국가간의 중복투자, 상호 모순되는 투자, 기타 낭비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모든 개발투자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일곱째, 대규모 재해의 방지와 복구, 그리고 이재민 보호를 보다 능률적·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여덟째, 사람과 물자의 지역간 이동이 자유로워져 사업과 여행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상호이해와 친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히 출입국 관리와 통관절차에 따르는 시간·인력·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아홉째, 개발격차 때문에 각 지역마다 판이하게 겪고 있는 과밀화 문제와 과소화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자본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지역간 자본과 노동력의 과부족 현상이 줄어들고 고용이 증대된다. 열째, 철도연결, 도로연결과 새로운 항로개척 등이 활발하게 되어 산업활동과 문화활동이 보다 원활화된다.

이와 같은 지구공동사회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세계의 모든 국가와 개인들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존공영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이상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¹⁷⁾ 또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일국 또는 일부 강대국들에게 세계평화와 안보의 책임을 위탁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회원구성과 국제적 정통성을 갖춘 유엔에 이를 맡길 수 있도록 그 조직과 권능을 개선·강화할 것이 요청된다.

진정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은 세계가 부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체에 의해서 움직여 질 때 가능하다. 패권주의와 팽창주의는 과거의 유물이다. 우리 인류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들을 공정하고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합일된 공동노력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한 팩스 유엔(Pax UN)¹⁸⁾과 보편적 민주주의, 그리고 이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은 반드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지구공동사회의 건설은 명실상부한 하나의 지구사회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는 세계화를 전제로 한다. 비록 세계화, 특히 경제적 세계화는 전술한 바와 같은 중요한 결함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17) “보편적 민주주의”(Universal Democracy)라는 용어는 조영식 박사가 만든 것으로서 1948년 서울에서 발간된 그의 저서 “민주주의 자유론”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18) 팩스 유엔(Pax UN)은 팩스 로마나(Pax Romana), 팩스 브리타니카(Pax Britanica), 팩스 아메리카(Pax America)와 같은 일국지배하의 평화 또는 강국의 강제에 의한 평화가 아닌 「유엔 주도하의 세계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영식 박사에 의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진 어휘이다.

된다. 첫째, 경제적 세계화는 비교우위의 원리에 입각한 국제분업의 활성화로 세계경제의 능률향상과 경비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른 규모경제의 원리를 반영하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세계화는 이와 같은 장점으로 세계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그 파급효과에 의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매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상품을 보다 값싸게 살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시장의 세계화는 상품, 노동력, 용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국경 없는 세계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고 세계공동체의식과 인류가족의식을 함양하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경제적 세계화는 전쟁의 방지와 정의로운 인류사회의 건설에 필요한 보편적 민주주의 사상의 보급과 이에 관한 세계여론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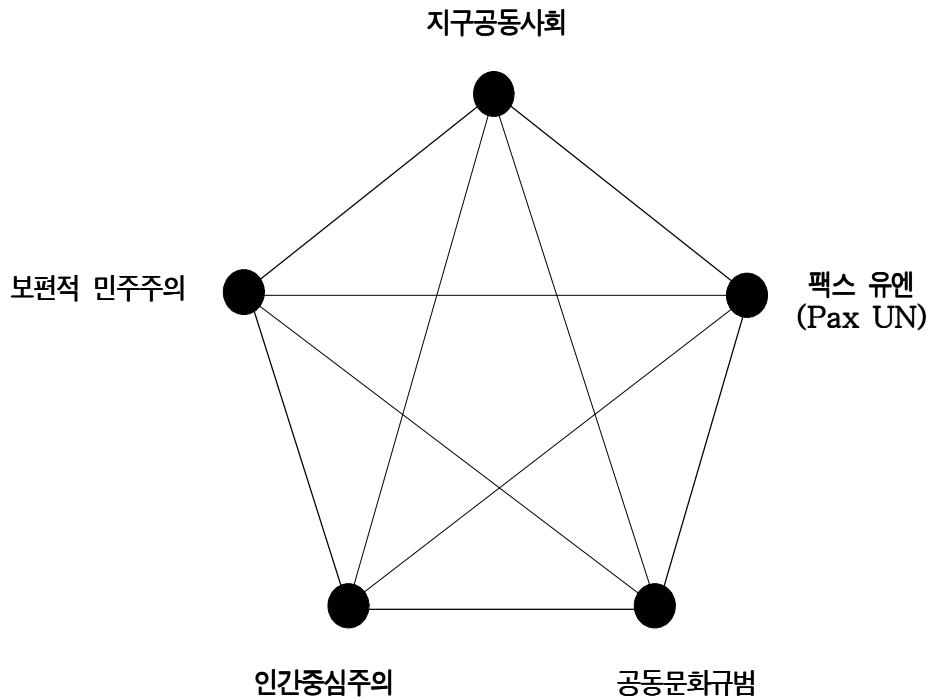
그러나 한편, 현재의 세계경제질서, 특히 지역교역체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불공정하고도 차별적인 무역관행과 같은 몇 가지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결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 그리고 분열적인 지역경제블럭의 확산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세계는 자연사관이 아닌 문화사관에 입각하여 국제경제와 국제정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공동의 규범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¹⁹⁾ 이 공동의 규범은 세계법의 형태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될 때 사회정의가 비로소 지구적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다. 지구사회에 정의가 서지 않고서는 지구평화도 수립될 수 없다.

긴요한 것은 팩스 유엔을 통한 보편적 민주주의 추진이다. 보편적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보장이 세계적 범역(範域)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팩스 유엔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유엔 자체의 구조적·기능적·성격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것은 정당성과 실효성의 확보 없이는 유엔 주도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엔 주도는 소수자의 의사가 아닌 다수자의 의사가 그 기초가 된다. 또한 현재의 약체 유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화된 유엔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팩스 유엔은 유엔의 능력과 책임 하에 세계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조영식 박사가 주창하는 인간중심사회, 문화규범사회, 보편적 민주주의, 지구공동사회와 팩스 유엔에 의한 영구평화사회는 이념적으로나 방법론에 있어서 서로 유기적 일체를 형성하면서 인류의 당위적 요청사회—오토

19) “문화사관”이라는 용어는 조영식 저 “문화세계의 창조”(문성당, 1951)에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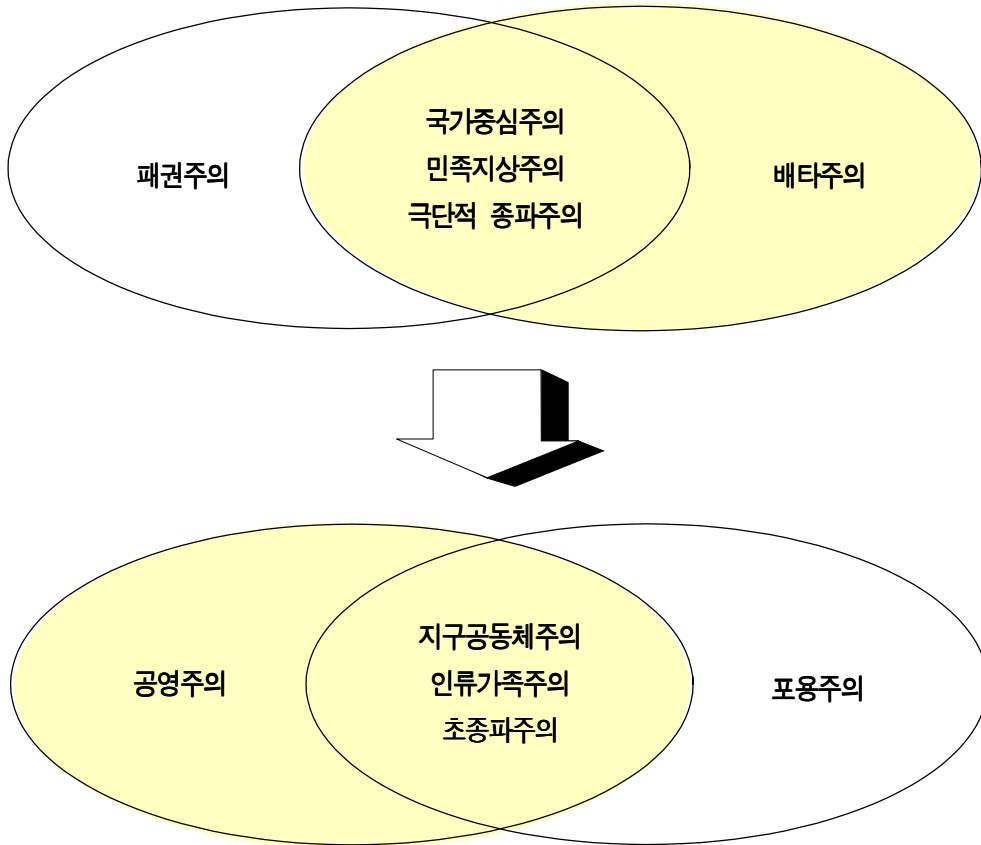
피아, 즉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며 인간적으로 보람있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²⁰⁾ 특히 팩스 유엔은 문화규범과 보편적 민주주의의 이상에 입각하고 지구공동사회의 구현을 그 목표로 한다. 또한 지구사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문화규범과 이와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 보편적 민주주의는 팩스 유엔을 실현한 후 또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화 될 수 있다. 한편, 지구공동사회를 건설해 가는 과정은 팩스 유엔 구현의 여건을 무르익게 한다. 이 모든 것은 인간중심주의 이념을 그 기저에 깔고 있다. 이와 같은 원리를 도식화하면 다음 표와 같다.



한편, 국가중심주의와 민족지상주의, 그리고 극단적 종파주의에 그 뿌리가 있는 패권주의와 배타주의를 지구공동체주의, 인류가족주의, 그리고 초종파주의에 입각한 공영주의와 포용주의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거니와 이들의 상관관계를 도

20) Choue, Young Seek, *Magna Carta of Global Common Society – Grand Vision of Human Society Toward the New Millenium*,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1998, pp.1-36 참조.

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시대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일대혁신의 역사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인류사회를 재건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배타적 국가체제와 폐쇄적이고 대내지향적인 지역협력체제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국가간·지역간 협력의 증진과 차별적인 지역무역장벽의 제거는 이 과정에 필수적이다. 무역장벽의 제거는 선진국에서 먼저 실행에 옮기고 후진국이 점차 이에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부유한 국가들은 공존공영할 수 있는 세계질서의 형성에 모범이 될 것이 요청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G8 회원국들은 패권을 추구하기보다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세워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부강한 국가는 부강한 만큼 세계문제에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6. 맺는말

오토피아, 즉 당위적 요청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의 하나는 패권적 국가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다. 패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있어서나 집단에게 있어서 추구할 만한 강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조직체가 상대적으로 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적 차원의 배타성은 그 가장 두드러진 사례를 쇼비니즘, 즉 맹목적 애국주의 사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자국만을 사랑하는, 자국중심의 사고는 배외(排外)적·비융합적 태도로 발현되기 쉽다. 이와 같은 패권주의와 배타주의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우리 인류에게 전쟁의 처참한 비극과 국제정의의 파괴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여러 절박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무릇 일정한 영토와 그 위에서 거주하는 국민, 그리고 통치권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보위(保衛)하고 국민복을 증진하는 것을 그 책무로 삼고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타국가들과 국익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가의 손익을 좌우하는 경쟁에 이기거나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따라서 국익경쟁은 필연적으로 국력경쟁 또는 세력 각축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국가의 안보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경우에는 군사력 증강의 유혹을 강하게 받기 쉽고 이에 따라 비우호국 상호간의 세력균형이 상향적으로 추구되는 경우에는 군비경쟁이 과열화되면서 전쟁의 위협과 막대한 자원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군사력의 우위에 입각하여 자국의 절대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패권적 국가주의에 빠지게 됨으로써 여타의 국가들에게 불안감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뿐만 아니라 불공정·불평등한 국제관계의 형성으로 끊임없는 갈등과 분규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배타적 국가체제는 국가간 불신·반목적대감과 대결심리를 자아내어 국가간 평화증진을 포함한 국제문제의 공동해결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지구공동체형성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구공동사회의 추구는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일이거니와 그 노정에는 막대한 장애들이 가로놓여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국가중심주의, 민족지상주의, 국수주의, 정치적·경제적 패권주의와 배타주의, 자민

족 우월의식 등은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장애요소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지구공동체의식 또는 인류운명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구공동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대재앙을 방지하고 진정한 평화와 안전, 그리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의식구조의 혁신은 장기적으로는 각 가정과 각급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지구시민운동과 언론활동을 통하여 추진될 수 있다.

그러한 견지에서 평화교육을 범세계화 하는 동시에 평화운동, 환경운동과 빈곤퇴치운동 등에 종사하고 있는 국제 NGO들이 연대하여 이에 관한 국제여론을 형성한다든가, 사업의 성공과 안정적 발전에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그 조직과 자금력을 활용하여 직접 또는 NGO에 대한 지원과 같은 간접적 방식으로 지구공동사회운동을 전개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학자들은 국경과 민족이기주의를 초월하여 지구주의적 이상과 그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략을 필요한 사람 또는 기관에 제시해 주거나 직접 NGO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공동사회의 실현 여부의 핵심적이고도 최종적인 관건은 국가의 방향과 정책에 대한 결정력과 집행력을 지닌 세계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의 장중에 쥐어져 있다. 따라서 지구적 사고와 원대한 안목, 그리고 투철한 역사의식을 지닌 탁월한 정치적 리더십이 그 무엇보다도 크게 요청된다.

말할 나위도 없이 비전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길은 험하고 멀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시작을 빨리하여야 하고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만물이 변하는 것처럼 인간사(人間事)도, 인류사회도 혁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만난(萬難)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arash, David P., *Introduction to Peace Studie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Belmont, CA, 1991.
- Barash, David P., *Approaches to Peace*, Oxford University Press Inc., New York, NY, 2000.
- Bora, Bigit and Christopher Findlay (Editors), *Regional Integration and Asia-Pacific*, Oxford University Press, Australia, 1996.
- Choue, Young Seek, *White Paper on World Peace*, Kyung Hee University Press, 1991.
- Choue, Young Seek, *Reconstruction of the Human Society Through a Second Renaissance*,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1995.
- Choue, Young Seek, *Peace Strategies for a Global Common Society and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1996.
- Choue, Young Seek, *The Realities of Human Society and Vision for the Forthcoming Millennium*,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1997.
- Choue, Young Seek, *Magna Carta of Global Common Society: Grand Vision of Human Society toward New Millennium*,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1998.
- Choue, Young Seek (Editor), *World Encyclopedia of Peace*, Oceana Publications, Inc., New York, USA, 1999.
- Choue, Young Seek, *A Grand Design of Permanent World Peace for the New Millennium*,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1999.
- Choue, Young Seek (Editor), *Will World Peace be Achievable in the 21st Centur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000.
- Choue, Young Seek, *Toward the Global Common Society*, Kyung Hee University

- Press, Seoul, Korea, 2000.
- Choue, Young Seek, *Is It all Right for This New Millenium Without Preparation?*,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001.
- Choue, Young Seek, *A Global Common Society Through Pax UN*,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002.
- Choue, Young Seek, *Building a Global Common Society Through Neo-Renaissance*, Kyung Hee University Press, Seoul, 2003.
- El-Agraa, Ali M. (Editor), *Economic Integration Worldwide*, St. Martins Press, New York, 1997.
- Ferenz, Benjamin B., Key Keyes, Jr., *Planethood*, Love Line Books, 1991.
- Held, David & McGrew, Anthony, *Globalization/Anti Globaliza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02.
- Jones, A. Robert,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the European Union*, Cheltenham, UK,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01.
- Sohn, Jaeshik,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Seoul Press, 1991.
- Sohn, Jaeshik, *In Search of a Global Common Society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1999.
- Sohn, Jaeshik, *Global Security and Pax United Nations*,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000.
- Sohn, Jaeshik,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Its Relevance to the Building of a Global Common Societ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001.
- Sohn, Jaeshik, *Building a Global Common Society and the Role of the UN*,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002.
- Sohn, Jaeshik, *Is Contemporary Democracy a True Democracy? — The Pursuit of a Better, More Desirable Democracy for Realizing Universal Peace*,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003.

Sohn, Jaeshik, *The Necessity, Problems and Improvement of Regional Global Cooperation Regimes*,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004.

Väyrynen, Raimo (Editor), *Globa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Inc., 1999.

Weatherford, Roy, *World Peace and the Human Family*, Routledge, London/New York, 1993.

Abstract

Statism, Hegemonism, and Exclusionary Nationalism

Jaeshik Sohn

The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1. The Limitation of a State Faculty

Like it or not, statism or state centeredness is experiencing new and grave challenges arising from rapid and profound changes occurring throughout the world. Even though a state, as a comprehensive community, has been the strongest political entity so far and provided people with a variety of public services ranging from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o environmental and personal services to meet fundamental human needs, it is becoming no longer capable to solve all the problems generating in its own territory due largely to deepening interdependency between different countries, increasing complexity and scale of worldwide problems, and growing international conflicts of interest. Among other things, the globalization of serious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deterioration, resource depletion, population growth, mass starvation, terrorist attacks, communicable diseases, large-scale organized crimes limits the ability of a state to effectively solve all these problems. Furthermore,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interstate war and arms races, sovereign state system has become the problem itself rather than the solution. It is the reason why new global arrangements are to be explored.

2. The Problem of Hegemonism

Statism may breed hegemonism. Just as individuals, in general, lust for power, a

state tends to want to increase its power to maximize its own self-interest. Strong states, in particular, have more indulged hegemonism. Throughout history, hegemonism has resulted in numerous tragedies and sufferings and evil influences: first, hegemonism has produced many wars of territorial expansion and exploitation; second, hegemonism has inflicted enormous and damages to colonized people not only physically and materially but also psychologically and culturally; third, hegemonism may lead to militarism and overarmament, making human society more dangerous and wasteful; fourth, many of those countries sticking to hegemonism makes it difficult to promote smooth international cooperation due to rising tension, instability, and excessive competition between hegemony-seeking countries; seventh, hegemonism, by its nature, may produce unfair international rules due to its inclination of power politics; eighth, hegemonism brings about unilateralism rather than multilateralism in wrestling international problems, leading to undermining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tably the UN.

3. The Problem of Exclusionism

Exclusionism is intensified when statism is flourishing. Extreme nationalism also entails exclusionism. Exclusionism constitutes major barrier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nd one of primary causes of war. Whereas nationalism, on the one hand, makes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enhancement of patriotism, the love of compatriots, and national unity, it also makes negative contribution to world peace when it reveals chauvinism, xenophobia, and bigotry, on the other. Wars arising from nationalism, including international wars, secessionist civil wars, reintegratist wars, and irredentist wars are the manifestations of exclusionary nationalism. Without making appropriate arrangements, nationalist wars or bloody conflicts will be likely to continue in the future.

4. Working Toward Building a Better World Order

Although globalization is irresistible and irreversible phenomenon, it has shown

both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Negative elements have resulted mainly from national egoism entailing hegemonism and exclusionism. Accordingly, a fundamental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o build a community at the global level. It is unrealizable without the overcoming of two evils – hegemonism and exclusionism. What is important is to promote universal democracy and Pax UN under the global common norms and rules based on the civilizational view of history. To approach the extremely difficult goal of building a global community of peace and justice, it is necessary to convince leaders and ordinary peoples of the world about the necessity and inevitability of the task by detailing on growing life threatening global problems and the fact that its long term advantages far exceed its disadvantages. In this respect, the achievement of spiritual innovation of opinion leaders through worldwide peace education, global peace oriented international NGO movements, and globally minded media campaign is much more desirable than anything else.

유비쿼터스 문명과 사이보그 시대의 사회적 쟁점

민 경 배*

1. 들어가며

과학기술 지상주의가 빚어낸 물질문명의 고도 발달은 이제 정보통신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자 사회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보통신혁명은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문명의 이기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통신혁명이 주도하는 오늘날의 디지털 전자 사회가 마냥 장밋빛 유토피아인 것만은 아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이 인공지능과 첨단 로봇에 밀려 생산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인터넷 공간은 음란물과 각종 일탈적 행동으로 날로 혼탁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삶은 이제 컴퓨터와 휴대전화 없이는 온전히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기계 의존적으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위한 인간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위에 군림케 하여 인간을 역지배하는 비인간화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인류의 물질문명사에서 하나의 신기술이 출현하여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통상 두 개의 극단적인 정서가 순차적으로 이어지고는 했다. 먼저 신기술에 대한 과도한 찬사와 기대, 그리고 신기술이 펼쳐놓을 유토피아적 미래상이 환상적으로 묘사된다. 신기술에 대한 실용주의적 관점과 산업적 이해관계가 이러한 정서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메시지가 등장한다. 신기술이 빚어낸 각종 사회 문제가 지적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반 제도적·정책적 장치들이 고안되

*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기 시작한다. 인문주의적 성찰성에 입각한 문화적·규범적 접근이 이러한 정서를 주도해 나간다. 하지만 신기술을 둘러싼 이러한 접근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기술의 사회적 접목이 만들어내는 좌표는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의 출현이라는 극단적인 지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좌표는 늘 그 중간 영역 어디쯤인가에서 형성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과도한 낙관론이나 과도한 비관론은 결국 어느 것 하나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신기술은 결코 ‘전지전능한 해결사’도 ‘무시무시한 지배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인 정서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모든 신기술은 양날의 칼처럼 유토피아적 속성과 디스토피아적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마련이다. 기술 자체의 발전 논리와 산업적 이해관계에 편승해서 무비판적으로 신기술을 수용하고, 그 이후에야 사후처방 식으로 사회적 대응방안이 논의되는 식으로 되풀이되었던 그 간의 시행착오가 빚어낸 폐해를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 기술과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비동시적·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동시적·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어 왔던 정보통신혁명의 과정 역시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정보통신혁명은 보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 해 나갈 기세이다. 그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정보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보다 고도화된 문명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문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유비쿼터스와 사이보그이다.

유비쿼터스가 새로운 차원의 사회 환경을 규정한다면 사이보그는 새로운 차원의 인간 존재를 의미한다. 오늘날 인류 사회에는 이들 유비쿼터스와 사이보그에 대한 또 다른 장밋빛 유토피아론이 만연해지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마치 유비쿼터스를 맞이하기 위한 총동원령이 내려진 듯 분주한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언론 지면은 사이보그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부지런히 실어 옮기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유비쿼터스 문명과 사이보그의 세계 역시 지금까지 인류가 답습해왔던 신기술의 수용 과정을 여전히 재현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유비쿼터스 문명과 사이보그의 세계에는 어떠한 위험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가? 지금부터 그것들을 찾아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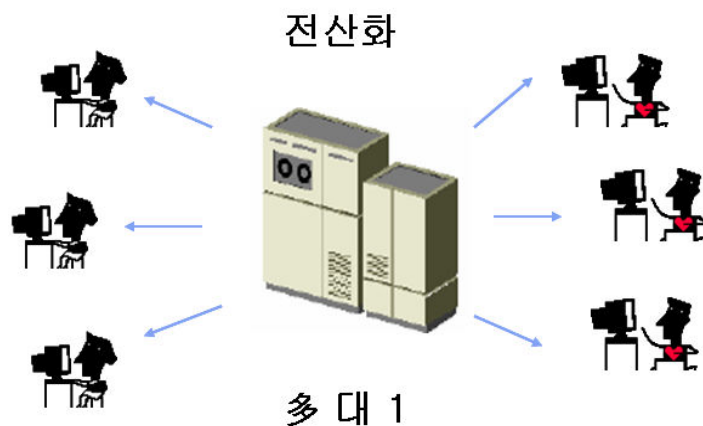
2. 유비쿼터스와 사이보그의 기본적 이해

1) 유비쿼터스로의 진화 과정

정보화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정보사회의 미래는 지금과는 또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되는 위와 같은 질문의 해답은 지금까지 정보화가 진행되고, 발전되어 왔던 경로를 통해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는 지금까지 몇 차례 내적인 진화를 거듭하면서 어느덧 제3세대를 거쳐 제4세대 정보화 과정으로까지 도달해 있다. 이제 그 과정을 차례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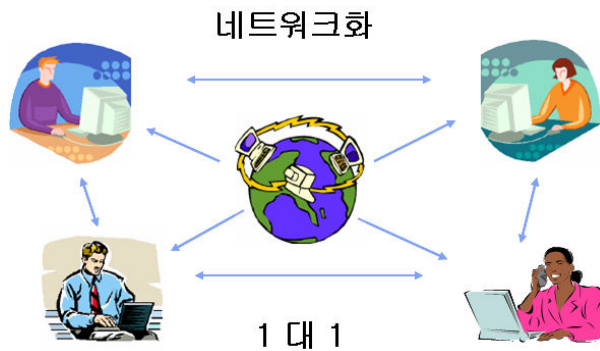
(1) 제1세대 정보화

정보화의 진화단계는 인간과 컴퓨터 혹은 네트워크가 상호 관계를 맺는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첫 단계는 다대일, 즉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개의 컴퓨터에 동시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PC라고 불리는 개인 컴퓨터가 보급되기 이전, 컴퓨터는 정부나 대기업 등 거대 조직의 업무 전산화를 위해 사용되던 도구였다. 이 당시에 거대 조직들은 집채만한 크기의 서버 컴퓨터를 하나씩 구축하고, 수많은 종사자들은 이 서버 컴퓨터에 각각의 모니터 단말기로 접속하여 전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다수의 사람들이 한 대의 컴퓨터를 공유하는 지극히 원시적인 수준이었다고 하겠다.



(2) 제2세대 정보화

메모리칩의 축소기술이 발달하고 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집채만한 컴퓨터는 오늘날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소형 컴퓨터로 진화한다. 이른바 개인 컴퓨터, 즉 PC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정보화는 인간과 컴퓨터가 일대일의 관계를 맺는 제2세대로 진화한다. 그리고 제1세대 정보화 단계에서 한 대의 서버 컴퓨터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은 이제 제2세대 정보화 단계에 이르러서는 전화선이나 광케이블을 통한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즉 전산화의 단계를 넘어 네트워크화의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제2세대 정보화는 현재 우리가 가장 익숙한 정보화의 모습이다.



(3) 제3세대 정보화

이동통신기술의 발달은 유선 인터넷의 단계를 넘어 이제 무선 인터넷시대, 즉 모바일화라는 제3세대 정보화를 출현시켰다. 이제 사람들은 책상 위의 PC나 노트북 뿐 아니라 휴대전화, PDA, GPS 등 다양한 무선 통신장비들을 동시에 운용하기 시작했다. 제1세대 정보화가 다대일, 제2세대 정보화가 일대일의 관계였다면, 이제 제3세대 정보화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컴퓨터를 동시에 운용하는 일대다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이 몰고 올 사회변화는 지난 휴대전화의 보편화 이후에 나타난 변화의 양상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 네트워크를 타고 흐르는 정보를 쫓아 떠도는 유목민적 존재로 변모하고 있다면, 모바일 인터넷은 이러한 유목민들이 본격적인 디지털 유목 문명시대를 개막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하겠다. 즉 자신의 육체와 분리된 ID나 아바타라는 무형의 존재

로써뿐 아니라, 이제는 PC가 놓여진 책상 앞에 묶여있던 자신의 육체조차도 자유로운 유목민적 형태로 공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디지털 유목 문명은 새로운 문화적 행태와 가치관을 낳는다. 물론 그 선구자는 M세대이다. 이동성과 신속성을 중시하는 M세대에 의해 기존의 사회적 기준에 따라 구획지워진 물리적 공간은 철저하게 부정되고 재해석된다. 그들은 수업시간에 은밀히 문자 메시지를 날리고, 지하철 안에서 빠른 손놀림으로 채팅을 나누며, 카페에 앉아 묵묵히 무선 네트워크 게임에 몰두한다. 공간적 의미 규정을 무시한 채 말 그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깥 세계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것이다. 빌게이츠가 인터넷을 가리켜 “손끝으로 열리는 세상”이라고 표현했다면, 모바일 인터넷은 우리들에게 “손 안에 품고 다니는 세상”을 선물한 셈이다.



물론 모바일화로 특징되는 제3세대 정보화로의 진입이 일대 혁신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새로운 유토피아라는 식의 일방적인 낙관론을 늘어놓는 것은 아주 경솔한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은 어쩌면 전자 감시를 강화시킬지도 모른다. 휴대전화는 편리한 통신수단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외부 세계와 연결할 것을 강요하는 성가신 족쇄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인터넷도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현재 위치와 행동을 추적 당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이미 자신의 친구나 좋아하는 스타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만큼 불쾌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더욱이 모바일 인터넷은 익명성이 제공해주는 해방감마저 빼앗아 갈 수도 있다. IP 주소를 추적하는 것보다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는 것이 훨씬 더 정

확하게 발신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익명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인터넷이 과연 매력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유선 인터넷이 제공해 주었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생산소비자의 등장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모바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다시 퇴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거의 유목문명은 무차별적인 소비 사회였다. 유목민들은 수렵과 채취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자연을 소비한 후, 황폐해진 자연을 버리고 또 다른 소비지를 찾아 길을 떠나고 있었다. 유목생활이 아닌 정착생활을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인간은 생산이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유목문명은 또다시 생산을 모르는 소비형 인간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손바닥에 쏙 들어가는 현재의 모바일 단말기는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급하기에는 아주 불편한 인터페이스이다. 비록 일본에 수백 타를 자랑하는 '신의 손'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보 생산자,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콘텐츠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를 단순히 소비하기만 하는 정보소비자의 위치로 다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보의 공유와 공개'라는 인터넷의 기본 정신이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함을 의미한다.

(4) 제4세대 정보화

모바일화로 지칭되는 제3세대 정보화가 아직 한창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제4세대 정보화라는 또 다른 진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제4세대 정보화에서는 인간과 컴퓨터가 다대다의 관계를 맺는다. 다시 말해 여러 명의 사람이 여러 개의 컴퓨터를 동시에 이용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정보화인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책상 위에 놓여있는 PC는 박물관 진열장 안으로 사라지고,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기기와 물품들이 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것이다.

이러하면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전통적인 기능에 더하여 스스로가 인터넷 쇼핑몰에 식품을 원격주문하는 인터넷 냉장고로 탈바꿈한다. 가스 오븐은 요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다운로드받아 스스로 음식을 조리한다. 화장실 변기는 소변 성분을 분석하여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의료사이트로 보

내주어 건강진단 기능을 하게 되며, 욕실의 욕조도 그 사람의 신체 상태에 가장 적절한 성분과 온도를 함유한 물을 자동으로 받아주게 된다. 또 전동치솔은 치아상태를 점검하여 자신의 주치의에게 정보를 전송해주는 단말기 역할을 한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지불하느라 자동차가 길게 늘어설 필요도 없어진다. 센서가 자동차 번호판을 판독하여 휴대전화 요금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양한 생활용품 속에 컴퓨터 칩을 집어넣어 인터넷으로 연결시키려는 실험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묘사한 풍경은 결코 SF 영화에나 나올법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머지 않은 미래에 현실로 등장할 모습들이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세계 전역이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새로운 단계의 정보화가 도래한다면 앞서 지적했던 사이버 공간과 현실세계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이제 인터넷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세계의 일부로서의 사이버 공간은 점차 현실세계 전체로 확장되면서 현실세계와 사이버 공간의 개념적 경계조차 와해시키는 ‘현실세계의 사이버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비트는 이미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을 파고들면서 현실세계를 사이버화 시키고 있다. 학내에 구축된 무선 랜(lan)을 통해 잔디밭에 앉아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대학 캠퍼스, 그리고 단말기를 통해 가전제품과 집안 상태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이버 아파트는 이미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공간 자체가 곧 사이버 공간임을 말해주는 징후들이다.

이러한 현실세계의 사이버화를 본격적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유비쿼터스(Ubiquitous)’라 불리는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의 출현이다. 우리말로는 “편재한다”는 뜻 정도

로 해석되는 유비쿼터스란 말 그대로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책상, 냉장고, 화장실 변기, 심지어 옷이나 안경 같은 것들이 다 컴퓨터 칩을 장착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네트워크는 인간과 사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유비쿼터스 시대의 네트워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물과 사물 사이에도 구현된다. 신발 한 짝이 전자적 신호를 보내 다른데 내팽겨쳐 있는 다른 한 짝의 위치를 찾는다면, 가슴에 단 배지가 신호를 보내 자동문을 열게 한다는 식이다.

지금까지의 인터넷 혁명이 현실세계를 컴퓨터 네트워크 속으로 집어넣는 과정이었다면 유비쿼터스 혁명은 반대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현실세계 구석구석에 집어넣는 과정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다. 즉 인터넷 혁명이 사이버 공간을 창출해 냈다면, 유비쿼터스 혁명은 사이버 공간을 컴퓨터 안이 아닌 현실세계에 구현시키게 된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혁명은 기존에 현실세계와 사이버 세계라는 이분법적인 경계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현실세계의 네트워크화, 현실세계의 사이버화를 구현한다. 유비쿼터스로 구현되는 사이버화된 제4세대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장자(莊子)가 말했듯이, “인간인 내가 꿈에 나비가 된 걸까? 아니면 나비가 꿈에 인간인 나로 변해있는 것일까?”라는 호접몽(胡蝶夢)의 세계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님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2) 사이보그의 진화과정

인류의 선조라고 하는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가 지구상에 출현한 것은 약 320만년 전의 일이라고 한다. 그후 인류는 지속적인 진화 과정을 거쳐, 지금으로부터 약 35만년 전에 이르러 비로소 오늘날의 현대인과 유사한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의 출현을 맞이하게 되었다.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인간의 진화과정이 이제 정보통신혁명에 즈음하여 또 한 차례 획기적인 전환을 예고하기 시작했다. 즉 우리 인간들의 존재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 마디로 ‘사이보그(Cyborg)’, 즉 인공물과 결합된 신인류라는 개념으로 집약된다.

(1) 사이보그, 그리고 로봇과 안드로이드

사이보그라는 말은 Cybernetics(인공두뇌학)과 Organism(유기체)의 합성어로,

우리말로는 ‘인조인간’ 혹은 ‘합성인간’ 정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이보그는 로봇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로봇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계 덩어리이다. 반면에 사이보그는 기계 장치가 신체에 이식된 인간을 말한다. 옛날 만화영화 ‘마징가Z’ 주제가 가사 중에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Z’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로봇과 인조인간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한 잘못된 표현이다.

사이보그와 또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안드로이드’라는 것이 있다. 안드로이드는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 기술로 만들어진 일종의 복제인간이다. 인간과 같이 세포 등의 원형질로 되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가공의 생물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수명도 가지고 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레플리컨트나 ‘에일리언’ 시리즈의 비숍과 같은 인물이 바로 안드로이드이다. 물론 안드로이드는 아직까지는 영화 속 상상의 존재일 뿐 실재하지는 않는다. 반면 로봇이나 사이보그는 이미 실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사이보그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 옛날에 TV 시리즈로 방영되던 6백만불의 사나이나 영화 로봇캅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된다. 즉 신체 기관의 일부를 기계 장치로 대체한 사람들이 바로 사이보그이다. 물론 6백만불의 사나이나 로봇캅처럼 초능력을 가진 존재로서의 사이보그는 여전히 영화속 상상의 존재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사이보그란 알고 보면 영화 속의 사이보그처럼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이를테면 인공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된다. 이처

럼 신체의 일부분을 기계 장치나 다른 인공물로 대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팔이나 다리가 없어서 의수나 의족같은 인공 보철구를 장착한 사람도 일종의 사이보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인들 중에도 사이보그가 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 세계적 베스트셀러 <오체불만족(五體不滿足)>의 저자로 유명한 오토다케 등과 같은 사람들이 다 사이보그이다.



스티브 호킹

애덤 킹

오토다케

심지어 일각에서는 실리콘 유방 확대 수술을 한 여자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사람조차도 넓은 의미에서 사이보그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리고 보다 더 폭넓게는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있는 노인이나 눈에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들도 사이보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이보그는 사실 전혀 새로운 존재도 아니며, SF영화 속이나 등장하는 먼 미래의 상상물도 아니다.

(2) 사이보그의 또 다른 진화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지금까지 소개했던 개념과는 다른 형태의 사이보그가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6백만불의 사나이, 스티브 호킹, 또 인공심장을 이식한 사람들은 결국 의학적인 차원에서 신체의 일부를 기계 장치로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사이보그 개념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것과는 달리 ‘네트워크화된 인간’으로서의 사이보그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즉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능이 인간의 신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걸어다니면서 인터넷을 하는 인간이라고 하겠다.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사이보그라면 휴대전화나 PDA로 무선 인터넷

을 하는 사람을 들 수 있다. 사실 요즘 휴대전화 안갖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우리 모두는 ‘네트워크화된 인간’으로서의 사이보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보다도 훨씬 더 진화된 형태의 사이보그가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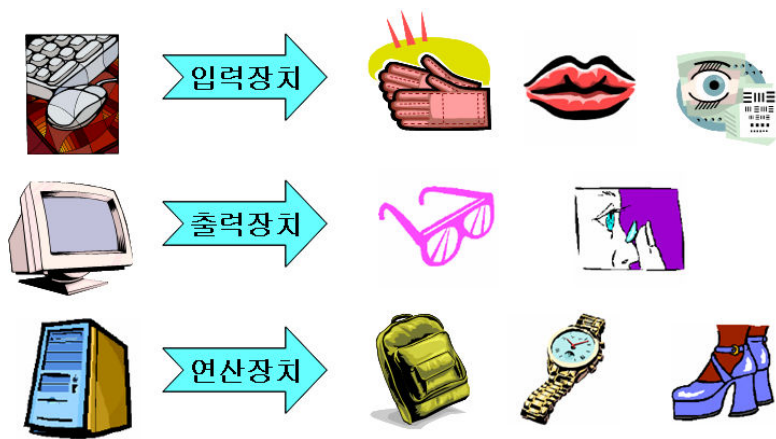
보다 진화된 사이보그가 출현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네트워크 장치를 신체 속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컴퓨터 칩 같은 것을 신체에 이식하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지난 해 5월에 미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사이보그 가족이 등장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플로리다주에 사는 제이콥스라는 가족 3명이 각자의 신원과 병력을 기록한 쌀알 크기의 베리칩이라는 것을 팔의 피부 밑에 집어넣는 수술을 받았다. 베리칩은 특별히 고안된 관독기로 스캔하면 칩을 가진 사람의 신상 정보와 의학적 상태를 알려 주는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베리칩이 이식되어 있으면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신원과 집 전화번호, 병력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이보그 가족의 가장인 48세의 제프라는 사람은 암 병력이 있으며, 교통 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또 퇴행성 척추 질환, 만성 안질환 등의 후유증으로 10가지 종류의 약에 의존해 살고 있는 중환자이다. 이러한 제프의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칩 삽입을 자청하였다고 한다. 칩의 삽입 비용은 200 달러선이고, 칩을 관독할 스캐너의 가격은 1000~3000달러 정도라고 한다.

또 이 베리칩을 지구 위치 추적 위성과 접목시키면 미아를 찾는 등 개인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어린이 유괴가 많아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몸 속에 베리칩을 이식시키는 수술이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수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영국의 인권단체들은 부모가 어린이에게 베리칩 이식 수술을 시키는 행위가 아직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이 칩이 성서에 나오는 악마의 표지 666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에 나서는 등 베리칩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3) 입는 컴퓨터

사이보그의 또 다른 방식은 베리칩처럼 신체에 직접 인공물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치를 부착하고 다니는 방식이다. 즉 입는 컴퓨터의 등장이다. 물론 입는 컴퓨터라고 해서 지금 책상 위에 놓여진 무거운 컴퓨터를 등쪽에 지고 다니거나 SF영화에서처럼 팔뚝에서 키보드가 튀어나오는 건 아니다. 입는 컴퓨터에 대한 연구는 이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세련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의 컴퓨터 세트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즉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입력장치, 모니터 같은 출력장치, 그리고 본체에 들어있는 CPU와 하드디스크와 같은 기억장치이다. 즉 이 세 가지 장치를 마치 옷과 같이 자연스럽게 신체에 부착시키는 것이 입는 컴퓨터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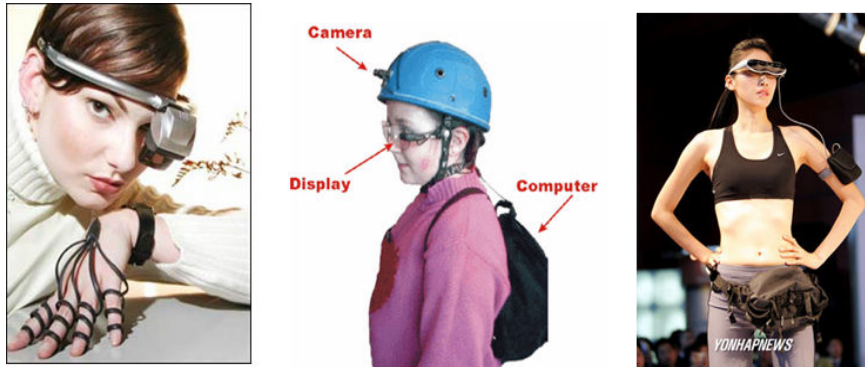


먼저 입력장치부터 살펴보자. 입력장치는 컴퓨터에 연결된 특수 글러브를 끼고 마치 수화하듯이 손을 움직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장비가 이미 나와 있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에서는 현재 장애인용 컴퓨터 장비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일반인들이 컴퓨터용 수화를 또 익혀야 한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등장했다. 바로 음성 인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휴대전화에서 음성으로 전화거는 기술이 잠깐 선보였던 적 있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마이크를 통해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시키는 기법 역시 이미 오래전에 개발된 기술이다. 최근에는 안구 스캐닝 카메라라는 것도 나와서 안구의 움직임을 추적해 사용자가 스크린 상의 가상 키보드를 쳐다보기만 하면 자판을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도 나왔다. 과학자들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의 머릿속 생각을 그대로 컴퓨터에 입

력시키는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 정보통신혁명의 끝이 도데체 어디까지인지 모를 일이다.

다음 출력장치에 대해 알아보자. 출력장치는 전자오락실에 가면 볼 수 있는 특수 안경이 모니터를 대신한다. 평소에는 안경 렌즈 넘어 바깥 세상을 보지만 스위치 버튼만 누르면 순식간에 안경 렌즈 안에서 가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같은 안경도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콘택트 렌즈가 모니터 역할을 하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남아있다. 바로 기억장치이다. 기억장치가 제일 까다로운 이유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마이크로 칩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손목시계나 팔찌, 혹은 단단한 구두 굽 속에 마이크로 칩을 집어넣는 방안 등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입는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해선 신체에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몸에다 건전지를 넣어서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운동량이 많은 팔이나 다리에 본체를 장착시키는 방식이 개발된 것이다.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야 풍력발전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아주 오래된 기술이다.



최근에 등장한 컴퓨터 속옷은 이러한 입는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음을 말해주는 신호탄이라 하겠다. 지난 2003년 10월, 네델란드의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필립스가 전자 속옷을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실버상품으로 나온 것인데, 전자 속옷이 이것을 입고 있는 노인의 체온, 심장박동수, 혈압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다가 몸에 이상이 감지되면 즉각 병원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

러면 병원은 전자 속옷에 장착된 GPS를 통해 노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곳에 구급차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체가 직접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은 머지 않아 도래하게 될 전망이다. 어찌면 우리는 조만간 이런 풍경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팔짱을 끼고 걷어가는 연인이 각자의 콘택트 렌즈 모니터를 통해서 다른 이성과 채팅을 하고 있는 풍경, 혹은 길거리를 걷어가는 청소년이 특수 안경을 쓰고 허공을 향해 총 쏘는 시늉을 하며 게임을 하는 풍경 같은 것. 그리고 이런 희한한 풍경을 주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 말이다.

3. 유비쿼터스 문명과 사이보그 시대에 대한 경고

1)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가 편재하는 빅브라더 사회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기능에 더하여 스스로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 접속하여 식품을 원격주문하고 결제까지 처리하는 인터넷 냉장고로 탈바꿈한다. 가스오븐은 요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다운로드받아 스스로 음식을 조리한다. 화장실 변기는 소변 성분을 분석하여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의료사이트로 보내 건강진단 기능을 하게 되며, 욕실의 욕조도 그 사람의 신체 상태에 가장 적절한 성분과 온도를 함유한 목욕물을 자동으로 받아준다. 또 전동치솔은 치아상태를 점검하여 자신의 주치의에게 정보를 전송해주는 단말기 역할을 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지불하느라 자동차가 길게 늘어설 필요도 없어진다. 센서가 자동차 번호판을 판독하여 휴대전화 요금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유비쿼터스가 실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적용 사례이다. 유비쿼터스가 구현되는 위의 생활용품들은 확실히 가사 노동의 경감이나 건강 관리, 교통체증 해소 등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얻는 대가로 우리는 다른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인터넷 냉장고와 인터넷 가스 오븐은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는

지 속속들이 기록하고 그 정보를 쇼핑사이트에 제공해 줄 것이다. 인터넷 번기와 인터넷 육조 그리고 인터넷 전동기술은 당신도 몰랐던 자신의 건강정보를 의료사이트에 알려주게 될 것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관독기는 통행료만 부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신이 언제 어디를 다녀왔는지까지도 기록해 놓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네트워크가 편재하는 유비쿼터스의 시대는 뒤집어보면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전자감시 시스템이 편재하는 프라이버시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실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진작부터 심각하게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유비쿼터스 시스템은 다음 두 가지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된다. 하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증)라 불리는 전자추적표이며, 다른 하나는 온라인 상의 주소라 할 수 있는 IP Address 체계를 IPv6로 전환하는 일이다. 먼저 RFID는 사물에 장착하는 0.3mm 크기의 미세한 전자칩인데, 스스로 자기장을 발생시켜 자신의 정보를 외부로 송출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RFID가 사물에 장착되면 그 사물을 제3자가 원거리에서 추적, 식별, 정보수집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RFID는 IPv6 체계와 결합되면서 보다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요건 중의 하나가 우리의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IP 주소를 부여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32비트의 IPv4 주소 체계를 128비트의 IPv6 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졌다. 43억 개의 주소밖에 만들지 못하던 IPv4 체계는 IPv6 체계를 통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주소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래알 하나 하나에까지도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주소 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사물에 고유한 IP 주소가 부여된다면 그로 인해 빚어질 프라이버시 문제는 실로 가공할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는 오프라인 상의 IP주소라 할 수 있는 우편번호 체계에 비유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과거에 우편번호 체계는 행정구역상 동 단위에 고유의 우편번호를 지정해두고 있었다. 그래서 특정 우편번호를 통해 추적 가능한 소재지는 동 단위가 최소 단위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우편번호의 수가 증가하고 체계가 보다 세분화되면서 해당 동의 특정 아파트 단위, 대형 건물 단위로까지 우편번호가 할당되고 있다. 즉 특정 우편번호를 통해 추적

가능한 소재지의 단위가 훨씬 더 좁혀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냉장고와 가스오븐, 화장실의 변기와 욕조, 그리고 전동치솔과 자동차 번호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체마다 RFID가 장착되고 고유한 IP 주소가 부여된다면 모든 행적의 감시와 기록이 용이해지며, 심지어 특정 집안의 재산목록까지도 파악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소개했듯이 미래의 사이버그가 입는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 신체에 장착하는 모든 부품마다 RFID와 IP 주소가 부여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샅샅이 파악되는 가공할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그 결과 당신의 저녁 식탁 메뉴, 소변 성분, 충치 정보, 심지어 차량 행선지 등 기존 인터넷 시대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일상적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전자 감시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다.

2) 인간의 배제와 실업의 위험이 편재하는 매트릭스 사회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갖춘 인텔리전트 주택에서는 집주인의 옷깃에 단 스마트 배지가 신호를 보내서 자동문이 열린다. 그만큼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홈 시큐리티(Home-Security) 시스템이 구축된다. 슈퍼마켓의 모든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는 RFID로 전면 교체된다. 계산대에 물건을 쏟아 놓고 일일이 바코드를 읽느라 줄을 설 필요 없이 구입품을 실은 쇼핑 카트가 계산대를 통과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

인터넷 혁명은 컴퓨터를 통한 인간과 사물간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시켰다. 반면 유비쿼터스 혁명은 사물과 사물간의 네트워크(T2T : Things-to-Things)를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모든 사물에 RFID를 달아 스스로 정보를 발신케 하며, 동시에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신케 함으로써 전자적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물과 사물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배제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자동문이 작동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문 앞에 사람이 서면 중량을 감지에서 문이 개폐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문 앞에 서있는 사람이 적외선을 차단하여 문을 열게 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인간의 존재를 센서가 감지함으로써 자동문이 작

동하게 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인텔리전트 주택의 경우는 인간과 센서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스마트 배지와 센서라는 사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이 작동된다. 센서는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배지만을 인식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예에 불과하다.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두 번째 예로 든 슈퍼마켓의 계산대 앞에서 벌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 바코드의 도입이 가져온 유통혁명의 전망과 그 결과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코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유통혁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하나는 생산자 영역에서 상품의 판매량과 재고량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준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 영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계산 처리로 쇼핑환경이 향상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생산자 영역에서의 혁명은 이루어졌지만 소비자 영역에서의 혁명은 실현되지 않았다. 바코드의 도입으로 계산대에서 처리 속도가 빨라지자 슈퍼마켓 운영자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계산원의 숫자를 줄여버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계산대 앞에서 소비자들이 줄을 서있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슈퍼마켓에 고용된 계산원들의 실업만 늘어났다.

계산원의 손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 바코드 대신 RFID가 상품에 장착된다면 계산 시간은 바코드 시절보다 훨씬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또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줄어든 계산 시간만큼 슈퍼마켓 종업원의 숫자 역시 이에 비례하여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사라지는 종업원들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나타날 노동시장의 현실을 말해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인간이 배제된 채 사물과 사물의 네트워킹만으로 모든 업무가 처리되는 유비쿼터스 시대는 곧 영화 속에서 암울한 디스토피아적 미래로 그려진 매트릭스의 출현을 예고한다.

3) 기계 의존적 삶이 편재하는 사이보그 사회

2002년 5월,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사이보그 가족이 탄생했다. 플로리다주에 사는 제이콥스라는 가족 3명이 각자의 신원과 병력을 기록한 쌀알 크기의 베리칩이라는 것을 피부 밑에 집어넣는 수술을 받았다. 베리칩에는 특별히 고안된 판독기로 스캔하면 칩을 가진 사람의 신상 정보와 의학적 상태를 알

려 주는 정보가 담겨 있다. 따라서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신원과 집 전화번호, 병력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SF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사이보그의 꿈같은 이야기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제1세대 사이보그가 의료적 차원에서 신체의 일부를 인공심장이나 보철구 등과 같은 기계 장치로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했다면, 유비쿼터스 시대의 제2세대 사이보그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능이 신체를 통해 구현되는 ‘네트워크화된 인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온 세상 구석구석에 네트워크가 편재한다는 유비쿼터스는 이렇게 우리의 신체 곳곳으로까지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배리칩과 전자 속옷에 전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맡겨야 하는 사이보그처럼 인간은 서서히 기계 의존적인 존재로 탈바꿈되고 있다.

기계 장치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은 단지 건강이라는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의식세계 역시 점점 더 기계장치에 의존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건강증’이라는 새로운 징후가 그 단적인 예이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전화번호는 이제 우리의 두뇌가 아니라 휴대폰과 PDA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속에서만 기억될 뿐이다. 즐겨듣는 최신 가요 역시 노래방 화면에 흘러나오는 자막을 보지 않고는 끝까지 따라 부르기 힘든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심리학자 케네스 거겐은 “그동안 인간은 기억을 머릿속에서 전달되는 것으로 봤으나 이제는 외부 장치에 저장한 데이터도 기억의 일부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지난 2003년 벽두에 불어닥친 1.25 인터넷 대란을 통해 이러한 기계 의존성이 이미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목격한 바 있다. 급속히 확산되는 웹 바이러스는 전 세계의 인터넷 망을 순식간에 마비시켰고, 그 결과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활동이 일시 중단되면서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일대 재앙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다수의 네티즌들이 불안감과 우울증 등 심리적 공황상태를 보이는 등 그 후유증은 걸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특히 인터넷 대란을 몰고 온 웹 바이러스의 전파가 전 세계 컴퓨터의 운영체제(OS)를 장악하고 있는 MS사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인터넷 강대국임을 자부하던 한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자칫 얼마나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4.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다

유비쿼터스와 사이보그 시대에 예견되는 문제점들은 그밖에도 수없이 많다. 정보격차의 심화와 보편적 정보접근권의 침해, 인터넷 중독을 능가할 유비쿼터스 중독, 유비쿼터스 관련 각종 신종 범죄, 사이보그 부품의 성능과 비용을 둘러싼 새로운 계층의 분화와 인간소외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공포와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인간성 상실과 인간 부재의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역지배되어 가고 있다는 조영식 박사의 우려섞인 지적은 점차 도래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문명과 사이보그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보다 더 절실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보통신혁명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논리·산업적 논리가 다른 어느 논리보다도 항상 앞서 있었던 것이 분명한 우리의 현실이었다. 기술적·산업적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일단 서둘러 추진부터 해놓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들에 대해서는 허둥지둥 사후처방에 급급했던 인터넷 혁명기의 시행착오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물론 정보통신혁명이 안겨준 가시적 성과물은 엄청난 게 컸지만 그로부터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유비쿼터스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사이보그가 선사하는 건강과 안전을 얻는 댓가로 우리는 또다른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잊지 말아야 한다. 장밋빛 약속 이면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기술문명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은 무작정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의 처량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유비쿼터스 문명과 사이보그 시대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남겨놓고 있다. 설령 과학기술의 발달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하더라도 이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현안과 문제점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인간 중심의 성찰적 정보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참고문헌

- 노무라종합연구소,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와 신사회 시스템”, 전자신문사, 2003
- 리처드 헌터, “유비쿼터스”, 21세기북스, 2003
- 마이클 하임,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책세상, 1997
- 민경배, ‘유비쿼터스는 유토피아인가?’, “아름다운 e세상”,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3월호
- 민경배, ‘모바일 시대, 이동전화의 문화’, “정보통신과 한국의 변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조영식, ‘준비없는 새천년 이대로 좋은가’, 2001
- 케빈 워릭,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 김영사, 2004
- 하원규 외, “유비쿼터스 IT혁명과 제3공간”, 전자신문사, 2002
- 함께하는 시민행동, “RFID와 프라이버시 보고서”, 2004
- 헤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동문선, 2002
- 홍성태, “사이보그/사이버컬처”, 문화과학사, 1997
- NTT데이터 유비쿼터스연구회, “손에 잡히는 유비쿼터스”, 전자신문사, 2003

지구화와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세계질서

이 화 용*

1. 들어가는 말

새로운 개념의 등장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현상 혹은 이전과는 다른 현상을 보다 통찰력 있게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현상을 포착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개념, 새로운 현상의 정확한 의미, 그것이 가져온 변화, 그 변화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이며 미래 사회에 던져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일이란 그리 용이한 작업은 아니다. 이는 지구화(globalization)¹⁾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근래 들어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지구화는 친숙한 단어가 되었지만 친숙함이 더욱 커질수록 지구화의 의미와 이로 인한 변화가 무엇이며 그 변화의 함의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데이비드 헬드에 의하면 지구화란 ‘사회관계와 교류의 공간 조직에 변형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를 부연설명하자면,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합적 방식 즉 사회관계의 범위가 국민국가의 영토적 지

* 경희사이버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1) 용어 사용의 혼재를 막기 위해 지구화, 세계화, 국제화의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제화는 국가 영역간의 연계가 심화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는 국가가 주요 정치적 단위이다. 반면, 지구화는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네트워크 망이라 정의된다. 이러한 이해를 근간으로 이 글은 국가의 쇠퇴에 관한 논쟁에서 이미 지구화로 인해 주권국가의 영역이 약화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구화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화는 특히 경제적 차원의 지구화 현상을 지칭한다.

리(territorial geography) 차원으로부터 벗어나 점차 단일공간으로서의 세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가리킨다.²⁾ 영토를 준거로 하는 국가의 공간이 우리 생활에서 덜 중요해지고 덜 중심적이 되어가면서 그 자리에 세계라는 사회 공간이 들어오는 오늘날의 변화는 그 변화의 폭과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기왕의 현상들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 글은 지구화가 가져온 변화 가운데 인류역사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여져 온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지구화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변화에 관한 논의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구화의 진행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실제적, 이론적 두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냉전질서의 붕괴에 따른 새로운 세계질서의 대안으로, 새로운 정치체제의 형태를 취하고자 하는 제3세계와 동구권 국가 등의 미래와 관련하여 주목되고 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논의는 이제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영토 국가에서 세계 공간으로 전이하는 지구화로 인해 영토공간을 기저로 형성된 국가에 준거한 일국 차원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민주주의에 관한 보다 다양한 논의를 진작시키고 있지만 한편으로 향후 민주주의에 관한 전망이 단일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 시기에 관해 주목할 만한 놀라운 역설이 있다. 아프리카로부터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시아로부터 라틴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국가와 집단들이 ‘인민의 지배’라는 생각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 조직의 일국적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의 효율성 자체가 의문시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인간 행위의 실질적인 영역들이 갈수록 세계적 수준에서 조직화됨에 따라, 민주주의와 특히 독립적인 민주적 국민국가

2) 얀 아트 솔트(Jan Aart Scholte)는 지구화의 용례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국가들 사이의 국경을 가로 질러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이 심화됨을 뜻하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의 의미. 둘째, 세계경제의 개장과 통합을 위해 국가들간의 완래에 대한 정부주도의 제한들을 철폐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자유화(liberalization). 셋째, 다양한 사물과 경험들이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보편화(universalization). 넷째, 서구화, 특히 미국화된 형태로 정의되는 서구화(westernization). 다섯째, 지리의 변화를 뜻하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 이 글은 이 가운데 다섯 번째 정의를 지구화의 의미로 쓰고 있다. 얀 아트 솔트, “세계정치와 지구화”,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3, 24-5.

의 운명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³⁾

민주주의 체제 확립의 선결조건은 특정 영토 내에서 단일 주권이 행사되는 국민국가의 성립이다. 지구화의 진행과 함께 국민국가 체제의 변화가 있다함은 민주주의 체제 확립의 선결조건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레 지구화 이후 민주주의 변화에 관심을 쏠리게 한다. 이 글 역시 이러한 관심을 갖고 지구화로 인해 민주주의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가 지금까지 행해져 온 민주주의에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며 지구화 시대 민주주의에 어떤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조영식 박사가 제시한 만민 만국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보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한 그 실천적 과제를 위해 고민하는 계기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국민국가와 민주주의

왜 지구화의 진행과 더불어 일국적 형태로서의 민주주의가 문제인가 하는 질문은 왜 민주주의의 실현이 국민국가, 주권국가를 준거하는가에 관한 이해를 먼저 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국가 체제의 성립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대 국가란 특정 영토 내에서 그 구성원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비인격적 질서체라 정의된다. 세계의 지형을 영토적 경계에 따라 국민국가로 나눈 시발점은 베스트팔렌 조약(1648)이었다. 주지하듯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에서의 30년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치적 협약이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전쟁의 종결과 평화의 회복을 위한 단순한 구두점이 아니라 향후 세계의 정치적 지도를 결정하는 큰 이정표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30년 전쟁을 종결하는 베스트팔렌 조약의 내용을 접한 교황 이노첸트 10세는 그 조약이 무효이고 정당하지도 정의

3) D. Held, "Democracy: From City-States to a Cosmopolitan Order?", *Political Studies* XL, Special Issue, 31. 강정인, "세계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 강정인,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21에서 재인용. 또한 A. McGrew, *The Transformation of Democracy?*, Cambridge: Polity, 2000, 21도 보라.

롭지도 않으며 모든 시대의 의미와 결과를 결여한 것이라는 분노에 찬 비판을 하였다고 한다.⁴⁾ 교황 이노센트 10세의 이러한 반응은 유럽의 평화를 원하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더 이상 서구 유럽을 보편적 기독교 왕국으로 묶어내기를 거부하는 세속적인 정치지형의 확정에 대한 반발이었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 유럽의 정치적 주권은 정신적으로는 교황이, 세속적으로는 황제가 주도하는 기독교 제국과 신성로마제국의 두 축에 의해 행사되고 있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중세의 두 보편국가인 기독교 제국과 신성로마제국의 주권과 그에 속한 지배권이 상실되고 사법적 관할권과 정치적 권위 행사가 영토적 경계에 따르며 그 공간에서의 주권은 영토내의 국가가 갖는다는 선언이었다. 교황의 분노와 합스부르가의 과편화된 분절 속에 근대적 국제질서의 규범적 기반은 이렇게 만들어 졌다. 17세기 유럽 사람들에게 조차 그리 익숙치 않았던 베스트팔렌 원칙은 근대국가체제의 탄생을 시사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정치공동체는 영토적 경계에 따라 국가들이 주권을 갖는 영토국가, 주권국가의 형태로 보편화되어 갔다.

서구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영토를 준거로 하는 국가의 틀 하에서였다. 19세기 후반부와 20세기 초의 서구유럽은 영토적 경계의 주권이 국가에 있다는 사유에서 더 나아가 국가 주권의 원천이 그 국가 구성원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민주적 정치체의 실현으로 국가 건설을 넘어 국민건설, 즉 국민국가 건설을 완성시키기 위한 갈등과 투쟁을 겪고 있었다.⁵⁾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국가건설의 주요과제인 권력의 제도화, 정치제도의 제도화 작업은 민주적 정치체, 즉 민주주의 실현과 맞물려 가면서 민주주의의 국가화 혹은 국가의 민주주의화의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국가는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서구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했던 역사적 시기인 19, 20세기는 국민국가의 건설과 조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는 국민국가를 상정하며 이루어졌다.

영토적 경계에 따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간명하고도 보편적인 정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이다. 비담은 이를 좀 더 풀어 설명하는데, 민주주의란 집단적인 구속력을 갖는 규칙과 정책에 관해 인민이 통제를 행사하는

4) Holsti, K. J. *Peace and War; Armed Conflicts and International Order 1648-198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25.

5) 에릭 홉스봄,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8.

의사결정 양식이라 하였다. 따라서, 가장 민주적인 장치란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그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장치로 정의된다.⁶⁾ 이러한 의미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의정부가 구상되었고 이 정부형태 속에서 시민들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는 책임을 갖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대의민주주의는 실행가능한 공적 책임을 갖는 안정된 정부를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부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인민의 본질, 시민권, 자치, 동의, 대표, 인민주권 등의 민주주의의 원리는 국민국가와의 연계를 당연시하면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모양새를 완성해 갔다.⁷⁾

20세기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투쟁으로 점철된 시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정당성은 그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느냐에 있었으며 신생국들의 정치적 나침반의 바늘도 어김없이 민주주의에 맞추어 놓고 있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바람직한 정치공동체의 형태가 무엇인가에 관한 지속적인 담론과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가 그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0세기말 일어났던 소련의 해체와 동구유럽의 변화는 민주주의의 무게중심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지배체제 등을 상대로 싸웠던 민주주의는 후쿠야마의 주장처럼 역사의 장을 마감할 정도로 완전한 승리에 도취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 한숨을 돌리며 여유있어 보였다.⁸⁾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이론적 문제점들, 현실적 한계들이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공산주의 지배체제 진영의 자체 파산으로 인해 그것들이 이전만큼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숨고르기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민주주의는 또 다른 대상, 지구화와의 조우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미래를 재성찰해야 한다. 20세기에 만났던 과시즘, 공산주의, 권위주의 체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적은 아니지만 영토적 경계의 약화 혹은 지구적 상호의존의 증대를 뜻하는 지구화는 지금껏 큰 의문없이 받아들여져 온 민주주의의 전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변화는 더욱 근본적이 될 수도 있다.

6) David Beetham(1992), "Liberal Democracy and the Limits of Democratization," *Political Studies*, XL, Special Issues, 40.

7) D. Held & A. McGrew, "Globalization and the Liberal Democratic State", *Government and Opposition*, 28:2(1993), 261-88. 이 글에서 사용하는 민주주의는 주로 자유민주주의를 가리킨다.

8)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16(1989, Summer), 3-17.

지구화가 미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과 그 전망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지구화가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시킨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구화로 인한 민주주의의 훼손 혹은 위기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전자의 입장은 지구화가 영토적 경계를 넘는 글로벌 거버넌스, 탈주권 거버넌스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구화는 권력 중심의 다변화, 정치 세력의 다원화로 인해 지구적 다원주의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 일국 민주주의의 구도에서는 정치세력의 다원화가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와 달리, 지구화 시대 권력의 다변화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발전을 결과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지구화 시대 민주주의가 갖는 딜레마이자 민주주의의 궤도 변화가 논의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왜 지구화로 인한 다원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구화는 민주주의 기여라는 확실적인 답을 확보하지 못하는가?

Ⅲ. 민주주의의 변화: 도전과 기회

사회관계 및 네트워크가 폭 넓게 확장되어 사회생활의 다양한 국면에 걸쳐 강력하고 신속한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한 뚜렷한 변화의 하나로 세계질서의 정치적 지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첫째, 지구화로 인해 영토 경계를 가로 지르는 중첩된 권력망이 형성되고 그리하여 일정한 영토 내에서 배타적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베스트팔렌 질서가 변형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둘째, 더 이상 유효한 정치권력의 중심이 각국 정부라 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유효한 권력이 일국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다양한 세력들과 주체들에 의해 공유·교환되고 있다. 삶의 기회와 그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세력과 과정들은 오늘날 개별 국민국가의 범위 바깥에 존재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일국적·국제적 정치제도는 관할상의 결함, 참여상의 결함, 인센티브상의 결함과 같은 정치적 결함을 보이고 있다. 넷째, 이러한 정치적 결함에 덧붙여 20대 80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도덕적 결함을 노정한다. 다섯째, 일국 내 통신·경제 체제에서 지역적·지구적 차원의 복잡하고 다양한 연계로의 이동이 일어났다.⁹⁾

9) 데이비드 웰드 외 지음, 조효제 역, 『전지구적 변환』,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706-9.

이와 같은 지구화로 인한 역동적이고 다양하며 복잡해진 사회관계를 전통적 의미의 정부 혹은 정치 중심의 통치행위나 규제로는 사회관계를 조정, 조절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를 노정하자 새로운 사회운영체계의 대안으로 거버넌스(governance)가 제시되었다. 거버넌스는 정치적 권위의 소재가 정부만이 아니라 비공식적, 비정부적 기구를 포함하는 수평적 다두체제에 있음을 의미하는 사회주도적인 통치체계를 말한다. 그리하여 한 국가내의 거버넌스는 이제 국가가 정부나 정치적 기구에 의한 통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다원화된 주체에 의해 주도됨을 가리킨다. 이 같은 거버넌스가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을 일컬어 글로벌 거버넌스라 정의한다. 즉 글로벌 거버넌스는 지구촌의 공동 관심사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초월하여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UN, 국제기구들, 다국적 기업, 그리고 국제 NGO들과 같은 새로운 초국가적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관리체제를 말한다.

한 국가내의 거버넌스나 글로벌 거버넌스는 중앙집권적 권위를 상정하지 않으며 국내적 사안이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실천과 목표를 추구하는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 협력이 강조된다. 이처럼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는 이미 민주적 거버넌스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원래의 의미대로 거버넌스의 작동은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일국 차원에서 행해져 온 민주주의가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확장되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가?

위에서 보았듯이 민주주의는 영토적 경계에 의한 국민국가를 전제로 발전해온 정치 이념이다. 필자는 지구화와 민주주의의 긴장관계에 관한 문제를 먼저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가 주권 사이의 긴장관계로 치환해서 풀어보고자 한다. 기존 민주주의의 이론적 틀 내에서 민주주의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자율적 주권을 침범하지 않음을 상정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국가 주권의 영역에서 인민의 본질, 시민권, 자치, 동의, 대표, 인민주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런 점에서 일국의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는 다층적 권위구조를 상정하는 지구화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적어도 이론적 차원에서는 기존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공간을 갖고 있다. 이제 문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주권국가의 근간이던 영토적 경계에 따른 민주주의를 고수하느냐(도전인가?), 유기적으로 지구적 공간을 구성하는 네트워크화된 지구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하고

주권의 소재를 넓히느냐(기회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구화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이 두 방향, 즉 지구화로 인한 민주주의의 도전과 기회의 두 축으로 정리하면서 민주주의 미래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2000년 5월 UN이 주최하는 NGO들의 포럼인 밀레니엄 포럼에서 채택된 <밀레니엄 포럼 선언>에서는 경제적 세계화가 초래하는 위기와 폐해를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조정, 관리하고 결정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선언처럼 공식적인 모양새는 아니지만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의 반세계화 시위대를 발단으로 2004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의 IMF, World Bank 반대시위에 이르는 반세계화 운동들은 이제 지구촌의 문제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의 관심사이며 이에 따른 공동적 문제 해결이 적극적으로 요청됨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촌의 구성원이 연루되어 있는 지구적 문제가 G8과 주요 국제기구들이 주도권을 갖는 비민주적 공간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반세계화 운동의 핵심적 관건은 경제적 세계화에 있지만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모색은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문화,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인권, 환경, 젠더 등의 문제가 단지 주권국가 차원에서 제기 되고 해결책이 모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슈들이 지구적 규범으로 설정되며, 세계의 빈곤과 발전을 위한 해법도 서구적 근대화나 시장경제의 표준에 맞추는 개발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모습을 한 지구화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분명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지구화가 결과하는 커다란 결실이다. 그러나 지구화에 따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로의 전이는 기존의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앞에서 설명되었듯이, 민주주의는 주권국가의 제한된 영토 내에서 권력의 책임 소재를 한정하는 원리에 근거한다. 이는 국가주권이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음을 뜻하는 바, 영토적, 정치적 경계가 점차 침투될 수 있음은 민주주의의 핵심원리가 불확실해짐을 시사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을 연계시킴으로써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세계적 범위의 사회관계를 지칭하는 지구화¹⁰⁾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한 다중적 권위의 획득을 위한 것이 아니

10) A.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Polity Press, 1990.

라 오히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게 작동할 수 있다.¹¹⁾ 환언하면 점차 상호 연계를 갖는 세계체제 속에서 정치권력의 소재는 국가 내의 공동체와 선거구가 아니라 다른 국가의 정부나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과 국제적 비정부기구 등이라는 것이다. 지구화 시대 영토국가의 의제 설정, 정책 결정과 수행의 몫은 해당 국가에게 있지 않고 국가 영역 밖에 있다. 인권, 환경, 젠더, 빈곤 등의 주요한 글로벌 이슈들을 앞에 두고 누가 의제의 주도권을 갖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다루는가와 어떻게 다루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며 이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지구화의 결과로서 권력 소재의 공간과 영토국가내의 민주적 책임성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을 때 오는 파장은 주체의 위기와 함께 책임성의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위기를 좀 더 검토하도록 하자.

지난 20세기는 민주주의의 구체적 형태로 대의민주주의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대규모의 영토국가 내에서 실현가능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들이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표출된 시민들의 의사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였다. 지구화는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틀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¹²⁾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많은 글로벌 행위자들의 등장한 국가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충족시키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을 점차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면 지구적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각국의 정부나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과 국제적 비정부기구의 역량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국가 내에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다할지라도 초국가적 문제에서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는 때로는 국가에 가할 수 있는 제한의 한계가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초국가적 문제가 본질적으로 국가 내의 시민들의 결정과는 벗어나 있는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구화에 따른 상호의존 증대로 인한 다자적 결정이 그 의미에 있어 아무리 고귀할지라도 그것이 영토적 경계 내의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기왕의 민주주의 틀에 따라 볼 때 민주적이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구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로 인한 권력 행사의 변화가 배타적인 영토내의 민주적 책임소재에 변화를 일으켜 국가주권과 국가 자치에 제한을 가한다. 이는 자치적(self-governing)이고 자율적인 기존의 국가 이념을 쇠퇴시키며 민주주의 주체의 위기를 가져온다.

11)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38-9.

12)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서울: 나남, 2003, 82.

주체의 위기는 나아가 책임성의 위기로 이어진다. 국가 내의 정치인과 정부는 선거에 의해 시민들의 심판을 받으나, 점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행위자들에 대한 책임 강제 제도는 없다. 주권국가의 구성원이 글로벌 행위자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한 바 없으며 따라서 그들도 책임성의 구속력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내의 주요 행위자들이 추진하는 의제들이 지구적 규범을 설정하고 지구적 복지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그리하여 그들이 민주적 책임성에 구속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책임성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수용이 자동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를 가져온 것은 아닐지라도, 민주주의에 관한 최소 강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부형태로 인정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로버트 달(Robert Dahl)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첫째, 효과적인 시민권이 대다수의 성인들에게 확대되어 있으며, 둘째, 시민권의 행사가 정부의 최고 엘리트들에 반대할 수 있고, 셋째, 필요하다면 투표에 의해 그들을 축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할 것을 제시하였다.¹³⁾ 이러한 기준은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되는데 이 조건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정치체제는 다름 아닌 대의민주주의정치체제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요체가 민주적 책임성에 있다 할 때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제도적으로 민주적 책임성에 구속되기 어렵다. 대신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체들은 책임에는 민감하지 않은 채 다양한 정당화 논리로서 강한 자들의 정치적 일방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선취하거나 또는 지구적 규범의 명분아래 문명표준을 설정하는 등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질 위험이 있다.¹⁴⁾

지구화 시대 민주주의 전망을 가장 옥죄고 있는 또 하나의 아킬레스 건은 경제적 세계화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권국가에서 시장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심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 수준의 상보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즉 사유재산과 시장 경쟁에 근거한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13) Robert Dahl,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C. T.: Yale University Press, 1989, 221.

14) 그 실례로 농산물 수입 문제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시되는 젠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에 대한 시민 사회의 자율성과 다원성을 확보하고 권력 중심의 다양성을 용인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친화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세계화는 이 같은 시장과 민주주의의 친화성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활동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제적 세계화 현상의 기저에는 초국적 자본을 따르고 시장 논리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IMF 등 국제 경제기구들이 주도해 온 경제적 세계화가 국제적으로는 남북문제, 국내적으로는 빈부의 격차만을 증대해왔다는 비판¹⁵⁾과 글로벌 자본과 국제금융기구가 선호하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신생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사회통합의 틀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¹⁶⁾들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생산과 투자결정을 내리는 초국적 기업, 주식중개인과 같은 경제적 글로벌 행위자들은 국가주권과 인민주권의 공간을 침략하고 주권의 통제공간을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는 주장¹⁷⁾이 그리 극단적인 평가만으로 들리지 않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국가와 시민에 대한 책임 구속력을 결여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덧붙여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들의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도 지구화 시대 민주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다. UN 안보리 5개국 거부권, 출연금 할당에 기초한 투표권 제도를 시행하는 IMF와 세계은행 등이 제기하는 의제가 국가적, 지구시민적 합의를 거친 검증된 이슈일 수 없으며 그들의 정책 결정 또한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¹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진정 다층적 권위에 의해 지탱되지 않고 특정 거버넌스에 의해 주도될 때 이는 거버넌스 본연의 의미를 상실한다.

과연 영토적, 정치적 경계의 해체로 인해 자치, 인민, 동의, 대표와 인민주권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원리가 흔들리며, 국가 주권의 쇠퇴와 함께 민주주의는 주체의 위기와 책임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뒷걸음질 하고 있는가?

15)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64-66.

16)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81.

17) R. Axtman, *Liberal Democracy into the Twenty First Century: Globalization, Integration and the Nation State*, Manchester: Manchester Press, 1997, 131.

18)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39.

IV. 위기를 기회로: 지구민주주의를 위한 행보

일국적 차원의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 글로벌 거버넌스의 비민주적 구조 등의 문제는 지구촌 민주주의의 전망에 적색신호를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지구화가 분출했던 새로운 정치적 힘과 에너지를 목도했다. 그린피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등의 국제적 비정부기구와 초국가적 시민연대의 발전을 통해 국가를 넘어서거나 국가 내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조직, 정치적 결속력을 진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작금의 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수 정책결정권자의 몫이었던 사안들이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의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이나 폐쇄적인 정책 결정을 지양하고자 실제로 WTO, IMF 등의 주요 경제기구들이 NGO들의 참여를 이끌며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구로 발전하고자 하는 모습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통치 과정 자체가 국민국가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민주주의 도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지구시민사회에 관한 증대되는 관심과 지구시민사회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정치적 공간의 경계를 재정 의하며 지금까지 행해져 온 민주주의 정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에서 이러한 노력을 읽을 수 있다. 지구화 시대, 영토적 경계에 기초한 주권국가에 준거하는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은 국가 중심의 정치가 갖는 한계를 직시하며 정치 공동체의 성격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재성찰 해보는 시도를 통해 모색될 수 있다. 베스트팔렌 질서가 중세 정치적 지형의 축을 깨는 전환을 보였듯이, 이제 베스트팔렌 질서 원리를 재고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비정부기구와 초국가적 운동에서 보여졌던 행동과 국가를 넘어서는 공적 책임감은 오히려 국가 내에서만 발휘되었던 책임감의 공공성을 외연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전이 민주적 정치 공간의 경계를 재정 의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과 그 개념을 구현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가 지구적 시장에 대해 제한된 통제력을 가지며, 통화나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적 기업들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구화와 함께 진행되는 민주주의가 국가차원으로 제한된다면 의미있는

형태로 살아남을 수 없다.¹⁹⁾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고 인류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도록 하는 지구시민사회 개념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다. 즉 민주주의가 지구적 차원에서 성립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는 지구시민사회와 지구민주주의의 창출이다. 특정 국민국가의 시민을 지구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시민사회에 대한 귀속감을 갖게 하는 지구적 규범이 필요하다. 지구시민사회의 정당성은 지구민주주의에서 찾아져야 한다. 여기서 요청되는 바는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차원에서조차 민주주의에 대한 좁은 관점을 벗어나는 시각이다. 즉 보통선거권, 주기적인 선거, 정당간의 경쟁을 통한 정부 구성 등 민주적 경쟁 규칙을 확립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넘어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 역사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아 온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적 지지가 민주주의 이념을 지구 민주주의로 그 외연의 폭을 확장하는데 어느 이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구시민사회의 규범으로 삼고자 하는 지구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일국민주주의와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적, 지구적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의 주요문제들에 관한 전통적인 국가적 해결방안의 대안이 국가의 완전한 부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베스트팔렌 조약이후 자리잡아온 국가차원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루려는 지구민주주의는 현실적 기반을 상실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민주적 국가들과 기구들의 연합을 토대로 하는 지구민주주의를 주창해 온 헬드의 견해는 인용될 만하다. 헬드는 “민주주의는 국민국가의 영토적 범위의 한 요소이면서 이를 초월하는 기구들을 통해서만.....완전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범세계주의적 민주주의 모델 (cosmopolitan model of democracy)’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범세계주의적 민주주의 모델’은 지역적, 국제적 기구들과 모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로부터’ 민주주의를 정교화하고 보강함으로써 여러 공동체들과 시민 결사체들 ‘내부’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헬드는 이 같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추진력을 자연자원과 환경보호, 인류의 공동 유산, 지구적 공유지의 보호, 인권 옹호와 탈세력화와 관련된 국가들과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적 권리와 의무의 정교화, UN과 그 산하기구에서 지역적 정치 네트워크와 조직에 이르기까지 초국가적 세

19)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644.

력과 문제를 조정하는 국제기구들의 출현과 증대 그리고 뚜렷한 지역적이고 지구적 목적을 가진 초국가적인 풀뿌리 운동의 발전과 같은 다양한 과정과 세력 속에서 찾고 있다. 헬드는 이러한 과정과 세력들이 보다 체계적인 민주주의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믿는다.²⁰⁾

지구민주주의의 미래는 단일 공동체 내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들 간의 민주적 관계가 깊이 상호연관 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민주주의가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과 밖의 민주적 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조직과 법적인 메카니즘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이해 속에서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지구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담론 형성을 주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V. 결 어

그러한 담론은 이미 조영식 박사의 지구공동사회와 보편적 민주주의 논의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배타적 국경과 국적을 뛰어 넘어 더불어 사는 인류가족으로서 초국가적(trans-national), 교차문화적(cross-cultural), 탈국경(borderless) 사회에 살고 있는”²¹⁾ 오늘날, 지구공동사회 실현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업의 하나로써 보편민주주의의 의미는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된다. 지구화와 민주주의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보편적 민주주의의 위상을 되짚어보고 인류의 평화와 공영을 보장하는 지구공동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사전적 준비작업으로서 앞으로 보편민주주의의 담론이 안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것으로 이 글을 매듭짓고자 한다.

자국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동시에 국가간의 동권과 공영을 보장하는 보편민주주의는 아직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보편적 민주주의가 배타적 국가주의를 넘어서 지역 협력적 국제주의, 나아가 초국가적 공동체의 영역을 외연화시키는 초국가적 민주주의의 형태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일국민주주의를 넘어서 지구적 민주주의를 전망하는 보편적 민주주의는 인류 사회를 규제하고자 하는 규범적 질서라는 점에서 일견 지구시민사회의 지구민주주의와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영미학

20) D. Held, *Democracy and the Global Order*, Cambridge: Polity, 2004, 231-8.

21) 조영식, 2002년 제 21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 학술 세미나 기조연설.

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구민주주의가 일국 차원의 자유민주주의의 지구적 외연화라는 한정적 성격을 노정하는 반면, 보편 민주주의는 영토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와 사회민주주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 같은 우월적 차별성을 갖는 보편 민주주의의 실제적 구현을 위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논의들이 요구된다. 지구민주주의 담론이 국가를 통해 문제 해결의 해법을 찾으려는 전통적 방법의 한계를 극명하게 알면서도 국가 내의 민주적 통치체제와 지구적 통치체제의 중단없는 소통을 주장하고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하여 보편적 민주주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국가적 민주주의의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말해 초국가적 민주주의 속의 국가의 위상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는 국가를 전제하는 것인지 배제하는 것인지, 나아가 보편민주주의의 규범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의 정치(精緻)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이제 보편민주주의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업을 다시 한 번 다져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 강정인,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 데이비드 헬드 외 지음, 조효제 역, 『전지구적 변환』,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 서창록, 『국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서울: 다산출판사, 2004.
- 에릭 홉스봄,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8.
-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서울: 나남, 2003
-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3.
- 헬무트 안하이어, 말리스 글라시우스, 메어리 칼도어 공저, 조효제, 진영종 옮김, 『지구시민사회』, 서울: 아르케, 2002.
- A. McGrew, *The Transformation of Democracy?*, Cambridge: Polity, 2000.
- Barry Holden ed. *Global Democracy: Key Debates*, London: Routledge, 2000.
- David Beetham(1992), “Liberal Democracy and the Limits of Democratization,” *Political Studies*, XL, Special Issues, 40.
- D. Held & A. McGrew, “Globalization and the Liberal Democratic State”, *Government and Opposition*, 28:2, 261-88.
- D. Held & A. McGrew ed. *The Global Transformations Reader*, Cambridge: Polity, 2004.
- D. Held, *Democracy and the Global Order*, Cambridge: Polity, 2004.
-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16(1989, Summer), 3-17.
- Holsti, K. J. *Peace and War; Armed Conflicts and International Order 1648-198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R. Axtman, *Liberal Democracy into the Twenty First Century: Globalization, Integration and the Nation State*, Manchester: Manchester Press, 1997.

공공의 적은 바로 “그들”인가?:

반미 논쟁을 통해 본 기계적 자유주의와 감상적 집단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비판

임 성 호*

1. 문제제기: 동네북으로서의 “그들”

공공의 적은 도처에 존재한다.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사회 담론 속에 등장한다.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개념을 우리의 인식과 대화 속에 별 주저 없이 떠올린다. 모든 사회적 개념이 그렇듯이 공공의 적도 인식과 담론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일 듯싶다. 그럼에도 우리는 “공공”이란 사회전체 관점의 수식어를 서슴없이 붙이고, “적”이란 확정적, 절대주의적 표현을 쉽게 쓴다.

영화 <공공의 적>에서 주인공 형사(설경구)는 범법행위까지 일삼는 평범한, 아니 평균 한참 아래의 도덕의식을 지닌 사람이다. 그런 그가 공공의 적을 상정해 쫓는다. 자신의 손에 배설물을 묻게 하고 칼까지 맞게 한 정체불명의 범인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이 그 범인을 미친 듯이 쫓는 동기를 제공했다. 애당초 그 형사를 이끈 것은 사회정의나 공공선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인감정은 곧 사회정의로 인식상 변화를 겪는다. 형사는 이제 자기가 공공의 적을 응징하는 사도라고 여긴다. 개인감정이 이러한 사회정의에 입각한 신념(착각)으로 바뀐 덕택에 그 형사는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실제 범인이지만)을 가혹하게 다루며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연구소 소장

영화에서처럼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감정을 사회적 분노로 곧잘 전환시켜 공공의 적을 만든다. 많은 경우, 공공의 적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세계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공공의 적을 상정하면 그에 걸맞게 어떤 심한 비판과 심지어 물리적 위해를 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다. 공공의 적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선악대결의 상대, 즉 정의의 파괴자이므로 동정이나 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해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다.

위의 영화와 현실의 차이는,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어느 한 명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추상체로서의 특정 집단을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어느 시대와 어느 사회인가에 따라, 예를 들어 이교도들, 유대인 집단, 공산당, 자본가 집단, 친일파, 악의 축 국가들, 악의 제국인 소련, 또 다른 악의 제국인 미국, 테러리스트 조직 등이 공공의 적 반열에 오른다. 이들 집단은 사회적 분노의 대상으로서, 이들에게 가해지는 인식적, 언어적, 물질적, 물리적 해(害)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된다.

공공의 적인 집단은 타자로서의 “그들”이다. “그들”은 “우리”와 구별되는 외부 집단이다. “그들”은 집합체로서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특정 문제에만 연관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각종 억울함, 좌절감, 불안감, 때론 시기심을 토해낼 악의 근원이 된다. 모든 문제를 그들 탓으로 돌리는 환원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들”은 우리의 동네북인 것이다. 물론 “그들”이 정말로 여러 문제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추상적, 집합적 타자라는 점에서 “그들”은 모든 악의 총체적 근원으로 과장되게 인식되고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공공의 적이 “그”일 때보다 “그들”일 때, 우리의 적대감은 더 커지고 온갖 사회문제와 관련해 손가락을 그 쪽으로 겨냥하기 편해진다.

동네북의 현실적 필요성을 부인할 순 없다. 심리적 진정제, 사회 불만과 갈등의 흡수제, 사회 연대감의 촉진제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당위적으로는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외부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적대시하고 동네북처럼 모든 문제를 그 탓으로 돌릴 때, “우리”와 “그들” 사이의 흑백논리를 극복하고 호혜, 조화, 중용의 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과연 인류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과 세계시민으로서의 덕성을 함양할 수 있을까? 사회경계 바깥에 대한 배타성을 극복해 보편적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추구할 수 있을까? 인간 하나하나의 존엄성을 공공의 적이라는 추상적 집합체 밑으로 쓸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어떤 문제와 관련해 자기성찰과 자기반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 물

론 어떤 대의(大義)를 위해 원칙상 혹은 전략상 때론 적을 상정할 필요도 있으나, 지나친 환원주의적 적대감은 당위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특정 외부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상정하게 될까? 가장 일반적인 답은 인간의 심리에서 찾을 수 있다.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정의감이든 자기욕심이든, 가학적 욕구든 자기보호 본능이든 심리상태가 공공의 적을 낳는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설명은 마치 A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사망했는가의 질문에 인간은 죽기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허하다. 심리적 차원의 원인은 통제되기 힘들므로 높은 적실성을 지닐 수 없다. 또한, 적대감이 라는 감정을 또 다른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할 경우 방법론상 동어반복(tautology)이나 내인성(endogeneity)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심리보다는 구체적인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 개별 사례의 고유한 맥락을 살펴보면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해 특정 외부집단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정치, 안보 제(諸)차원에서 단기 상황적 그리고 장기 역사적 원인을 이루 세기 힘들 정도로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런 구체적 설명은 적실성을 지닐 수 있고 방법론상 근본적 한계를 내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개별 사례가 다 다를 것이므로 일반화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은 너무 일반적이지도 너무 개별적이지도 않은 데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즉, 사람들의 인식체계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상적, 이념적 시각에 주목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공공의 적을 떠올리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사실, 우리의 인식이 어떤 사상체계로부터 영향 받는다는 점은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자유주의니 맑시즘이니 사상적 조류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개인적 감정이나 인식이 사회적 분노로 이어질 때는 사회담론이 형성되기 마련인데, 이 담론은 사상적, 이념적 틀에 의해 규정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담론을 이끄는 여론주도층(원칙을 순수하게 강조하는 학자들 정파적 선전에 골몰하는 정치인이든 간에)은 체계적 사고 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어떤 생각이 사회적으로 과급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사상의 힘을 빌리는 것이 유리하다. 더욱이 어떤 외부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사회정의의 관점에 설 때 극대화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상적 길잡이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동네북인 공공의 적이 어느 사회에 등장하는 데는 사상적 영향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나

마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공의 적이 등장하는 수많은 사례 중 반미 논쟁이 오늘날 세간의 관심을 끈다. 미국에 대한 반감이 세계 곳곳에서 퍼지고 있다. 반미주의자의 눈에 미국은 자기중심적 도덕관에 입각해 일방적 행동을 일삼는 패권주의 국가이고 공공의 적이다. 미국이라는 추상적 집합체로 인해 경제침체, 사회불안, 정치격변, 인권탄압, 문화종속, 환경파괴, 심지어 생존의 위기까지 초래되고 있다. 미국은 온갖 국내외 문제의 근원이므로 배격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반감은 쌍방적이다. 미국에서도 타국,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애국주의가 심화되고 일방주의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다. 미국옹호론자가 볼 때, 미국에 반대하는 외부세력은 세계의 동반 성장을 반대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지역적 패권을 쥐려는 사악한 반문명론자이다. 미국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반미 논쟁에서 양측은 이처럼 서로를 동네북으로 만들어 탓하기(blaming game)에 몰두하고 있다. 양측 사이에는 일방적 주장만 맴돌고 공감대의 형성이 요원해 보인다. 접점을 찾기 어려운 한 이유로 인식 속에 내재한 모순, 비밀관성, 반대감정 병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친미든 반미든 인식이 복잡할수록 접점에 쉽게 닿기 힘들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로, 양측의 인식이 사상적, 이념적 틀로 인해 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각기 나름대로 숭고한 사상적 관점에서 상대를 의롭지 않은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관용, 중용, 조화, 공존이 존중되기 힘들다.

이 글은 현대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온 몇몇 사상을 살펴보며 이 사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의 적을 상정하게 하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지, 반미 논쟁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공공의 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어떠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지 논한다. 이하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여러 사상적 시각에 안티이즘의 싹이 들어있고 이 싹은 정도 차는 있지만 쉽게 발아한다. 둘째, 여러 사상적 시각의 안티이즘은 반미 논쟁에도 투영되어 양쪽을 공히 환원주의적 적대감에 빠지게 한다. 셋째, 공동체주의, 특히 토의(deliberation)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가 안티이즘을 극복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II. 기존 여러 사상의 안티이즘(antiism)

적을 상정해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명제로서 내 존재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을 안티이즘(antiism)이라 한다. 기존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역사적 동기로부터 출발한 사상에는 이러한 안티이즘이 강하게 깃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맑시즘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는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도로 성숙한, 그래서 내적 모순이 터질 지경에 이른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반명제로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고전적 맑시즘의 유물사관에는 안티이즘이 분명히 드러난다. 레닌류(流)의 공산주의든, 보다 온건한 사회주의든, 고전적 맑시즘에 뿌리를 두고 20세기를 풍미한 반자본주의 시각들도 마찬가지이다. 신제국주의 이론, 종속 이론, 세계체제 이론 등에도 맑시즘의 안티이즘은 계승된다.

다양한 갈래의 맑시즘에 등장하는 공공의 적은 추상적, 집합적 개념이다. 인간은 계급의식에 따라 행동한다는 집단주의적 가정이 깔려있으므로, 공공의 적은 어느 개인이기보다는 자본가 계급 또는 자본주의 체제 또는 자본주의를 영속화하려는 미국이라는 거시적 실체로 귀착된다. 이 적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제공하는 구조 속에서는 바람직한 사회개혁과 정의는 불가능하다. 이 적의 타도에 최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맑시즘에서처럼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민족주의 역시 역사적으로 안티이즘에 기반을 두어왔다. 민족국가는 주변 패권국들, 지방 토호세력, 초국가적 외부세력 등 일련의 적에 대한 대항 속에서 발전해왔으므로 이는 당연하다 하겠다. 통일, 독립, 주체, 국익 등 민족주의의 핵심 개념에는 가상의 적이든 현시된 적이든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겠다는 의식이 담겨있다. 다양한 유형의 민족주의 이론이 있지만, 국가의 존재가치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 있다는 칼 슈미트 이론에 안티이즘이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Schmitt 1976). 민족주의 시각에서는 분석단위가 민족이므로 공공의 적인 “그들”도 타 민족이나 국가 등 거시적, 집단적 성격을 띠게 된다.

피해의식의 반영으로서 외국(들)으로부터 생존을 지키자는 소극적 민족주의에 안티이즘이 깔려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보다는 덜할지 몰라도, 민족 자긍심의 반영으로 패권적 야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적극적 민족주의에도 공공의 적은 상정되게 마련이다. 자기 민족의 팽창과 번영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의 패권국 또는 주변 강대국에 대한 반감이 필연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소극적이든 적극적

이든 주권국가 중심의 민족주의는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와 동일시되며 모든 국가가 서로에게 현시적 또는 잠재적 적이라는 냉혹한 가정이 “현실”로 인식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현대사회에 여러 면에서 중대한 족적을 남겨온 맑시즘과 민족주의는 매우 상이한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주의적 인식론에 입각해 있다는 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계급이든 민족이든 집단의 의식을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므로 개인적 합리성보다는 집단적 사고가 핵심이라 하겠다. 개인 하나하나의 고유성과 우선성은 집단이라는 추상체 속으로 휩쓸려지고, 개인은 명확히 알 수 없는 어렴풋한 집단의식(달리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분위기)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맑시즘과 민족주의는 공히 감상성(sentimentality)을 띤다고 말할 수 있다.

왜 집단주의가 외부세력에 대한 안티이즘을 특히 강하게 갖는지의 의문은 바로 이 감상성이란 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내 스스로의 생각을 내 판단으로 세우기보다는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집합적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아 집단의식에 따라 행동할 경우, 이질적인 외부세력에 대한 강경한 배타심을 갖게 되기 쉽다(Sunstein 2002). 그 이유는 첫째, 원래부터 자기가 갖고 있던 배타적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 생각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둘째,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집단관계에서 중심에 위치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맑시즘과 민족주의로 대표되는 감상적 집단주의 사상이 공공의 적에 대한 적개심을 특히 강하게 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감상적 집단주의 사고를 벗어나도 곧 안티이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사안의 심각함이 있다. 개인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시각도 정도는 좀 약할지라도 동네북으로서의 공공의 적을 상정하는 안티이즘을 배태하고 있다. 집단주의가 감상적 성격 때문에 특정 외부세력에 대한 적개심을 과도히 불러일으키는 데에 비해, 자유주의는 너무 기계적으로 사회질서의 정답을 규정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 정답에 맞지 않는 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기 쉽다. 자유주의의 여러 지류는 상호간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규정된 정답(그것을 천부인권, 공공선, 정의 그 무엇으로 부르든 간에)을 시공적, 상황적 맥락에 상관없이 기계론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런 기계론적 획일성 속에 나와 다른(혹은 다르다고 인식되는) 타자에 대한 안티이즘의 싹이 들어있다.

우선 계약론적 자유주의를 생각해보자. 중세봉건 질서에 대한 반명제로 등장한 혁명적 이념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안티이즘을 내포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계약론적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인 주권재민, 자치, 동의, 민의 반영성, 책임성 등이 분명한 주권국가의 경계를 전제로 하므로 경계 바깥의 외부세력에 대한 안티이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원리상 이유들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계약론적 자유주의의 기계론적 세계관, 즉 개별 사회적 맥락의 고유성을 중시하지 않고 개인의 우선성, 자유, 법 앞의 평등, 그리고 주권재민 등 상기 원리들을 보편적 기준으로 절대시하는 시각이 이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에 대한 안티이즘을 복돋는 결과를 가져온다.

계약론적 자유주의는 사회를 인간들 간의 계약을 통해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작품으로 이해한다(Wager 1973, 248). 예를 들어, 계약론적 자유주의의 지적 단초를 연 홉스는 『리바이어던』의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치공동체, 즉 국가는 ... 바로 하나의 인공적 인간과도 같은 ‘리바이어던’이다. 이 리바이어던은 자연인보다 그 모습이나 힘이 더 크면서 자연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이 정치공동체를 만드는 [인간 간의] 합의나 동의는 우주를 창조할 때 신이 말씀하신 “이제 사람을 창조하자”라는 명령과 같다고 하겠다”(재인용: 채효정 2000, 7).

우리가 만약 사회를 유기체로 본다면 그 사회만의 역사경험, 문화, 정치경제적 조건, 국제환경이 지닌 고유성을 중시할 것이다. 반면 계약론적 자유주의처럼 사회를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각 인간이 처한 시공적 맥락성에 핵심적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받아들이는 원리, 가치, 기준을 남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받아들여야 한다는 확일적, 기계적 사고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여기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타자로서의 “그들”을 적대시하게 하는 안티이즘의 씨앗을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의 한 갈래로서 공리론적 자유주의는 계약론적 자유주의에 비해서는 사회적 맥락을 좀더 감안하는 것 같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절대 기준을 찾기보다는 각 사회의 최대 효용을 찾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 개인은 자기의 선호를 자유로운 입장에서 밝히고 그러한 개인적 효용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효용을 낼 수 있도록 집성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안티이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전체를 위한 공익이라는 이름 하에 사회적 소수세력이나 외부세력이 억압되고 혐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제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개인적 선호들을 최적으로 집성하는 사회적 균형점(optimal point, 즉 공공선)에 달할 수 있을지 그 현실성은 차치하더라도(Arrow 1951), 공공선에 집착할 경우 공공선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내부 구성원들이나 우리사회의 공공선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부세력을 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

칸트적 자유주의는 국가경계를 극복하는 보편성, 세계성을 지닌 사상으로 칭송되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강한 안티이즘을 낳을 수 있다. 칸트적 자유주의는 사회 전체의 복지에 최우선가치를 두는 공리론과는 달리, 모든 개인의 근본적 존엄성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이 개인의 근본적 존엄성은 자기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독립성이라고 규정되는 정의(正義)에 입각한 권리로서 사회차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 즉, 모든 공동체와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원리이다. 개별 공동체나 문화에서 공동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보편적 개인 권리보다 우선일 수 없다. 롤스는 이 절대적 권리로부터 정의 개념을 찾는 사상적 흐름의 현대적 결정판을 보여준다(Rawls 1971).

문제는 정의 개념을 상징하는 한 공공의 적 개념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데에 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절대적이라면 이 권리들이 상호 충돌할 경우엔 어떻게 하나?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에 위치한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마련이고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배척하기 쉽다. 벌린이 말했듯이, “인간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양하고 그 목표들이 항상 상호 부합하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갈등과 비극의 가능성은 인간의 사적 및 공적 생활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Berlin 1984, 31).

더욱이 오늘날 세계화와 탈산업화로 인해 사회의 복잡화와 사회이익의 파편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국가경계 내에서도 사람들의 가치와 목표가 극도로 다양해지고 있다. 하물며 국가경계를 가로지를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해선 일반론 차원에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구체적 사안들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권리의 내용을 통일되게 정립하기 어렵다. 자기 기준만을 절대적으로 고집하다가 자칫 반대 측에 대한 지나친 안티이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보편적, 절대적 정의관에 입각한 칸트적 자유주의가 좀더 안티이즘을 띠게 하는 것은 ‘소극적 자유’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 자유’를 성취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예를 들어, 그린(Thomas Hill Green)은 행하거나 향유할 가치가 있는 것을 자기 의지대로 행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적극적 힘이나 능력을 ‘적극적 자유’로 높이 평가한다. 그는 “진정한 자유를 적극적 자유와 등치시켰다. 자유를 단순히 제한의 부재로 이해한다는 것은, 빈부의 격차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진정한 자유는 공동선과의 조화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소명을 추구할 권리나 힘이어서 한다는 것이다”(송병현 외 2004, 48-49에서 재인용). 이러한 ‘적극적 자유’를 향한 갈망은 그 자체로는 지당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개인들의 적극적 자유끼리 충돌하고 그 결과 상대방을 공공의 적으로 과도히 적대시하게 될 여지가 크게 존재한다.

내가 원하는 어떤 바도 이루고자 추구하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보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가 보다 인간적인 이상이라고 설파한 벌린(Isaiah Berlin)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에 의하면, 적극적 자유 개념에 입각한 정의관을 따를 경우 자기중심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적극적 자유는 유아 시기나 원시 시대어나 가능할 뿐이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현대 사회에서는 내 자유와 권리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안티이즘으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내 관점에서 규정한 정의를 최상의 덕으로 보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할 때 타자에 대한 자비(benevolence)나 사랑은 정의의 보편적 틀에 종속되는 부차적 덕으로 밀릴 수 있다(Sandel 1982). 우리가 인간 존재의 공동성(commonality)을 인정한다면 자기중심적 신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남에 대한 자비, 사랑, 관용을 핵심적 덕으로 추구해야 한다. 자비, 사랑, 관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해도 적어도 타인에 대한 관심, 걱정, 배려는 필요하다. 그것마저 방지하고 나만의 정의관을 외쳐댈 경우 공공의 적에 대한 적개심이 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 남에 대한 동정(compassion) 없이 자기중심적 정의관을 획일적으로 내세울 때 우리는 냉혹한 도덕연자가 되어 안티이즘을 퍼뜨리게 된다.

이상에서 감상적 집단주의와 기계적 자유주의가 공히 안티이즘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물론 양 시각이 적어도 수사적 차원에서는 안티이즘이란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상 논의는 결국 안티이즘으로 귀결되기 쉽다. 건전한 비판과 과도한 안티이즘의 차이

는 애매할 수밖에 없지만, 상기한 사상적 관점들이 역사적으로 공공의 적을 상정하는 데에 일정 정도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외부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떠올리느냐 그 여부와 함께, 어떤 집단을 안티이즘의 대상으로 적대시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사상적 시각에서 약자(弱者)를 대상으로 한 안티이즘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의(定義)상 약자란 내가 생각하는 정의관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없고 내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약자를 공공의 적으로 상정할 당위적 이유는 물론 현실적 이유도 없다.

여러 사상적 관점에서 안티이즘의 대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강자(强者)이다. 맑시즘 전통에서의 자본가 계급이나 자본주의체제, 민족주의 시각에서의 주변 패권국, 자유주의 전통에서 본 중세봉건 세력, 절대왕정, 독재적 전체주의 세력, 공산당 등은 강자로서의 적이다. 이미 고대 그리스의 도편추방(ostracism)이 예시하듯이, 누가 우수하다는 혹은 강하다는 사실만으로, 즉 우수성 혹은 강함을 위협한 용도로 악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박해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하물며 이미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강자, 더욱이 우리의 희생으로 힘이 커졌다고 생각되는 강자라면 어떤 사상적 관점에서든 공공의 적으로 질시 받기에 충분하다.

강자를 안티이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나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롤스는 자존의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강자에 대해 시기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 용납될 수 있다고 말한다(Rawls 1971, 534-541). 엘스터는 인간 행동의 동력으로 합리성(rationality), 이타심(altruism), 사회규범(social norm) 외에 강자에 대한 시기심(envy)을 지적하며 시기심은 자존을 지키려는 동기로부터 나온다고 했다(Elster 1989, 253).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갈통은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생기는 관계 자체를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며 지식인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강자를 반대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Galtung 1980).

그러나 약자인지 강자인지의 구분은 객관적 현실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주관적 인식세계에 존재할 뿐이라는 데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정의(定義)상 강자란 내가 생각하는 정의(正義)관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내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다. 이것은 인식에 달려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떤 대상도 강자로 인식될 수 있다. 나치 하의 유대인 집단이나 중세유럽의 이교도 집단은 현실조건상 약자였지만 당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인식상 사회의 질서,

정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에서 정의상 강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칫 모든 대상에 대한 안티이즘이 정당화될 수 있다. 미국이라는 현실조건상의 강자뿐 아니라 가난한 제3세계 국가 또는 극소수의 테러집단도 인식상 강자가 될 수 있다. 비록 기존의 사상적 시각들이 강자에만 안티이즘을 겨눈다 해도 모든 집단이나 세력이 공공의 적으로 상정될 수 있고 안티이즘이 난무하게 될 수 있는 현실이라 하겠다.

Ⅲ. 반미주의 논쟁에 나타난 공공의 적 개념

오늘날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미국 옹호론과 반대론이 접점을 찾지 못하며 쌍방간 환원주의적 적대감을 북돋고 있다. 한쪽의 시각에선 미국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공공의 적이고, 반대쪽이 보기엔 오히려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이 가장 사악한 공공의 적이다. 서로 상대방을 온갖 문제의 근원으로 보기 때문에 양보 없는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쌍방적 안티이즘 이면에 수많은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앞 절에서 논한 사상적 영향도 있지 않을까? 각자의 사상적, 이념적 관점에서 상대방을 사회정의의 걸림돌로 보기 때문에 적개심이 증폭되는 것은 아닐까?

우선 미국 측 상황부터 살펴보자. 미국에서 근래 애국주의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미국인들은 타국과 비교해 가장 강한 애국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 Pew Research Center가 2003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나는 매우 애국적이다”라는 진술에 “완전히” 동의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해오고 있고(Pew Center 2003b, 33), 그 진술에 “거의” 동의한다는 비율은 91%에 달하고 있다(Pew Center 2003b, 28). 애국주의 자체야 탓할 수 없지만, 그것이 외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수반하기 쉽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근래 미국에서 애국주의의 증가와 외국에 대한 배타적 태도의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특히 2003년 이라크전의 여파로 반미 여론이 세계 각지에서 퍼짐에 따라 미국인들의 배타적 태도가 그 도를 높였다. 2003년 상반기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24%의 응답자가 외국 물품에 대한 보이콧을 진지하게 고려했고 14%는 실제로 그러한 보이콧에 동참했다고 한다(Pew Center 2003a, 22-23). ‘French fries’를 ‘Freedom fries’로 바꿔 부르자는 캠페인이 공감을 얻고 있는 나라에서

애국주의와 배타주의 간의 구분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미국이 왜 타국, 국제기구, 국제 NGO의 요구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국민적 이해가 따를 리 없다. 물론 애국주의와 배타심의 정도는 정파, 성별, 인종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Pew Center 2003b, 29-36).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경향을 부인할 수 없다.

배타적 애국주의와 함께 종교적 신념의 강화가 오늘날 미국사회의 또 다른 특성이다. 상기한 2003년의 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의하면, 기도가 내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인가의 질문에 전적으로 혹은 상당 부분 동의한다는 답이 81%에 달했다(Pew Center 2003b, 65). 이 비율은 조사가 시작된 198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답은 51%로서 1987년의 41%에 비해 현격히 증가했다. 같은 조사에서 신의 존재를 결코 의심한 적이 없는지 물어보았을 때 87%의 사람이 동의했고 특히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답은 69%로서 1987년의 60%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4년 선거 직후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32%가 스스로를 기독교 복음주의자 또는 근본주의자로 간주했다(NYT/CBS Poll Paper Release 2004/11/18-21, 32). 미국사회의 종교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낙태, 동성결혼, 줄기세포 연구, 진화론 등이 타국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핵심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한 예로, 진화론보다 창조론에 대해 동조하는 미국인이 더 많아, 인간은 신의 섭리와 상관없이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3%, 인간은 신의 섭리 하에 진화했다는 응답은 27%, 인간은 진화하지 않았고 신이 현재 모습의 인간을 창조했다는 응답은 무려 55%에 달했다(NYT/CBS Poll Paper Release 2004/11/18-21, 28).

미국인들의 종교심은 그 자체로 바람직할지 몰라도 미국 대외정책에 도덕주의적, 일방주의적 색채로 투영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이야말로 신의 축복을 받았고 신의 정의를 세계에 퍼뜨려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세계질서를 미국이라는 절대적인 선과 그에 대항하는 악의 대결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연히 타국이나 국제세력에 협조적, 현실적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완고한 독선적인 태도를 갖는다(Morone 2003; Davis and Lynn-Jones 1987; Zakaria 2003). 이미 역사적으로 미국 대외정책은 'City upon the Hill,' 'White Men's Burden,' 'Manifest Destiny' 등 도덕주의적 슬로건에 이끌려왔고 근래에도 'Evil Empire'나 'Axis of Evil' 등의 표현에 배어있는 강한 도덕주의 색채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종교주의의 확산은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하며, 미국인들로 하여금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이 십자군으로서의 도덕적 사명에 있다고 인식

하도록 한다.

미국의 배타적 애국주의와 자기중심적 도덕주의는 ‘미국적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와 맞물려 있다. 미국은 현실이익과 권력이 아닌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적 원칙에 입각한 나라로서 여타 국가들과는 다르다는 이 예외주의는 건국 이래 아직까지도 미국인의 정서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예외주의 사고에 젖은 미국인들이 보기에 미국의 대외정책은 꼭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자유를 실천하는 모범으로 타국에 좋은 예를 제시하고, 자유가 위기에 빠진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유를 수호해주고, 또한 자유가 도입되지 않은 곳에는 직접 자유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미국인들은 세계무대에서의 미국의 행동이 일방주의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타국에 도움이 되는 세계주의적 성격을 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방주의라는 세계로부터의 비판이 미국에서 공감은커녕 이해조차 자아내기 힘들고, 세계가 미국을 시기, 음해한다는 불신감에 따라 미국위주의 관점을 더욱 고수하려는 것이다(Berman 2004).

미국의 애국주의, 도덕주의, 예외주의가 혼합된 소위 ‘미국주의’(Americanism) 이면에는 여러 사상적 뿌리가 있다. 우선 자국중심의 민족주의가 외부세력에 대한 배타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인들의 생존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킨다는 소극적 민족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Roche 1961),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널리 퍼뜨린다는 적극적 민족주의 혹은 제국주의 시각이 작용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Liska 1967). 동시에, 인간의 천부인권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계약론적 자유주의, 또한 사회 전체의 최대 효용보다 모든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서 정의 개념을 찾아야 한다는 칸트적 자유주의도 미국인들의 사고를 이끌어오며 다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우월감과 배타심을 낳았다. 자유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념은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교조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하츠의 관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Hartz 1955).

자기중심적 민족주의와 절대주의적 자유주의가 합쳐지며 미국 반대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네오콘에 와서 가장 극명해졌다. 네오콘의 핵심 주장은 미국은 선택 받은 국가로서 미국의 숭고한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려야 하는데 그것은 미국의 강한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강경한 이상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상주의자가 강경할 때, 즉 자기의 도덕관과 정의관만 옳다고 믿으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따를 것을 고집하고

강제할 때, 적과 친구의 구분이 명확해질 수밖에 없고 적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공공의 적으로 상정된다. 미국의 관점만 중시하는 일방주의 대외정책과 적(특히 테러집단과 그 동조세력)에 대한 선제공격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반미운동이 확산될수록, 다시 말해 공공의 적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에 대한 역작용으로 미국사회에는 애국주의, 도덕주의, 예외주의의 가치관이 강해지고 대외정책상 일방주의 기조에 대한 지지가 올라간다. 집권 2기를 맞은 부시는 2005년 1월 취임연설에서 자유를 49차례 언급하며 미국에 도전을 던지는 공공의 적에 대한 전의를 다졌다(*The Economist* 2005/2/19, 26). 내 생활주변도 언제 뉴욕무역센터처럼 테러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미국의 권위가 감히 외부로부터 도전받고 있다고 자존심 상해하는 미국의 일반인들로서는, 네오콘이든 누구든 멋진 사상적 수사로 공공의 적을 지적할 때 그것에 대한 안티이즘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미 진영도 못지않게 강한 안티이즘을 노정한다.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특히 2003년 이라크전을 계기로 증폭되었다. 정도 차는 있으나 이슬람권, 중남미, 아시아는 물론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전반적으로 대미 인식은 큰 폭으로 추락했다(Pew Center 2003a). 반미주의자는 세계 곳곳에서 고통을 야기하는 빈부격차, 경제침체, 사회불안, 정치격변, 안보불안, 인권침해, 문화종속, 환경 파괴, 상업주의 등 각종 문제를 가져오는 주범으로 미국을 지목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사실, 반미주의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워낙 다양한 양상을 보이므로 그 원인을 일반화해 말하기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빈곤이나 소외감이 미국과 같은 강한 외부세력에 대한 반감을 키운다는 것이 기존 통념이지만, 2002년 Pew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대상국 중 3분의 1 정도에서만 통념이 들어맞았다(Pew Center 2002, 56). 한국의 경우, 반미는 중산계층의 현상이고 서유럽에서는 지식인 현상이다. 세대 요인으로도 설명하기 힘든바, 일반적으로 젊을수록 반미일 것 같지만 동유럽과 남미에서는 반대 양상을 보인다. 그 밖에 모든 측면에서 각국과 미국과의 관계,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경험이 천차만별이므로 구체적, 개별적 요인들로만 반미를 설명하기엔 한계가 크다.

일반적으로 볼 때, 미국에 대한 사회적 분노는 보다 독립적 자세에 대한 희구, 그리고 내 것에 대한 자존심에서 공약수를 찾을 수 있다. 자립과 자존은 강자에 대해 약자가 내세울 수 있는 원리이다. 그리고 자립과 자존은 개인이익 차원보

다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말할 때 보다 큰 공명을 넓게 자아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반미의 다양한 주장은 민족의 독립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자본으로부터의 평등적 자존을 추구하는 맑시즘, 개인의 보편적 권리 특히 적극적 자유를 절대시하는 자유주의 등 여러 사상적 형태를 취한다. 세계 각지의 반미주의자가 민족주의, 맑스주의, 자유주의 등 다른 사상적 기반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히 미국을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립과 자존이라는 공약수 덕택이다.

추상적 사상의 영향이 반미 이면에서 작용한다는 점은 미국이라는 추상적 집합체가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미국의 구체적 요소들은 그다지 큰 부정적 인식을 낳지 않는다는 데서 엿볼 수 있다. 미국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대체로 긍정적이고(Pew Center 2003, 21), 미국의 과학기술, 대중문화,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각론에 있어서도 다소 긍정적이거나 적어도 반대감정이 병존한다(Pew Center 2002, 53-71). 반면 미국이나 미국화라는 추상적, 거시적 개념에 대해서는 반감이 더 지배적이다. 물론 부시 개인이나 그의 특정 대외정책이 반미를 악화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원인을 제공했다기보다는 반미감정 폭발에 구실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세계의 많은 사람이 분노를 느끼는 대상은 자기와 너무나 다른 타자, 특히 강자로서의 “그들”인 미국이라는 집합체이다. 미국에 대한 전체적 반감에 이끌리지만 다른 한편 미국의 구체적 속성을 선별적으로나마 좋게 받아들이거나 때론 미국의 한 부분이 되고자 하는 심리도 존재한다는 것은 “Yankee go home, but please take me with you”라는 풍자적 농담에 잘 드러난다.

미국 옹호론이든 미국 비판론이든 구체적, 개별적 논리만으로는 힘을 얻기 어렵다.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상의 뒷받침을 받아 미국 측 또는 반미 측을 사회정의를 가로막는 공공의 적으로 상징할 때 사회적 분노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작금 전개되고 있는 반미 논쟁의 양측은 공히 유리한 사상적 기반을 찾으며 각기의 환원주의적 적대감을 정당화하고 있다. 사상적, 이념적 영향으로 양측이 사회정의에 대한 사명감에 사로잡힐수록 공감대의 형성은 요원해지고 갈등은 커질 것이다.

IV. 안티이즘 극복을 위한 대안적 시각으로서의 공동체주의

반미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맑시즘과 민족주의로 대표되는 집단주의 그리고 여러 갈래의 자유주의는 특정 외부세력을 적대시하는 안티이즘에 경도되기 쉽다. 타자를 공공의 적으로 상정하고 거기에 각종 문제의 책임을 돌리는 사상 체계로는 인류사회 구성원들이 작위적 사회경계를 넘어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실천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무언가 대안적 시각이 요구된다.

그 대안적 시각이 무엇인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주의에도 워낙 다양한 갈래가 있지만(Thompson 1998; Bellamy and Castiglione 1998; Bienen et al 1998), 사회적 맥락의 고유성으로부터 유리된 기계적 개인주의를 절대시하지 않고 동시에 인간 행동을 집단의식의 산물로 보는 감상적 집단주의도 거부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즉,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사회적 맥락을 떠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추구하는 기계적 존재도 아니고 자기가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집단의식을 갖는 피동적 존재도 아니다. 고유한 사회 망 속에 있되 자기의 의지를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인간상이 전제된다.

공동체주의에서 논의의 출발점은 개인이다. 그러나 이 개인은 절대적인 선호(적극적 자유든 최대 효용이든)를 기계적으로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행위자가 아니고, 타인과의 사회적 연대 속에서 행동의 기준과 가치를 찾는다. “어떤 개인도 ... 그의 주어진 공동체를 떠나서는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없다. 어떤 선(善)이 가치 있는 것이며 어떤 규범을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 개인의 인식은 특정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진다”(Bienen et al 1998, 301). 이처럼 공동체주의가 고유한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집단의식에 휩쓸려 행동하는 감상적 존재로 보지는 않는다.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는 구별된다.

기계적 자유주의도 감상적 집단주의도 아니란 점에서 공동체주의는 안티이즘을 극복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체성 개념에서 핵심 요소를 찾는 소극적 의미의 공동체주의는 여전히 안티이즘의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토의를 통해 형성되는 신뢰 개념에 입각한 적극적 의미의 공동체주의는 안티이즘의 성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극적 의미의 공동체주의를 생각해보자. 여기서는 좁은 집단경계를 건너뛸 수 있는 다(多)문화적 정체성(multicultural identity)을 강조한다(Scholte 1996;

Smith 1996). 국가경계 내에서만 형성·수용되지 않고 경계를 가로질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복수(複數)의 다양한 문화가 세계에 퍼진다면 배타성을 벗어나 인류전체에 대한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하나의 지배적 혹은 패권적 문화만의 정통성 또는 주류성(主流性)을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다양한 문화가 동등한 위상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해야 한다는 시각을 뜻한다. 다문화주의가 퍼질 때 사람들은 한 사회나 집단에 고유한 단일의 문화(즉, 생활양식과 가치관)만을 맹종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이며 다문화적 정체성을 느끼게 된다.

초국가적 NGO들의 활동, 사이버 공간 등의 기제를 통해 다문화적 정체성이 널리 받아들여질 경우, 내 민족, 내 국가, 내 집단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중요하다는 자기중심적 태도가 희석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경계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보다 넓은 세계 차원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논하는 의식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외부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상정하는 안티이즘은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좁고 배타적인 정체성을 극복해 보다 넓은 정체성을 갖게 된다 해도 역시 안티이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어렵다. 다문화적 정체성이 현실에서는 자칫 지배적 문화에 의한 획일성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 혹은, 국가경계를 건너뛰는 다문화적 정체성이 여러 분야별로 팽배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구심력을 상실하게 되며 수많은 입장 간의 조율이 불가능해질 위험성도 있다. 이럴 경우 여러 입장 간 갈등은 불가피하게 증폭되고 상호 간에 안티이즘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정체성 개념만으로는 안티이즘 극복에 역부족이다.

반면, 사회성원간 활발한 열린 토의(deliberation)를 통해 상호 신뢰를 조성하고 그러한 조건 속에서 바람직한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적극적 의미의 공동체주의는 안티이즘 극복과 관련해 우리에게 좀더 큰 희망을 준다. 여기서 말하는 토의와 신뢰의 장(場)으로서의 사회는 대소 모든 종류의 공동체를 지칭한다. 면대면 토의가 가능한 작은 조직부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만 토의를 시도할 수 있는 세계공동체까지 망라한다.

만약 사회성원 간에 신뢰가 쌓인다면 나와 계층, 민족, 국가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용도 커진다. 나와 이익뿐 아니라 근본적인 정체성 및 가치관에서 공통분모가 없는 남에 대해서도 그 입장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남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타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

회적 신뢰는 타자에 대한 관용과 존중의 태도를 확산시킨다. 그럼으로써 안티이즘이 억제되고 사회갈등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분출되지 않을 수 있다.

사회적 신뢰감을 싹트게 할 수 있는 기제로 토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경험적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Tyler 1998, 2001; Mansbridge 1999). 여기서 토의의 의미는 고정된 이익이나 생각의 단순한 집성(aggregation)이 아니라, 충분한 설득과정을 거쳐 이익과 생각의 근본적인 전환(transformation)이나 통합(integration)이 수반되거나 적어도 그것을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을 말한다(Habermas 1984, 1987; March and Olsen 1986; Gutmann and Thompson 1996). 토의를 강조하는 적극적 공동체주의는, 사람들이 공동선을 찾기 위한 토의를 진행하며 각자의 이익선호체계를 바꾸어 공동선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데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 그 과정상 비록 공동선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합의에조차 이르지 못하더라도 혹은 최종결론은 표결에 의존하더라도, 토의를 진행하며 설득하고 설득 당하는 가운데 행위자 상호간에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다.

토의 개념에 기반을 둔 적극적 공동체주의는 타인도 나와 동등한 존재라는 전체에 서있다. 자유주의와는 달리,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절대적 정의관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성원과의 토의를 통해서만 무엇이 그 시점의 그 사회를 위해 가장 적절한 것인지 판단한다. 사회차원의 공공선을 지향한다는 데서 공리론적 자유주의와 토의적 공동체주의 간에 유사성이 있지만, 전자는 각 개인의 고정된 선호들을 어떻게 집성할 때 최대 효용을 내는 균형점에 달할지에 목표를 둔다면, 후자는 각 개인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성원간의 토의를 통해 전환, 통합될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에 천착한다.

공동선은 각 개인에 의해 선형적이고 절대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상적 집단주의에서처럼 집단의식에 따라 규정되는 것도 아니다. 각기 독립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특히 토의 과정을 거쳐 경험적이고 상대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남의 존재를 전제하고 남과의 토의로써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사상 속에는, 특정 외부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상정하여 모든 잘못의 근원으로 탓하는 안티이즘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물론 토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토의의 효과가 단시에 나기 쉽지 않으며, 토의가 잘못되어 초래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도 부인할 수 없다(Macedo 1999). 그러므로 다양한 참여민주주의와 협의체 민주주의 기제들을 활용해 개방적인 시

민 정체성을 배양하고 그림으로써 체제에 대한 신뢰와 공동선을 지향하는 시민적 덕성이 함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다만, 여기서는 토의를 통한 사회적 신뢰의 조성이 안티이즘 극복에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으며 어떠한 함정을 조심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이 글의 범위를 넘는바 향후 과제로 돌린다.

V. 결론: 또 하나의 신기루일까?

역사상 여러 사상적 갈래가 발전되어왔다. 사회현상은 각 개인의 인식 속에 주관적으로 존재할 뿐이므로 사회에 관한 어떤 사상적 시각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보는 관점에 따라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완벽한 답을 주는 사상이나 이념을 찾는다면 그것은 신기루일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 논한 토의적 공동체주의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신기루일지 모른다.

각 사상적 관점의 타당성이나 진리성은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단지 시대적 맥락에 비추어 그 적실성을 논할 수 있을 뿐이다. 과거에는 자유주의나 맑시즘이나 민족주의가 나름대로의 사회적 적실성을 띠며 인류역사에 큰 족적을 남겨왔다. 그러나 탈산업화, 탈물질주의, 탈주권국가화(지구화) 등 여러 측면에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요즘에 자유주의와 집단주의는 여러 측면에서 시대 적실성에 타격을 받고 있다(이화용 2005; 임성호 1999, 2003). 그 한 측면으로 공공의 적을 상징하는 안티이즘을 들 수 있다. 어떤 외부세력을 사회정의의 적으로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환원주의적 적대감 속에서 자기 존재나 주장을 펼치는 사상은 인류공동사회를 향한 시대적 요청과 어울리지 않는다. 안티이즘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토의적 공동체주의야말로 오늘날 높은 적실성을 지닌다 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란 불가능하다. 마음을 모으자고 국민 모두에게 호소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주문이거나 공허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한 나라의 국민 사이에서도 마음을 모아 동일한 인식 틀을 갖추기 힘든데, 하물며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보편적 기준과 가치를 추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점증하는 다양성 속에서 특정 현안마다 광범한 의견합치를 이루려는 시도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갖는 상대방을 공공의 적

84 오토피아

으로 여기는 과도한 안티이즘을 낳을 수 있다. 남을 인정·관용·존중하는 비(非)교조적 의식이 컨센서스보다 더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글은 토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신뢰감이야말로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의 촉진제인바 토의적 공동체주의가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토의적 공동체주의를 허황된 신기루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 내용, 한계, 실천 방안에 대해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참고문헌

- 송병현·이나미·김면희. 2004. 『한국자유민주주의의 전개와 성격』 서울: 오름출판사.
- 이화용. 2005. “지구화와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세계질서.” 경희대 목요세미나 발표논문. 3월 31일.
- 임성호. 1999. “‘이익집성적’ 권력모델의 한계와 ‘이익통합적’ 모델의 모색.” 『한국정치연구』 4집.
- _____. 2003. “세계화시대의 거버넌스.” 박광희 편. 『21세기의 세계질서: 변혁시대의 적응논리』 서울: 오름출판사.
- 채효정. 2000. “기술과 정치.” 경희대학교 대학원 봄 학술제 사회과학분과 발표논문. 5월 16일.
- Arrow, Kenneth. 1951.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N.Y.: Wiley.
- Bellamy, Richard, and Dario Castiglione. 1998. “Between Cosmopolis and Community: Three Models of Rights and Democracy within the European Union.” in Daniele Archibugi, David Held, and Martin Kohler. eds. *Re-imagining Political Community: Studies in Cosmopolitan Democracy*. Stanford University Press.
- Berlin, Isaiah. 1984. “Two Concepts of Liberty.” in Michael Sandel. ed. *Liberalism and Its Critics*.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Berman, Russell. 2004. *Anti-Americanism in Europe: A Cultural Problem*. Hoover Institution Press.
- Bienen, Derk, Volker Rittberger, and Wolfgang Wagner. 1998. “Democracy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Cosmopolitan and Communitarian Principles.” in Daniele Archibugi, David Held, and Martin Kohler. eds. *Re-imagining Political Community: Studies in Cosmopolitan Democracy*. Stanford University Press.
- Davis, Tami, and Sean Lynn-Jones. 1987. “Citty upon a Hill.” *Foreign Policy*. Vol. 66. Spring.
- Elster, Jon. 1989. *The Cement of Society: A Study of Social Order*.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ltung, Johan. 1980. *The True Worlds: A Transnational Perspective*. N.Y.: Free

- Press.
- Gutmann, Amy, and Dennis Thompson. 1996. *Democracy and Disagreement*.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Habermas, Jurgen. 1984, 1987.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Boston: Beacon Press. Vols. 1 and 2.
- Hartz, Louis. 1955.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 Liska, George. 1967. *Imperial America: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Prim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 Macedo, Stephen. 1999. *Deliberative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nsbridge, Jane. 1999. "Everyday Talk in the Deliberative System." in Stephen Macedo. ed. *Deliberative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rch, James, and Johan Olsen. 1986. "Popular Sovereignty and the Search for Appropriate Institutions." *Journal of Public Policy*. 6, 4 (Oct./Dec.).
- Morone, James. 2003. "In God's Name." *American Prospect*. May.
- Pew Research Center. 2002. *What the World Thinks in 2002*. November.
- _____. 2003a. *Views of a Changing World*. June.
- _____. 2003b. *Evenly Divided and Increasingly Polarized: 2004 Political Landscape*. November.
-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Roche, John. 1961. "The Founding Fathers: A Reform Caucus in A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 Sandel, Michael. 1982.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 Schmitt, Carl. 1976.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Rutgers University Press.
- Scholte, Jan Aart. 1996. "Globalisation and Collective Identities." in Jill Krause and Neil Renwick. eds. *Identit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Press.
- Smith, Roy. 1996. "Citizenship: Identification and the Global." in Jill Krause and Neil Renwick. eds. *Identit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Press.

- Sunstein, Cass. 2002. “Why They Hate Us: the Role of Social Dynamics.”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 25, Issue 2. Spring.
- Thompson, Janna. 1998. “Community Identity and World Citizenship.” in Daniele Archibugi, David Held, and Martin Kohler. eds. *Re-imagining Political Community: Studies in Cosmopolitan Democracy*. Stanford University Press.
- Tyler, Tom R. 1998. “Trust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Valerie Braithwaite and Margaret Levi. eds. *Trust and Governance*. New York: Russell Sage.
- _____. 2001. “The Psychology of Public Dissatisfaction with Government.” in John R. Hibbing and Elizabeth Theiss-Morse. eds.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ger, W. Warren. 1973. “The Concept of Cultures.” in Richard A. Falk, and Saul H. Mendlovitz. eds. *Regional Politics and World Order*. San Francisco: W.H. Freeman and Company.
- Zakaria, Fareed. 2003. “The Arrogant Empire.” *Newsweek*. March 24.

국제 테러리즘과 문화적 갈등

Global Terrorism and Cultural Conflict

신 동 련*

I. 서 론

2001년 11월 19일, World Trade Center에 대한 테러를 기점으로 세계는 급속히 테러의 공포 속에 휩싸이고 있다. 동사건 이전까지는 테러는 일국의 국경 내에 한정된 개념으로 인식이 되어 왔으나, 동 사건을 기점으로 테러는 더 이상 국경 내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로 전환되었으며, 세계 어느 곳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공동의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테러로 인한 인명의 손실은 물론,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손실도 증가 일로에 있다.

미국정부는 9. 11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엔 및 연합국의 협력 하에 테러지원 세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던 아프카니스탄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아프카니스탄 정권교체에 성공을 거둠으로써 대 테러 전쟁이 매우 성공적으로 끝을 낸 것으로 일시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UN과 연합국의 지원을 사실상 얻지 못하고 치루어진 대 이라크 전쟁은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워,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세력의 저항과 전의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 이라크전의 명분이었던, 테러지원 및 핵무기제조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적인 대 이라크전에 대한 세계적인 비난 여론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테러에 대한 개념조차 정리가 되지 못하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고 있으며, 국가, 공동체, 학자에 따라 각각 다른 개념을 테러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에 대한 개념정립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테러에 대한 연구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필자가 본 연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면서, 비록 연구자의 폭이 넓지 않으며, 공공기관에서의 연구에 치우쳐 있다고 하더라도 테러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고, 또한 효과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을 보고 어떻게 이 엄청난 연구와 대책을 소화해 낼 수 있을까 걱정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본 대부분의 연구와 대책은 테러가 실행에 들어간 이후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테러대책이 국가치안 확보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전유물이었다는 데에도 테러연구가 테러시행단계 이후에 초점이 맞추어 질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테러가 인간사회의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인간사회의 갈등요인이 엄청나게 많으며, 이러한 갈등이 모두가 테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테러로 이어지는 갈등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¹⁾ 나아가 그 분석과 예측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단기적, 일회성 대책에 의해 제거될 수 없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이 테러의 역사가 결코 전쟁의 역사보다는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연구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과는 대조적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이 된다.²⁾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고 테러시행단계 이후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음은 결과적으로 필자에게도 국제테러리즘과 문화적 갈등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만들었다. 필자는 연구의 대상을 Global Terrorism의 대책으로 한정하였으며, Global Terrorism이 단순한 통제(Control)의 대상이 아니고 극복의 대상임에 중점을 두어 분석을 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 1) 갈등이 테러로 이어지는 과정은 전승화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체인 갈등이 시간과 공간에서 interaction을 하게 되며, 이때 어떠한 interaction(+,-,x,÷,0)을 하는가에 따라서 테러로, 또는 평화로 승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Hegel의 변증법이론은 동일실체에서 하나의 결론이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하고 있으나, 오토피아철학에서는 동일실체에서 각각 다른 결론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 2) 구라파에서 테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전문가를 모집 중에 있다. (Paul Wilkinson, 2003. Implications of the attacks of 9/11 for the future of terrorism. P25:London, Routledge)

II. 테러리즘의 개념 및 종류

1. 테러리즘의 개념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러가 불법이며, 안전을 위협하고 인류 평화를 파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그리고 테러가 발생하면, 이것이 테러라고 모두가 인식한다. 그러나 테러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각각 다르다.³⁾

사전적 개념으로, 민중서관에서 발행된 국어사전은 "테러"를 "폭력수단을 행사하여 적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라고 기술하고, "테러리즘(Terrorism)"을 "폭력수단을 써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주의"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법(협정)을 보면, 현재까지 12개의 테러관련 협약(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총괄적으로 테러라는 개념을 명시조차 못하고 있다. 12개의 협약은 각각의 협약이 적용되는 대상이 불법적인 행동(Unlawful Act)이라는 점에는 일치하고 있으나, 통일된 개념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들은 'acts of terrorism,'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crimes against,' 'terrorism,' 'international terrorism'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⁴⁾

전세계 모든 국가가 회원국인 UN에서도 테러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2004년 제59차 유엔총회 보고서는 테러관련 부문에서 테러에 대한 일반협약(Comprehensive Convention on Terrorism)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협약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1)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무력의 사용문제와 2) 외국의 지배 하에 있는 사람들의 저항권을 지적하고 저항권 자체에 대한 관할여부 보다는 민간인의 살상문제가 본질문제를 강조하고 있다.⁵⁾ 또한 동 협

3) 테러리즘이라는 단어는 프랑스 혁명으로 집권한 과격파의 공포정치(1793-94)에서 유래한다. 당시 집권한 과격파 지도자들은 혁명의 배반자를 제거하기 위해 자유를 정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테러를 사용하였으며, 이들을 일컫는 말이 테러이었다. 그러나 불란서혁명이 쇠퇴하면서, 이들을 처벌하느로서 끝나게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테러리스트는 이러한 테러리스트라는 이름을 싫어한다.

4)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를 보면, 제 1조에서 This Convention shall apply in respect of (a) offences against penal law; (b) act which, whether or not they are offences, may or do jeopardize the safety of the aircraft or of person or property therein or which jeopardize good order and discipline on board.라고 규정하여 동 협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5) UN총회문서 A/59/565 VI-4-160

약제정 관련, Terrorism 개념의 정리에 고려되어야 사항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⁶⁾

끝으로 Global Terrorism 관련, 제도권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무성의 입장을 보면, 테러를 "premeditated, politically motivated violence perpetrated against noncombatant targets by subnational groups or clandestine agents, usually intended to influence an audience."⁷⁾ 라고 표현하고 있다.⁸⁾

이와 같이 테러라는 용어가 개인이나 국제사회에서 심층적으로는 공유하는 개념이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테러인가를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Terrorism의 개념정립이 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Global Terrorism의 경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 주체 내지 주체에 동조하는 측과 대상이 되는 측이 서로 상반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대 테러 대책이나, 테러 통제(Control)를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errorism의 특징을 요약하여보면 아래와 같다.

6) UN총회문서 A/59/595 VI-4-164

7) 미국무성의 "Pattern of Global Terrorism 1999,"(2004. 4)

8) 미국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아래와 같이 테러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Terrorism by nature is difficult to define. Acts of terrorism conjure emotional responses in the victims (those hurt by the violence and those affected by the fear) as well as in the practitioners. Even the U.S. government cannot agree on one single definition. The old adage, "One man's terrorist is another man's freedom fighter" is still alive and well. Listed below are several definitions of terrorism. For the purposes of the Terrorism Research Center, we have adopted the definition used by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Terrorism is the use or threatened use of force designed to bring about political change Brian Jenkins
- Terrorism constitutes the illegitimate use of force to achieve a political objective when innocent people are targeted Walter Laqueur
- Terrorism is the premeditated, deliberate, systematic murder, mayhem, and threatening of the innocent to create fear and intimidation in order to gain a political or tactical advantage, usually to influence an audience: James M. Poland
- Terrorism is the unlawful use or threat of violence against persons or property to further political or social objectives. It is usually intended to intimidate or coerce a government, individuals or groups, or to modify their behavior or politics Vice-President's Task Force, 1986
- Terrorism is the unlawful use of force or violence against persons or property to intimidate or coerce a government, the civilian population, or any segment thereof, in furtherance of political or social objectives FBI Definition

- 1) 테러의 행위자(Actor)가 그늘 속에 숨어 있다는 점이다. 조영식 박사는 이러한 이유에서 테러를 '보이지 않는 전쟁(Invisible War)'라고 명명하고 있다.
- 2)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국제법규를 준수하는 전쟁과 구분이 된다.
- 3) 폭력행사 대상에 민간인 및 사유재산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때로는 민간인 생명이나 사유재산이 직접적인 목표로 되는 경우도 있다.
- 4) 폭력행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는 테러의 대상 설정과는 무관하다.
- 5) 테러에는 주체와 대상이 있으며, 이들간에는 가치관의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게 된다.

2. 테러리즘의 종류

테러의 종류는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구분하는 기준을 주체, 목적, 대상, 범위, 방법 또는 강도 등에 둘 수 있을 것이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구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

1) 형태에 따른 구분

미국무성의 분석에 따르면, 테러의 형태(Types of Terrorism)를 기준으로 6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테러의 목표와 원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Nationalist, Religious, State-Sponsored, Left-Wing, Right-Wing과 Anarchist가 그것이다.⁹⁾

2) 주체에 따른 구분

테러주체에 중점을 두어 구분을 한다면, 개인에 의한 테러, 집단에 의한 테러,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State Sponsored Terror), 국가테러(State Terror)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에 의한 테러는 개인에 의하여 계획되고 행하여지는 테러가 이다. 개인의 의한 테러는 단순하고도 우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때로는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인 원한, 비판 또는 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는 것

9) Types of Terrorism, Terrorism Research Center.

이 대부분이다. 이때 주체인 개인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명이나 그 이상일 수도 있으나 단순한 숫자로서 구분하는 것보다, 한 개인이 계획하고 개인의 책임 하에 행하여 지며, 테러의 전과정이 매우 짧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테러의 주체는 죄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수명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범죄집단에 의한 테러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 범죄집단에 의한 테러도 이 범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인에 의한 테러보다 조금 더 큰 범위의 테러가 조직이나 집단에 의한 테러이다. 집단에 의한 테러는 그 집단이 자체의 가치관과 내부적 규율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가치관은 매우 자의적이며, 사명감으로 인하여 테러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류의 테러가 다원화된 사회에서 가장 경계하여야 하는 테러이다. 최초 테러집단이 구성될 때는 지도자가 존재하게 되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도자의 가치관과는 상관없이 개인으로서 가치관을 가지게 되며, 때로는 자신의 가치관이 가장 우월하다고 믿게 되며, 항상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따라서 일견하여 테러는 집단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내부적인 위계질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위계질서에 의한 통제 보다는 가치관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집단에 의한 테러는 시간적으로 매우 장기적이며, 외형적으로는 테러의 목적이 달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테러를 행하게 되며, 때로는 행위(behavior) 자체가 테러화 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러한 예는 소수민족의 독립을 목적의 테러나, 정권쟁취를 위한 테러, 사회 계층간의 가치관의 차이에 의하여 일어나는 테러에서 볼 수 있다.

집단에 의한 테러보다 더 조직적이고, 질서를 수반하는 것이 국가지원 테러(State Sponsored Terrorism)이다. 이러한 종류의 테러는 어느 국가가 정치적인 목적(체제 변형, 영토확장 등)을 위하여 테러 그룹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때로는 경제적인 목적으로도 이뤄지며, 어느 특정한 국가 또는 수 개국이 테러 집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지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가 전면에서 나서지 못하는 경우에 테러의 지원배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아랍 국가들의 알카에다 지원, 베트남 전쟁시 월맹의 베트남 지원 등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국가테러(State Terrorism)이다. '국가테러'라는 용어는 매우 낯선 용어로서 20세기 말에 들어서 만들어 지고 있는 용어이다. 과거에는 일국이 타국을 식

민지화 하기 위한 무력사용이 인정이 되고 있었으며, 무력사용의 조건은 육전법 규인 제네바협정을 준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인권이 존중되면서 국가의 무력사용도 엄격히 상대의 군사력제압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따라서 군사적 인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용인되지 않으며,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이를 테러리즘으로 보는 시각이 발생하였다.

국가테러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 하나가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국가의 무력사용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용인이 되고 있으나, 2차 대전 이후 무기의 성능의 발달과 대량살상무기의 출현은 이들 무기의 사용은 무차별적이고 대량학살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비록 국가간의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테러라고 한다. 군대에 의한 무력 사용은 전쟁으로서 테러는 아니라는 반대 이론도 있다. 그러나, 전쟁이라도 불특정 다수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국사적 행위라면 이는 테러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데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발달로 이의 사용이 전투목적과는 무관한 민간인 희생이 따르며, 이를 인지하고도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무차별적 공격을 하는 것은 전쟁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국이 명분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이를 국가테러로 보는 것이다. 일국에 의해 타국(상대적 약소국)이 침략을 받는 경우, 이를 국가테러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 이러한 이론은 대체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목적에 의한 구분

테러를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으로는 테러의 목적을 들 수 있다. 많은 테러목적 중 하나는 순수한 개인적인 동기이다. 즉 개인이 처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비판, 금전적 필요성, 원한에 의한 보복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테러는 일회성내지 단기적인 것이 대부분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과거 가문을 중시하고, 거주이전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던 시기에는 개인적인 원한이 수대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사회 발전과 더불어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테러는 매우 한정적이고 일과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테러의 주체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예외 없이 가능한 한 개인적인 동기를 은폐하고 나름대로 공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사실상 테러는 개

인적인 동기와 공공이라는 명분이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¹⁰⁾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이다. 기존의 사회 계층이나 정권에 대한 도전세력에 의한 테러이다. 이러한 테러는 테러조직에 의해 정권이 장악된 후에도 상당 기간 존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유사하나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소수민족의 독립을 위한 테러이다. 소수민족의 독립을 위한 테러는 소수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정부와 싸우는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정권을 잡고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권과 관련이 없는 무고한 시민들에 대하여서는 테러를 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수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동조세력을 확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 대한 테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소수민족의 독립을 위한 테러는 대부분 국제적인 동조나 동정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테러는 국제화 하지는 않고 있으며, 일정한 국경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¹¹⁾ 환언하면, 소수민족의 독립을 위한 테러는 독립전쟁의 일환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실체파악을 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문화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 차이에서 오는 테러로서 이들 테러의 목적은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다른 이방인은 모두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차이에서 오는 테러는 일종의 신념에 의한 테러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무차별적이고 대상도 테러리스트가 속하지 않는 모든 문명, 종교, 정치체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테러는 국제화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4) 대상에 의한 구분

테러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다.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테러는 동기여화에 따라서 대상이 다르게 된다. 재력가, 원한의 상대, 사회일반 등이 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개인적 동기에 의한 테러는 그 대상이 정해진 한정된 인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수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테러 역시 그 대상이 한정된 인사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10) 개인적인 동기를 은폐하고 명분을 내세우는 테러내지 준 테러활동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

11) 이경우 지리적인 개념에 더하여 요인들의 외국여행의 경우, 이들에 대한 테러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는 대비되는 것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이다. 전항에서 언급한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차이에서 유래되는 테러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대상은 적과 동지라는 구분은 존재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무차별적 테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이 전쟁의 개념이 아닌, 테러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싶어하는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의 경우, 그 결과는 전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테러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도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5) 테러의 강도에 의한 구분

테러의 강도에 의하여 저강도 테러와 고강도 테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저강도 테러와 고강도 테러의 구분은 그 영역이 매우 모호할 수 있을 것이나, 대체적으로 단순한 위협이나 개인적이 원한 등에 의한 소규모의 테러를 저강도라고 한다면, 무차별적인 대량살상 등을 고강도 테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자폭테러는 전형적인 고강도 테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활동범위에 의한 구분

테러 대상 지역이 일국 국경 내에 한정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국내적인 테러와 국제적인 테러로 구분 할 수 있다. 테러의 활동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테러에 대한 대응은 근본적으로 국내 치안문제로 귀결이 된다. 그리고 국제적인 관심사로 되는 경우에도 테러로 인한 인권침해나 민주화 등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나 국내에서 일어나는 테러라고 하여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테러나 테러의 영향이 국제적으로 미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변하여, 국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이 존중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하나는 국제적 테러로서 Globalization이 가져온 가장 부정적인 결실 중 하나가 'Terrorism의 Globaliz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테러의 세계화는 지구상 모든 곳에서 인류로부터 평화와 안전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 테러의 특징은 주체가 개인이 아닌 집단이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강도에 있어서도 고강도 테러가 대부분이다.

테러종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테러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 가는 대처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국내적인 대처인가 국제적인 대처인가를 결정하는 것부터, 통제 대상인가 아니면 통제와 극복의 대상인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개념의 대처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테러리즘의 세계화

테러리즘의 세계화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테러가 전세계에 만연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테러리즘은 몇몇 국가에서나 발생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테러리즘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한 단위의 테러조직의 활동범위가 2개국 이상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통상 International Terrorism 또는 Global Terrorism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냉전종식 이전까지 세계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가간의 전쟁(Inter-State War)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간의 전쟁은 세력균형과 테탕트에 의하여 억제되어 왔다. 반면, 테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가상현실에서는 테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위협요소로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면서, 경중을 계속 울리어 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간의 전쟁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나, 테러리즘이 세계평화 파괴자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은 테러리즘 까지도 세계화를 하도록 만들었다. 미 국무성내 공식보고에 의하면, 1999년 한해 동안 전세계적으로 392건의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233명의 인명을 앗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또한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Terrorism Research Center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간 발생한 크고 작은 테러는 18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¹³⁾

이렇게 테러가 국가간의 전쟁에 대신하여 세계평화의 위협요인으로 대두된 주요요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이루어진 민주화 추세는 국가간의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¹⁴⁾

12) 미국무성의 Pattern of Global Terrorism 1999.

13) <http://www.dhs.gov>

14) 전쟁에서 누가 승리자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샌프란시스코 지진에서 누가 승

두번째 요인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의 배타적 국가주의 기반의 와해이다.

세번째 요인은 인권존중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소수민족의 자치권의 회복 내지 회복을 위한 노력에 불을 지폈다는 점이다.¹⁵⁾

III.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

1. 국제테러 관련 협약

1934년 프랑스에서 유고슬라비아 국왕이 암살되는 사건을 계기로 국제연맹은 1937년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을 채택하였으며, 이 조약이 테러방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마련한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그러나 동 협약은 테러의 범죄화, 범죄인 인도, 수사공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국내입법조치 등 국가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발효되지 못하였다.

그 이후에도 반테러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내용의 국제조약 체결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국제협약(국제협정)은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사안에 따른 12개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¹⁶⁾ 이외에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에 각각 1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¹⁷⁾

리자인가? 라는 물음과 같다고 한다.

(Knneth N. Waltz, 2001: Man, the State and the War. p1,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 15) 네번째가 가상사회에서 간접적인 테러교육(?)은 테러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을 막연한 동정과 정당성으로 대치하는 교육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 16) ①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일명 동경협약, 1963년)
 ②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일명 헤이그협약, 1970년)
 ③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 1971년)
 ④ 국제민간 항공에 복무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몬트리올 협약 추가 의정서(일명 몬트리올 의정서, 1988년)
 ⑤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일명 뉴욕 협약, 1973년)
 ⑥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인질협약, 1979년), ⑦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일명 핵물질협약, 1979년)

2. UN의 활동

UN총회1997년 총회결의로 Ad Hoc Committee인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구성하고 반테러 협약 체결등 적극적인 반테러대책활동을 하고 있다.¹⁸⁾

또한 1948년이래 59개 지역에서 PKO활동을 하였으며, 2005. 1 현재 16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UN의 PKO 활동이 전적으로 반테러 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더라도 국제테러리즘을 억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⑧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일명 로마 협약, 1988년)
 - ⑨ 대륙붕상에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1988년)
 - ⑩ 가소성 폭약의 탐지용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1991년)
 - ⑪ 폭탄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1997년)
 - ⑫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1999년)
- 한국당사국인 8개의 국제협약 및 의정서:
- 항공기내에서 행한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1971)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1973)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1973)
 -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1990)
 -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1983)
 -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1983)
 -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1982)
 -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2001)

또한 한국정부는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과 대륙붕상에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와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장 명의 반테러 선언(2001.10.15.), 제9차 및 제10차 아·태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반테러 선언(2001.10.21. 및 2002.10.26.), 아세안과 한·중·일(ASEAN+3) 정상회의시 반테러 관련 의장언론성명, 제4차 ASEM 정상회의시 반테러 선언(2002.9.23.), 민주주의공동체 서울회의시 반테러 성명(2002.11.12.)을 발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01년 유엔총회 의장국으로서 유엔 총회 및 안보리에서 對테러 관련 결의안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17) 미주기구 : Convention to prevent and punish the actsof terrorism taking the form of crimes against persons and related extortion that are of international significance (1971)

구 주 :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errorism (1976)

- 18)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52/164 of 15 December 1997 및 54/109 of 9 December 1999

2001년의 9.11테러 이후, 테러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제 1의 요인으로 부각이 되면서 UN도 종래의 테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하였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산하에 안보리 15개의 이사국으로 구성하는 "Center-Terrorism Committee"를 발족시키고 적극적인 대테러 활동을 하고 있다.¹⁹⁾

다른 하나는 UN High-Level Penal보고에 따른 UN 안보리 개편안이다. UN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8명의 High-Level Penal이 구성되고 이들이 2004년 말 안보리의 평화유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확장에 관한 보고서를 UN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회원국은 동 보고서에 기초하여 UN 안보리확대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으며, 2005년 UN총회에서 안보리 개편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²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UN도 테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UN총회나, 안보리의 정책도 Control of Terrorism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UN의 조치가 Control of Terrorism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UN의 대테러 조치는 테러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보다는 테러리스트들의 Action의 단계에서 테러 작전을 막는다는 개념에 머물고 있다고 할 것이다.²¹⁾

IV. 테러 관련 GCS International 의 노력

전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테러는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명피해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²²⁾ 반면, 테러에 대한 대책은 국제적 제도권내에서 즉, UN이나, 각국정부에 의해 힘에 의한 억제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국 내에 한정된 테러활동은 국가의 강력한 의지 여하에 따라 통제될 수 있

19) 안보리 제 1373 결의안 (2001. 9. 28)

20) 그러나 종 보고서에서 건의한 두개의 안인 "A"안과 "B"은 모두가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 UN High-Level Penal Report 참조

21) 9.11 사태 관련 세계각국의 반응은 Global Responses to Terrorism (Mary Buckley and Rock Fawn 참조

22) 미국 소재 Terrorism Research Center(1996 창설)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2005. 1. 1 -3. 31간 184건의 테러가 발생하였다.

다.²³⁾ 즉 국내치안의 개념으로 테러의 Control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 Global Terrorism의 통제에 있어서는 국내와는 다르게 국제사회에서는 유일한 절대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항상 협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특정 국가가 테러를 지원하거나 국가자신이 테러를 자행하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의 국제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세계적 테러는 공식적, 제도권의 힘에 의한 억제만으로는 이를 극복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테러리즘의 극복은 테러행위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이 아닌, 테러요인이 발생하고 계획되는 단계에서부터의 대책이 요구된다. 환언하면, 힘에 의한 테러의 통제 방안과 함께 국가간, 종교간, 종족간의 갈등의 도를 낮추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테러극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못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테러 극복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에는 정부기관과 함께 시민단체의 참여가 요청된다.

국제적인 테러를 Control과 Overcoming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NGO가 GCS International이다. GCS International (총재: 조영식 박사)은 국제적인 테러가 단순한 힘과 전략, 그리고 법에 의한 Control이라는 개념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보고, 국경을 초월한 대화와 이해, 협력과 화합을 통하여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차이를 뛰어 넘는Overcoming의 노력을 하여오고 있다.²⁴⁾

23) 예: 범죄와의 전쟁선포

24) 대부분의 학자들이 각국간의 문화의 차이를 단순하게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를 엄격하게 보면 문화간의 수준의 차이와 전통의 차이를 혼용하여 문화의 차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두가지의 차이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데서 문화의 갈등을 극복 할 수 있다. 문화간의 수준의 차이를 좁혀 간다면, 비록 전통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문화간의 갈등은 없앨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본다면, 불과 50년 전인 1950년대의 한국을 보면, 이방인에 대한 태도에서 극진한 대우와 적개심 중 하나인 이분법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와서는 이방인도 내국인과 또 같은 협력의 동반자나, 대화의 대상,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종교에 있어서도 1800년대에는 천주교도들은 억압과 핍박, 그리고 처벌의 대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종교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들간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적 전통이 없어져서가 아니고 한국의 문화수준이 향상이 되어, 한국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

GCS International의 국제적 테러리즘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첫째가 인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다. 밝은사회운동, Neo-Renaissance운동, 지구공동사회의 현장 마련, 1999년 세계 NGO 총회를 통한 NGO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 평화복지대학원의 설립, NGO대학원 설립, Global NGO Complex 착공이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두번째가 다민족간의 이해와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다. GCS International은 L.A. 다민족지도자 한국초청프로그램 과 아세아 청소년지도자간의 우의를 위한 한국초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²⁵⁾

세번째는 1985년 및 1986년 에 있는 국제회의에서 반테러결의안의 채택이다.

네번째가 2001년 UN 문명간의 해 기념 종교간회의이다. 동 회의에는 캐톨릭, 크리스찬, 불교,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대표들이 참석하여 종교간의 이해와 화해를 위한 대화를 하였다.

다섯번째는 2004년 GCS International 년차대회에서 '평화를 위한 긴급과제 - 테러리즘의 극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테러리즘의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특히 동 회의에는 아세아, 미주, 구주, 중동, 아프리카의 밝은사회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현장의 인사들이 모여 테러리즘의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았으며, Online 상으로 지속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V. 국제적 테러리즘의 극복을 위한 제안

Global Terrorism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지원 테러리즘(State-Sponsored Terrorism) 과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테러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사실상 테러리즘의 Actor(실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현실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통제되고 극복될 수 있다. 9.11 테러 관련, 테러조

하면서 선진국의 문화수준에 이르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5) 1997년부터 시작한 미국 L.A.다민족 지도자한국초청 프로그램은 2004년으로 8번째 시행이 되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L.A.에서 다민족간의 갈등이 치유되고 상호 이해와 화합의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0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뉴욕에서 다민족간의 갈등의 징후가 보이고 있으나, L.A. 지역에서는 화합의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었음은 특기할 만하다.

직을 지원한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국제적인 조치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국가내지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지역협력체나 UN과 같은 국제적 기구 중심으로 반테러협약의 체결, 테러지원 금지조치와 함께 힘에 의해 Control 될 수 있다.

반면, 문화나 종교적인 갈등에서 비롯되는 국제테러는 현실주의적 접근방법으로는 테러극복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테러는 일종의 신념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힘의 통제는 이들의 신념이나 가치관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키게 됨으로써 더욱더 저항의식을 강화하게 한다.²⁶⁾ 군사적인 힘이나 대테러 대책에 의한 통제는 일시적으로 테러가 수면 밑으로 잠수할 수 있으나, 잠복기를 지나면, 테러의 방법이 더욱 교묘하여지고, 극렬한 양상으로 변모하는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나 종교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국제테러 극복을 위하여서는 문화나 종교간의 차이를 줄이고 가치관의 인식에 대한 변화와 함께, 화합이 추구되어 할 것이다. 문화의 차이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좁혀가기 위하여서는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헌팅턴 교수가 1990년 초 발표한 문명간의 충돌에 대한 연구 발표는 2000년초의 세계정치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결과적인 차이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

문명(Civilization), 문화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가 보편적 인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통, 즉 오랜 생활습관의 차이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문화의 수준의 차이이다.

전통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페루, 짐바브웨의 전통의 차이는 누구나 인식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차이를 용인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과거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기에는 전통의 차이는 인류에게 엄청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무조건적인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대량학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었다. 그러나 교통통신의 발달은 전통의 차이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비중을 아주 작게 줄이고 있다. 남태평양의 부족이나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의 전통 때문에 테러나 전쟁이 유발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통의 차

26)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예를 볼 수 있다.

이는 문화발전의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전통의 차이가 갈등의 주요요인이 아니라는 것은 동일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간에 엄청난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역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의 차이가 무조건적으로 이해와 친근감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다른 전통의 만남이 빈번하여지기 시작하면, 상호 다른 전통이 상호 간섭을 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만남의 빈도가 커질수록 갈등의 요인 역시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의 차이가 과거와 같이 전쟁이나 테러의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데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문화의 차이 중 다른 하나는 문화수준의 차이이다. 문화수준의 차이는 동일한 지역공동체내에서도 존재하게 된다. 완벽하게 같은 문화에 소속한 사람들간의 문화수준의 차이는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격차, 사회적으로는 상중하의 계층으로 표현된다. 문화수준의 차이는 국가와 지역을 달리하면, 더욱 커지게 되어 갈등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갈등은 테러리즘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문화수준이 낮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대적 빈곤과 약자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테러의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라는 속성은 테러가 문화수준이 낮은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서 애용하는 방법으로 자리잡는 요인이기도 하다.

문화의 차이를 두 가지로 구분할 때,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에 대한 접근 방법도 두 가지가 각각 상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는 문화의 차이를 단순하게 차이라는 하나로 표현되고 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테러리즘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문화의 차이의 극복은 전통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보다는 문화수준의 차이 극복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연구가 소홀이 되고 있는 문화 발전단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현실세계에서 지역간, 국가간, 사회계층간의 문화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에서 문화 수준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안을 찾는다면,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줄여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Negative적 접근 방법으로 민족이나, 종교적 근본주의의 가치관을 창출하고 조장하는 혈연만을 강조하는 민족의식, 종교적분리주의 의식으로부터

탈피하여, 공동체 의식, Global화 의식으로 전환하는 Vision의 제시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테러에 대하여 현실주의적 접근이냐? 아니면 대화와 화합에 의한 접근, 이상주의적 접근이냐의 문제는 어느 한가지 방법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테러의 동기에 따라서 현실주의적 접근, 이상주의적 접근, 그리고 양자를 함께 구사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Global Terrorism 극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국제정치의 제도권의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 즉 NGO의 동참이 필수요건이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 논의한 Global Terrorism와 대책문제는 세계평화이론 중 아주 작은 부분이나, 동시에 2005년의 세계평화유지에 가장 우선순위(priority)가 높은 주제이기도 하다.

테러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책은 본인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수준에서 훨씬 많이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어있고 대안이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연구가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와 대책이 'Control of Terror'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

테러가 행해지는 단계를 시간적으로 구분하여 테러의 태동, 계획, 실행의 단계로 나눈다면, 이중 태동과 계획단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테러행위가 외부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의 시점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UN도 예외가 아니어서 근본적으로 Realism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UN이 국가간의 장치(Apparatus of States)라는 태생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협약이나 조약에 의한 테러리즘의 Control 역시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조약이나 협정은 그것이 비록 UN의 주도로 모든 회원국이 서명하고 비준을 한다고 하더라도 UN자체는 이를 집행할 수 없으며, 국가라는 중간단계의 조직에²⁷⁾ 위임하여 이행되게 된다. 조약과 협정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단위의 의지에 달려 있다.

27)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볼 때, 국가는 중간조직의 개념을 가지게 된다.

스포츠의 경우, 세계적인 규모의 스포츠라고 하여도 그 경기의 Rule은 국가, 단체, 개인을 모두 직접적으로 구속하고 있다. 따라서 개개인도 Rule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의 경우, 단순히 Rule의 변경만으로 스포츠의 행태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협약(협정)이나 조약은 개인을 직접 구속하지 못하며, 국가를 통하여 개인을 구속하게 된다.²⁸⁾ Terror에 대한 협정(협약) 역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통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협정당사국의 의지에 따라 그 이행이 보장 된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협정이 가지는 판단의 기준과 개별 국가가 가지는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Terrorist의 가치관이나 행태의 완전한 변화를 기대 할 수 없다.

조영식 박사는 이러한 Nation States가 주체가 되는 UN이나 국제협약, 조약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사회의 평화구현을 목표로 하는 장치(Apparatus)를 만들어 왔으며, 만들고 있다.²⁹⁾ UN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원용하여, Islam-Christian 간의 Terror가 없는 주간, 달, 해를 만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테러로 인해 불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하다. 테러로 야기되는 불행한 삶은 Actor와 대상이 공히 가지게 되기 때문에 테러의 대상으로서의 피해자와 함께 Actor로서의 피해자 간증 캠페인이 이루어 진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8) 예외적으로 개인을 구속하는 경우가 있다.

29) GCS International의 활동 참조

< 지역별 테러리즘 현황 >

Web. of Terrorism Reseach Center 에서 발췌

지역	명칭	활동
서유럽	IRA (Irish Republicanism)	북아일랜드 및 영국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을 공격함으로써 영국군을 북아일랜드에서 철수하라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테러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서유럽	ETA (Basque Nationalism)	스페인 정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바스크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적을 위해 테러리즘 사용.
동유럽	인종/민족주의 테러리즘	-보스니아 -나고르노 카라바흐(Nagorno-Karabakh; 구 유고 지역) -조지아 (미국 인종차별지역) -체첸 분리주의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이슬람계 소수민족 분리주의운동)
아프리카	인종분쟁에 기인한 테러리즘	르완다 (아프리카의 대표적 종족분쟁)
	인종분쟁에 기인한 테러리즘	발칸지역 (세르비아인과 알바니아인의 종족분쟁)
	인종 및 종교분쟁에 기인한 테러리즘	시크족 (Sikh; 인도편잡지역의 종족 및 종교 분쟁)
	인종 및 종교분쟁에 기인한 테러리즘	타밀 (Tamil; 인도남부, 스리랑카 지역의 인종 및 종교 분쟁)
	인종분쟁에 기인한 테러리즘	코카서스 (Caucasus; 구소련 지역의 인종 분쟁 지역)
	종족분쟁에 기인한 테러리즘	중앙 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유럽열강으로부터의 독립이후 종족간 갈등)
중동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스라엘에 빼앗긴 팔레스타인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무력행사. 1960년대 후반 요르단에 본거지를 두고 군사조직을 창설하기도 했으나 1970년대 들어 요르단 정부와 갈등이 심해져 레바논으로 추방됨. 아라파트의 외교적 노력으로 팔레스타인 국민의 정당한 대표기구로 국제사회에 인정 받았고, 1976년 정식으로 아랍연맹에 가입.

	FIS (Islamic Salvation Front; 이슬람 구국전선)	1991년 12월~ 1992년 1월의 알제리 총선에서 이슬람구국전선(FIS)이 승리를 거뒀지만 알제리 군부가 정권이양에 반발함으로써 내전 발발.
	GIA (Armed Islamic Group; 무장회교집단)	비종교적인 알제리 체제의 전복 및 회교 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알제리 정부가 1991년 12월 최초 다당제 총선에서 최대규모의 야당인 이슬람구국전선(FIS)의 승리를 무효라고 선언한 이후 1992년부터 테러행위 개시.
	PFLP(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	팔레스타인 좌파세력으로 무자비한 테러리즘을 강행해 전세계적 비난은 물론 동구 공산주의 국가의 반발을 사기도 했던 조직.
	지하드	'성전'을 뜻함. 지하드의 가치를 내걸고 많은 이슬람 단체들이 이란, 팔레스타인,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이스라엘, 러시아, 서방국가 등에 대항하여 투쟁. 이들 단체는 모두 게릴라전을 수행하며, 일부는 테러활동을 전개.
	하마스	반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저항단체로 아마드 야신(Ahmad Yasin)이 1987년에 창설. 이슬람 수니파의 원리주의를 내세우는 조직체. 팔레스타인의 해방 및 이슬람 교리를 원리원칙대로 받드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의 평화협상을 반대하고, 이를 위한 테러활동 진행.
좌익테러	Red Brigades(붉은여단)	이탈리아 정부 전복을 목표로 함. NATO에 대한 반대와 다국적기업 파괴활동 등을 병행하고 있음.
	AD (Action Directe; 직접행동단)	1979년에 결성된 프랑스의 비밀 테러단체
	CCC(Combatant Communist Cells; 전투적공산주의세포)	벨기에에서 활동하는 좌익계 테러조직
	ELA & 17th November	1967년~ 1974년까지 그리스를 통치한 군사정권에 반대하여 탄생된 극단좌익단체. 1974년 이래 그리스 정부를 비롯하여 경제적 목표물, 미군사기업 시설들에 폭격 감행. 17th November와 ELA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활동한다는 설.

	SL (Sendero Luminoso; Shining Path; 빛나는 길)	페루남부지역에 있는 아야추코시를 본거지로 하는 좌파성향의 테러조직
	크메르루주(Khmer Rouge)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캄보디아의 좌파 무장단체
	JRA (일본 적군파)	일본공산당에서 탈퇴한 후사코 시게노부에 의해 창설된 일본 테러조직. 테러리즘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을 달성하고, 일본의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음.
극우테러	Neo-Nazi Groups	신나치 단체들은 우익극단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반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움. 이들은 주로 미국과 미군의 군사시설을 공격대상으로 삼았음.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구소련 등지에서 활동함.
	AWB(아프리카나 저항운동)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백인 테러조직으로 '아프리카나저항운동'. 사회불안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적 암살 등 사회적, 경제적 복지에 위협을 주고 있음.
	독일의 극우 그룹들	통일 이후 경제적 부담의 가중, 실업 및 이주민들의 증가와 함께 우파 극단주의의 폭력성 강화됨.
	전투적 보수주의 청년들(Skinhead) 및 이종주의 암살조직	유럽 전지역에서 증가하는 추세. 거리 폭력 및 인종주의적 공격 행태를 보임.

참고문헌

- 신동련, Prevention of the Recurring of War through the UN, Toward a Global Common Society through Dialogue Among Civilizations, IRHS 2001
- 조영식, 1996<1979>. 오토피아. 서울: 경희대출판국
- 조영식, 1998. 지구공동사회 대현장. UN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기조연설. 서울
- 조영식, 1999. World Encyclopedia of Peace. Vol. 5. & 6. N.Y.: Oceana Publication, Inc.
- Bethany Lacina, 2004, From Side to Centre Stage: Civil Conflict after the Cold War, Security Dialogue Vol.35, No 2, PRIO
- Calleya, Stephen C. 2000 : Regionalism in the Post-Cold War World. Vermont: Ashgate Publishing Co.
- David Held & Anthony McGrew, 2003 Globalization/Anti-Globalization, Cambridge: Polity Press,
- Gal Luft & Anne Korin, 2004, Terrorism Goes to Sea, Foreign Affairs Vol.83 No.6
- John Rapley, 2004,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 Mark Selden & Alvin Y. So, War and State Terrorism, Maryland: Ro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4
- Mary Buckley and Rick Fawn, 2003: Global Responses to Terrorism, New York, Routledge.
- Kenneth N. Waltz, 2001: Man, the State,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andall L Schweller, 2004, Unanswered Threats; A Neoclassical Realist Theory of Underbalancing,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2
- Selig S. Harrison, 2005, Did North Korea Cheat?, Foreign Affairs Vol. 84.No 1
- Van Doren, Charles, 1991. A history of Knowledge. N.Y.: Ballantine Publishing Group
- Van Evera, Stephen. 1999: Causes of War.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ilcox, Francis O. and Marcy, Carl M, 1955: Proposals for Changes in the United

Nations, Connecticut, The Brookings Institution., Greenwood Press

Web Site :

1.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cfrterrorism.org>
2. Terrorism Research Center : <http://www.terrorism.com>
3. U.S.A., Department of State : <http://www.state.gov>
4. United Nations: <http://www.un.org>

배타적 과학주의와 전면적 상대주의 비판¹⁾

- H. Putnam의 논거를 중심으로

정 연 교*

인간중심주의는 오토피아 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인간중심주의(Humancentrism)는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 입장(anthropocentrism)”과 다르다.²⁾ 인간중심주의는 다양한 층위의 테제가 유기적인 방식으로 중첩적으로 교차하면서 구성해내는 통정적인 입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중심주의는 과학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 동시에 윤리적 논의에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지 않거나, 가치는 개인적인 태도나 취향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격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중심주의를 입론함에 있어 과학주의의 비판과 초극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과학주의는 정신현상의 환원가능성에 대한 입장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자연과학만이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기 때문에 유일한 학문이라는 배타적인 입장이 가능하다. 정신현상은 그 특성상 과학화할 수 없기

* 경희대 철학과 교수

- 1) 이 글은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이 <네오르네상스와 21세기 대안문명>이라는 대주제하에 3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학제간 연구프로젝트의 1차년도 사업을 염두에 두고 중간보고서의 형태로 집필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문, 철학분야의 1차년도 연구과제인 <과학주의적 세계관과 기술지상주의>라는 중 주제와 관련된 여타 논문과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다. 이 논문에서 과학과 기술의 관계나 기술지상주의의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나 2, 3차년도의 연구과제인 <유기체적 세계관과 인간> 및 <인간중심주의와 미래문명>과 유관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지닌 협업적 성격 때문임을 밝힌다.
- 2) Humancentrism은 인격(humanhood)의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Anthropocentrism은 인간의 생물학적 종적 특성에 경도된 사상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인문사회학분야는 진정한 의미에서 학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 입장은 이와 달리 정신현상의 과학화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 과학주의는 인문, 사회분야도 자연과학적 탐구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유형의 배타적 과학주의는 논리실증주의가 대표한다. 논리실증주의를 극복하려는 지난 50여 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리실증주의가 표방하는 소박한 실재론은 아직도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견해 중 하나이다. 반면 두 번째 유형의 과학주의는 환원주의의 일종으로서 20세기 중후반, 실증주의가 더 이상 학계를 주도하지 못하게 된 이후 유일한 대안처럼 여겨지는 학문관이 되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과학주의의 양대 유형 중 논리실증주의의 배타적 과학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철학자 퍼트남의 논거를 원용해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이 과학주의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한 대안적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둘째 현실에는 환원주의적 과학주의의 위험이 더 클지 몰라도 철학적으로는 크게 흥미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³⁾ 보다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근대 과학주의의 형성과정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2장에서는 논리실증주의가 봉착한 이론적 딜레마의 성격에 대해 분석하고 3장에서는 쿤의 상대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퍼트남의 논증을 통해 소개할 것이다.

1. 근대 과학주의의 형성

과학주의(scientism; scienticism)는 일종의 과시즘이며 제국주의이다. 그렇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과학 그 자체와 과학주의는 무관하다. 과학주의는 과학

3) 환원주의적 과학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유럽에서는 빈델반트(W. Windelband), 리케르트(H. Rickert), 드로이젠(J. G. Droysen), 딜타이(W. Dilthey)와 같은 신칸트주의자나 해석학자들이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분류하고 각각의 분야에 설명과 이해를 적합한 탐구방식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역사나 문화연구는 자연과학과 달리 법칙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이 지닌 특수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아닌 이해(Verstehen)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포도(J. Fodor), 설(J. Searle), 데이비슨(D. Davidson) 등이 심리철학적 논제에 기초한 환원주의적 과학주의를 비판했다. 이들은 정신현상이 의도(intention)나 지향성(intentionality), 규범성(normativity) 등과 같은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현상을 인과 법칙에 종속시키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하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론이나 과학자의 실행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과학을 빌미로 삼아 합리성을 규정하거나 특정한 유형의 탐구방식을 학문의 전 영역에 적용시키려는 풍토와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과학주의는 이데올로기나 형이상학과 무관할 수 없다.

과학주의는 베이컨, 콩트, 논리실증주의 등을 거치면서 점차 영향력 있는 메타담론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주의의 태두는 16-7세기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라 할 수 있다. 베이컨은 누구보다도 먼저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했다. 그는 이성중심적인 학자를 거미에, 경험중심적인 학자를 개미에 비유하고는 양자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탐구방법을 제안했다.⁴⁾ 베이컨의 탐구방법론은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일련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우선 사실을 관찰한 후 그것을 잘 기록하고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찰이나 자료정리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학회나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베이컨이다. 두 번째 단계는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규칙성과 패턴을 발견하고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여 법칙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발견된 법칙이나 가설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시험해야 한다. 만약 실험이 가설을 확증한다면, 법칙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일단 법칙을 발견하고나면 예측도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과학적 설명은 법칙의 발견과 운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칙을 발견할 때에는 귀납적 추론에, 법칙을 가지고 예측을 할 때에는 연역적 추론에 의존한다.⁵⁾

베이컨은 과학을 형이상학으로부터 독립시켰고 과학적 설명이 종래의 목적론적 설명과 다른 인과적 설명임을 인식한 거의 최초의 인물이다. 특히 관찰과 실험 그리고 반례의 중요성을 적절히 강조한 그의 탐구방법론은 17세기 이래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과학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왕립학회(Royal Society) 역시 베이컨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뉴턴과 다윈을 포함해서 전 유럽인에게 과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과 중요성을 각인시킨 사람도 베이컨이었다.

그러나 과학을 부각시킨 만큼 베이컨이 여타의 학문분야를 헐뜯은 것도 사실

4) 합리론적 성향이 있는 학자는 외부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거미와 같고, 경험주의자들은 별다른 생각도 없이 무작정 자료만을 모으기 때문에 개미와 같다.

5) Brian Magee, "Francis Bacon", <The Story of Philosophy>, DK Publishing, 2001, pp. 74-78.

이다. 그는 철학, 문학, 역사를 각각 이성, 상상력, 기억에 조응하는 학문분야로 규정하고 이들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학에 비해 열등하다고 비판했다.⁶⁾ 이들 중 어떤 것도 사물의 본질을 밝히는 데는 소용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마 누구도 과학이 자연현상을 탐구하는데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찬란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학을 숭배하고, 인간의 심리나 사회, 문화와 같이 의도나 지향성을 불가피하게 포함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탐구하는 데에도 자연과학적 방법론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⁷⁾ 그러나 과학의 우월성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것과 과학만을 학문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 베이컨에서 논리실증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학주의 역시 나름의 곡절을 겪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근대과학과 뿌리를 같이하는 근대철학의 원형은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적 존재론이었다.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둘 중 하나라고 보았다. 이들 양자를 섞어놓은 형태로 존재하는 실체도, 이들 양자와 완전히 다른 상태로 존재하는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물질은 물리적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연구되어야 하며, 정신은 사유를 본질로 하는 자율적인 것으로써 탐구되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그렇기에 이원론적 체제 하에서 과학주의가 힘을 가질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어떤 형태의 과학주의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존재론 차원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데카르트 이후 유럽대륙 안팎에서는 존재론의 일원화 노력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일례로 로크는 그의 주저 <인간지성론> 서문에서 그의 연구가 화학자 보일, 의학자 시드넬, 수학자 호이겐스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뉴턴 선생”과 같은 거장들이 풍미하던 시대에 “지식으로 향하는 길에 놓인 쓰레기를 치워주는 조수의 일”에 불과하다고 기술했으며, 흄 역시 자신의 <인성론>이 물리학에서 뉴턴이 보여준 실험과 관찰의 방법을 인간의 본성을 해명하는데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⁸⁾

6) Francis Bacon, <The Advancement of Learning>, J. M. Dent & Sons, 1915, pp.82-3.

7) 물론 그렇게 하기 쉽다는 의미에서의 ‘당연’이지 정당하다는 의미에서의 ‘당연’은 아니다.

8) John Locke, “The Epistle to the Reader”,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Oxford, 1975. 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IndyPublish, 2002.

사실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상식적이고 단순했기 때문에 쉽게 다가왔지만 그리 정교한 이론이 아니었다. 주관과 객관, 의식과 대상이 이원론이 가정하는 것처럼 그리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사유실체인 정신이 연장(extension)을 본질적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물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영국에서는 로크에서 버클리까지 거쳐 흄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일원론적 경향이 20세기 초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와 경험주의(Logical Empiricism)의 형태로 수렴되기에 이른다.

물론 일원론과 유물론은 다르다. 유물론에 더해 관념론도 일원론의 일종이다. 실제로 칸트와 헤겔 등으로 대표되는 대륙의 철학자들은 비교적 관념론적 일원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8-9세기 관념론과 유물론의 쟁투로 점철된 근대 철학사가 20세기에 접어들어 물리주의(Physicalism)의 형태로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과학주의는 유물론적 일원론을 당연시하게 되었고 인과론적이면서 기계론적인 설명모델을 범형으로 채택하게 된다.⁹⁾ 이제 현대과학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논리실증주의”에 대해 살펴보자.¹⁰⁾

논리실증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과학에 경도된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극단적이고 과장된 형태의 경험주의이다. 논리 실증주의는 두 가지 테제, 즉 분석/종합의 구분과 검증 가능성 이론에 기초해있다. 분석/종합은 진부하지만 자명해 보이는 구분이다. 어떤 문장은 단지 그 의미에 의해 참이거나 거짓이다. 이런 것은 분석적이다. 반면 종합적 문장은 문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세계가 실제로 어떠한가에 의해 참이나 거짓이 된다. 그러나 분석적으로 참인 것은 공허하다. 어떤 실질적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수학과 논리학이 필연적인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들이 분석적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에 대한 경험적 주장도 어느 정도는 수학적 언어를 사용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학에서 이루어지는 증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

종합적 문장의 가치를 가늠해주는 것은 검증 가능성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

9) 과학주의는 역사적으로는 유물론적 환원주의지만, 논리적으로는 존재론적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과학주의가 현대과학의 탈물리주의적 경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10) Peter Godfrey-Smith, <Theory and Real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ch. 2 참조.

르면, 문장의 의미를 아는 것은 그것을 검증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어떤 문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검증될 수 없다면, 그 문장은 무의미하다. 물론 여기에서 검증은 모든 종류의 감각 경험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관찰에 의한 검증을 의미하며 현실에서 검증 가능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검증 가능함을 가리킨다. 즉 검증 대상이 되는 명제에 부합하거나 반하는 관찰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검증가능성’보다는 “시험 가능성(testability)”이 더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논리실증주의자에게 검증 가능성 원리는 요긴한 무기였다. 그들 생각에는 과학적 논의나 일상적 논의가 검증 가능하였고, 따라서 의미 있는 주장들로 여기는데 문제가 없다. 반면 세계에 대해 무언가 말한다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있었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고 여겼던 것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통적인 철학적 논의들과 윤리적이거나 심미적인 판단들 그리고 종교적인 얘기들이다. 그 결과 에이어(A. J. Ayer)는 윤리학, 미학 그리고 신학 등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¹¹⁾

논리실증주의가 배타적인 과학주의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오직 경험 가능한 것만이 혹은 경험과 모종의 논리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만이 유의미하다면, 인문사회예술 분야에서 오가는 대부분의 논의는 유의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이 인문사회예술가의 작업을 전적으로 “무용”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는 다르다. 학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유용한 것은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인문사회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하튼 논리실증주의의 과학주의는 혁명적인 제거주의임이 틀림없다.

2. 논리실증주의 비판

앞에서 보았듯이 자연과학의 성공은 자연히 자연과학적 탐구방식, 특히 물리학적 탐구방식을 합리성의 표본으로 만들었다. 이를 극단적인 형태로 담아낸 것이 논리실증주의이다. 논리실증주의자에게 합리적인 것은 곧 과학적인 것이며

11) A. J. Ayer, <Language, Truth and Logic>, Dover, 1977.

과학적인 것만이 합리적인 것이다. 나머지는 진위를 떠나 무의미하다. 이 같은 과학관은 다양한 비판에 직면한다. 논리실증주의적 배타적 과학관에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토마스 쿤이 과학사에 기초하여 제기한 비판이다. 그러나 철학적인 의미에서 더욱 의미심장한 비판은 퍼트남에 의해 제기되었다. 퍼트남이 논리실증주의와 쿤의 과학관에 대해 제기했던 비판을 연이어 살펴보면 왜 퍼트남의 비판이 과학주의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수 있다.¹²⁾

퍼트남은 논리실증주의가 합리성의 기준으로 제시한 “검증의 원리”가 자가당착적(self-refuting)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검증의 원리”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합리성의 기준이라면, “검증의 원리” 그 자체도 보편적, 절대적인 방식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검증의 원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찰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증의 원리”가 그것을 스스로 자신에게 적용해서 정당화할 수는 없어 보인다. 물론 “검증의 원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메타적 합리성 기준이 존재한다면 정당화할 가능성이 열릴지도 모른다. 마치 과학을 과학 아닌 것과 구분해주는 기준이 메타과학, 즉 철학적인 “검증의 원리”인 것처럼, “검증의 원리”를 그렇지 못한 원리로부터 구분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검증의 원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층위의 담론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과학과 철학의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논의의 차원은 결국 애매하고 모호한 방식으로 문화나 전통 또는 상식으로 표출되는 “삶의 양식”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삶의 양식”이 “검증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정당화일 수 없다는데 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삶의 양식(form of life)”은 곧 삶 그 자체이다. 삶의 양식을 구성하는 것은 일련의 공적인 규범(public norms)인데 그것 없이는 언어는 물론 사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삶의 양식과 다른 삶의 양식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모든 삶의 양식을 초월하는 규범이 가능하지 않다는 함의를 지닌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사자가 말

12) 과학적 실재론, 과학주의, 토마스 쿤에 대한 비판 등 퍼트남의 과학철학적 견해는 여러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의 저작 중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의 5, 6, 8장과 <The Many Faces of Realism>, Open Court, 1987의 4장을 참고했다.

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말로 비유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합리성은 이미 사회에 의해 “제도화(institutionalized)”된 합리성이다. 만약 우리가 과학에 대해 상식 차원의 평가를 내린다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권에 내재해있는 적합성(reasonableness)과 지식에 대한 이미지를 예증하고, 기리고, 강화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¹³⁾ 결국 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그 이상일 수 없으며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시 요약하면, 논리실증주의는 경험적으로 검증, 확증, 반증할 수 있는 것만을 유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퍼트남이 “규준적(criterial)” 합리성 개념이라고 부르는 한 차원 높은 메타적 기준에 의해 정당화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미를 있다. 문제는 그러한 메타적 기준이 있다고 해도 그것 역시 보다 메타적인 규준적 합리성 개념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즉 정당화의 무한소급(infinite regress)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무한소급의 악순환을 끊을 수도 있다. 비트겐슈타인적 의미의 “삶의 양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삶의 양식이 가진 다양성과 상대성으로 인해 실증주의적 정당화 작업이 지닌 의미 자체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퍼트남이 “검증의 원리”가 자가당착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가 비트겐슈타인의 “삶의 양식” 개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자가당착적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논리실증주의의 문제를 딜레마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증의 원리는 영원히 정당화할 수 없거나, 정당화할 수 있다면 오직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3. 토마스 쿤의 상대주의 비판

이미 언급했듯이 퍼트남의 비판이 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지 “검증의 원리”에만 유효한 비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퍼트남이 비판하는 것은 “검증의 원리”뿐만 아니라 그것과 같이 보편성과 절대성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13) H. Putnam, <Reason, Truth and History>, Ch. 5.

입장이다. 그렇기에 흥미롭게도 퍼트남은 토마스 쿤(Thomas Kuhn)이 논리실증주의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실증주의와 거의 유사한 형이상학적 곤경에 빠졌다고 비판할 수 있었다.

퍼트남의 진단이 옳다면, 논리실증주의는 극단적인 과학주의인 반면 쿤은 지나치게 상대주의적이다. 주지하듯이 쿤은 논리실증주의적 과학관을 전도시키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과학사가이다. 쿤에 의하면 과학은 검증(verification), 반증(falsification), 확증(confirmation)과 같은 개념이 상징하는 정형화된 연구방식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다. 만약 과학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탐구규칙이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인식적 가치(epistemic values)이다. 즉 과학자들은 당대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식적 가치에 따라 연구의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수행방법을 결정하며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용한다.

그렇다고 해도 크게 볼 때 과학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였으며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쿤은 우선 당대의 연구방향, 방식 및 평가 기준을 포괄하는 전범을 ‘패러다임’으로, 패러다임이 안정적으로 과학계를 주도하는 시기를 ‘정상과학기’라고 칭하고는, 구체적인 사례연구에 근거하여 패러다임의 교체가 어떤 합당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마치 기독교 신자가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것과 같이 학문외적인 “게슈탈트적 전환(Gestalt Switch)”를 통해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주장한다.¹⁴⁾ 이에 더해 쿤은 패러다임 사이에 우열을 따지는 일이 패러다임이 지닌 “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 때문에 가능하지 않으며, 그 결과 패러다임의 전이를 진보로 여길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한다.¹⁵⁾

만약 쿤이 옳다면, 과학은 과학 아닌 것과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과학자체가 지닌 정형화된 탐구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자 집단이 추구하는 인식적 지향에 의해서 그러하다. 그렇다면 과학은 다른 학문분야와 본질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쿤이 말하는 인식적 가치, 즉 (i) 증거와의 부합성, (ii) 여타 이론과의 일관성, (iii)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iv) 상

14) T.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pp. 84-5, p. 111, p 150-2.

15) 과학의 특징과 한계에 대한 더욱 최근의 연구, 특히 스트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홍성욱의 “누가 과학을 두려워하는가?”, <한국과학사학회지, 제 19권, 제 2호 (1997)>과 이상욱의 “과학연구의 역사성과 합리성: 소칼논쟁을 중심으로”, <과학철학>, 9 (2002) 참조.

대적인 단순성 및 (v) 후속연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은 다른 분야의 학자들도 대체로 공유하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다분히 주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¹⁶⁾

퍼트남은 쿤이 논리실증주의와 마찬가지로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비판한다. 그렇다고 쿤이 파이어아벤트와 같이 극단적인 형태의 상대주의를 견지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¹⁷⁾ 쿤은 적어도 패러다임 내에서의 합리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퍼트남은 쿤의 “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 개념을 문제 삼는다. 쿤의 공약불가능성 테제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의미나 지시에 있어 서로 동일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현대 과학과 17세기 과학이 공히 ‘온도’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지시체와 의미를 지칭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17세기의 과학자가 ‘온도’를 통해 의미하고자 했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정말 공약불가능한 개념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가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퍼트남은 쿤의 공약불가능성 개념이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사람들이 “경험적 개념(concept)”과 “이론적 개념(conception)”을 혼동하는데서 찾는다. 경험적 개념은 영어의 ‘temperature’를 ‘온도’로 번역할 때처럼 특별히 그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문화를 초월하여 동일한 대상과 의미를 갖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이론적 개념은 마치 17세기 과학자들이 온도에 대해 지금까지는 매우 다르게 생각했던 것과 같이 문화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개념이다. 퍼트남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이론적 개념은 다를 수는 있어도 경험적 개념까지 다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경험적 개념조차 다르다면, 이론적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쿤이 공약불가능성 테제를 근거로 부정하고자 했던 것은 과학의 진보내지는 수렴(convergence)이었다. 그렇기에 쿤에 있어 과학은 단지 도구적인 의미에서만

16) 조인래 편역, <쿤의 주제들: 비판과 대응> 중 토마스 쿤, “객관성, 가치판단, 그리고 이론 선택”, 이화여대출판부, 1997.

17) 파이어아벤트는 점성술이나 심령치료도 천문학이나 의학 못지않게 과학적이라고 주장한다. “고정된 탐구방법의 존재한다는 생각이나 합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인간과 사회를 지나치게 천진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한다. 어떤 경우에건 어떤 단계에서든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anything goes)’라는 원칙이다.” P. Feyerabend, <Against Method>, p. 23, New Left Books, 1975.

진보한다. 교통수단은 점차 발달할 수 있지만, 과학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퍼트남은 칸트 류의 선형적 논변에 의거해 모든 비교는 일종의 공약가능성을 전제한다고 비판한다.¹⁸⁾ 만약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단지 다른 이론적 개념체계가 아니라 아예 우리와 다른 생각과 경험을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차이는커녕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상대주의와 절대주의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도 이 때문이다.

퍼트남의 비판은 과학주의 논의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그가 논리실증주의와 같이 극단적인 형태의 배타적 과학주의는 물론 쿤 류의 상대주의적 반과학주의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접어들어서인지 몰라도 오늘날에는 철학, 윤리학, 미학 등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영역의 학문성을 배제하는 배타적 과학주의가 자가당착적이라는 지적은 쉽게 수용되지만 그 역에 해당하는 극단적인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렇지 못하다. 그만큼 상대주의가 팽배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퍼트남의 비유를 빌어 말하자면, 만약 논리실증주의가 엄밀한 과학에 고무된 학자들이 합리성을 이상적인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형화하려는 시도였다면, 쿤의 상대주의는 기존의 제도나 전통에 불만을 느낀 학자들이 인류학에 고무되어 합리성을 지엽적인 문화적 규범과 동일시하려는 시도 그 이상이 아니다.

앞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합리성에 대한 이해는 과학주의에 대한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과학주의자들은 과학은 오직 진리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진리는 우리가 적절성의 기준, 즉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공허한 개념이다. 과연 과학이 진리를 추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탐구방식이 무엇인지, 과학이 객관적이라고 여기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과학이 객관적 진리를 추구한다는 주장이 오직 합리적인 수용가능성(rational acceptability)을 통해 의미를 담보할 수 있다면, 과학에 내재하고 있는 가치적 요소는 바로 합리적 수용가능성의 준거를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

18) 칸트는 귀납추론에 대한 흠의 비판에 대해, 만약 귀납적 추론에 의거한 규칙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미래'라는 개념자체가 성립불가능하게 된다는 선형적 논변을 전개했다.

다. 그렇다면 합리적 수용성의 준거는 무엇인가? 퍼트남은 (i) 이론의 정합성, (ii) 기능적 간결성¹⁹⁾, (iii) 설명적 포괄성 및 (iv) 도구적 유용성 등이 과학이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가치들이라고 지적한다. 과학이 이러한 가치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의 인식적인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실재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비록 이러한 가치들을 정형화할 수는 없다고 해도 전적으로 주관적인 태도나 관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정합성, 간결성, 정당성 등의 인식적 가치는 친절, 아름다움, 선함 등과 같은 도덕적, 미적 가치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 의미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인식적 가치는 경험세계를 직접적으로 표상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상대주의적인 방식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공통적인 기반 위에서 성립한다.²⁰⁾

결국 퍼트남이 주장하는 학문관은 일종의 다원주의(Pluralism)이다.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는 물리학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생물학과 화학은 물론이고 수학 역시 나름의 독특한 탐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각각의 탐구대상에 적합한 지역적(local) 방법론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만약 탐구의 대상이 자연현상을 넘어 정신현상과 사회현상을 포괄한다면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는 단지 탐구의 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이 아니라, 탐구의 방식 역시 다양하면서도 대등한 타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각각의 학문영역은 적어도 일정 정도 인식적 가치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면, 그들 각자가 위치한 상황과 여건에 걸 맞는 탐구방법을 “때와 장소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옳다.

19) 퍼트남은 일례로 Ockham's Razor를 예를 든다. 오캄의 면도날은 흔히 “Do not multiply entities without necessity”처럼 이론적 간결성을 상징하는 경구로 표현된다.

20) 퍼트남은 일관성, 간결성, 효용성 등의 인식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이라는 말도 무의미해지며, “세계”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관성, 간결성, 효용성 이외에 얼마든지 다른 합리적 수용가능성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적합성(adequacy)과 명료성(perspicuousness)도 합리적 수용가능성의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거짓은 아니더라도 사태와 무관한 설명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결 어

필자는 이 글의 모두에서 두 가지 유형의 과학주의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유형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두 번째 유형이 철학적으로 흥미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환원주의적 과학주의는 철학적 논의의 문제라기보다 태도의 문제라고 이해한다. 다시 말해 학자가 지닌 기질에 따라 선택해도 무방한 문제라고 본다. 그것은 환원주의적 과학주의자가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화가이다. 그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A라는 방의 내부이다. 그러나 A에는 전등도 창도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으로 더듬어 짐작하는 것뿐이다. 다행히 A라는 방 옆에는 B라는 방도 있다. 그리고 B에는 불이 켜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B가 A와 얼마나 비슷한지 알지 못한다. 환원주의적 과학주의자는 A대신 B의 열쇠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는 A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A에서 암중모색하기보다 B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A에 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A를 택한다면 아마도 어렴풋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고 B를 택한다면 제대로 그리던지 전혀 무관한 그림을 그릴 것이다.

필자의 비유가 그럴듯하다면, 환원주의적 과학주의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다. 비록 환원주의적 과학주의자가 B를 선택했지만 그가 A를 선택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는 거의 없어 보인다. 적어도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의 한계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환원주의적 과학주의와 달리 배타적인 과학주의와 전면적인 상대주의는 과학에 대한 성격 규정을 빌미로 학문적인 체계모니를 장악하고자하는 파시즘적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그것이 “검증의 원리”와 같은 의미론적 기준을 무한소급이나 자기모순과 같은 논리적 함정에 빠트리는 궁극적 원인이다. 만약 실증주의적 과학관이 퍼트남이나 쿤이 언급한 인식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탐구활동을 수용한다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역사학이나 철학과 같은 인문학도, 정치, 경제, 사회학과 같은 사회과학도 과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주의의 위험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게 된다. 상대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약 상대주의가 전면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쉽게 다원주의의 형태로 바뀔 수 있으며 누구나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물론 동기와 결과는 다르다. 그러나 과학주의나 상대주의는, 적어도 배타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는, 애초부터 그 성격이 이데올로기에 가깝기 때문에 철학적인 분석에 더해 정치, 사회적인 관점에서 논구하는 것도 무방하다. 앞으로의 과학주의 비판은 <오리엔탈리즘>과 그 맥을 같이해야 한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의 종말’과 새로운 사회정책

엄 규 속*

1. 서 론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혁신경쟁과 속도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실업의 증대, 실질소득의 감소 등 소위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정보통신기술혁명은 설계, 생산, 유통 등 기업의 전 과정에서 급속한 자동화를 가능케 하였으며, 생산비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진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자동화 장비와 정보통신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반면, 대규모의 인력감축을 추진해왔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사이에 진행된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인해 250만 개의 일자리 소멸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매년 50만개씩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72~92년 사이 노동력은 15% 감소한 반면 생산성은 35%나 증가하였다¹⁾고 하니 2세기 전 산업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프롤레타리아계급을 궁핍화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기계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다. 노동계급에게는 이제 해고통지서가 발부되고 있다’는 자크 아탈리의 선언을 통해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가시화 될 법도 하다.

물론 ‘노동의 종말’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적 노동의 형태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등치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계화와 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식과 정보의 활용정도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도가 결정되고, 추상적 지식

*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한국공공정책연구소 편,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1998, 서론.

을 활용하여 상징과 정보를 분석·활용하는 상징분석직(symbolic-analytic services)의 경우 글로벌 경제를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보장받지만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소수집단에 불과하고, 노동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머지 취업집단은 저부가가치 생산의 단순 직무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소득과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갈수록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노동의 종말은 바로 대량생산에 기반 한 산업노동과 이를 기반으로 발전해온 산업자본주의와 근대적 사회정책 사이의 선순환관계의 종말을 의미하게 된다.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적 사회정책이 주된 타겟으로 삼았던 사회적 위험과 욕구(needs)에 더하여 유연화, 저출산·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집약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은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노동이 지배적이던 시기와는 구분되는 다양한 고용계약 형태의 등장은 국가-기업-노동 사이에 협응을 통해 이루어지던 사회정책적 거버넌스의 틀이 노동의 파편화 및 분산화로 인해 와해되도록 하였다. 새로운 사회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사회적 기반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의 종말 시대의 새로운 사회정책은 다양한 소수집단과 파편화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하고, 인구구조의 변동과 ‘노동의 종말’이 내포하는 위험을 사전적 또는 과정적으로 제거해야만 한다. 이는 자원을 사후적으로 배분하는 체제에서, 생성하면서 배분하는 체제로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새로운 사회정책의 단초들을 살펴볼 때 아직까지는 요원한 과제로 여겨진다.

이 글의 2절에서는 *종말 이전의 단계*로서 산업노동과 근대적 사회정책의 관계를 살펴보고, 3절에서 ‘노동의 종말’로 표현되는 사회구조적 위기가 왜 새로운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대두시키는지 알아볼 것이다. 4절에서는 위기의 해결책으로 모색된 새로운 사회정책의 단초로서 임금소득과 분리된 보편적 소득보장의 구상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이들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짚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종말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이 제3섹터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리프킨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선결요건에 대해 논구해 보려 한다.

2. 산업노동과 근대적 사회정책

일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형성하며, 정체성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넓은 의미의 노동이란 개념은 물질적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들을 포함한다. 상식적인 개념으로서 노동은 통계 자료로 처리되는 소득과 연관성이 있는 특정한 고용 상태로 간주된다. 그러나 주부들의 가사노동이나 소득을 기대하지 않는 예술작품의 창조, 지역공동체 속에서의 봉사활동 등도 물질적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인식하는 일과 노동의 영역, 그리고 그 의미들은 대부분 한 사회 속에서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온 구성물의 성격이 강하다는 알 수 있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이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조차 성인이 되면 하루의 1/3 정도는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된다. 일이 반드시 직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적 근대화과정에서 노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의 중요성은 개인과 그가 속한 가구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노동은 소득과 성취감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빈곤과 소외의 원천이 될 수도 있으며, 노동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근대적 사회정책의 기본취지라 할 수 있다.

에릭 홉스봄은 오늘날 서유럽에서 우파 정부까지 100년 전 노동자 정당들이 제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²⁾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근대적 자본주의의 기반으로 산업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사회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서유럽의 경우 집권정당의 구분을 뛰어넘어 지난 50여 년간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표상되는 복지국가의 구현을 통해 근로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홉스봄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것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대공황과 파시즘의 악몽, 그리고 공산주의의 약진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이다.

사회정책의 구현동기가 소위 산업평화의 실현과 노동자계급의 순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근대적 사회보장제도의 효시이고 독일 사회보장의 마르나 카르타라고 일컬어지는 1881년 “황제칙서”(Kaiserliche Botschaft)의 내용과 도입과정을 통해

2) 에릭 홉스봄, “노동운동의 세기”, 에릭 홉스봄 외 지금음/ 임지현 엮음, 노동의 세기. 실패한 프로젝트?, 서울, 2000. pp. 21-39.

잘 드러난다. 당시 독일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산업노동자층 형성과 이들의 도시집중, 물가인상, 노동조건 악화, 주택난 등의 사회문제를 중첩적으로 안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결사의 자유(Koalitionsfreiheit)” 허용으로 생성되기 시작한 노동자조직 및 사회주의정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계급간의 갈등이 체제전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었다. 노동자의 정치적 계급화에 대한 두려움은 당시 노동자문제(Arbeiterfrage)를 사회문제(soziale Frage)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질병의 치유(Heilung der gesellschaftlichen Krankheit)” 계획을 국가 정책적 과제로 삼은 비스마르크의 정치철학으로 귀결된다. 그는 한편으로는 1878년 사회주의자법(Sozialistengesetz)을 입법·통과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괄적인 “노동자보험정책(Arbeiterversicherungspolitik)”을 추구한다. 이 정책의 기초는 국가가 무소유계층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전 구빈 정책의 전통을 수정하면서 계승한 것이었다.³⁾ 비스마르크의 정치적 의도는 “단빵과 채찍(Zuckerbrot und Peitsche)”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듯이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운동이 노동자계급에 확산되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사회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완화시키고 군주제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비스마르크의 목적은 “지불능력이 높고, 고도의 국가 참여에 의해 성립되는 사회보험”이 당시의 산업화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 정의의 진공상태를 메울 수 있다”고 노동자를 확산시키는 것이었다.⁴⁾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자보험정책’의 동기는 체제전복을 방지하기 위해 요소요소에 국가의 개입정책을 퍼려는 것이었다. 이 정책의 대상 집단은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빈민층(politisch bedrohlichen bedürftigen)”, 즉 조직화와 갈등생성의 가능성이 있는 당시의 산업노동자들이었다.

산업화 초기의 임금노동은 시장에서의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었고, 이는 노동자개인이 실업, 산업재해, 질병 등의 발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생존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가에 따라

3) Frerich, Johannes, Martin Frey, Handbuch der Geschichte der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Band 1 : Von der vorindustriellen Zeit bis zum Ende des Dritten Reiches, München/Wien, 1996, 85-93쪽

4) Gladen, A., Geschichte der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Eine Analyse ihrer Bedingungen, Formen, Zielsetzungen und Auswirkungen, Wiesbaden, 1974, 57쪽, Frerich, Johannes, Martin Frey, 윗글, 91쪽에서 재인용.

도입과정과 유형에 일정한 편차는 존재하지만 공장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해 근대적인 대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안정적인 생산성의 유지와 확보를 위해 노동자 계층 일부와의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소위 노동 내지 고용관계의 내부화(internalization)⁵⁾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회정책의 확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산업노동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를 핵심적인 대상집단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회보장 및 서비스 제도를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유럽의 사회정책은 몇 가지 공통적 구성요소들을 갖게 된다. 국가는 핵심적 산업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처하기 쉬운 사회적 위험으로서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나가며, 가족 내지 아동수당과 같은 오늘날의 보편적인 급여의 형태도 초창기에는 핵심적인 산업노동자군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었다.

노령,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및 소득능력의 상실, 실업 및 질병에 대한 보장장치로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호한 장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사회보험제도의 보장전략은 노동 및 생산과정에서 사회적 위험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한다기보다는 위험의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을 선택할 경우 노동조건 개선의 통한 질병이나 사고의 예방은 “사업장의 자율적 운영권에 대한 침해이고, 사용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⁶⁾고 간주하여 사회정책의 전략적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회보험의 재원은 대부분 사용자와 노동자의 보험부담금으로 충당되고,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재정보조만을 하도록 하였다. 사회

5) 고용관계의 내부화는 ① 명시적인 인사규칙에 따른 행정적인 통제 ② 장기 고용의 보장 ③ 내부 경력상승기회의 제공 ④ 기업특수적 숙련의 배양 ⑤ 특정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간적인 집중 등의 특징적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다. (Barker, K. & K. Christensen (eds.), *Contingent Work: American Employment Relations in Transition*, Ithaca, 1998). 외부시장을 매개로 하는 산업자본주의 초기의 고용관계가 내부화되는 과정에서는 사업주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거래비용의 감소측면, 즉 대규모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는 포드주의적 생산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숙련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의 유동을 제한한다는 노동통제적 측면과 노동자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핵심노동자군에 속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적인 이익(유리한 사회보장제도 등)을 보장받음으로써 형성되는 시장경쟁으로부터의 제한적 보호라는 측면이 맞물리는 것으로 보인다.

6) Schmidt, Manfred G.,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Historische Entwicklung und internationaler Vergleich*, Opladen, 1998, 25-26쪽

보험제도는 사회정책의 재원형성과 급부 기반이 임금노동에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축으로 작용하였다.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위험은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정의되었고, 사회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사회보험 기여금을 통하여 충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는 사회보험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협의와 자치행정권을 통해 표현되는 사회정책 거버넌스에의 참여라는 반대급부를 제공받았다.

아울러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보장은 이전의 한시적 구호사업이나 자선사업과는 달리 아무리 빈곤한 노동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임금노동에 근거하여 적립된 보험 기여금을 현금 또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⁷⁾

국가별로 사회보장제도가 점차 확대되면서 사회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곤경에 대한 도움은 약자에 대한 “보호원칙”을 근거로 공공부조를 통해 주어지며, 여기에 가족수당 내지 아동수당 같은 범주적 급여(categorical grants) 수단들이 복지국가의 “보장원칙”에 추가되었다.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수당 및 서비스 제도에 부여되는 역할과 제도의 보편적 적용 여부, 이를 통한 탈상품화 효과에는 차이가 있지만,⁸⁾ 근대적 사회정책이 해결하고자 했던 주된 과제가 임금노동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위험의 해소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3. 노동의 종말과 근대적 사회정책 체계의 위기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기술에 의한 노동의 대체는 사회정책의 새로운 도전으로 대두하고 있다. 경기불황 또는 세계화로 인한 산업입지의 끊임없는 이동이 일자리 파괴의 원인이라 여겨지고 있지만, 이보다 더 광범위하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라고 제

7) 사회보험의 확장기에 기존의 국가 및 교회에 의한 구빈법은 그 기능이 축소되고 주변화 된다. 특히 사회정책으로서 사회보험의 우위는 빈민구호 수혜자의 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각인 되었다. Alber, Jens, Vom Armenhaus zum Wohlfahrtsstaat. Analysen zur Entwicklung der Sozialversicherung in Westeuropa, Frankfurt/New York, 1982, 26쪽, 또는 Schulte, Bernd, "Blick über die Grenzen. Der deutsche Sozialstaat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Michael Opielka, Ilona Ostner (엮음), Umbau des Sozialstaats, Essen, 1987, 109쪽 볼 것.

8) 엄규숙, “문화적인 복지사회와 복지국가”, 오토피아, 19권2호, 2004 겨울, pp. 167-186.

레미 리프킨은 주장한다.⁹⁾ 제3차 산업혁명이라 불리우는 정보화는 많은 작업과정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지능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런 변화에 대처할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진보가 가져온 생산성 향상분의 분배가 사회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새로운 첨단 기술은 수많은 사람을 불필요한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일과 여가의 새로운 균형을 조성해줄 수도 있겠지만, 기업, 주주, 최고경영자, 지식노동자에 의해 기술발전의 성과가 독점된다면 정보격차는 21세기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기업의 지도자와 주류 경제학자들은 제3차 산업혁명의 극적인 기술진보가 확산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원가를 낮추고 소비자의 수요 증대를 촉진시키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보수를 주는 새로운 하이테크산업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거나 찾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기술의 확산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과거, 기술혁명이 경제부문에서 전반적인 일자리를 위협하였을 때, 새로운 부문이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 출현”했지만 오늘날 “일자리를 잃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흡수해 줄 ‘주목할 만한’ 새로운 부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눈에 보이는 유일한 새로운 부문은 지식분야로 (.....) 소위 상징분석가 또는 지식노동자 등의 새로운 전문가들”¹⁰⁾이 일자리가 증가하는 유망한 분야이지만, 전반적인 일자리감소의 규모를 고려할 때 ‘노동의 종말’을 늦추는 효과는 미미한 것이다. 다운사이징과 리엔지니어링은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욕구보다는 고용주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며 기술확산과 더불어 사라지는 수많은 일자리는 제3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노동자가 없는 정보 사회로 전환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플러그가 끼워진 종족(the plugged-in species)’이 이제 기업들에게 말썽 많은 인간 노동자를 대신하여 생산성과 이윤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질병이나 산업재해 같은 사회적 위험이 없는 새로운 노동제 공자로 각광받게 된 것이다. 노무관리의 중심이 사람을 관리하는 것에서 기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신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생활의 편의의 이면에는 임금이 지불되는 재화와

9) 제러미 리프킨, 이영호 옮김, 노동의 종말, 서울, 2003.

10) 윗글, p. 60.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인간노동력의 존재기반이 변화한다는 사실이 숨어있으며, 이는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위험의 구조와 저변이 근대사회정책의 그것과는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새로이 등장한 사회적 위험은 전반적인 고용의 유연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돌봄노동의 수요 급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실업과 더불어 오늘날의 사회정책이 직면한 문제는 고용구조의 변화이다. 1980년대 이후 가속화된 노동의 비정규화 내지 재시장화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변화하는 기업의 노동력 관리방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수준의 내부화된 핵심인력을 유지하던 포드주의적 고용구조가 점차 “시장매개적인 고용관계에 기반하여 다양한 비정규 노동의 활용증대를 추구하는 소위 ‘탈포드주의적 고용구조’로 전환되는 경향”이 모든 산업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다.¹¹⁾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진행¹²⁾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표준모델로 삼는 기존의 사회정책의 틀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렵다는 고용지위적 특성을 갖는다.

고용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인생경로도 변화하고 있다. 한 직장에서의 평생고용이 희귀한 것이 되며, 고부가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인적자원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투자의 기간이 평균적으로 길어지고, 모든 산업화된 국가에서 평균기대여명은 높아지는데 반해서 조기퇴직 등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생산적이지 못한 중고령층 노동자의 밀어내기가 유연화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다. 노동자의 전체 인생경로 계획은 가능한 취업기간, 취업이전 및 취업이후 재교육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투자기간, 은퇴의 시점 및 그 이후 기간의 기획을 포함하여 더 이상 근대 사회정책의 사회적 시간모델 안에서는

11) 이병훈, 윤정향, “비정규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 정이환, 이병훈, 정건화, 김연명,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서울, 2003, p.41.

12) ① 노동시장에서의 존재형태 자체가 일용직, 파트타임, 호출 및 도급 근로 등 시장 수요에 민감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단속적 비정규 고용의 증가
 ② 기업이 내부화된 핵심 인력으로서 정규직고용을 축소하고 이를 임시직, 촉탁직, 단시간노동, 간접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노동으로 대체
 ③ 일반적인 고용계약의 규율 너머에 존재하는 가내노동 및 영세자영업자 같은 비공식부문 종사자 내지 독립계약사업자, 프리랜서, 상품판매원 등 특수고용형태의 비정규노동의 증가. 윗글, pp.42-44.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사회적 위험의 두 번째 요소는 저출산·고령화로 표현되는 일국 중심 사회구조 확대재생산의 위기이다. 기존의 사회정책은 인구와 사회규모의 일정한 성장을 가정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노동이 가능한 연령계층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동인구 대비 비노동인구의 비율이 증가한다면 이는 곧 노동인구의 평균적 소득에 대한 비노동인구의 평균사회보장급여비율이 노동인구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인구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사회적 급여를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비노동인구와 노동인구 사이의 불균형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떤 형태로든 세워야만 하며 이는 근대 사회정책에서 낯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위험의 세 번째 영역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산업화된 국가에서 남성가장과 전업주부로 구성된 전통적 핵가족은 더 이상 지배적인 가족 형태라 할 수 없다. 많은 가구는 적정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맞벌이를 선호하고, 또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족 속에서 성장하는 아동도 증가하고 있다. 근대적 사회정책이 정규직 노동자로서 안정된 평생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추가적 보장을 주된 과제로 삼았던 반면, 새로운 사회정책은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만 한다. 하나는 고령화 사회에서 차세대 인적자원으로서 ‘사회적 투자’의 대상인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취업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과 취업의 양립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동기는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양질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활용하게 될 자원의 대부분을 습득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교육과 재능개발을 위한 투자는 전생애 걸친 삶의 기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아동기에 적절한 지원이 불가능한 환경에 처해있다면, 조기에 개입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생에 거친 사후적인 보장보다 값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울러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인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노인 또는 아동에 대한 돌봄노동을 대체할만한 사회적 서비스 체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¹³⁾

13) Esping-Anderson, Goesta ed.,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Ch. 2-3.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 속에서 사회정책의 추진주체로서 국가는 기존의 근대적 역할의 틀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과거 노조와 기업 사이에서 보다 중간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보장재원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오던 국가들이 세계화의 압박을 이유로 정부의 적자 및 부채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를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자로서의 역할도 되도록 줄여나가는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경영의 재편에 의해 일자리를 잃는 시점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및 사회보장의 성급어지게 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자초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노동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사회정책은 임금노동이 처한 사회적 위험의 감소를 중점적 목표로 설정하고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거치면서 복지국가의 유형별 편차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적용의 보편성과 급여수준의 적정성 그리고 인생경로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욕구의 충족을 사회보장의 틀 안에 포함시켜왔다. 그러나 ‘노동의 종말’은 핵심적인 사회적 위험을 정의하는 국가-기업-노동 사이의 상징적 권력균형을 변화시킨다. 홉스봄 같은 학자는 고용지위와 상관없이 임금소득에 의존하는 노동자가 존재하고, 사회적 재화를 인간의 필요 충족을 위해 분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사회정책의 목록을 결정하는 노동중심주의는 퇴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주의를 펼쳐보인다.¹⁴⁾ 반면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 자본주의가 “고체성의 무거운 근대”로부터 “액체성의 가벼운 근대”로 옮겨가는 중이며, 무거운 근대의 특징인 자본과 노동의 상호 의존성이 가벼운 근대에서는 자본과 소비자의 결합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¹⁵⁾ 가벼운 근대에서 사회정책은 임금노동 제공자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집단을 포용하고 파편화되어 가는 소수집단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바우만은 노동중심주의를 지탱해온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의 영역을 창조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새로운 사회정책’의 이름으로 제시되는 사회보장 개혁의 청사진들이 ‘노동의 종말’의 파급효과를 모두 흡수하

14) 에릭 홉스봄, *윗글*

15) 지그문트 바우만, “노동의 대두와 몰락”, 에릭 홉스봄 외 지음/임지현 엮음, *노동의 세기. 실패한 프로젝트?* 서울, 2000, pp. 40-59.

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는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이들이 연대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정책의 새로운 거버넌스 틀 안에서 형성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

4. 새로운 사회정책의 단초

국가마다 ‘노동의 종말’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하는 사회정책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짧은 지면을 통해 이들의 효과와 적실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절에서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단초를 두 가지 영역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소득과 분리된 보편적 소득보장의 구상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은 ‘노동의 종말’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판단된다.

임금소득에 대한 보완을 주된 과제로 삼는 근대적 사회정책을 비판하면서 사회보험 위주의 보장체계를 탈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소득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크게 공공부조 개편론과 보편적 시민연금 도입이라는 사회정책의 제도적 수단을 둘러싼 주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공공부조 개편론은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의 개혁과 맞물려 있으며 다시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 (1) 진보진영은 공공부조의 개편이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확장에 기여하리라는 입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들은 임금노동중심주의에 의거한 사회보험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다는 점을 개혁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사회보험의 구성원리(임금중심주의 및 보험료-급여 상등주의)가 지속적 취업상태에 있지 못하다든지, 고임금의 일자리를 갖지 못했거나 안정된 가족관계에 의해 파생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실업의 지속에 따른 고용위기와 80년대 신빈곤(Neue Armut)의 출현이 이를 증명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은 허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발상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위험을 빈곤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로, 공공부조의 기능적 구조가 자산조사 및 필요조사에 의한 차별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빈곤층을 무

조건 공공부조의 대상으로 흡수하기보다는 이들을 위해 기존의 틀 안에서 기초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유연화하는 것이 공공부조의 부담을 덜고 이를 통해 공공부조가 원래의 목적인 특별한 긴급상황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 (2) 반면, 보수진영은 조세를 근거로 한 기초보장을 주장하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강제보험 형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험적용대상 집단의 지속적 확대는 불필요한 자유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며, 국가 조세수입의 지속적 증가 및 이를 통해 향상된 자가보장의 경제적 여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가의 월권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집단적 위험보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공공부조를 위주로 한 국가주도의 기초보장 도입을 주장하는데, 이들의 기초보장론은 기초적 수준만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추가적으로 개인적 준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편적 시민권에 근거한 기초소득보장은 모든 사람이 생존을 담보할만한 소득을 노동시장에서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시민연금론은 보편적 최소소득모델과 욕구상응형 통합적 기초보장모델로 나누어진다.

- (1) 일반적 내지 보편적 최소소득 모델은 피용자의 지위가 아니라 시민의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산조사 및 청구권 미달에 의한 배제가 없는 것이 이 모델의 특징이다. 소득세 내지 시민수당의 개념으로 제시되는 이 같은 기초소득의 유형은 다시 좌파-대안적 유형과 경제자유주의적 모델로 나누어볼 수 있다. 좌파-대안적 유형은 임금노동과 사회보장의 연결고리를 완화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사회적 부에 대한 시민의 참여 권리는 국가보장적 급여를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기초보장은 기존의 사회보험과 보완관계로서 사회생활에 취업소득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적절한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자유주의적 모델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보장 기여를 필수불가결한 최소 수준으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 개인들의 사적보험계약 체결 및 재산형성 여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기초보장은 기존의 사회보험에 대

한 대체관계이어야 하며, 보장의 수준도 현재 공적부조 수준 내지 그 이하이어야 한다.

- (2) 욕구상응형 통합적 기초보장(bedarfsbezogene integrierte Grundsicherung)모델은 기존의 입장들을 절충한 모델이라 하겠다. 기존 사회보험체계 안에 기초보장체계를 도입하고, 사회보험의 급여체계 안에 최저급여의 토대를 두며(benefit ceiling), 기존의 조세 및 사회보장의 각종 기초보장 관련 규정들과 조화를 이루고 통합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이 모델은 기존의 사회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원칙과 보장원칙사이의 비중을 조정하게 된다. 기여상응주의와 보험원칙 대신에 빈곤 및 사회적 배제에 대한 보호, 즉 보장원칙에 강조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이 모델을 수용하게 되면 사회보험 수급대상의 확대 및 가입 대상의 확대를 위해 초단시간 취업자의 범위를 하향조정하고, 비취업노동(예컨대 자녀양육노동)에 대한 보험적용기간의 인정 등의 조치를 병행하는 등 적용대상 위험의 확대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도하게 된다. 이 모델의 장점은 자산조사를 고수하여, 기초보장요소를 보충원칙에 종속시킴으로써 취업소득 및 사회보험급여의 우선성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즉, 보충적 성격 및 자산조사를 통해 이 모델은 다른 모델들에 비해 재정적 부담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¹⁶⁾

80년대 중반 이후 집중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초소득 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잦은 속의 태풍에 머문 경향이 있다. 정파를 막론하고 급진적 소득보장제도 변혁의 사회적 필요성은 공감되었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기초보장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조직적, 행정적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일 뿐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 최소한 공공부조 수준으로라도 전체 시민에게 기초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세금 부담을 초래하게 됨이 자명하였다. 급진적인 대안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기초보장의 수준을 상승시킬 경우 부담은 더 커지며, 이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이다.¹⁷⁾ 아울러 평등한 참여 및 사회적 자원의 향유

16) Josef Schmid, Wohlfahrtsstaaten im Vergleich. Soziale Sicherungssysteme in Europa : Organisation, Finanzierung, Leistungen und Probleme, Opladen, 1996

17) Kaltenborn, Bruno, “Grundsicherungskonzepte von Parteien und Verbänden. Übersicht

라는 가치를 내걸고 전면적으로 기초소득보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정책의 추진주체들이 개혁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충분한 합의를 이루어야 했지만, 사회정책 거버넌스 주체들의 다양화는 이러한 합의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노동의 종말’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정책의 시도는 증대하는 유연성과 노동의 불안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정책과의 협응 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도는 한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에 부응하여 노동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근로유인 강화를 통해 저임금이라 할지라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구현된다. 어느쪽에 강조점이 놓여지는가에 따라 노동자는 ‘사회보장이 동반되는 유연성(flexicurity)’을 경험할 수도 강제적 근로유인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

임금을 획득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가 시민적 권리의 효과적 구현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초점이 더 많은 일자리의 제공 또는 임금확보의 안정성도모라는 형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유연화된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가능성을 유지시키면서 개별노동자에게 제공해주고자 하는 노력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강화를 통한 직업훈련·교육 및 상담, 다양한 전직지원 및 훈련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노력은 가능하다면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는 집단의 규모를 줄이고, 잠재적으로 실업함정이나 빈곤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능동화(activation)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¹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전에 고용을 최대화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주된 과제로 대두되며, 이를 위해서는 저임금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다.¹⁹⁾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서 근로소득 보전제체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예컨대 EITC)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세체계의

und Bewertung”,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49/9, 1998

18) Esping-Andersen, Gøsta, Duncan Gallie, Anton Hemerijck, John Myles,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2002. ch. 6.

19)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Brussels, 25 November 2002, Fight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common objectives for the second round of National Action Plans - Endorsement, 14164/1/02 REV 1, http://europa.eu.int/comm/employment_social.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Insertion Strategies as a Tool for Social Inclusion, Conference Summary, Toledo, 17-18 June, 2002. Brussels, 2003.

한 부분으로 운영되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 non-wastable tax credit)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세에 기반한 소득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비록 저임금일지라도 노동시장에 대한 접촉을 지속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노동의 종말’시대의 사회정책으로서 ‘사회보장이 동반되는 유연성(flexicurity)’이나 소득지원을 통한 근로유인이 갖는 의미는 사회정책의 중심축이 사회적 위험의 발생지대인 노동시장 안으로 옮겨졌다는 데에 있다. 비록 어떤 형태로든 고용기회가 희박한 사람들에게 사회보장 또는 조세제도를 통해서 소득보전을 해주는 것이 이들을 ‘비경제활동의 함정(inactivity trap)’에서 ‘저숙련 함정(low-skill trap)’으로 이동시켰을 뿐이라는 비판이 존재할지라도²⁰⁾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발생하는 과정에서 대처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근대적 사회정책과 접근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5. 맺는 글: 국가 대신 제3섹터인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감소는 국가 차원의 사회정책의 보장성 약화로 이어진다. 리프킨은 제3차 산업혁명이 근대적 사회계약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면서 기술적 희생의 충격을 완충시키기 위한 대안적 선택지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가진 제3섹터(the third sector)의 창출 및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식 경제에 있어서의 임금소득에 종속된 노동행위의 감소는 일을 근거로 한 정체감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시장 경제가 수반하는 경쟁적 가치에 대한 충성심의 감소와 탈시장 시대라는 대안적인 비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리프킨은 전망한다. 제3섹터가 활성화된 ‘노동의 종말’시대는 시장의 주변이 아니라 시장의 생산성을 토대로 존재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적 제도로서 예컨대 자원 봉사에 대한 그림자 임금을 제도화하거나, 공동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임금을 제공해서 시장부문에 취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여가 시간을 제3부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등을 주도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0) Esping-Andersen, Gøsta, Duncan Gallie, Anton Hemerijck, John Myles, 2002, 윗글.

전세계적으로 제3섹터에 고용된 인구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이 노동의 종말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모두 흡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제3섹터는 앞서 살펴본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을 해소하는 동시에 4절에서 살펴본 새로운 사회정책의 단초들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야 소위 21세기형 복지혼합(welfare mix)의 한 부문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정책은 제3섹터를 중심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젠더 그리고 다양한 소수집단의 이해관계를 아우르면서 사회통합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때에만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적 사회정책이 지속적 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국가-노동-자본 사이의 삼자적 협의를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사회정책은 보다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사회적 위험 해소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하며, 국가는 조정자, 복지제공자, 분배관정사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복지 및 노동의 생산자 및 제3섹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복지혼합의 조성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섹터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지 결코 새로운 사회정책 그 자체라 할 수는 없다.

국가체제 배타성의 극복 : 주권과 안보개념을 중심으로

홍기준*

I. 서론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할 당위적인 요청사회를 의미하는 ‘오토피아’ 평화모델은 ‘지구협동사회’(Global Cooperation Society)를 넘어서 ‘지구공동사회’(Global Common Society)의 구현을 하나의 공동목표로 제시하고 있다.¹⁾ 이러한 지구적 차원의 협동을 통한 지구공동체 건설은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국가체제의 실패, 즉 배타성과 패권주의로 요약되는 패러독스와 딜레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국가체제의 배타성과 패권주의는 근대적 주권개념과 안보개념이 배태하고 있는 이항대립적 모순구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형성되기 시작한 주권개념은 국가권력의 절대적 지배권으로 인하여 국가 상호간에 본원적으로 배타성(exclusivism)을 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가체제의 배타성을 야기하는 주권개념은 두 가지의 구조적 층위에서 설명된다. 하나는 국내적으로 국가적 법질서를 관철하기 위한 대내주권(internal sovereignty)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배타적 긴장관계를 야기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국제적으로 국가의 안위를 담보하기 위한 대외주권(external sovereignty)으로서 ‘무정부적’(anarchic) 생존경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배타적, 패권적 국제관계를 형

*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1) 조영식, 『오토피아』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6).

성하게 된다. 한편 주권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안보개념이다. 안보는 국가가 주권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주권과 안보개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주권이 없다면 국가안보를 유지할 수 없고 국가안보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가주권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를 추구하게 되고 이 결과 국제관계는 긴장과 폭력을 수반한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의 의식 내에 고착되어 있는 국가체제의 영속적 이미지는 흔들리고 있고 국제체제의 정당성은 도전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몇 가지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즉 근대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형성된 주권개념이 과연 항구불변의 진리로써 변함없이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요구되는 탈근대적 국제관계를 위한 주권과 안보개념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거대담론에 하나의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국가체제의 배타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주권과 안보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이항대립적 패러독스와 딜레마를 분석한다. 둘째, 오늘날 확고한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는 주권과 안보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주권과 안보개념에 대한 계보학적 해석을 시도한다. 셋째,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국가체제의 배타성을 탈피하기 위한 탈근대적 국제관계의 선행조건으로 주권과 안보개념의 재정립 방향을 제시한다.

II. 국가체제 배타성의 원인

1. 근대 주권개념의 패러독스

근대적 의미의 주권개념은 17세기의 유럽에서 비롯되었던 서구식 근대국가의 형성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개별국가에 부여된 절대적인 주권은 1648년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Peace of Westphalia)의 체결과 함께 태동한 유럽 국가의 등장을 전제로 한다. 즉 근대적 의미의 주권개념은 ‘30년 전쟁’(1618-1648)을 종결짓기 위하여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의 결과로 등장한 근대

국가가 대내적으로는 국가적 법질서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경계를 방어하기 위해 경쟁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²⁾

이와 같은 주권개념의 이론적 기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두 주류의 지적 전통을 개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국가주권(state sovereignty)의 절대주의(absolutism)를 강조하는 홉스(Thomas Hobbes)의 통치자 중심의 주권론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을 강조하는 로크(John Locke)의 피치자 중심의 주권론이다.³⁾

홉스는 인간성과 자연상태에 대한 가정으로부터 국가권력의 절대성이 주권론이라는 형태로 표출된다고 주장한다.⁴⁾ 즉 공통의 권력이나 권위가 결여되어 있는 자연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war of all against all)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런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계약을 맺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 사이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국가를 설립하기로 하는 계약

- 2) 근대 주권개념의 기원과 관련하여 대체로 세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 첫째는 르네상스 가설(Renaissance hypothesis)이다. 근대 국가체제의 원류는 외교적 의사소통, 과학화 그리고 복지의 독점화로 표상되는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웨스트팔리아 가설(Westphalian hypothesis)이다. 국제체제는 30년 전쟁의 혼란 속에서 형성되었던 유럽국가와 그들 상호간의 주권원칙이 인정되면서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근대 가설(Modernity hypothesis)이다. 근대 국가체제는 유럽에서 정치생활의 지배적인 형태로서 민족국가가 등장하여 국민주권이 확산되고 민족주의가 국제화의 원인·결과로 작용하면서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Jens Bartelson, *A genealogy of sovereign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 85-86. 웨스트팔리아 조약의 근대성 기원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러기(John Ferard Ruggie)는 30년 종교전쟁을 종식시킨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종교적 권위에서 독립된 국제정치의 영역을 확립하였다고 본다. 반면 힌슬리(F. H. Hinsley)는 유럽과 국제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주목하여 웨스트팔리아 조약의 근대성을 부정하며, 서구 국제체제의 본질적 전환은 18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19세기 초반에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는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1642년의 종교적 구획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영토적 지배세력이 종교를 강제할 권한을 오히려 제한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의 견해는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근대적 국제체제의 기원으로 보는 것은 국제관계학의 비역사성이 배태한 ‘신화’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이해정, “웨스트팔리아와 국제관계의 근대성: 러기의 비판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2집 2호, 2002, pp. 27-44 참조.
- 3) 이에 대한 상세한 논거는 오영달, “주권과 인권에 대한 홉스와 로크이론의 비교연구”, 『평화연구』 제10호, 2001, pp. 143-167 참조.
- 4) Thomas Hobbes, *Leviathan* (ed.), Richard E. Flatman and David Johnston (New York: W.W. Norton, 1997), pp. 96-100.

이 발생하게 되고, 한 ‘사람’(Man)에게 위임된 통치권은 일방적으로 행사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주권은 결과적으로 절대성, 최종성, 불가분리성, 대외적인 독립과 평등의 특징을 갖게 된다.

한편 로크는 소위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을 강조함으로써 홉스와 구별된다. 로크 역시 국가의 성립을 자연상태로부터 설명하고 있다. 자연상태란 이성의 법칙인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 상태로서, 평등한 상태이며, 거기에는 모든 권력과 지배권이 상호적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일이 없다고 본다.⁵⁾ 또한 인간은 자신에 대하여 절대적 주권자이며 다른 인간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존재이다. 그러나 자연상태 속에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매우 불확실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당할 수 있는 위험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리를 일부 양도하여 공통의 권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계약을 통해서 형성된 국가는 각 개인의 인권을 내외의 침략자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각자가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리를 정치사회에 양도하여 하나의 공통된 정치권력을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로크는 국가의 존재목적이 그가 자연권이라 부르는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보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부의 권력은 공공선(public good)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되어서는 안되며, 사람들의 신탁에 반하여 행동할 때는 국민이 궁극적 최고권력의 소재처로서 판단자가 된다고 주장하였다.⁶⁾ 이와 같은 로크의 주권론은 홉스와 달리 주권의 절대성이나 최종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더 중요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⁷⁾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권에 대한 다른 해석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각각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론적 전통으로 이어졌다. 홉스의 통치자 중심의 주권개념은 구조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국제관계이론의 기초가 되어 전쟁이나 세력균형을 통해 반복되는 권력정치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⁸⁾ 즉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

5) John Locke,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 Oxford, 1976, 2장 6절.

6)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 Peter Lasl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7) 오영달, op. cit., p. 160.

8)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

제관계의 단위로서 주권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주권국가로 구성된 국제체제를 무정부상태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무정부상태에서 주권국가들은 상호 배타적인 영토적 경계 안에서 절대적 권위를 주장함으로써 패권적 경쟁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로크의 피치자 중심의 주권개념을 계승한 자유주의적 관점은 개인이 자의적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신념 하에 제한된 정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앞의 평등, 시민사회에서의 자유로운 경쟁, 시장자본주의와 같은 가치를 지향한다.⁹⁾

주권의 개념은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다양하게 해석되었고 다양한 이론이 등장하였다. 예컨대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결과물인 18세기 전제적 주권개념은 프랑스혁명이후 자유, 평등, 박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개념으로 대체되었고 나폴레옹이후 1815년의 비엔나 체제는 귀족정에 입각한 주권개념을 등장시켰다. 또한 1차 대전의 결과인 베르사유 체제는 국가들의 자결권, 비침략성, 국제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주권개념을 태동시켰다.¹⁰⁾

위와 같이 주권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른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편적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권이란 “어떤 정치공동체에 존재하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라고 이해된다.¹¹⁾ 이러한 의미의 주권은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의 양면성을 가짐으로 해서 윤리적 패러독스를 수반한다. 대내적 주권은 개별국가에게 국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하는 독점적 지배의 권한을 부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내적 주권은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능력을 포함한다. 요컨대 대내적 주권은 정치공동체의 대내에 존재하는 위계적(hierarchical) 권위 질서의 정점을 표현한다. 따라서 국가가 대내적 주권을 강조하면 할수록 구성원인 개인의 인권은 침해당할 소지가 높아진다. 반면 대외적 주권은 국제정치 차원에서 부여되는 국가로서의 합법적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불간섭의 원칙(principle of non-intervention)으로 표현된다. 대외적 주권은 결국 국제체제의 무정부적(anarchic) 특성으로 말미암아 국가간에 안보딜레마

9) Scott Burchill, "Liberalism",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Deakin University Press, 1996), p. 29.

10) 박인휘, “주권과 글로벌 안보: 세계화시대 주권과 안보의 개념적 재구성”, 『한국정치학회보』, 35집 3호, p. 459.

11) F. H. Hinsley, *Sovereign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 26.

(security dilemma)를 야기하는 구조적 모순을 배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대외적 주권을 추구하면 할수록 국제체제 내에 배타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근대적 주권개념은 본질적으로 대내적 위계질서(hierarchy)와 대외적 무정부상태(anarchy)의 이항대립적 패러독스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국가안보개념의 패러독스

주권과 안보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적 상호의존성을 지닌다.¹²⁾ 주권국가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상태에서 자국의 독립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안보를 추구하게 된다. 여기서 ‘중앙정부의 부재’를 의미하는 무정부상태는 안보개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조건을 구성한다. 첫째, 국가는 질서의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최상위의 지배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안보대상(referent object of security)이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가 우선적 정책과제로 등장한다. 둘째, 국가안보는 주권국가들 간에 작용하는 고도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결정된다. 또한 국내적 안보부재(insecurity)보다는 외적 위협에 의해 국가안보의 체계 결정된다. 셋째, 안보는 결코 절대적 개념이 아니며 상대적 개념이다.¹³⁾

위와 같은 속성을 가진 안보개념에서 연유하는 패러독스는 국가와 개인간의 불가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즉 국가의 권력이 국가의 존재이유인 개인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은 국가의 기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최소국가 (minimal state)와 최대국가 (maximal state)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뉘어 진다.¹⁴⁾

최소국가적 관점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행위는 통치의 대상인 시민들의 동의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본다.¹⁵⁾ 이런 관점을 취할 경우 국가안보는 개인적 시민들의 이해(interests)에서 연유하는 가치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에 이해

12) 박인휘, op. cit., p. 460.

13) Barry Buzan, *People, States and Fear* (Boulder, CO: Lynne Rienner, 1991), p. 23.

14) *Ibid.*, pp. 39-43.

15) 최소국가론을 옹호하는 대표적 학자로는 철저한 자유존중주의자로 알려진 노지크(Robert Nozick)가 있다. 그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커다란 경계심을 보인다.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Oxford: Basil Blackwell, 1974).

의 불일치 수준이 낮다. 국가는 내치와 국방의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사용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개인안보 간에 과도한 긴장상태는 초래되지 않는다.

반면 최대국가적 관점은 국가가 그 구성 요소들의 총합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국가가 자체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¹⁶⁾ 이런 관점에서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보다 상위에 위치해 있는 집합적 실체이다. 따라서 국가안보가 개인안보보다 우선시 된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간의 이해의 불일치 수준이 매우 높다. 최대국가에 있어서 개인들은 국가에 자신의 안보를 의존하게 되나 동시에 국가는 개인의 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개인안보는 심각한 긴장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안보와 개인안보 사이에는 모순적 양면성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개인들은 국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많은 위협에 노출된다. 이러한 위협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¹⁷⁾ 첫째는 국내법의 입법과 강제적 집행의 과정에서 초래되는 위협, 또는 공공선을 명분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자행되는 국가의 정치적 혹은 행정적 조치이다.¹⁸⁾ 둘째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무질서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테러와 같은 폭력이 발생하게 되며 종종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초래하게 된다. 셋째, 국가가 추구하는 외교안보정책으로부터 비롯되는 위협이다. 국가는 외부의 개입과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교안보정책을 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안보는 위협을 받는 것이다. 예컨대 핵억제정책은 국가안보와 개인안보의 모순적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외교안보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70-80년대에 인권이 안보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인권정책은 국가안보와 개인안보의 갈등구조에서 최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16) 최대국가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트레이츠크 (Heinrich von Treitschke)가 있다. Heinrich von Treitschke, *Politics*, reprinted in Carl Cohen (ed.),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The Theoretical Foundation* (New York: Random House, 1972, 2nd edn), pp. 282-4.

17) *Ibid.* pp. 44-50.

18) 갈통(Johan Galtung)은 이것을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라 부른 바 있다.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 (1969), pp. 166-91.

한편 지나친 개인안보의 추구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테러리스트집단, 분리주의자, 혁명세력 등에 의해 추구되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안보의 추구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주게 된다. 또한 시민들에 의해 동원되는 정치적 압력은 국가안보의 정책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정치에 있어서 국가안보와 개인안보 간에 존재하는 패러독스는 항구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것은 오늘날의 국제체제 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모순구조를 완전히 해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가안보 (state security)가 국가와 민족이 동일시되는 민족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의미할 때 민족은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이념으로서 작용하게 되고 국가주권은 국제체제라는 무정부사회의 중심적 이념으로 작용하게 되어 국제체제의 모순구조는 심화된다.

3. 국제체제의 패권주의와 딜레마

국가주권과 국가안보의 개념 속에 내재해 있는 이항대립적 모순은 현실적으로 주권국가들 사이의 배타성으로 나타난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에서 배타적 주권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을 위한 패권적 안보경쟁에 휘말리게 된다. 이러한 주권국가들 사이의 패권주의에서 군사력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아이로니컬하게도 군사력 자체가 곧 개별 국가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체제의 질서유지에 주요 위협이 되기도 한다.¹⁹⁾ 이러한 국제체제의 패권주의는 방위딜레마(defence dilemma)와 권력·안보딜레마(power-security dilemma)에 의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우선 방위딜레마는 주권국가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를 추구할 목적으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다. 즉 국가방위를 목적으로 개발하고 배치한 군사적 수단이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방위딜레마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어느 국가의 정치·경제적 이익이 군사적 수단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공격용 무기가 방위용 무기에 비

19) Robert E. Osgood and Robert W. Tucker, *Force, Order and Justi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7), p. 32.

해 월등이 우월한 때 방위용 무기는 안보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셋째, 탄도미사일방어체계 (ballistic missile defence system)와 같이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적 수단이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손상을 야기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방위딜레마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핵억지 체계이다. 핵으로 무장한 두 국가가 적대적 관계로 대치하고 있을 경우 유일한 ‘방위’정책은 ‘상호간의 확실한 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뿐이다. 즉 전쟁을 막기 위한 핵 억지정책은 신뢰할만한 종말론적 파괴위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개인안보는 심각한 불협화음을 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기자체가 본연의 안보목적에서 이탈하게 된다.

위와 같이 국가방위와 국가안보간의 모순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항구적인 성격을 띤다.²⁰⁾ 첫째, 무기분야에서의 기술적 진보의 불가피성(imperativeness)이다. 기술은 어떠한 윤리적 문제와 무관하게 계속하여 자기증식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국가방위의 제도적 고착성이다. 군산복합체의 예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군사력은 제도적으로 너무 깊이 구조화되어 있어서 쉽게 변화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가 국내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에 의존하는 한 방위딜레마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집단 방위/안보체제 내에서 조차 국가방위와 국가안보간의 모순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권국가들 간의 배타적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크기 때문이다.

한편 방위딜레마가 군사력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반면 권력안보딜레마는 주권국가들이 권력과 안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현상유지세력과 현상변경세력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영합적 권력투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권력투쟁 모델이 체제 내에서 안보이슈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국제관계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면 권력투쟁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만일 대부분의 국가가 현상유지세력일 경우 안보투쟁 모델은 국가간의 갈등을 설명하는 이론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현실은 이론보다는 훨씬 복잡하며 권력모델과 안보모델은 분리되어 설명되기 어려운 단일한 정치현상의 성격을 띤다. 예컨대 현상유지세력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존

20) Barry Buzan, *op. cit.*, pp. 168-169.

의 우위를 계속해서 점하려 하고 현상변경세력이 이를 타파하려 한다면 현실주의의 이분법적 권력·안보 모델은 그 개념적 경계선이 모호해 진다.

국제관계의 실제에서 권력·안보딜레마는 현상유지세력 (status quo)과 현상변경세력 (revisionist)간에 발생하는 권력·안보 추구하고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로 인한 군사역학(military dynamics)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야기된다. 현상유지세력은 안보를 체제유지와 체제 내에서 지위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안보는 보통 안정(stability)과 동일시되며 국가안보정책의 슬로건이 된다.²¹⁾ 한편 현상변경세력은 안보를 체제를 변경하고 체제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하는 권력추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안정은 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인식되고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다. 현상변경세력에 의한 권력추구는 현상유지세력에게 주요 안보위협이 된다.

이러한 현상유지세력과 현상변경세력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권력추구와 안보추구의 개념적 구별은 실제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과 군사역학적 요소가 가미됨으로 해서 더욱 어렵게 된다. 군사역학은 군사적 능력(capabilities)과 군사적 의도(intentions)의 복합적 작용으로 나타난다. 군사적 능력이 군사적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상대 국가에 보내고자 하는 안보신호는 오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미국에 의한 핵무기 개발계획은 독일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할 것을 우려하여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력·안보딜레마는 방위딜레마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군비경쟁(arms race)을 촉발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위딜레마와 권력·안보딜레마는 항구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체제의 배타성을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체제 내에서 패권주의와 결합하여 세계평화를 위협하게 된다. 결국 근대국가의 역사적 형성과정에서 배태되었던 국가주권은 필연적으로 국가안보를 추구하고 안보개념 속에 내포된 딜레마는 국제체제의 패권주의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순구조 속에서 개인은 해체·분산되어 타자화되었던 것이다.

21) E.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London: Macmillan, 1946, 2nd edn), p. 105.

III. 탈근대적 국제관계의 모색

오늘날 세계화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됨에 따라 근대적 주권과 안보개념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민족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진행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작용은 현대 정치활동의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를 촉진하고 있다. 세계화 현상은 국내와 국제영역 간의 회색지대에 침투하여 안과 밖, 지역과 지구의 경계를 무너트리고 있다.²²⁾ 워커(R. B. J. Walker)에 의하면 세계화가 수반하는 시공적 변화는 기존의 국가주권 원칙과 상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주권을 현대 정치생활을 구성하는 유일의 혹은 최선의 원리라고 보는 견해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현대 정치생활은 안과 밖을 구별하는 이항적 대립구조로 이해될 필요가 없으며, 정체성이 반듯이 배타성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²³⁾ 이러한 맥락에서 주권국가의 패러다임을 초월하는 탈근대적 국제관계의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려있는 것이다.

탈근대적 국제관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준 즉, 불가분성(indivisibility), 구별성(distinctness), 연속성(continuity)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²⁴⁾ 즉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위가 부분으로 나뉘어 질 수 없는 불가분성, 국내영역과 국제영역의 구별성, 그리고 시공적 연속성이 존속되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는 국가정체성의 이러한 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점과 관련하여 국제관계론에서 몇 가지 상반되는 논쟁이 존재한다. 우선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지적 전통을 두고 있는 현실주의 학파는 국가를 주어진 존재로 보고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준을 초역사적 상수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주권과 국가안보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써 근대국가에 정통성을 제공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주의적 관점을 고수할 경우 탈근대적 국제관계의 논의는 국가주권론으로의 순환론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22) John Gerard Ruggie,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1 (1993), pp. 139-174.

23) R. B. J. Walker, *Inside/Outside: International Relations as Polit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 155.

24) Jens Bartelson, "Second Nature: Is the State Identical with Itself?",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4(3), pp. 295-326.

이와 같은 현실주의적 견해를 비판하고 나선 구성주의자(constructivist)들은 국가를 구조적 맥락 혹은 역사적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구성주의는 국가를 행동양식이 제도화된 실체로 파악하며 주권은 이미 형성된 국가의 속성이 아니라 국제적 맥락 속에서 나타난 맹아적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 본다.²⁵⁾ 구성주의는 또한 국가의 이념과 제도가 상호적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의 행위에 의해 구성된 간주관적(intersubjective) 실체 이외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준, 즉 불가분성, 구별성, 연속성은 국가의 초역사적 조건이 아니라 구조와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주의는 국가가 소멸되거나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다른 형태로 교체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²⁶⁾

마지막으로 해체주의자들은 국가정체성이 본질적이거나 혹은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해체주의자들은 국가정체성이 국제관계 담론의 우연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본다.²⁷⁾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주권은 정치공동체를 구성하고 권위의 존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한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²⁸⁾ 이러한 해체주의자들의 문제점은 근대국가 해체이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체주의자들은 근대적 국제관계를 지배해 온 국가권위의 계약론적 정당화와 ‘자연상태’의 개념적 허구성을 계보학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권과 안보개념의 계보학적 통찰을 통하여 탈근대적 국제관계를 위한 주권과 안보개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5) Alexander Wen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2), p. 412.

26) Alexander Wen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2), p. 391.

27) R. K. Ashley, "Living on Border Lines: Man, Poststructuralism, and War", in J. Der Derian and M. J. Shapiro (eds), *International/Intertextual Relations: Post-modern Readings of World Politics*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9), p. 406.

28) R. B. J. Walker, *op. cit.*, p. 164.

1. 주권의 계보학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오늘날 당연시 되고 있는 신념과 가치가 근대라는 특정한 시대의 지식을 통해 생산된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해체주의라는 새로운 사유방식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해체는 단순한 파괴를 뜻하지 않고, 계몽사상과 근대성에 의해 구조된 합리성의 이념과 보편적 이성애의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서구의 경험 체계와 세계관을 통어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를 해명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푸코는 계보학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지식과 권력이 맺는 상호 상생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그 관계를 통해 주체가 구성되는 과정을 드러내어 진리와 주체에 대한 근대의 신념을 해체하고자 시도하였다. 그의 계보학은 전통적 역사서술이 추구하였던 고정된 본질, 필연, 통일성을 폐기하고 복잡성과 분산, 무수한 개별자, 세부, 이탈에 주목하였다. 그는 역사를 내재적인 목적론을 펼쳐가는 과정이 아니라 상이한 권력들이 자신의 지배체계를 부과하기 위한 끊임없이 계속되는 지배의 유희라는 관점에서 본다.²⁹⁾

그에게 있어서 권력은 어떤 대상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기능을 넘어 사회 구조 전체를 관류하고 있는 생산적 그물망으로 이해한다. 푸코는 권력이 단순히 부정적인 힘으로서만 우리에게 강요되지 않고, 사물들을 생산하며 쾌락을 산출하고 지식과 담론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본다.³⁰⁾ 권력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기능 때문에 우리가 은연중에 그 앞에 복속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력의 편재성이다. 즉 권력관계는 모든 사회적 관계 안에 이미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어하려는 유동적인 관계상황이 곧 권력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국가가 권력의 핵심이라는 명제를 거부한다. 권력관계는 그 특수한 관계적 특성 때문에 국가보다 미세한 수준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¹⁾

29) M. Foucault, "Nietzsche, Genealogy, History", in M. T. Gibbons (eds), *Interpreting Politics*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7), p. 228.

30) M.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R. Hurley 옮김 (New York: Vintage, 1978), p. 93.

31) 윤평중,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서울: 교보문고, 1992), p. 167.

푸코는 계보학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기 보다는 진위를 구별하도록 하는 담론(discourse)의 규칙들과 그 진리에 고유한 권력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에 의하면 진리는 발견되고 수용되어야 할 일련의 참된 명제가 아니고, 참과 거짓, 정상과 비정상이 구별되면서 권력의 특수한 효과가 참과 정상적인 것으로 집중되게끔 만드는 한 무리의 규칙을 지칭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사회는 나름대로의 진리의 체계를 지니고 있다. 권력이 행사되는 모든 지점은 동시에 지식이 형성되는 장소이며 모든 지식은 권력의 행사를 보장하여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행해지는 것과 말하여지는 것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³²⁾

요컨대 푸코의 계보학은 각 시대에 보편적으로 당연시 되는 개념이 그 시대에 특유한 권력-지식 연계의 생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고 있는 삶의 체계나 지식의 형태를 통해 은밀히 효과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권력의 자기정당화를 폭로하고자 하는 것이다.

푸코의 계보학적 방법론을 원용하여 주권의 역사를 연구한 바텔슨 (Jens Bartelson)은 주권과 지식의 역사적 관계를 르네상스(Renaissance), 고전시대(Classical Age), 근대(Modernity)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³³⁾ 이러한 시대구분은 각 시대 사이에 중요한 인식론적 변화가 존재하였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이러한 계보학적 해석을 통하여 주권개념의 역사성, 특수성, 우연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르네상스 시기는 근대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으로 주권개념이 도입되기 전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국가와 주권의 원초적 개념의 맹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르네상스가 도래하기 전 중세 기독교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가 인간의 정치·사회적 존재성을 지배하는 불가분의 개체로 이해되었고, 세속적 권위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편만했던 기독교적 가치는 예정조화(preordained and harmonious)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변의 위계질서와 통치체제의 단일성 및 통일성으로 구체화 되었다. 사회전반의 질서유지를 위한 절대적 권위의 기원은 신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원초적 주권개념을 신화적 주권

32) M. Foucault, "Power and Norms: Notes", in M. Morris and P. Patton (eds), *Power, Truth, Strategy* (Sydney: Feral Publications, 1979), p. 62.

33) Jens Bartelson, *op. cit.* p. 84.

(mytho-sovereignty)라 명명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주권의 계보학은 바로 중세 전반에 걸쳐 지속되었던 교회권력과 세속권력과의 간단없는 투쟁의 기록이다.

그러나 12-13세기 동안에 로마법 사상이 주권에 관한 신학적 담론에 침투하면서 기독교적 패러다임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법이 신과 왕의 중재자로서 인식되었던 그리스도의 이중적 주체성을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왕이 법과 정의의 구현자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당시 권력과 지식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³⁴⁾ 첫째, 당시 지식은 교회에 의해 독점되었다. 교황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는 어떠한 텍스트도 지식으로서 인정되지 못하였다. 둘째, 지식의 전파와 재생산을 위해 유추(analogy)와 비유적 기법이 동원되었다. 즉 천상의 질서와 지상의 질서는 유추와 비유를 통하여 연계되었던 것이다. 셋째, 유추와 비유에 기초한 지식이 모방적 통치 패러다임의 정당성을 확대 재생산하였다면, 객관식이나 법정의 입장절차와 같은 의식적 장치를 통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보편주의적 질서에서 일반국가론이 태동한 것은 시간개념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어거스틴(Saint Augustine)은 과거를 기억 속에, 현재를 시각 속에, 미래를 기대 속에서만 존재하는 관념이라고 봄으로써 시간개념을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주관적 차원으로 전이시켰다. 이러한 주체의 제한성을 전제로 한 일시적 시간개념은 신의 영원성을 전제로 한 영속적 시간개념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간개념의 변화는 국가이론의 탄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³⁵⁾ 첫째, 정체(body politic)가 통치자의 존재와 분리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정체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유한한 통치자의 생명을 초월하여 계속되는 어떤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통치와 권위의 상징, 개념, 휘장들은 탈인격화 되었고 ‘비인격적 왕관’(impersonal Crown)의 의미가 태동되었던 것이다. 정체가 시간적으로 지속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지속적인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영토(territory)의 개념과 결부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시간이 반복되는 천체와 자연현상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측량 가능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정치적 지식도 이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즉 시간이 반복된다면 역사도 반복되는 것이며

34) *Ibid.*, pp. 93-95.

35) Jens Bartelson, *op. cit.*, pp. 97-101.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역사서술과 정치논쟁에서 과거의 사례(exempla)는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중세후기와 르네상스의 맥락에서 과거의 사례는 정치적 지식의 중요한 요체를 구성하게 된다. 셋째, 국가가 영원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제로서 인식될 때 국가 외부에 있는 것은 일반국가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적 지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안’과 ‘밖’의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체제의 배타성을 규명하는데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국가의 ‘안’과 ‘밖’의 구분은 ‘단일의 권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단일의 권위가 해적과 같은 외부의 적에 의한 위협을 막는데 더욱 용이하다는 인식에 도달함으로써 국가의 ‘대외’(external)개념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형적 주권(proto-sovereignty)의 형성과정에서 출현한 타자(Otherness)의 개념은 해적에 관한 담론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16세기 초기에 이르러 일반국가론은 새로운 주권이론으로 대체된다. 고전시대의 초기의 주권개념은 새로운 유형의 지식과 구조적으로 결합한다.³⁶⁾ 이 당시의 주권개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고전적 주권은 개별화의 원칙(principle of individuation)에 기초한다. 고전적 주권은 그 근원을 명백한 불가분성(indivisibility)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실체에서부터 찾기보다는 오히려 주권자체가 불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개별화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주권(sovereignty) 자체가 정치담론에서 주권의 지위(sov^{er}ign)를 누리게 된다. 둘째, 첫째 원칙의 당연할 결과로 주권은 또한 동일시의 원칙(principle of identification)에 기초한다. 고전적 주권은 권위의 신성화와 인격화를 요구하는 한편 탈인격화된 권위의 상징으로서 추상적 국가의 의미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왕은 국가의 상징이 된다. 셋째,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고전적 주권은 질서의 원칙(principle of order)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고전적 주권은 국가를 구체적 경험적 존재와 동일시하고 개별화함으로써 분류하고 순위를 매기며,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자율적 담론으로서의 국가학(science of states)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였다.³⁷⁾

36) *Ibid.*, pp. 138-139.

37) 이 시기 고전적 주권개념의 확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보댕(Jean Bodin)이다. 그는 최초로 주권의 불가분성을 강조하였고, 시민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절대

이러한 변화는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의 영향과 더불어 출현한 새로운 지식에 기인하였다. 고전시대에 이르러 비유(resemblance)나 사례(exempla)는 더 이상 지식추구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분석(analysis)이 새로운 방법론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데카르트(René Decartes)로 대표되는 분석적 방법론은 주로 체계적 비교와 질서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분석적 방법론에서 언어는 분석의 수단이자 대상으로 지식과 사회의 본질적 구성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즉 언어는 의사소통과 표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언어가 없다면 사회와 지식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사회는 표상(representations)과 진리에 대한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회가 없다면 언어와 지식이 존재할 수 없다. 지식은 인식적 질서와 사회평화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지식이 없다면 언어와 사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³⁸⁾ 이러한 사유방식의 변화는 주권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즉 사회에서 질서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궁극적 근원’, ‘무엇이 진리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어떤 것’, ‘담론을 감시하고 규율할 어떤 사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새로운 주권의 개념이 새로운 지식의 대상으로써 출현하였던 것이다.

새로운 주권담론과 더불어 등장한 것이 ‘이익’에 대한 담론이다. 이것은 국가이익의 개념이 국제체제의 배타성과 어떻게 연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익에 대한 고전적 분석은 권력(power), 부(wealth), 안보(security), 명성(reputation)과 같은 네 가지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³⁹⁾ 고전시대에 있어서 권력과 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이익에 대한 분석이 권력과 부의 분배에 근거할 경우 국가간 관계는 필연적으로 배타적 영합 게임(zero-sum game)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이 시기의 안보담론은 기존 정치질서와 그에 반하는 질서를 차별화함으로써

적, 영구적 권력으로써 주권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보텔의 주권개념은 여전히 신을 정점으로 한 개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국가간의 체계적 비교는 가능하지 않았다. 그의 주권개념은 17세기 초기에 완전히 폐기되었다. Jean Bodin, *The Six Books of a Commonweale*, facsimile reprint of the Knolles edition of 1606, ed. by K.D. MacRa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book 2, ch. 1, p. 84.

38) Jens Bartelson, *op. cit.*, p. 148.

39) *Ibid.*, pp. 162-165.

써 피아를 구분하는 정체성 형성을 가져왔던 것이다. 같은 논리로 전체로서의 국가를 대상으로 논할 경우 명성은 국가 정체성의 상호구축을 의미하게 된다. 즉 타 국가로부터 주권을 인정받지 않고서는 정체성을 획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안보에 대한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이 타자와 적에 대한 언술을 통하여 정체성을 창조했다면 명성에 대한 담론적 실천은 상호간의 인정을 통해 동질성과 우호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정체성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안보와 명성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결과 국가이익에 대한 분석은 국가의 안과 밖을 구분함으로써 국내정치(domestic policy)와 외교(foreign policy)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고전적 국가질서는 점차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에 의해 대체되었다. 국제체제의 등장은 근대성의 출현과 함께 재조직된 지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근대적 주체로서의 인간은 그가 거주하는 세계에 대한 표상과 개념을 주체적으로 창조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동시에 인간은 지식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곧 지식의 가능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재조직된 지식은 곧 정치담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⁴⁰⁾

첫째, 근대성은 유추를 정치적 지식의 핵심으로 복원시켰다. 그러나 유추는 존재(beings)사이의 유추가 아니라 관계(relations)사이의 유추이다. 근대국가는 구성요소간의 내부적 관계로 조직된 존재로 개념화되었다. 이제 주권의 불가분성은 그러한 총체적 관계로부터 기인한다. 또한 주권국가는 역사를 이루는 힘들 사이의 변증법적 투쟁의 결과로 인식되었다. 둘째, 근대지식은 국가에게 주관성(subjectivity)을 부여하였다. 국가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의 객체가 아니라 인간처럼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국가의 내적 정체성은 더 이상 인격화된 주권과 추상적 공간사이의 은유적 관계에 의해 보존되지 않았다. 주권은 더 이상 왕과 국가를 동일시하지 않았으며 탈인격화 되어 사회전체에 분산되었다. 셋째, 근대지식으로 인해 주권은 정치적 실체의 조직원리가 되었다.

‘국제’(international)라는 개념의 등장은 바로 위와 같은 변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인가? 근대와 더불어 시작된 식민지무역은 국가간 역량과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무역을

40) *Ibid.*, pp. 188-189.

통해 획득된 부는 고전적 권력의 영합적 특성을 급격히 바꾸어 놓았다. 결과적으로 국가이익은 개별국가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고전시대의 이익에 따른 국가간 질서가 상호의존성을 갖는 관계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고전적 질서 붕괴의 또 다른 원인은 국내정치와 외교의 분석적 구별과 도덕의 정치에의 종속논리가 거부되었다는 점에 있다. 계몽주의(Enlightenment)의 사상적 영향으로 인해 정치는 보편적 윤리에 종속되었고 국가의 특징이익은 인류 혹은 인간사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비판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정치와 외교의 분석적, 이념적 분리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즉 보편적 윤리의 관점에서 국가의 국내적 구조와 외교적 효과 혹은 국가의 외교적 정책과 국내적 효과가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2. 안보의 계보학

안보에 대한 계보학적 통찰을 시도한 데리안 (James Der Derian)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최초로 안보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홉스라고 본다.⁴¹⁾ 전술한 바와 같이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폭력과 투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회계약을 맺고 이 결과 등장한 주권국가가 대가로 국민들에게 안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⁴²⁾ 이러한 인식론적 현실주의 (epistemic realism)의 관점에서 볼 때 주권을 통한 안보의 추구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무정부상태에 대한 필연적 대응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연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때 안보에 대한 홉스의 이러한 설명은 다분히 형이상학적이라 할 수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war of all against all)이 홉스가 주장한 대로 상상속에만 존재하는 ‘자연상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본주의 정신에서 연유한다고 본 맑스 (Karl Marx)는 안보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린다. 그에게 있어서 안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홉스가 말하는 공포나 이익(self-interest)이 아니라 인간의 소외된 노동의 결과인 화폐인 것이다. 따라서

41) James Der Derian, "The Value of Security: Hobbes, Marx, Nietzsche, and Baudrillard", in Ronnie D. Lipschutz (ed.), *On Secu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p. 30.

42) Hobbes, *Leviathan*, p. 188.

안보는 시민사회의 금전적 이기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허위의식의 베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맑스의 사회적 현실주의 (social realism)는 홉스와 분명 구별된다. 맑스는 소외(alienation)가 권력투쟁을 야기한다고 본 반면 홉스는 권력투쟁의 결과라고 본다. 맑스는 또한 권력투쟁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안보딜레마도 소멸될 것으로 보았다. 반면 홉스는 권력투쟁은 항구적이고 보편적이며 국가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⁴³⁾

존재양식의 계보학을 통하여 안보에 대한 홉스와 맑스의 해석을 초월한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우연적 삶과 숙명적 죽음의 모순적 관계에서 안보의 기원을 찾는다. 니체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타자(other)의 본질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로부터 안보개념이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와 확실성에 대한 욕구는 안보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켰으며 다가올 미래를 인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전략과 결부되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욕구가 일반화, 집단화됨으로써 외부의 타자들(others)에 대한 안보개념으로 발전되어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니체는 인간의 권력의지(the will to power)가 모든 안보관념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홉스의 권력욕(desire for power)과 구별한다. 권력욕은 오로지 권력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허무주의에 귀착되지만 긍정적 의미의 권력의지는 자기보존(self-reservation)을 포함하는 모든 가치와 의미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데리안은 니체의 이러한 관점을 해석적 현실주의 (interpretive realism)로 명명한다.⁴⁴⁾

마지막으로 보드리야르(J. Baudrillard)는 걸프전쟁에서 등장한 시뮬레이션 신드롬을 계기로 안보가 이미 초현실주의(hyperrealism) 영역에 진입하였음을 간파하였다.⁴⁵⁾ 이것은 곧 국가의 탈영토화로 인해 적으로 규정된 타자의 파괴가 영토라고 하는 공간적 조건보다는 시간적 조건에 의해 규정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정치보다는 인식, 물질적 조건보다는 기술, 전쟁의 공포보다는 게임의 방법이 안보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권과 안보의 계보학이 보여주는 것은 주권과 안보개념의 탄생은 순전히 우연적(pure contingency)이라는 것이다. 주권과 안보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지식의 등장은 그 당시의 역사성을 배제하고는 이해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43) *Ibid.*, pp. 31-32.

44) *Ibid.*, pp. 33-34.

45) J. Baudrillard, *Simulations* (New York: Semiotext(e), 1983), p. 2.

근대 주권국가와 국제체제의 동시적 등장 또한 우연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들 또한 지식의 돌연변이적 변화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과 안보의 개념은 시간과 지식의 변화에 따라 조용하는 가변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탈근대적 주권과 안보개념의 모색

세계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탈근대적 국제관계는 보다 구체적으로 주권과 안보개념의 재정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탈근대가 곧 근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근대를 뛰어 넘기 위해서는 근대의 역사적 기득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근대의 산물인 국가체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텔슨이 간파한 바와 같이 “근대주권은 국가 간 무정부주의에 대한 예언과 세계주의적 구원의 약속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⁴⁶⁾ 그는 국제(international)가 스스로 지구의 국내화(global domestication) 과정을 밟을 것이라 예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권의 중심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국가는 개인의 권익을 보장할 때만이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⁴⁷⁾ 이런 관점에서 “주권은 정치공동체의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라는 힌슬리의 고전적 주권개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즉 주권은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주권은 개별적인 동시에 집단적이며,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동시에 지역적 혹은 지구적인 것이다. 주권은 어떤 특정 기관(institution)에 귀속될 수 없는 것이다.

주권을 이렇게 정의할 때 안보개념 또한 같은 맥락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즉 국가 중심의 안보는 개인 중심의 안보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냉전 이후 변화된 국제환경은 안보개념의 본질적 변화를 유발하여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정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은 안보의 관점을 국가에서 개인에 맞추는 패러다임의 전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UNDP는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하여 인간안보의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고 캐나다와 일본 같은 몇몇 선진국에서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적 목표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46) Jens Bartelson, *op. cit.*, p. 244.

47) John Hoffman, *Sovereign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8), p. 104.

그러나 인간안보의 새로운 개념정립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⁴⁸⁾ 첫째, 개인적 차원의 안보를 주로 논하는 인간안보론에서 국가의 존재를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은 안보의 최종적인 주체와 대상임이 분명하나 국가를 떠나서 개인의 안보를 논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둘째, 인간안보의 수준은 다차원적인 상호관계성 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간안보를 결정짓는 경제, 정치, 사회, 환경, 군사 등의 여러 영역들의 상호관계와 개인, 조직, 국가, 지역, 세계 차원의 상호관계를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주권과 안보의 개념을 개인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할 때 근대화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인간의 주체성은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은 곧 대내적으로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됨을 의미하며 대외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역시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 국제질서로 재편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의 재정립을 통하여 비록 국가체제의 배타성과 국제체제의 패권주의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을 지라도 주권의 패러독스와 안보의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근대적 국제관계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V. 결 론

본 논문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던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체제가 본질적으로 배타성이 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근대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주권개념 및 안보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주권은 대내주권과 대외주권의 이항적 모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국가가 대내주권을 강조하면 할수록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의 인권은 침해된다. 한편 국가가 대외주권을 강조하면 할수록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국가간에 안보딜레마를 야기한다. 또한 국가주권과 필연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안보개념 또한 안보의 대상이 국가인가 개인인가에 대한 이항적 대립구조로 인하여 본질적인 패러독스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국가체제의 특성이 국제관계로 연장될 때 국제관계는 패권주의를 피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48)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홍기준, “인간중심적 안보개념의 모색”, 『안보학술논집』 2004 (제15집 제2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pp. 159-222 참조.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국제관계론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탈피하고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많은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특히 해체론자들의 담론이 제공하는 탈근대적 국제관계의 가능성을 주목하고자 한다. 해체주의자들은 우리의 인식 속에 혹은 국제관계의 구조 속에서 항구적 이미지로 고착된 주권개념과 안보개념은 그들 특유의 사유방법론인 계보학을 통하여 이 개념들이 역사과정 속에서 권력과 지식이 연계된 우연한 결과의 산물임을 밝혀낸다. 그러나 해체주의자들은 유감스럽게도 근대국가의 해체 이후 다가올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탈근대적 국제관계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안보개념에 대한 본질적 재검토작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 권력의 원천이라는 의미의 개인주권이 하나의 대안개념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홉스의 계약론적 주권이론이 다분히 허구적임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주권이 국가주권에서 개인주권으로 전이될 때 필연적으로 안보도 국가안보에서 개인안보로 중심점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 탈냉전 이후로 대두되고 있는 인간안보에 대한 담론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즉 해체주의자들의 논법을 빌린다면 권력의 중심축이 점차 국가가 아닌 시민들에게 옮겨감과 동시에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행은 새로운 지식을 양산하면서 권력-지식의 연계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탈근대적 국제관계를 위한 대안적 개념으로 개인주권과 개인안보를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담론적 수준의 제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즉 국가체제가 붕괴될 것인가 혹은 새로운 정치체제가 국가체제를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여전히 미흡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중심의 새로운 담론이 등장하고 이 담론이 권력을 얻게 된다면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시민사회의 등장과 함께 개인주권과 인간안보의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의 시론으로써 시도되었음을 지적해 둔다.

참고문헌

- 김상배. 2002. “정보화시대의 외교: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36집 3호.
- 박인휘. 2001. “주권과 글로벌 안보: 세계화시대 주권과 안보의 개념적 재구성.” 『한국정치학회보』 35집 3호.
- 오영달. 2001. “주권과 인권에 대한 홉스와 로크이론의 비교연구.” 『평화연구』 제10호.
- 윤평중. 1992.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서울: 교보문고.
- 이혜정, 2002. “웨스트팔리아와 국제관계의 근대성: 러기의 비판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2집 2호.
- 조영식, 『문화세계의 창조』, 서울: 문성당, 1951.
- 조영식, 『오토피아』,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6.
- 조영식, “지구공동사회 대현장.”
- 홍기준. 2004. “인간중심적 안보개념의 모색.” 『안보학술논집』 제15집 제2호.
- Ashley, R. K. and Walker, R. B. J. 1990. "Speaking the Language of Exile: Dissidence in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4, no. 3. 395.
- Bartelson, Jens. 1995. *A Genealogy of Sovereign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udrillard, J, 1983. *Simulations*. New York: Semiotext(e),
- Burchill, Scott. 1996. "Liberalism."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Deakin University Press.
- Buzan, Barry. 1991. *People, States and Fear*. Boulder, CO: Lynne Reinner.
- Campbell, David. 1998. *National Deconstruction: Violence, Identity, and Justice in Bosnia*.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arr, E.H. 1946. *The Twenty Years Crisis*. London: Macmillan.
- Cohen, Carl. 1972. ed.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The Theoretical Foundation*. New York: Random House.
- Connolly, William. 1991. "Democracy and Territorialism." *Millennium*. vol. 20, no. 3. 479.
- . 1995. *The Ethos of Plur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Press.
- Derian, James Der. 1995 "The Value of Security: Hobbes, Marx, Nietzsche, and Baudrillard", Ronnie D. Lipschutz.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altung, Johan.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 166-91.
- Foucault, M. 1987. "Nietzsche, Genealogy, History." M.T. Gibbons. eds. *Interpreting Politics*.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 . 1978. *The History of Sexuality*. vol.1. R. Hurley. ed. New York: Vintage.
- . 1979. "Power and Norms: Notes." M. Morris and P. Patton. ed. *Power, Truth, Strategy*. Sydney: Feral Publications.
- Hinsley, F.H. 1986. *Sovereign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bbes, Thomas. ed. 1997. *Leviathan*. Richard E. Flatman and David Johnston. New York: W.W. Norton.
- Hoffman, John. 1998. *Sovereign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Nye, Jr., Joseph. 1990.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 Nozick, Robert.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Oxford: Basil Blackwell.
- Locke, John. 1976.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 ed. 1960. *Two Treatise of Government*. Peter Lasl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good, Robert E. and Tucker, Robert W. 1967. *Force, Order and Justi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Ruggie, John Gerard. 1993.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1. pp. 139-174.
- Walker, R.B.J. 1993. *Inside/Outside: International Relations as Polit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tz, Kenneth.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Went, Alexander. 1992.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2), p. 412.

-----, 1994.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2), 384-96.

초국가적 민주주의의 패러독스 :

오스트리아의 사례

유 영 학*

I. 머릿말

민주주의 제도가 인류가 고안해낸 최선의 정치형태이지만, 국경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동시에 국가간의 동권과 공영을 보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다(Choue, 1975). 보편적 민주주의는 특정 국가에 속한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나아가 국가의 크기나 힘의 우열을 넘어서 국가들 사이에서도 동권과 공영을 보장하는 세계공동체 구현을 주창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편적 민주주의는 일국적 차원을 넘어 지역협력, 나아가 초국가적 공동체를 그 영역으로 하는 초국가적 민주주의이론이라 할 수 있다(McGrew). 초국가적 민주주의의 주요 논의의 핵심은 세계질서를 보다 민주적인 국가와 시민들의 공동체로 변혁시켜야 하며, 현실의 권력구조와 경제세력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의사소통의 힘과 초국가적 민주주의에 적합한 헌정적, 제도적 질서의 구체화를 주장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1) 초국가적 민주주의에 관한 대표적 논의로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다자제도의 창출을 주장하는 민주적 다자주의, 세계적인 민주적 헌정질서의 수립을 주장하는 코스모폴리탄 민주주의, 그리고 현존 국제체제 안에서 세계적 거버넌스의 민주화를 모색하는 초국가적 토의민주주의가 있다.

2000년 2월초 오스트리아의 인민당(ÖVP)이 자유당(FPÖ)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세계에 파장을 몰고 왔다(Central European News, Vol. 2). 유럽에서 극단적인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극우세력이 정부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대응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오스트리아에 대해 기술적 차원에서 양자관계의 단절이라는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유럽연합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²⁾ 유럽연합은 자유당과의 연정구성이 유럽연합이 기반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경고하면서 오스트리아에 대한 제재³⁾의 전면에 나섰다(European Commission, 1/2 2000 10/10). 마스트리히트조약(또는 Treaty on European Union) 제6조1항은 ‘유럽연합은 회원국 모두에게 공통적인 원리들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그리고 법치의 원리에 토대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극우정당과 연정구성이 여타 회원국의 우려를 가져왔지만, 그것만으로 오스트리아가 유럽연합의 기본원리를 위배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동년 9월 제재해제를 위한 근거로 제시된 보고서에 의하면 오스트리아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자국의 어떤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Ahtisaari, 2000). 이 사례에서 노출된 제재 결정과 집행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유럽연합은 2000년 니스정상회담에서 관련 조약의 수정을 결정하였다(Treaty of Nice, Substantive Amendment 1).

이러한 사태의 발단은 1999년 10월에 이루어진 오스트리아 총선 결과였다. 극우를 대변하는 자유당이 27%를 획득하여 사민당(SPÖ) 다음으로 제2당이 됐다. 3위로 처지게 된 인민당은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권력분점에서 더욱 유리한 자유당을 연정 파트너로 선택했던 것이다(Luther, 2003). 오스트리아 자유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유당 당수 하이더(J. Haider)의 인종차별적, 친나치주의적 행태와 발언 그리고 유럽연합의 확대를 앞둔 회원국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이주와 자국내 극우세력의 확장에 대한 우려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다.

-
- 2) 유럽연합 최초의 정치적 결정이기도 한다. 보통 초국가적 기구에서의 결정은 정치적 이기보다는 기술적, 관료적 결정이 일반적이는데 반해, 이 제재결정은 극우민중주의에 대해 그어진 경계선을 경계로 하는 또는 민주주의 또는 인권이라는 유럽연합의 이념적 토대를 기반으로 내려진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 3) boycott, sanctions의 기술적 차원의 의미는 “국가간 외교관계의 격하”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조치가 야기할 수 있는 정서상의 동요가 더 큰 함의를 갖는다.

유럽연합이 유럽연합의 이념적 토대로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선거결과에 따라서 자국 정부를 구성하려는 회원국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스트리아의 주장처럼 유럽연합의 제재결정은 회원국의 주권을 무시한 내정간섭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민주적 과정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의지를 초국가적 세력에게 부과할 수 있는 능력 없이는 초국가적 민주주의의 논의는 공허한 것에 불과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런 능력의 존재는 초국가적 민주주의의 독재가 현실에 등장하여 민주주의 이상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것이 초국가적 민주주의의 패러독스이다 (McGrew). 오스트리아 제재사례에서 보이는 바처럼, 어느 일방의 민주적 관행과 결정이 타방의 민주적 신조와 요건을 부정하거나 그 우위에 서는 경우, 초국가적 민주주의는 일국적 차원의 자치를 종식시킬 수도 있다.

이 사례는 국제기구가 이념적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회원국에게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만약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압력으로 인하여, 오스트리아 연립정부에서 자유당을 축출해 버린다면 - 그것이 민주적 선거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유럽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념적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한 명료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민주주의를 증진 또는 보호하는데 상당한 딜레마가 있음을 이 사례는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념적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을 국제기구가 회원국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법적 원리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본 논문은 초국가적 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오스트리아에 대한 제재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오스트리아의 정치와 하이더

노동계층과 기독교자유주의 세력을 각기 대표하는 중도좌파인 사민당과 중도우파인 인민당이 전후 반세기 동안 오스트리아의 양대 정당으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주도해왔다.⁴⁾ 적색과 흑색으로 대표되는 양당은 꾸준히 총선에서 약 90%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 연정은 오스트리아의 강력한 경제와 안정된 민주주의를 가져온 기반으로 간주되어져왔다.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반세기를 거치면서 이 대연정은 자기중심적이고, 구태의연하고, 때로 부패 스캔들을 야기하기도 했다. 하이더는 유권자에게 이런 연정의 변화를 통한 정치개혁을 호소하였다 (Luther, 2003).

그러나 오스트리아 정치개혁이 단지 연정을 구성한 정당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전 이후 사민당과 인민당의 지도자들은 안정적이고 합의에 기반을 둔 정부체계를 고안하여,⁵⁾ 소위 사회적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으로 알려진 일종의 코포라티즘을 채택하였다. 이 사회적 파트너십 체제에서는 노조와 기업조직이 정책결정과정의 필수적 부분으로 참여했다. 따라서 사적 부문이 정치부문의 일부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부문도 사적 부문의 일부가 되었다. 국가적인 후원체계를 통해 공공부문의 자리를 사민당과 인민당 당원에게 제공하였다.⁶⁾

4) 오스트리아는 중부유럽에 위치한 인구 8백만의 소국으로 1938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독일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1943년 해방되어 1955년 독립국가를 수립하였고, 그 직후 군사동맹 체결금지, 외국군대주둔 금지와 함께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다. 1994년 국민투표에서 약 66%의 지지를 얻어 1995년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98%의 국민이 독일어를 사용하며, 인구의 약 9%가량인 7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오스트리아는 양원제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4년 임기의 총183석의 하원(Nationalrat)으로, 복잡한 비례대표제하의 직접선거로 구성된다. 1960년 이후 선거 및 정당 운영의 공영제로 국가가 모든 정당의 재정을 지원한다. 다만 민족사회주의와 우익 민족민주당은 법으로 금하고 있다.

5) 사민당과 인민당의 연정은 때로 양당 간의 불화가 있지만, 양당의 지도자들로서는 연정이 양당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변경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양당의 연정은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 오스트리아는 높은 생활수준, 노동쟁의의 부재, 유럽의 타 국가에 비해 경제성장은 높고,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 수준은 낮았다.

6) 결국 양당중 어느 한 당의 당원이 되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의 거의 모든

이런 정치형태가 경제개혁의 지연을 초래했고, 고위 정치인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노조와 기업과 긴밀히 연관되어져 있고, 또 보조금과 사회보장이 확고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기에, 산업민영화로의 진전이 거의 없었다. 하이더는 오스트리아의 다른 문제점으로 경제자유화 정책의 실패를 제시했다. 하이더는 국유산업의 민영화, 연금과 복지정책 개혁을 통해 기존의 후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종식시키고자 했다. 자유당은 노조나 기업회의체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에 기존 양대 정당보다 이러한 정책을 보다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었다. 하이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그의 이러한 개혁프로그램을 부정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친나치적 발언⁷⁾으로 인해서 하이더의 이런 개혁프로그램은 해외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는 단지 극우의 극단적 민족주의자⁸⁾ 친나치,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외국인혐오증을 대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Marchart, 2001; Heilbrunn, 2000). 이러한 하이더의 자유당이 10월 총선에서 27%의 지지급등을 보인 것을 이런 성향에 대한 지지세력의 증가로만 잘못 해석되었다.

하이더의 야심은 오스트리아의 총리가 되는 것이지 우파 혹은 극우적 성향의 어떤 특정 원리에 헌신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유당은 다양한 성향의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지지

측면에서 조직원리가 되어버렸다는 비판이 있다. 그런데 이 체계는 국가건설과정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전후 소련이 전후 복구를 위해 독일의 재산을 몰수하자, 오스트리아는 자국의 산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거의 모든 기업을 신속히 국유화했고, 노동부문을 국가와 연계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민족주의자로 알려진 하이더가 바로 오스트리아 국가건설의 핵심 토대였던 국유화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 7) 나치하 강제노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된 제3제국의 “건전한 고용정책”(1991), 유럽연합 가입반대(1994), 나치수용소를 “처벌캠프”로 묘사, 나치친위대원을 애국자로 묘사(1995), 극우극단주의 동조와 반이민정책(1999)등의 발언과 양친이 나치대원이었다는 전력 등
- 8) 그가 극우적 성향을 지녔다는 것은 타당하지만, 민족주의자라는 주장에는 이론이 있다. 나치 전력자들의 정당에 뿌리를 둔 자유당은 단일의 독일민족의 존재를 주장하는 독일민족주의를 전통적으로 수호해왔다. 1990년까지 하이더 역시 이런 신념의 지지자였으나 1988년 그는 오스트리아 민족이란 생각은 이념적 조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1980년대 말 오스트리아 민족에 대한 강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그는 오스트리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강력히 지지했다.(회원국 가입에 관한 국민투표 시에는 입장을 바꾸어 반대하였다.)

의 이유는 하이더가 1945년 이래로 오스트리아의 정치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고 시도했고, 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반국제주의(anti-internationalism) 캠페인을 주도했던 것에 있지, 결코 나치즘에 대한 동조 때문에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Luther, 2003).

만약 자유당이 부상하게 된 맥락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오스트리아가 유럽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저해하려 했다는 유럽연합의 우려와 제재조치는 근거를 많이 상실하게 된다. 2000년 유럽연합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제재와 해제 과정, 그리고 그 후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하이더의 자유당의 지지하락이란 일련의 사실을 관찰하게 되면, 하이더가 히틀러 후예의 등장이라는 예측은 설득력이 잃게 된다.⁹⁾ 오히려 유럽연합의 제재결정의 배후에는 유럽 차원에서 외국인을 의심하고 유럽연합의 확대에 적대적인 정치세력은 유럽연합의 확대와 심화에 진정한 적이라는 인식이 자리했고(European Parliament, 2 February 2000), 제재결정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Larsson et. al.).

III. 유럽연합의 오스트리아 제재

1999년 10월 총선

1999년 10월 3일 선거에서 자유당은 반세기동안 오스트리아 정치지형을 장악했던 사민당과 인민당의 연대를 붕괴시켰다. 사민당은 33%의 득표율을 유지하며 하원에서 65석을 차지했다. 인민당과 자유당은 약 27%의 득표율을 보이며 52석을 각각 획득했다. 자유당으로서는 11석이 늘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만년 2위 정당 인민당은 의석수의 변동이 없었다. 제1당인 사민당이 6석을 잃었고, 자유주의 포럼이 10석 모두를 상실했다. 녹색당이 새로 5석을 획득하여 총 14석이

9) 즉 하이더의 극우성향에만 초점을 두고 하이더가 히틀러의 후예라는 분석은 자유당 득세의 유럽적 함의를 간과하게 된다. 당시 유럽에서 극우세력의 발흥이 주요 관심사였다. 당시 벨지움의 ViBlock은 10%, 프랑스 National Front가 15%의 득표를 보였고, 이탈리아 Alleanza Nazionale, 덴마크 People's Party, 스위스 Volkspartei 등이 선거에서 상당한 지지를 획득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다.

되었다(Central European News, 2000).¹⁰⁾ 자유당은 다양한 유권자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전통적으로 사민당을 지지해왔던 청년 노동계층의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는 점이다.¹¹⁾ 중요한 점은 자유당 지지표가 자유당이나 자유당의 정책에 대한 지지라기 보다는 현상유지에 대한 반대라는 것을 한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다(Luther, 2003).¹²⁾

의석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제1당을 유지한 사민당 소속 대통령 클레스틸(Thomas Klestil)은 차기 수상으로 클리마(Viktor Klima)로 내정하고 정부 구성을 맡겼다. 그는 삼개월간 기존의 사민당-인민당 연정협상에 들어갔지만, 자유당은 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인민당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되어 있었다. 인민당의 볼프강 슈셀(Wolfgang Schussel)은 1980년대 이후 당세 약화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유당과의 제휴를 고려하고 있었으며, 사민당과의 연정협상과정에서 사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제시했다(Saltiel, 2000). 결국 1월 27일 사민당과 인민당의 연정협상이 결렬된 직후 슈셀은 하이더와 연정협상에 돌입하여 4일 만에 2월 1일에 12개 내각의 자리를 균등배분하기로 자유당과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인민당은 자유당에 비해 몇 백표차로 뒤지기는 했지만, 연정협상에서 수장과 내각의 내무, 외무장관을 확보했다. 자유당은 내각중 비중 있는 자리로 재무장관만을 차지했다(Central European News,

10) 1999년 10월 총선(하원 183석) 결과: 사민당 65석(33%; 1995년 38%), 자유당 52석(27%, 1995년 22%), 인민당은 52석(27%, 1995년 28%), 녹색당 14석(7%, 1995년 5%).

11) 자유당에 대한 노동계층의 지지율이 13년 사이에 거의 두 배 증대했다. 전통적으로 노동계의 지지정당인 사회민주당은 1986년 선거에 비해 22%의 지지율이 하락했다(1999년 35%, 1986년 57%). 또한 30세 이하 남성유권자의 가장 강력한 지지를 획득했다(남성유권자의 지지율 자유당 32%, 사민당 31%, 인민당 26%, 녹색당 5%) 30세 이하 남성유권자의 지지율(자유당 35%, 사민당 25%, 인민당 17%, 녹색당 13%)

12) 일반적인 예상은 자유당의 반이민정책에 대한 지지로 알려졌으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내정치체제에 대한 불만과 개혁 요구가 더욱 많았다. 즉 반이민정책에 대한 지지(47%), 사민당과 인민당 연정의 실정과 정책실패(65), 전반적인 개혁의 증진(63), 기존 연정을 구성했던 정치인에 대한 일종의 제재(36)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득표율은 일종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한편으로 선거결과는 변화에 대한 욕구의 표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63%의 오스트리아 시민들이 자유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점은 국제사회에서 오스트리아에 대한 제재와 비난이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2000). 자유당의 당수 하이더는 중앙정부에 진입하지 않고, 카린티아(Carinthia)지방 주지사로 잔류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하이더가 연립정부에 진출하는 자당 정치인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여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리라는 것이 확실히 예견되었다.

슈넬과 하이더는 인민당과 자유당의 연정이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은 예상했으나 국내외의 저항은 그 예측을 훨씬 상회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응

인민당과 자유당의 연립정부 구성 발표에 대해 해외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지난 10월 선거 직후 하이더의 자유당의 상승세가 신나치와 파시스트의 해악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던 이스라엘과 미국은 자국대사를 소환했다(Central European News, 2000).¹³⁾

이미 2000년 1월말 벨지움은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인 포르투갈 수상에게 연립정부를 구성중인 오스트리아 정부에게 대하여 14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동행동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동년 1월31일 의장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Declaration on behalf of XIV Member States)를 발표했다. 즉 “14개 회원국 정부들은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오스트리아 정부와는 정치적 차원에서 어떤 유형의 양자간(bilateral) 공식관계도 증진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국제기구에 출마하는 오스트리아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없을 것”이고, “유럽연합 회원국 수도에 주재하는 오스트리아 대사들은 기술적 수준(technical level)에서만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 성명서에 후속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월 1일 “현 단계에서 유럽연합의 제도의 활동은 영향 받지 않는다. 이런 맥락 하에서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들과의 긴밀히 접촉해 나가면서 오스트리아 당국과의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13) 미국은 자국대사를 일시적으로 본국으로 소환하였고, 올브라이트(M. Allbright) 국무장관은 “나치시대의 잔악함 그리고 증오의 정치와 확실하게 거리를 두지 않는 정당이 건전한 민주주의국가에서 자리할 곳은 없다”라고 논평했다.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Declaration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14개 회원국 정부들이 경고한 제재는 2000년 2월 4일 오스트리아에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발효하게 되었다.

실상 오스트리아 정부는 연립정부 출범 하루 전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였다. 오스트리아 연정을 구성하게 된 인민당과 자유당의 지도자들은 “선언문: 오스트리아의 의무- 유럽 중심부의 미래 (Declaration: Responsibility for Austria - A Future in the Heart of Europe)”이란 제하의 정부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계획안의 전문(Preamble)에서 오스트리아는 자국 정부에 대한 여타 회원국들의 제재 근거가 되는 유럽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유럽인이 공유하는 유산이자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형성하는 원리들인 개인의 자유, 정치적 자유 및 법치의 진정한 원천이 되는 정신적이며, 도덕적 가치들은 확고히 지지함을 재확인” 하면서 또한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평화 프로젝트에 진력할 것이며,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도 헌신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조약(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제6조의 정신이며,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그리고 법치 등의 원리를 준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Declaration, 2000).

유럽연합의 제재조치에 대한 유럽 및 여타 지역에서의 반응은 자국의 입장에 따라 상이하였다.¹⁴⁾ 제재 내용중 기술적 차원으로 양국관계를 저하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오스트리아가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형성과정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참여할 수 없으며, 또한 국제기구에서 오스트리아 후보는 차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이었으나 당선되는 사례도 있었다(Austrian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14) 노르웨이와 체코공화국은 유럽연합의 제재 조치에 명시적으로 찬성을 표하였고, 여타 유럽국가들은 공식 성명을 내지 않은 채, 제재조치를 수용하였다. 반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히트슈타인, 헝가리는 제재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는 기술적 차원으로만 양국관계를 엄격히 한정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코스타리카는 명시적으로 제재 조치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공식적으로는 제재 조치를 수용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미온적으로 대응 하였다.

Affairs, 2000). 이는 유럽연합의 제재가 공식 성명과는 달리 완전하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재 초기에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이 1월 31일 발표했던 애초의 제재를 넘어서는 불이익과 보이콧을 겪어야 했다. 애초 유럽연합의 제재 조치는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었으나, 제재의 파장은 기업 및 시민사회로 확대되었다.¹⁵⁾ 또한 오스트리아 안팎에서 새로 출범한 인민당과 자유당의 연정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위가 이어졌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주의적 정서의 발흥이 유럽 도처에서 이어졌다. 극우정당의 연립정부 참여로 초래된 유럽연합의 제재는 오히려 유럽에서 극우세력의 반발과 민족주의적 정서의 확산이란 역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 제재조치에 대해 “비민주적인 선동적 제재(undemocratically instigated sanctions)” 라고 비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오스트리아 정부는 제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반대로 그 제재조치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외국인 혐오증과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유럽의 평화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자국정부 개혁안에서 유럽적 가치의 준수, 유럽연합 확대 지지, 유럽통화연맹(EMU)의 이해에 부응하는 필수예산통합 등 우호적인 유럽연합정책을 포함할 것이며, 소수인종보호정책 진작시키고, 오스트리아 정부는 향후 말과 행동 어떤 것으로도 유럽적 가치 또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국내적으로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실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Austrian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00).

15) 벨지움은 오스트리아와의 군사협력을 전면 동결시켰다. 또한 브러셀 시장은 관광무역박람회에 오스트리아의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고, 외무장관은 오스트리아 휴가여행을 삼가도록 요청했으며, 불어권 지역에서는 오스트리아 방문 자체를 금하도록 하였다. 프랑스는 2000년도 양국 군사협력계획을 전면 취소하였다.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취소되었다. 이는 유럽연합이 취한 제재의 범위가 문화, 교육, 과학 등 제반 협력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현인보고서와 제재 해제

제재조치 발효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14개 회원국에서 뚜렷한 태도변화가 없자, 5월 5일 오스트리아 정부는 “제재해제를 위한 행동강령(Action Programme for Lifting of the Sanctions)”를 채택하였다(Austrian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00). 이에는 국내외 여론조사, 유럽의 오피니언 리더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외교적이며 적극적” 홍보, 정부간 회의에서 유럽연합 조약 제7조의 개정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6월말로 되어 있는 포르투갈 의장국의 임기까지도 해제조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5월 6-7일 개최된 비공식 외무장관회의에서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은 제재조치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는 것에 대해 유럽연합 내에서 처음으로 합의를 얻어내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로서도 오스트리아의 강력한 해제 주장과 제재조치의 실효성 미흡, 자국내 정치적 상황 및 자국민의 제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제재해제를 위한 탈출시나리오(exit scenario)를 고려하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6월 19-20일 유럽이사회 파이라(Feira) 회의에서 발표된 결의문에서 유럽의회는 이사회 대통령에게 “14개 회원국과 오스트리아의 관계를 평가하고, 유럽연합과 관련된 모든 정당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궁할 수 있는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건의했다(Central European News, 2000).¹⁶⁾

6월 29일 포르투갈 수상은 재차 14개 회원국 명의로 유럽인권재판소 빌드하버(Luzius Wildharber) 소장에게 오스트리아 상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맡아줄 세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보고서의 범위는 오스트리아 자유당의 정치적 성격 및 그 전개과정은 물론 오스트리아 정부가 유럽적 가치를 준수하는지, 그리고 소수 민족 및 망명자, 이민자 등에 대한 태도 및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빌드하버 소장은 이 절차에 관해 오스트리아 정부와 협의하였고, 7월 12일 소위 현인 보고서(Report by the Three Wise Men)를 작성할 전 핀란드 대통령 마

16) 덴마크는 EMU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오스트리아 문제 제해 해결에 특히 관심을 표명했다. (Lobjakas)

티(A. Matti), 막스프랑크 연구소장 요헨(F.Jochen), 전 스페인 외무장관 마르셀리노(O. Marcelino) 3인이 선임되었다(Ahtisaari, 2000).

보고서 작성을 위임받은 3인은 7월 27-30, 8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오스트리아 정부, 의회 소속 정당, 노조 및 기업, 종교단체, 법조인, 옴부즈맨, 시민단체 대표자 등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9월 8일 최종보고서가 신임 이사회 의장국 시락(J. Chirac) 프랑스 대통령에게 제출되었다. 그 보고서의 결론에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유럽적 가치의 준수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유럽적 가치와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면서 제재 해제를 건의했다. 또한 제재가 예상과는 달리 민족감정을 자극했고, 또 오스트리아 시민에 대한 제재로 오인되고 있다는 점들을 지적했다. 또한 동 보고서에는 “유럽적 가치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의 헌신과 성과를 감시, 평가하는” 유럽내부의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Ahtisaari, 2000). 9월 12일 프랑스 의장국이 14개 회원국을 대표하여 발표한 성명서로 7개월 10일간의 대 오스트리아 제재가 해제되었다. 이후 정부차원의 양자관계는 복원되었다(Central European News, 2000).¹⁷⁾

14개 회원국의 제재선언이 유럽연합 조약의 정신과 근본적인 법적 원리를 침해했다는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와 현인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벨지움,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미래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관해 논의를 하기로 하고 니스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이사회 회의에서 유럽연합 조약 제7조를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Central European News).¹⁸⁾

17) 10월말 영국외무장관의 비엔나 방문,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의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방문, 11월 슈셀총리의 베를린 정상회담 참석, 2000년 가을 미 국무장관의 비엔나 방문

18) 또한 회원국 제재 등의 행동을 요구하는 제안의 정당성 부여 의무, 관련 회원국의 청문회 소집 권리, 모든 관련 있는 European Council의 결정사항에 대한 유럽의회의 동의, 그리고 European Council은 제재 등의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평가 의무, 유럽재판소의 법적 고찰 등이 향후 논의되기로 하였다.

IV. 제재의 영향

오스트리아 제재의 결과는 기대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9월 12일 14개 회원국의 공동성명은 “제재조치가 유용했다” 그렇지만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승인했다.(Agence Europe, 2000년 9월 14일) 유럽연합에서도 비판적 견해가 잇달았다.¹⁹⁾ 애초의 제재 의도는 연립정부 구성시 자유당을 배제시키거나, 정부구성 이후에는 연립정부를 해산하고 새로 구성하라는 것이었다. 오히려 오스트리아의 우파 연정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초기보다 더욱 강력하고 단합된 형태로 등장했다. 제재조치가 오히려 오스트리아 신정부의 입지를 강화시킨 사례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집행이 있다. 만약 평상시였다면 예산의 약 15%를 노동에서 자본 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재분배 계획의 추진이 근본적인 저항을 야기했을 것이다(Saltiel, 2000). 따라서 14개 회원국들은 애초 의도했던 오스트리아 국내정치 변화를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회원국들이 유럽의 여타 국가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자유당과 같은 극우 민주주의 혹은 인종차별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진전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유럽연합 대표부의 조사결과 오스트리아 국민의 거의 절반이 강력한 인종주의적, 반외국인 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이런 정서가 오스트리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유럽연합 내에서도 비교적 널리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Luther, 2003).

연립정부 구성에서 자유당을 배제하기 보다는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긍정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에 의하면 시민당과 인민당이란 전통적인 연립형태는 오히려 하이드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것이며, 또한 자유당의 연립정부 참여가 하이드를 정당화하기 보다는 신비화된 그의 이미지가 벗겨지고 실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Luther, 2003). 또한 오랜 정치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오

19) Commission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례에서 제재가 진지하고 솔직하며 속 깊은 대화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Agence Europe, 2000년 7월 13일)했으며, 포르투갈 수상은 제재가 성과보다는 피해가 더 많았다(Der Standard 2000년 6월 23일)고 언급했다.

20)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3위

스트리아 정치 및 경제에 개혁의 전망을 시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발드하임 사례처럼 과거사에 대한 조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제재가 의도했던 오스트리아 국내정치에 대한 영향은 장기적으로는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도 있다. 우선 제재조치는 오스트리아 반자유당 세력을 동원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하이더가 연정출범 3개월 만에 당수직을 공식적으로 사임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그는 당내의 가장 유력한 인물로 남아있었고, 연정위원회의 위원자격은 유지했다. 그렇지만 하이더가 당내에서 공식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 이후 자유당은 지도층의 내분이 일어났고, 하이더는 2002년 2월 중순에 연방정치로부터 완전히 은퇴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하이더의 몰락은 국제적 압력이나 국내정치적 비난 보다 정책결정과정을 둘러싼 자유당 내분 때문이었다. 이는 결국은 국내외의 비난 속에 등장했던 연정을 단명시키고, 2002년 11월 24일 조기총선을 가져오게 된다. 선거결과 사민당 인민당의 박빙승부라는 예상과 달리 인민당이 압승하였고, 자유당은 의석을 2/3를 상실하였다. 인민당은 예상과 달리 정책노선이 다른 녹색당과 연정협상을 시도하다 결렬되었고, 사민당과는 신뢰를 상실하였고, 자유당은 당내 내분이 지속되어 난항 끝에 2003년 2월 28일 두 번째 인민-자유 연정이 출범했는데, 자유당은 총 12개 내각중 3석만 할당받는 처지로 급락하였다(Economist, 2003).²¹⁾

또한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대학살 희생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타결 지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2000년 10월에 2차대전 강제노동자를 위한 기금조성을 하기로 미국과 6개 유럽국가와 조인했고, 그 다음해 1월에는 나치에게 재산을 몰수당한 유대인을 위한 기금조성에 합의했다. 이는 국내정치적으로는 중시되지 않았으나 국제적으로 오스트리아 정부의 노력에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었다(Central European News, 2000; Time Europe, 2001).

유럽연합 회원국들로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실질적인 정당화 작업 없이 제재를

21) 인민당은 52석에서 79석 획득으로 1966년 이래 최초로 1당을 차지했고, 1983년 이후 최고의 득표율을 보였는데 이는 자유당 지지층 다수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52석에서 18석으로 급락했고, 사민당 69석으로 4석 증가했으나 사상 최고의석인 17석을 획득한 녹색당과는 단독으로 연정을 구성할 수 없었다.

단행하여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국가주권이 유럽연합에서는 의미가 없는가 하는 우려를 대내외적으로 증폭시켰고, 이는 유럽연합 가입을 앞둔 후보국 내부의 반유럽연합과 정치인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다. 또한 프랑스 독일과 같은 큰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진행중인 제도개혁과정에서 소규모 회원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는 관측도 제기되었다(Langer, 2000). 즉 다수결원칙을 밀어붙인 사례이며, 오스트리아라는 소국이 대국의 이해에 부응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을 경고하는 사례라는 주장이었다.

둘째, 오스트리아에 대한 제재가 향후 유럽연합의 행보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물론 유럽이 오스트리아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오스트리아의 동의 없이는 유럽연합의 어떤 중요한 개혁도 진전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외교관계의 저하가 양자관계에만 국한된다고 했으나 현행 유럽연합의 틀 안에서 양자관계와 다자관계를 실질적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14개 회원국은 제재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찬성하였으나 유럽연합의 틀을 벗어나서는 제재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표출하였다. 프랑스, 벨지움은 강경노선을,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는 온건한 태도를 표출했다(Austrian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00).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단일의 목소리 내지 행동통일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유럽연합으로서 이를 계기로 유럽적 가치논쟁을 강화시켰고, 제재조치가 주권국가의 사안에 대한 외세의 개입이 아니라 유럽의 국내 정책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정치적 통합과 관련하여 회원국 정부들로 주요 정책결정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같은 밀접한 정치공동체에서 오스트리아 사례에 긴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인 것이다(Falkner, 2001).²²⁾

넷째, 유사한 미래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전략을 입안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 12월 7일-11일 니스정상회담에서 15개 회원국은 유럽연합 조약의 심각한 위배의 위험이 존재할 때 유럽연합은 사전에 개입(적합한 권고안을 제시하거나, 현인위원회가 그 사례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할 수 있으며,

22) 제재조치가 절대로 내정간섭이 아니라는 시라크 수상의 발언

문제의 국가가 이런 개입조치에 앞서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조약 제7조의 수정에 합의하였다. 2001년 5월 이탈리아 연정구성시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사례가 재연되었다.²³⁾ 당시 이사회 의장국의 페르손(G. Persson)스웨덴 총리는 니스조약 제7조의 정신에 의거하여 관찰후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Luther, 2003).

V. 함 의

유럽연합 민주주의²⁴⁾와 관련된 논의는 유럽연합 자체의 민주적 성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²⁵⁾ 오스트리아 사례는 유럽연합에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민주주의의 문제가 헌정상의 원리로서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유럽연합 조약 제6조1항에서 언급되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관해 명확하게 언급된바 없기 때문에²⁶⁾ 민주주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치 혹은 원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

23) S. Berlusconi가 이끄는 Forza Italia가 승리했으나 연정은 Allenza Nazionale(AN)과 Lega Nord(NL)과 구성해야 했다. 문제는 두당 특히 NL이 U. Bossi가 주도하는 우익 민주주의 정당으로 오스트리아 자유당과 유사했다.

24) 민주주의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절차적 관점이 일반적이는데, 슐페터의 영향으로 민주주의를 목적과 이상의 측면에서 규범적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경우 그 이론이 현실과 배치될 때 여러 난점을 야기할 수 있기에 민주주의를 증명 가능한 사건 즉 선거에 한정시켜서 그 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이처럼 민주주의를 절차로 한정시키는 경우 실제로 인민의 의지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민주주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민의 의지가 정부권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21조3항). 이 목표는 개인과 사회가 자기결정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참여와 자율성을 통해서 이룩된다. 이런 견해는 민주주의가 투표행위를 넘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5) 유럽연합에서 민주주의의 세 가지 차원은 첫째 정부간 차원으로 기존의 외교와 국제 정치 차원을 의미한다. 둘째, 초국가적 차원으로 이는 유럽연합의 제도 또는 기구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 번째는 한 국가의 의회와 유사하게 작동하는 유럽연합 자체의 차원을 말한다(Weier, U. Haltern and F. Mater, "European Democracy and Its Critique," in J. Hayward(ed) *he Crisis of Representation in Europe* (Frank Cass, 1995)pp. 32-33.

26) "만약 어떤 민주주의 이론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보인다면, 그것은 유토피아니즘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G. Duncan & S Lukes, "The New Democracy, *Political Studies*, vol. 11, 1963, p. 165.

제기구가 법적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a legal concept of democracy)을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야기했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대응조치과정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초래하게 되었다(Burchill, 2001).

자유당은 합법적인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연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유럽연합 14개회원국은 자유당의 연정참여는 유럽연합의 기반인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상당수의 득표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던 자유당이 정부에서 축출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가? 유럽연합의 대응조치는 유럽연합 조약 6조 1항에 나타난 민주주의원리가 정확한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유럽연합이라는 기구 자체가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표출하는 일관된 메커니즘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같이 정치적 개념을 강제 가능한 법적 원리로 전환하는데 당면하는 난점을 보여주는 사례였다.²⁷⁾

유럽연합의 초기형태는 파리조약(the Treaty of Paris, 1951)과 로마조약(the Treaty of Rome, 1957)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조약들은 본질상 경제적인 것으로 민주주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민주주의가 회의기구가 점차적으로 생겨나게 됨에 따라 존재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1972년 파리정상회담에서 회원국은 ‘민주주의, 의견의 자유, 사람과 사상의 자유로운 이동,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를 통한 참여에 유럽공동체 발전의 토대를 두기로 결의’했음을 재천명했다. 1978년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Democracy)이 발표되었다. 여기서 대의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중과 유지가 회원국의 지켜야 할 핵심이라 선언했다. 이러한 취지가 결속력 있는 조약의 조항으로 만들어진 것은 1987년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으로, 여기서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에 관한 사상이 조약에 기반을 둔 문건으로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1992년 체결된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European Union)은²⁸⁾ 민주주의 사상을 유럽연합의 지도적 원리로서

27) 법적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에 관한 논쟁은 T. Franck, "The Emerging Right to Democratic Governanc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6, 1992 참조.

28) TEU 6조1항 (유럽연합의 토대로서 민주주의), 7조1항(위반시), 7조2-3항(위반시의 제재와 해제)

지속되고 있음을 재천명하였다. 특히 1993년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천명했다.’²⁹⁾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49조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 위해 가입 희망국이 이러한 원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³⁰⁾

민주주의 이념이 유럽연합 체계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14개 회원국들이 제시한 제재사유의 하나가 유럽적 가치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 정의된 바 없다. 이 때문에 그런 가치를 명확하고 공식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런 노력은 유럽연합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비민주적 의도를 갖는 것이라 비판받았다(Burchill, 2001; Langer, 2000). 그런 경우 사회주의정당이 주도하는 정부들에서는 사회주의적 가치의 집행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으며, 또 유럽적 가치가 이미 기존의 국가, 초국가적 법적 체계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재조치의 절차상의 문제점이다. 또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대응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제재조치들은 개별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하나의 기구로서 유럽연합은 오스트리아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포르투갈 의장국의 성명에서도 유럽연합 차원이 아니라 회원국들과 오스트리아 양자관계임을 명시하고 있다.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자국의 불만을 표하는 것은 국가승인과 관련하여 해당국가의 선택에

29)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정치경제적 기준(Copenhagen Criteria)는 이와 함께 시장경제 체제 유지 및 유럽연합 경제와의 조화능력,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준수능력 보유가 있다.

30) “유럽경제공동체(EEC : Eruoepan Economic Community)의 창설 조약인 로마조약에는 신규 회원국의 가입기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제 237조에 “어떠한 유럽 국가도 공동체 회원국으로서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1992년 리스본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EU 회원국의 정상들은 인권의 존중과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구현을 EU 가입요건으로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요건이 리스본 회담 이전에는 단지 명문화만 되어 있지 않았을 따름이며, 실질적으로는 민주적 정치체제의 실현이 유럽공동체 가입의 필수 조건임이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실천적 수준에서의 규범이 리스본 회담을 계기로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최진우, 2001).

따르는 일종의 국제관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는 회원국의 의무와 그 의무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취해질 조치들을 규정한 현장 내에서 행동해야만 한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는 동 조약 제6조31)에 명시되어 있는 원리들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국을 배제한다는 조항은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세부절차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권리가 정지될 수는 있다. “중대하고 지속적인 위반의 존재”의 결정은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회원국의 1/3 이상 또는 집행위원회의 발의와 관련국을 제외한 회원국의 만장일치(니스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4/5로 개정), 그리고 유럽의회의 동의가 요구되며, 이에 선행하여 “문제의 회원국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만약 그와 같은 위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럽연합 이사회는 다수결에 의거하여 문제의 회원국에게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부여된 투표권과 같은 특정 권리들을 정지시킬 수 있다(Treaty on European Union, 제7조; Substantive Amendment of Treaty of Nice, Article 1).

따라서 유럽연합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제재가 위에서 언급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공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회원국들과 오스트리아와의 양자관계에서의 제재조치라고 할지라도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회원국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조항(마스트리히트 조약 제E조), 회원국 상호간의 결속증진(동 조약 제2조)을 위배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당시 오스트리아가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기본 원리들을 중대하고도 지속적으로 위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원리에 대한 실질적 위반과 잠재적인 미래의 위반을 명확히 구별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인권과 같은 원리들을 실제로 위배하는 것과 선거캠페인을 위해 “구두”상으로 영합하는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 되었다(Burchill, 2001).

셋째, “14개 회원국을 대신하여” 라는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의 성명서 발표는 의장국의 권능을 벗어난 것으로, 의장은 모든 회원국에 의한 결정을 토대로

31) "유럽연합은 회원국 모두에게 공통적인 원리들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그리고 법치의 원리에 토대를 둔다"(TEU 6.1).

하지 않는 사안을 선언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럽 연합의 의장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결정이 아니라 다자의 결정을 선포하는데 이용되었다는 것이다(Falkner, 2001).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이 제재의 제안과 지지획득과정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사례로 상징적 가치와 함께 실질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Larsson).

넷째, 오스트리아에 대한 제재결정과정에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자국의 입장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던 것은 유럽연합의 틀 안에서 여타 회원국들로부터 기대되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리가 침해되었던 증거라는 것이다. 이는 니스에서 관련 조약의 개정으로 진전되었다.

다섯 번째, 국제기구에서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지철회라는 조치가 국적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 조항(마스트리히트 조약 제12조)을 위배했다는 것과 오스트리아 연정의 해체 이외에는 오스트리아 정부로서는 다른 출구가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Burchill 2001; Luther 2003).³²⁾

VI. 맺음말

오스트리아 정부에게 성급하게 부과되었고, 또 아무런 변화도 없이 해제되었던 조치가 유럽통합을 강화할 것인가?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일부 유럽 연합 후보국들에서의 우파와 민주중주의적 동향을 고려하면 시기적절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14개 회원국의 제재조치의 형식과 절차에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유럽연합의 제재조치를 하이더가 히틀러와 같은 길을 걷고 민주과정을

32)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제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만큼 회원국간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없었다는 관측이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의 새로운 연정구성의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럽연합의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제재결정에 대한 회원국의 협의가 대면없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졌고, 전문가의 자문이 생략되었다는 것이다(Larsson).

악용하여 권력을 획득하여 오스트리아 민주주의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등장한 사전조치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파괴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국제기구라는 명분하에 일부 국가들이 취하는 비민주행위가 정당화되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는 우리가 올바른 민주주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민주적 과정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신념을 용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스트리아 사례는 민주주의가 모호하고(indeterminate)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개념정의도 그것을 규정하는 사람과 그것이 논의되는 맥락을 반영하므로, 민주주의란 본질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는 개념(contested concept)이라 할 수 있다.(T. Bell) 또한 이 사례는 초국가적 차원에서 전적으로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강제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법체계가 민주사회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수용한다고 해도 정치적 견해차이가 그 비중을 결정짓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정당한 법적 원리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그것이 모든 국가에서 항상 바람직하거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차이점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주의란 평화적 대화를 통해 차이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Burchill, Richard,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Democracy by Regional Organisations in Europe: The Case of Austria," European Public Law, Vol. 7-1, 2001.
- Choue, Young Seek, "The Third Democratic Revolution and a New World Order," Speech, the Committee of Soviet Scholars, Moscow, July 1990.
- Falkner, Gerda, "The EU14's Sanctions Against Austria: Sense and Nonsense,"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y Studies Association USA, Vol 14-1, 2001.
- Falkner, Gerda, "The Europeanization of Austria: Misfit, Adaptation and Controversies," European Integration Online Papers, Vol 5-13, 2001, <http://eiop.or.at/elop/texte/2001-013a.htm>.
- Giorgi, Liana and R. J. Pohoryles, "Editorial- The Democratization of Democracy: The Missing Link," Innovation, Vol 13-2, 2000.
- Heilbrunn, Jacob, "A Disdain for the Past: Joerg Heider's Austria," World Policy Journal, Vol 17-1, 2000.
- Langer, Josef and P. Ahponen. "Reconstructed Ideological Borders after the Iron Curtain- The Case of Austria and Finland in the Shadow of The EU," Pirkkoliisa Ahponen, Pirjo Jukarainen (ed), Tearing Down the Curtains, Opening the Gates - Northern Boundaries in Change. Jyvaskyla (S o P h i) 2000, <http://www.kakanien.ac.at/beitr/fallstudie/JLanger4>.
- Larsson, Sara & J. Lundgren, "The 14 and the Sanctions against Austria," CRISMART, Swedish National Defense College, http://www.crismart.org/images/bokomslag/pdf/14Sanktions_Austria.pdf.
- Larsson, Sara et. al, Crisis decision making in the European Union, Crismart, Swedish National Defence College, 2005.
- Luther, Kurt R., "The Self-Destruction of a Right-Wing Populist Party? The Austrian Parliamentary Election of 2002," West European Politics, Vol. 26-2, 2003.
- Marchart, Oliver, "The Fourth Way of the Ultra Right: Austria, Europe, and the

- End of Neo-corporatism," Capital & Class, Issue 73, Spring 2001.
- Mayall, James, "Democracy and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 Affairs, Vol 76-1, 2000..
- McGrew, Tony, "Transnational Democracy: Theories and Prospects," <http://www.polity.co.uk/global/mcgrew.htm>.
- Plasser, Fritz, Peter A. Ulram and Franz Sommer, "Analyse der Nationalratswahl 1999. Muster, Trends und Entscheidungsmotive." Wien, FESSEL-GfK/Zentrum für Angewandte Politikforschung:. 1999, <http://www.zap.or.at>, http://www.crismart.org/images/bokomslag/pdf/14Sanktions_Austria.pdf.
- Saltiel, David, "Austria: Crossroads or Roadblock in a New Europe?," Mediterranean Quarterly, Vol. 11-2, 2000.
- 최진우, 유럽통합과 민주성의 결손: 초국가적 해법의 한계와 보조성의 원칙, 『의정연구』 7권 2호. 2001.
- Ahtisaari, Martti, J. Frowein, and M. Oreja, Report adopted in Paris on 8 September 2000, <http://www.arena.uio.no/PDF/reportwisemenaustralia.pdf>.
- Austrian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ustrian Foreign Policy Yearbook 2000, [http://www.bmaa.gv.at /view.php3?f_id=2724&LNG=en&version=](http://www.bmaa.gv.at/view.php3?f_id=2724&LNG=en&version=).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Governance: A White paper", Brussels, 25.7.2001, http://europa.eu.int/eur-lex/en/com/cnc/2001/com2001_0428en01.pdf.
- European Commission, Bulletin of the European Union, 2000. 1/2-1.10.2; 1/2-1.10.18 <http://europa.eu.int/abc/doc/off/bull/en/indexcum/2000000.htm>.
- European Parliament, "Verbatim Report of Proceedings, Address by Mr. Klesti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Austria," Sitting of Wednesday, 12 April 2000.
- European Parliament, "Verbatim Report of Proceedings, Talks in Austria on forming a Government," Sitting of Wednesday, 2 February 2000.
- Treaty of Nic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80 of 10 March 2001, http://europa.eu.int/europa.eu.int/eur-lex/lex/en/treaties/dat/12002M/pdf/12002M_EN.pdf.
- Treaty on European Unio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325 of 24 December 2002 http://eur-lex/lex/en/treaties/dat/12001C/pdf/12001C_EN.

pdf.

Declaration: Responsibility for Austria - A Future in the Heart of Europe, http://www.oe-journal.at/0300/06_030300_e.htm

Statement from the Portuguese Presidency of the European Union on behalf of XIV Member States, 31-01-2000

Declaration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01-02-2000

Central European News:Austria News Index, Volume 2 (17January 2000-11December 2000), http://www.ce-review.org/news/austrianews_index.html. Christian Science Monitor

Economist

Europe

Radio Free Europe/Radio Library, <http://www.rferl.org/nca/features/2000/07/F.Ru.00713151449.html>.

TIME Europeport

조영식 박사 세계평화론의 주요개념 재조명

박 상 식*

머리말

이 논문은 조영식 박사의 세계평화론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개념을 다른 학자와 사상가들의 견해와 비교하여 그 개념들의 특징을 분명히 하고, 그의 평화사상의 학문적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구명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목요일세미나에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고, 광범위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려는데 있다.

조박사의 평화사상을 비교 연구함에 있어서 그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중심주의(Human Centrist), 문화규범(Cultural Norm), 보편적 민주주의(Universal Democracy), 지구공동사회(Global Common Society), 그리고 팩스유엔(Pax UN) 5가지이다. 따라서 조영식 사상의 다른 중요개념들, 예컨대 전승화, 4기체 등과 같은 개념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외국학자와 사상가의 이론 및 견해와 비교 연구함에 있어서 서구학자와 사상가의 이론 및 견해와만 비교하였다. 필자의 지식 부족으로 비서구학자 및 사상가의 평화사상을 검토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조박사의 평화사상 5가지 중 인간중심주의, 문화규범, 보편적 민주주의를 다루고 지구공동사회와 팩스유엔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원장

1. 조영식 박사의 세계평화론 개관

그는 전쟁의 원인을 배타적 민족주의, 패권적 국가주의, 민주주의의 결여, 종교적 근본주의, 이념적 계급주의, 군비경쟁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간의 관계가 적대적인 이유는 국제체제가 자연주의적 법칙(Naturalist Law)에 바탕을 둔 무정부상태에 있기 때문이다.⁽¹⁾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국가는 신이 규정한 자연법(Natural Law)에 기초한 자연규범과 대조되는 인위규범을 창조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 인위규범이란 신의 절대적 법칙을 부정하고 인간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스스로 설정한 규범이다.⁽²⁾

그의 전쟁원인론은 전통적 현실주의 이론과 같다. 다만 구체적 원인 중에 민주주의의 결여와 종교적 근본주의를 포함시킨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최근 이 두 요인을 전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민주주의 평화론과 문명충돌론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Bruce Russett의 민주주의 평화론과 Samuel Huntington의 문명충돌론은 전형적 예이다.⁽³⁾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정치 분야에서 어느 주제보다 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그들은 대부분 전쟁의 근본원인이 무정부적 국제정치체제에 있다는데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는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수많은 전쟁원인론을 개인적, 국가적, 국가간, 국제체제의 네 차원에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는 이론은 국가지도자의 특성을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 따라서 국제체제의 무정부상태를 근본원인으로 보는 다른 이론과 구별된다. 조박사도 국가지도층의 권력욕, 명예욕이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나 이와 같은 욕망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본성이라고 보지는 않는다.⁽⁴⁾ 이점에서 전통적 현실주의와 구별된다.

국가적 속성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는 이론으로는 권위주의 문화, 도구적 침략성, 형적압력이론, 도피설 등이 있고 국가간의 상호관계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는 이론으로는 행동심리학적 이론(배움의 이론, 안전 딜레마), 세력전이설, 기대효용론, 장의 이론, 민주주의 평화론 등이 있으며, 국제체제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는 이론으로는 극화

이론, 주기이론(장기주기이론, 자본주의 대체체제론) 등이 있다. 종합적 이론으로는 구성주의가 있다. 이 이론은 무정부상태 자체가 국가를 침략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다른 국가와 어떤 관계를 정립하는가에 따라 침략적이 될 수 있고, 우호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무정부상태의 성격은 국가가 결정한다. 국가의 구성원은 인간임으로 결국 인간이 결정한다는 의미와 같다. 그리고 그 어느 범주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운 이론으로 문명충돌론을 들 수 있겠다. 이 이론들은 대부분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이론도 모든 전쟁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⁵⁾

전쟁과 관련해서 앞으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첫째, 전쟁을 국가간의 무력충돌로 규정하지 않고 전쟁을 포함한 인간집단 간의 폭력적 충돌로 규정한다면, 혹은 국가간의 전쟁 외에 다른 인간집단 간의 무력 충돌도 포함시킨다면 전쟁을 없앨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인간의 본성은 침략적이고 파괴적이어서 어떤 제도 하에서도 폭력적 갈등은 없어질 수 없는 것인가 또한 신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인간의 본성이 폭력적인 것과 국가간의 전쟁과는 직접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실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 두 문제에 관해 학자들간에 아직도 의견이 갈라져 있다. 조박사는 인간은 동물성과 이성 및 인격의 세 요소를 동시에 찾고 있기 때문에 이성과 인격으로 동물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구학자들은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수립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전쟁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 하던가 항구적 평화수립에 관한 연구보다 단기적 전쟁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소위 평화연구(peace studies)는 분쟁해결(conflict resolution)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서구학자들이 규범적 연구보다 경험적 연구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 미래학은 과학이 아니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학자들은 미래학적인 연구대상인 항구적 평화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미국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교과서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Hans Morgenthau의 Politics Among Nations와 지금 많은 미국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정치학 교과서인 Kegley와 Wittkopf의 World Politics는 전쟁방지 방법을 비교적 상세히 논의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로 단기적 전쟁방지 방안을 논하고 있다. 이것은 이와 같은 국제정치학 연구경향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⁶⁾

그러나 동서사상가들은 고대로 영구평화론을 논의해왔다. Kant, Einstein, Jacques Maintain, Bertrand Russell 등은 모두 세계정부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대하여는 다시 논할 것이나, 그들은 다같이 인류가 국제정치체제의 기본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영구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⁷⁾

조박사는 이와 같은 영구평화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무정부상태, 즉 정글의 법칙에 놓여 있는 국제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영구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믿고, 이 국제정치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중심주의, 문화규범, 보편적 민주주의, 지구공동사회 그리고 팩스 유엔의 다섯 개 원칙에 입각한 유토피아 모델이다.⁽⁸⁾

다음절부터 이 다섯 원칙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조박사의 세계평화론이 다른 학자나 사상가의 이론과 어떤 점에서 같으며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인간중심주의

휴머니즘은 흔히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 운동에서 그 근원을 찾는다. 그러나 휴머니즘의 명칭이 이 르네상스 운동에서 유래하였다 하더라도 휴머니즘 정신은 고대 그리스와 고대 중국 및 고대 인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르네상스시대로부터 시작된 휴머니즘 운동을 중심으로 휴머니즘의 특성을 검토하고 조영식 박사의 인간 중심주의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Tony Davies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Burckhardt.....credited the Italian humanists with the ‘discovery of the world and man,’ a phrase that conceives of ‘man’ as a continent, like the undiscovered Indies or the New World, awaiting its Vasco da Game or Columbus; while Symonds praised Patriarch and his successors for the realization that ‘classic literature alone displayed human nature in the plenitude of intellectual and moral freedom.’ We might call this the myth of essential and universal Man: essential, because humanity-humanness is the inseparable and central essence, the defining quality, of human beings; universal, because that essential humanity is shared by all human beings, of whatever time or place.”⁽⁹⁾

여기서 Davies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인간의 핵심적 요소, 즉 결정적 특성은 인간적인 것(humanness)이며, 이 인간적인 것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르네상스는 인간과 세계의 발견, 다시 말하면 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던 인간을 자연적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으로 재발견 했으며, 인간성은 지적·도덕적 자유를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 하나 그가 암시하는 점은 르네상스 정신은 고전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물론 고전이란 그리스·로마의 고전을 의미한다.

휴머니즘의 어원은 라틴어 humanitas인데, humanitas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Philanthropia이고 다른 하나는 Paideia이다. 전자는 모든 인간에 대한 우의 즉 인류애를 말하고, 후자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교양교육(liberal arts)를 말한다.⁽¹⁰⁾

휴머니즘의 핵심인 인간적인 것(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통해 인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진다.

“What a piece of work is a man! How noble in reason! how infinite in faculties! in form and moving, how express and admirable! in action how like an angel! in apprehension,

how like a god! the beauty of the world! the paragon of animals! And yet, to me, what is this quintessence of dust?"⁽¹¹⁾

이상에서 우리는 휴머니즘의 정의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을 인류 전체와 동일시하는 견해(man as Man)와 인간을 개별적 독립체(man as a man)로 보는 견해로 갈라진다. Bullock은 전자를 믿는 휴머니즘을 집단적 휴머니즘, 후자를 믿는 휴머니즘을 부르주아 휴머니즘이라 불렀다.⁽¹²⁾ 집단적 휴머니즘은 인간 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단(이익단체, 정당, 국가) 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Marx가 인간소외, 인간성 회복을 주장할 때, 그는 인간 개개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전체,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 휴머니즘이 진정한 의미의 휴머니즘인가 아니면 반 휴머니즘인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게 된다. 마르크스주의가 인간의 창조성과 존엄성, 그리고 자유를 강조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이를 말살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사유재산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인간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휴머니즘이라 할 수 있으나, 인간의 역사는 인간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역사적 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점에서 휴머니즘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자유주의적 휴머니스트(부르주아 휴머니스트)들은 마르크스주의는 휴머니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Louis Althusser는 마르크스주의는 자연주의 휴머니즘(naturalist humanism)의 한 극단에 있다고 하면서, 마르크스주의가 서구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점에서 다른 휴머니즘과 다르나 초자연적 존재와 종교적 권위를 부인하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며, 이 지상에서의 인류의 복리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점에서 휴머니즘이라고 주장한다.⁽¹³⁾ 1975년 공산주의 치하의 유고슬라비아 벨그라드에서 결성된 Praxis Group은 마르크스주의가 생산의 힘과 생산관계가 아닌 인간의 창의력과 자유가 역사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점에서 휴머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산국가가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로 돌아갈 것을 제창했다.⁽¹⁴⁾

인간을 인류(인간 공동체)와 동일시하는 견해는 Rousseau, Kant, Thomas Paine 등과 같은 계몽사상가에 의해서 제창되었다. Alexander Pope가 “The proper study of mankind is Man”이라고 했을 때, 그는 인간 개개인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인간 전체를 말한 것이다. Rousseau가 “Man is born free.”라고 말하고, Paine이 “Rights of man belong to Man, not actual men”이라 할 때도 마찬가지다.⁽¹⁵⁾ Hamlet이 “What a piece of work in a man!”이라 했을 때, 그는 인간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인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Davies가 지적하듯이 a man을 Man으로 바꾸어 인쇄할 만큼 Hamlet의 인간을 인간 전체(universal Man)로 해석하려는 휴머니스트들이 많다.⁽¹⁶⁾ 인간을 추상적인 universal Man으로 변화시켜 인간 개인의 존재를 극소화하는 견해는 전체주의 정치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인간을 개별적 인간으로 보는 자유주의 휴머니즘은 Jonathan Swift가 Alexander Pope에게 보낸 편지가 잘 표현하고 있다.

“All my love is toward individuals.....I hate and detest that animal called man; although I heartily love John, Peter, Thomas and so forth.”⁽¹⁷⁾

Hume도 같은 의견을 가졌다.

“In general, it may be affirmed that there is no such passion in human minds, as the love of mankind, merely as such, independent of personal qualities, or services, or of relation to ourself.”⁽¹⁸⁾

Jacob Burckhardt(1818-1897)는 르네상스를 개인주의의 기원으로 보고 개인주의를 “근본적으로 개인으로서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 능력의 개발”이라고 규정하고, 인간은 정체성과 이름을 가지고 자유롭게 서서,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이라고 했다.⁽¹⁹⁾ 18세기 계몽주의사상에서 시작되어 19세기와 양자 세계대전 사이에 흥성하였던 자유주의 휴머니즘은 개인주의나 이성 및 인간발전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

다. 자유주의 휴머니즘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Sartre의 실존주의도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자유주의 휴머니즘에 가까우나, 개인의 선택은 즉 모든 다른 사람의 선택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집단주의 휴머니즘을 포용하고 있다. Sartre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f, however, it is true that existence is prior to essence, man is responsible for what he is. Thus, the first effect of existentialism is that it puts every man in possession of himself as he is, and places the entire responsibility for his existence squarely upon his own shoulders. And, when we say that man is responsible for himself, we do not mean that he is responsible only for his own individuality, but that he is responsible for all men.”⁽²⁰⁾

Bullock은 이 두 가지 휴머니즘을 절충하는 제3의 휴머니즘이 있음을 지적한다. 인간개성은 휴머니즘의 핵심적 요소이나, 인간 개개인은 사회 속에서 원자적 존재로 독립되어 살 수 없다. 인간은 인간관계를 개발하려는 욕구, 인간집단에 귀속하고 싶은 갈망, 타인의 협동과 애정의 필요성 등 사회적 충동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충동 없이는 개인의 주체성은 발육할 수 없다는 것이다.⁽²¹⁾

일본의 務台理作과 Corliss Lamont도 Bullock과 같이 자유주의 휴머니즘과 집단적 휴머니즘의 조화를 주장한다. 務台理作은 인간소외의 문제는 인류전체가 타과해야 할 과제인데, 개인이 인간소외에 대하여 투쟁할 때 이것은 인류전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된다고 말한다. 인류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시작되었으나, 기독교는 이교도를 배척함으로써 진정한 인류정신을 위배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인류개념이 일반적 인류개념으로 발전한 것은 18세기부터였으나, 이 인류개념도 추상적인 개념이었다고 지적한다. Kant와 Hegel은 인류를 인간성(human nature)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인간성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류가 인간 공동체라는 구체적인 실체로 규정된 것은 제1차 대전 이후의 일이다. 그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간 개개인이 인류공동체에 있어서 인간소외에 대하여 투쟁함으로써 전인적 인간이 된다고 말한다. 예컨대 개인이 폭정에 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류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²²⁾

Lamont는 휴머니즘 개념은 개인과 사회의 대립을 부인하고, 사회적 목표와 이상들은 자아의 목표와 이상의 불가분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기적 자아는 문화적 산물이라고 본다. 인간은 사회의 한 부분임으로 사회적 목적과 복지에 헌신하는 것은 구성원 각자의 행복과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의 안전과 조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²³⁾

둘째 문제는 인간성(human nature)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모든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성의 존중을 휴머니즘의 핵심이념으로 본다. 그러나 인간성의 내용에 대하여는 동양의 학자들과 같이 성선설, 성악설, 절충설 등으로 갈라진다.

Heidegger는 인간을 인간적인 인간(Homo humanus)과 야만적 인간(Homo barbarus)으로 분류하고, 인간적 인간은 로마의 덕(virtus)을 구현하고 그리스의 paideia (humanistas)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⁴⁾ 그는 휴머니즘이 인간성과 동물성을 동시에 가진 인간 중에서 인간성을 가진 인간을 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Thomas Huxley는 인간과 동물은 본질적으로 같으며, 인간은 의식을 가진 기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Freud, Adler, Jung, William James 등은 인간의 의식은 뇌와 신경계의 물리적 작용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인간-동물 일체론을 부인한다. 그러나 Freud는 인간에게 동물과 같은 파괴적 본능이 있음을 인정한다.⁽²⁵⁾

대다수의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이 동물성과 인간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인간성이 동물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성과 동물성 중 어느 것을 택하는가는 인간 자신이 결정한다고 믿었다. 인간 개인의 독자적 결정능력을 부인하고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이 행동한다고 주장한 중세기독교의 결정론을 부인하고,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Giovanni Pico della Mirandola의 선언은 대표적 예이다.

He therefore took man as a creature of indeterminate nature and, assigning him a place

in the middle of the world, addressed him thus: 'Neither a fixed abode nor a form that is thine alone nor any function peculiar to thyself have we given thee, Adam, to the end that according to the longing and according to thy judgement thou mayest have and possess what abode, what form, and what functions thyself shall desire, the nature of all other things is limited and constrained within the bounds of law prescribed by us. Thou, constrained by no limits, in accordance of thine own free will, in whose hand we have placed thee, shalt ordain for thyself the limits of thy nature. We have set thee at the world's centre that thou mayst from thence more easily observe whatever in the world. We have made thee neither of heaven nor of earth, neither mortal nor immortal, so that with freedom of choice and with honor, as though the maker and molder of thyself, thou mayst fashion thyself in whatever shape thou shalt prefer.'⁽²⁶⁾

여기서 Pico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핵심사상인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 자유의지, 인간자신의 선악결정권을 논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Pascal은 인간은 천사와 동물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Rousseau가 인간은 이성과 정서(정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Nietzsche가 합리적 아포로와 비합리적 디오니시스를 대조시키고, Faust가 악마적 에너지와 공포 및 이성과 질서의 이중적 성격의 심볼로 묘사된 것도 이와 같은 인간성의 이중성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인 Jean-Francais Lyotard는 인간을 구성하는 생물학적 인간성과 문화적 인간성 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음을 개탄한다.⁽²⁷⁾

그러나 휴머니스트들은 반휴머니스트를 제외하고는 교육과 개인의 자유를 통해 문화적 인간성이 생물학적 인간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²⁸⁾

그러면 동물성과 구별되는 인간성(인간적인 것—humanness)이란 무엇인가? Heidegger는 Roman virtus라 하고, Thomas Mann과 E.M. Foster는 이성과 질서(동정과 통제)를 중요특징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논한 휴머니스트들은 많지 않다. 동물적이 아닌 것과 신적인 것이 아닌 것이면, 다 인간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인가?

세번째 문제는 인간을 개인으로 규정하든 인간전체로 규정하든 인간의 인간다운 점을 옹호하는 휴머니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Erich Fromm은 휴머니즘의 네개 특징을, Lamont는 10개의 특징을, 그리고 Bullock은 세 개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다.⁽²⁹⁾ 그러나 이상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가운데 휴머니즘이 정의되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휴머니즘은 신 및 자연과 상호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립된 생명체라고 믿는다. 신이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창조했을지 모르나 인간은 다른 자연과 엄연히 구별되는 독자적 존재라는 것이다.

둘째, 휴머니즘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믿는다. 개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휴머니즘(자유주의 휴머니즘)과 인간 공동체(인류)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휴머니즘(집단적 휴머니즘)이 있으나, 두 휴머니즘이 다 같이 인간을 존중한다는 데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개개인의 자기 발전은 인간 공동체의 발전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믿는다.

셋째, 인간은 초자연적 현상을 부인하고 자기운명의 주인공으로서 무한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넷째, 휴머니즘은 도그마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세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 휴머니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준다. 르네상스 휴머니즘(14~16세기)은 개인으로서의 인간과 인간전체로서의 인간개념을 발전시키고, 인간성과 동물성의 공존과 자유의지의 개념을 창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신념을 제창하였는데, 이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성적 휴머니즘으로 발전하였다. 개인으로서의 인간보다 인간전체로서의 인간개념이 중요해지고 파괴적이고 전체적인 동물성보다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성이 더 강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전

체로의 인간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 있게 되었고, 이는 20세기에 이르러서 추상적 개념에서 인류라는 구체적 개념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 이성적 휴머니즘은 19세기에 이르러 자유주의 휴머니즘과 집단주의(진보적) 휴머니즘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전자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접목되고, 후자는 공동선을 중시함으로써 마르크스 공산주의와 접목되었다. 20세기 냉전시대에는 두 휴머니즘을 접목시키려는 Praxis 그룹의 사회주의 휴머니즘이 등장하고, 이와 더불어 실존주의 휴머니즘, 회의적 휴머니즘, 반휴머니즘 등 다양한 휴머니즘이 등장했다. 실존주의 휴머니즘을 대표하는 Sartre는 인간의 완전한 자유를, 회의적 휴머니즘을 대표하는 Lyotard는 인간의 생물학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만의 딜레마를, 그리고 현대 반 휴머니즘을 대표하는 Foucault는 discourse로 인한 인간성 상실을 휴머니즘의 핵심문제로 논하고 있다.⁽³⁰⁾

이상에서 검토한 서구 휴머니즘의 틀 안에서 조영식 박사의 인간중심주의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그는 인간중심주의(human centrism)는 인본주의(anthropomorphism or anthropocentrism)도 아니고, 인도주의(humanitarianism)도 아니며, 인문학(humanities)을 의미하는 휴머니즘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인성주의(personalism)도 아니라는 것이다.⁽³¹⁾

인본주의는 인간을 신과 동격에 두고 있는 사상이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 초월적 실재 혹은 영원한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서양의 Personalism과 유사하나 초월적 실재감은 반드시 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personalism은 아니다. 조박사는 천도교의 人乃天, 힌두교의 梵我一如, 불교의 佛心有心, 유교의 天子思想을 인본주의로 보고 있다. 이들이 다 인간을 신과 동격화 시키기 때문이다.⁽³²⁾ 그는 인간은 신의 의도를 실현하는 종교적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의 주체자로서 우주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간도 아니라고 말한다.⁽³³⁾

인도주의는 휴머니즘의 한 요소이지 휴머니즘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타인

에 대한 연민과 지원을 강조하는 인도주의는 휴머니즘 정신에서 나온 것은 확실하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신의 아들이 아닌 정신적인 실재라고 보면서 동물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주장”한다.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삼이일(三而一), 즉 정신과 육체와 인격(거듭난 마음, 즉 重生=正實)이 하나로 완전히 통정될 때 비로소 값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³⁴⁾

여기서 우리는 휴머니즘에 대한 첫째 질문과 둘째 질문에 대한 그의 견해를 알게 된다. 즉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그는 인간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전체(Humanity) 혹은 인간의 본질(Essence of Man)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Sartre는 계몽주의의 Universal man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Each man is a particular example of a universal conception, the conception of Man. In Kant, this universality goes so far that the wild man of the woods, man in the state of nature and the bourgeois are all contained in the same definition and have the same fundamental qualities..... the essence of man precedes that historic existence which we confront in experience.⁽³⁵⁾

인간을 man으로 보느냐 Man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간개인과 인간집단과의 관계에 대하여 개개인을 중시하는 견해, 인간집단을 중시하는 견해, 통합적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인간을 인간 개개인으로 보는 견해는 자유주의적 정치관을, 그리고 인간전체로 보는 견해는 집단주의적 정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조박사는 이 문제에 대하여 통합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Man is both an independent existence leading an individual life and a social being as a member of a social group. When one is living alone, everything one does can be good and righteous. But as a member of society, one can not lead a life of one's own free will

alone.⁽³⁶⁾

그는 인간과 사회, 개인과 국가, 국가와 인류사회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며, 부분은 전체의 일부이고 전체는 부분의 집합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나 인류 공동체는 인간 개개인과 별개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³⁷⁾ 그러므로 인간은 인격을 가진 독립된 실체로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되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⁸⁾ 그런데, 조박사가 말하는 사회(인간집단)는 국가나 이익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공동체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가 말하는 인간전체라는 의미의 인간관이 인간전체를 대표하는 인류사회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국가를 인류공동체의 복지를 위한 대행기관이라고 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³⁹⁾ 이에 대하여는 지구공동체와 민주주의를 논할 때 상론할 것이다.

조박사의 인간성의 본질에 관한 의견은 이를 동물성이나 신성으로 보는 일원론이나 동물성과 인간적인 것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 보는 이론과는 다르다.

물질(무기물)에는 가치가 있고, 생물에는 지각이 있으며 동물에는 감각이 있고 인간에게는 정신(감성과 이성)이 있어, 이들은 각기 이러한 “힘”에 의하여 생존을 유지한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수성(獸性)이면 죽하고, 신에게는 신성(神性)이면 죽하나, 인간에게는 정신과 육체 외에 인격이 더 필요하다. 정신만을 강조하는 철학이 유심론, 육체만을 강조하는 철학이 유물론이라 한다면, 정신·육체·인격 3자를 포함시키는 철학이 전인론(全人論)이다.⁽⁴⁰⁾

서구 학자들은 인간이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적이라고 보는데 대하여, 조박사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독특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 인격은 정신과 육체의 양성을 통정한 것으로 문화적 산물이다. 이에 대하여는 문화규범을 논할 때 다시 언급할 것이다.

그러면 인간을 인간전체(Humanity)로 보는 인간관, 또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

보는 인성관을 가진 조박사의 인간중심주의는 어떤 휴머니즘인가?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은 신으로부터 독립되고 자연의 일부이나 자연과 독립된 존재라고 믿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믿으며 초자연적 현상을 부인하고 인간의 무한한 발전능력을 믿는 점에서 서구 휴머니즘과 같다.⁽⁴¹⁾ 다만 인간과 인간 전체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집단과의 관계에 대하여 통합적 이론을 제시하고, 인간성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새로운 요소(인격)를 강조하며, 다음에 논하는 바와 같이 인간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인격은 문화적 규범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다른 서구 학자들의 견해와 구별된다. 서구 학자들은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갈라져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휴머니스트들이 신의 예속으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을 휴머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있는데, 조박사는 신의 예속으로부터의 인간의 해방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예속으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것을 제3의 휴머니즘이라 부르고, 제3의 휴머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Neo-Renaissance 운동을 제창한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발전시킨 과학·기술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인간은 인간성, 그 중 인간적인 것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제2의 인간해방을 위해 제2의 르네상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⁴²⁾

3. 문화규범

문화규범을 이해하려면 우선 문화의 뜻부터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문화와 문명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여기서는 Samuel Huntington의 정의에 따라 문명과 문화를 같은 현상이나 문명은 문화의 최대 개념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물론 19세기 독일에서 문화는 한 사회의 가치, 이상 및 고도의 지적·예술적·도덕적 특성을 의미하고, 문명은 한 사회의 물질적·기술적 특성을 의미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구별하는 학자가 드물다. 조박사는 양자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⁴³⁾ 조박사와 Huntington의 차이점은 조박사는 문화와 문명을 같은 현상으로 보는 반면, Huntington은 문명을 유사한 문화의 총합으로 본다는 것이다. 예컨대 Huntington은 중화문화권에 한국문화권을 포함

시킨다.

문화에 대하여, 조박사의 평화사상과 관련하여 두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하나는 문화의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의 변화 과정이다. 첫째 질문은 문화 규범과 직접 관련이 있고, 둘째 질문은 세계문화 형성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문화의 사전적 의미를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에서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 번째 기준에 의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 state of being cultivated: the enlightenment and excellence of taste acquired by intellectual and aesthetic training.

이에 상응하는 civilization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n ideal state of human culture characterized by complete absence of barbarism and non-rational behavior, or optimum utilization of physical, cultural, spiritual and human resources and perfect adjustment of the individual with the social framework.

두 번째 기준에 의한 문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 body of customary beliefs, social reforms, and material traits constituting a distinct complex of tradition of racial, religious or social groups.

전자를 규범적 정의라고 부르고, 후자를 사실적 규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정의에 따라 서구 유명학자들의 정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⁴⁴⁾

<표 1> : 문화의 정의

이름 정의	규범적 정의	사실적 정의
Coleridge (1772-1834)	Capacity of and necessity for humankind to pursue the goal of spiritual perfection; harmonious development of those qualities and faculties that characterize our humanity.	
Carlyle (1775-1881)	Culture represents the dynamic and ideal one of two departments of human activity which concerns the inner life and the human spirit as opposed to the mechanical and material one which comprises the progress of industrialization.	
Arnold (1822-1888)	Culture is the study of perfection: True human perfection is a harmonious perfection, developing all sides of our humanity and a general perfection, developing all parts of our society.	
Wendt		Socially shared knowledge as opposed to privately shared knowledge; culture takes many specific forms including norms, rules, institutions, ideologies, organizations, threat-systems.
Whitehead	Five qualities — truth, beauty, adventure, art and peace — constitute civilization; peace is a harmony of harmonies which calms destructive turbulence and completes civilization and other qualities can be destructive.	

18세기 낭만주의 영문학자들은 규범적 정의를, 20세기 사회과학자들은 대부분 사실적 정의를 하고 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문화의 특성은 신념 체계, 이상, 관습, 제도, 정체성 등이다. 그리고 개인의 특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는 인간집단 중 제1차 집단(혈통이

나 조상이 같거나 같다고 믿는 인간집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제2차 집단 (주로 물질적 이득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인간 집단)은 문화를 가질 수 없다고 본다. 20세기 후반, 세계화가 본격화되고 지구시민사회가 등장함에 따라 형성되고 있는 제3의 집단(공동선을 추구하는 인간집단)도 문화를 가질 수 있는지는 후에 논하기로 한다.

두 번째 문제는 문화가 인간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혹은 인간사회에서의 역할이다. Parsons는 사회체제는 경제, 가정, 문화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는 전체 사회체제의 안정과 형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⁴⁵⁾ Wendt는 문화는 경제나 정치체제와 별개인 사회의 한 분야가 아니고 지식이 공유되는 곳에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경제나 정치체제가 조직상 별개의 사회 분야로 존재하느냐, 상호 다른 관계를 갖느냐(다른 형태로 존재하느냐)하는 것도 문화가 결정한다고 말한다.⁽⁴⁶⁾ 이런 점에서 Wendt는 Parsons보다 문화의 독립적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다. 마르크스를 비롯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문화는 경제의 상층구조이며, 따라서 지배계급이 변함에 따라 문화도 변한다고 주장한다.⁽⁴⁷⁾

이 논쟁은 문화가 독립변수인가, 매개변수인가 아니면 종속변수인가의 논쟁이다. 미국 정치학계에서는 1940년대, 1950년대 자유민주주의를 믿는 Edward Banfield, Alex Inkeles, Gabriel Almond, Sidney Verba, Lucian Pye, Seymour Martin Lipset과 같은 학자들은 문화가 정치·경제 발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들의 학설이 학계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1970년대 이르러 Gunther Frank, Fernando Henrique Cardoso 등과 같은 종속이론가, Immanuel Wallerstein과 같은 자본주의세계 체제론자, Kwame Nkrumah와 같은 신식민주의론자들은 마르크스주의자와 같이 문화를 종속변수로 보고 경제를 독립변수로 보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서는 다시 문화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이론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Lawrence E. Harrison과 Samuel P. Huntington이 편찬한 Culture Matters는 문화중시론자의 견해를 모은 책이다. 이 책 서론에서 Harrison은 문화가 독립변수는 아니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지리적 요인, 기후, 정치, 역사적 유산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문화가 그 어느 요인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⁴⁸⁾ Lipset, Verba, Almond 등 학자들은 서구민주주의는 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정치문화가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Culture Matters의 기고자들은 정치, 경제발전의 문화적 기반을 강조한다.

세 번째 문제는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문화는 인간이 창출하여 그 속에서 사는 인위적 환경임으로 인간은 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문화는 오랜 시간이 걸려 창출되어 인간의 생활을 지배해 왔으므로 변화시키는데 오랜 시일이 걸린다. 한 국가내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태도·가치 전이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아동양육방법, 교육, 종교, 대중매체, 동료관계, 직장 등의 제도·기관을 통해 국민의 가치관 및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체성(identity)인데, 이 정체성은 문화의 다른 요소인 가치관, 관습, 이념, 행동양식 등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대 국제정치에 있어서 민족주의가 강한 이유는 민족을 단결시키는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민족이 정체성이 강한 이유는 인간은 혈연과 언어가 같은 조상에서 왔다는 상상된 믿음이 민족적 정체성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 씨족, 부락, 부족, 동족 등 제1차 집단도 정체성이 강하나 민족보다 안정·복지보장과 폭력의 강도에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민족국가에 대한 충성이 적은 제1차 집단에 대한 충성심보다 강하다. 세계화시대에 이르러 논쟁이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민족적 정체성이 전 인류적 정체성으로 변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정체성 전이(identity shift)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두 상반된 견해가 있다. 하나는 민족적 정체성이 지구적(전 인류적)정체성으로 변하기 어렵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Anthony Smith와 Immanuel Wallerstein은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Smith에 의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구적 문화를 창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 전 근대적 전통, 신화, 국경 등 때문에 전 근대적 유대와 감정은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기술발전이 전 근대 문화를 대체하는 새 문화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경제적 결정론은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이 정체성과 문화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 근대화와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개인이 망각되고 집단이 와해됨으로써 그들은 위기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전통적 정체성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국민의 위기의식을 역이용하여 민족전통과 문화를 미화시킴으로서 공동운명체로서의 민족 국가를 강화하려 한다.

셋째, 민족문화는 정통성, 정체성, 공동운명체적 단결력을 가지나 지구 문화는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구 문화는 어느 장소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어느 시대와도 관련이 없으며, 환상적 미래를 추구하고, 근본적으로 타산적이며 비 정서적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로 지구적 통신·전산망에 의하여 접촉하고 있을 뿐이고, 그 지도자들도 민족 문화를 창조하는 인도주의적 지식인이 아니고 기술자들이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지구 문화에 대하여 동질성을 느끼지 못한다.⁽⁴⁹⁾

Wallerstein은 지구적 문화를 문화의 특성 그 자체 때문에 형성될 수 없다고 본다. 문화를 정의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계선이란 압박과 압박에 저항하는 경계선이기 때문이며 문화는 전투적인, 다시 말하면 적을 필요로 하는 집단적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⁰⁾

Ali Mazrui는 인간은 문화적 엔지니어링(cultural engineering)을 통해 세계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국가는 세계문화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인류는 세계정부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문화에 더 가까이 있다. 세계국가는 다양한 인종, 국가, 문화 그룹간에 가치와 규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형성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합의는 여러 그룹간의 통합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통합과정은 공존관계(relationship of coexistence), 상호 접촉관계(relationship of contact), 타협관계(relationship of compromise),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렴관계(relationship of coalescences)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문화는 이와 같은 각 그룹간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⁵¹⁾

지구 공동체 및 세계국가 건설 가능성에 대하여는 다음에 상세히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문화에 관한 분석의 틀을 통해 조박사의 문화와 문화규범을 규명하기로 한다. 조박사는 문화를 「소여된 자연을 소재로 하여 인간이 일정한 목적, 즉 가치에 따라 그 이상을 실현하려는 과정」으로 총괄하여 지칭하고 있다.⁽⁵²⁾

문화는 인간이 창출하는 것이며 또 인간만이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에

게는 문화가 없고, 신에게는 문화가 필요 없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은 육체와 정신(감성 및 이성) 그리고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이 감성만 가지고 있다면 감성만 가지고 있는 동물처럼 문화를 창출할 수 없고, 이성만 가졌다면 문화는 필요 없다. 신은 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격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⁵³⁾

문화는 인간이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창출하는 것이다. 이 가치는 문화규범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문화규범은 유심론에 입각한 「자연」 규범, 유물론에 입각한 인위규범과 구별되는 규범이다. 「자연」 규범은 사실상 「초자연」 규범으로, 신본주의 아래 신의 절대적 섭리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이며, 인위규범은 국가와 같은 인간 집단이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행동규범이다. 따라서 전자는 절대불변이나 후자는 국가나 다른 집단의 성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문화규범은 인류전체의 행복을 위해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규범으로 영구불변하는 것은 아니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의 행복의 내용은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일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인류는 하나의 문화규범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화규범은 문화사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문화사관은 존재와 당위성을 겸비한 인간은 유심이나 유물,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양자를 통합하여 인간이 있어야 할 정당한 위치와 사명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⁵⁴⁾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문화규범은 다음의 다섯 가지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인간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선이다. 둘째, 문화(문명)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는 것은 선이다. 셋째, 보편적 민주주의와 부합한 것은 선이다. 넷째, 인간의 상호협력(협동)에 기여하는 것은 선이다. 다섯째, 이상의 네 규범을 보호·발전시키는 것은 정의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의이다.⁽⁵⁵⁾

이 문화규범을 윤리학적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문화규범은 어떤 성격의 윤리관이며, 어떠한 이론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등에 관하여 기존의 윤리론과 비교하는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논급하지 않을 것

이다.

첫째 규범은 인간중심주의를, 둘째 규범은 문화규범을, 셋째 규범은 보편적 민주주의를, 넷째 규범은 GCS(Goodwill, Cooperation and Service 혹은 Global Common Society)를 각기 의미한다고 하겠다. 여기서 조박사의 문화에 관한 정의는 사실적이지 않고 규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화란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여야 할 가치를 의미한다. 문화 규범에 따라 인류는 문화복리주의를 이 지상에 실현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문화 복리주의는 구체적으로 통정된 민족주의, 경제 평등주의, 호혜주의, 인권주의, 문화주의, 과학주의, 국제 민주주의(보편적 민주주의), 반전 평화주의의 8개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⁵⁶⁾ 다시 말하면 문화복리주의는 문화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보편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주의는 인간사회에서 비인간적인 요소(폭력주의, 영리주의, 미신사상)를 타파하려는 사상이다.⁽⁵⁷⁾

두 번째 문제와 관련, 조박사는 문화는 인간이 동물성에서 벗어나 신성을 지향하는 이념으로서 인간역사의 원동력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문화를 독립변수로 보는 것 같다. 그가 규정하는 인간의 3대 요소인 육체, 정신, 인격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인격은 육체와 정신을 통정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객관적 여건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 정신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인격자는 인간 대 자연, 개인과 사회, 인간 대 인간 관계에서 항상 보다 나은 것, 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함으로써 인간의 창조적, 진취성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문화규범은 인간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강령인 것이다.⁽⁵⁸⁾

세 번째 문제와 관련, 조박사는 문화의 변화를 믿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은 문화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 문화를 창조했던 것과 같이 세계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신도 동물도 아닌, 그렇다고 그 중간적 존재도 아닌 인간은 그 자유 의지에 따라 지상에 천국을 창설할 수 있고 지옥을 창설할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지상천국은 문화왕국이고 이 문화왕국은 유토피아이다.⁽⁵⁹⁾ 더구나 조박사의 문화는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문화가 아니고 전 인류가 준수해야 할 규범(문화규범)

의 결과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류가 이 문화규범을 공통으로 준수하기로 결정하면 세계문화의 창출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서구 학자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 즉 세계화는 문화적 정체성의 기반인 인종, 계급, 민족 등을 파괴시킨다는 주장이나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할 것이라는 주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겠다.⁽⁶⁰⁾

4. 보편적 민주주의

Robert Dahl의 조사에 의하면 186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 간격으로 볼 때 서구민주주의 국가의 수는 제1차대전 직전과 소련 붕괴직전을 제외하고는 절대적 수에 있어서나 상대적 수에 있어서나 꾸준히 증가해왔다.⁽⁶¹⁾

민주주의의 역사를 볼 때, 미국 독립(1776) 이후 제1차 대전 종료직전(1917)까지는 서구 민주주의의 양대 조류인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흥성하였으나, 소련의 볼셰비키 정권이 수립된 후에는 서구 민주주의 외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가 서구 민주주의에 도전하게 되었다. 정치체제간의 상호각축전은 제2차 대전 후에 동서냉전으로 발전하였다. 동서냉전 중에 서구 식민지 국가로부터 독립한 제3세계 국가가 제3세계 고유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세 민주주의 체제가 대립하였다.⁽⁶²⁾ 그러나 동서냉전 종식 후 구 소련국가와 동구권 국가는 물론 제3세계 국가가 대부분 서구 민주주의를 지향함에 따라 서구민주주의 국가가 냉전 후 시대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냉전 후 시대에는 서구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충하거나,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출하려는 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냉전종식 전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제3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냉전 후 시대에는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서구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이론으로 associational democracy, radical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등이 있고,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에서 지구 단위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communitarian democracy, cosmopolitan democracy, delib-

erative democracy 등이 있다. 어떤 민주주의 이론이 양 분야에 다 속하는 이유는 그 이론은 국가단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participatory democracy를 제외하고는 일부국가 내에서 실험 중이거나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를 분류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민주주의의 사상이 규범적(normative)인가 경험적(empirical)인가 아니면 양 요소를 공유하는가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⁶³⁾ 어떤 학자는 민주주의가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⁶⁴⁾ 또 다른 학자는 민중이 정치에 참여할 때 직접 참여하는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가(대표성 문제) 그리고, 직접 참여한다면 어떻게 참여하는가(참여 문제)에 따라 민주주의를 구별하기도 한다.⁽⁶⁵⁾

완벽한 유형(typology)이나 분류법(classificatory scheme)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시공적 범위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해야 한다. 즉, 인류역사 전체를 포괄해야 하고, 전 지구를 포괄해야 한다. 둘째, 가치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필자는 민주주의를 한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보다, 민주주의와 다른 정치체제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주주의 간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민주주의와 다른 정치체제 간의 차이 및 각 민주주의간의 차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근본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 통영의 단위, 대표형태와 참여형태의 4대 기준으로 민주주의를 구분한 다음, 이 4대 기준을 다시 여러 소 기준으로 세분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역사적으로 실현되거나, 학자들 간에 논의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민주주의의 분류

목적	통영의 범위 (scope of governance)			통영의 형태 (mode or governance)			
				대표 (representation)		참여 (mode of participation)	
자유	조직적 organizational	공간적 geographic	기능적 functional	대표의 형태 mode of representation	대표 단체 unit of representation	참여의 형태 mode of participation	참여의 영역 sphere of participation
평등:	*국내정부기구 (Intra-state): 지방(local) 지역(regional) 중앙(central)	*국가내 (Intra-state): 지방(locality) 지역(region) 전국(nation)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직접참여	제1차 그룹 (인종, 종교, 언어 등)	선거 소환 (recall)	정치적 영역 (political sphere)
경제 사회 법적	*국제정부기구 (Inter-state): 지역(regional) 지역간 (inter-regional) 범세계(global)	*국가간 (Inter-state): 지역(region) 지역간 (multiple-region) 지구(globe)	교통통신 환경 보건 교육 체육 복지 노동 법률 메스컴 포괄적	대의원을 통한 참여	제2차 그룹 (이익 단체) 제3차 그룹 (시민사회 단체)	국민투표 (referendum) 토의 (deliberation)	경제적 영역 (economic sphere or the market) 시민사회영역 (civil society sphere)
정의	*국내비정부기구 (Intra-state): 지방 지역 중앙						
	*국제비정부기구 (Inter-state): 지역 지역간 범세계						

(1)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법적 평등을 중시하고(목적), 국내 정부기구(지방, 지역, 중앙정부)에만 실시되며(통영의 조직적 측면), 국가 내에서만 적용되고(통영의 공간적 측면), 주로 정치 분야에 국한된다(통영의 기능적 측면). 국민이 직접 정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참여하며(대표의 형태), 대의원은 주로 지역을 대표하고 어떤 그룹을 대표하지 않는다(대표단체). 그리고 국민은 원칙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예외적으로 국민투표와 소환에 참여한다(참여의 형태). 경제적 영역과 시민사회영역은 정치적 영역과 구

별되고 정부는 경제적 영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역 침범을 경계한다.⁽⁶⁶⁾

(2)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주로 목적과 참여 영역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구별된다. 정치적 자유보다는 경제적·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평등을 더 중시하고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는다. 다른 면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와 큰 차이가 없다.⁽⁶⁷⁾

(3)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독재)

정치적 자유는 무시하고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중시한다(목적).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 그리고 시민사회를 구별하지 않는다. 다른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와 동일하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강조하나 조직적, 공간적 측면에서 통영의 단위는 국가이다.⁽⁶⁸⁾

(4)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참여 민주주의는 목적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동일하고, 통영의 조직적·공간적 측면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통영의 기능적 측면과 대표의 형태 측면과 참여의 형태 측면에서 국민의 직접 개입이 확대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문제에는 국민이 직접 토의에 참여한다. 또 대의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대의원에 대한 통제를 소환, 국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강화한다.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 사회단체가 그룹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핵심제도인 정당정치, 주기적 대의원 선거를 인정하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민주주의 형태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대의원이 국민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거나, 국민의 정치에의 적극참여는 국민에게 정치적 효용성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공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며, 그들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참여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말한다.⁽⁶⁹⁾

(5) 연합적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

이 형태의 민주주의는 다 인종, 다 종교, 다 민족 등 제1차 그룹간의 대립이 심한 국가에서 시행된다. 따라서 자유보다도 평등(특히 정치적, 법적, 사회적 평

등)을 중시한다. 통영의 단위, 대표, 참여 등 다를 측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같다.⁽⁷⁰⁾

(6) 결사체 민주주의(Associational Democracy)

결사체 민주주의는 목적에 있어서 자유와 정치적 평등을 동시에 중시하고, 대표의 형태에 있어서 국민의 직접 참여와 대표단체에 있어서 제3그룹(시민사회단체)의 적극 활동과 정치에의 적극 참여를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구별된다. 결사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지방 분권은 중앙정부가 통영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나, 결사체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가가 통영의 업무를 자발적 결사체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self-governing association)는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이다. 이 결사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Tocqueville과 Oakeshott는 다른 정의를 하고 있다. Tocqueville는 결사체를 시민결사체(civil association)와 정치적 결사체(political association)로 구별하고, 시민 결사체에는 사회의 공공목적을 위해 결성되는 시민 사회단체 외에 특정 그룹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도 포함시키고 있다.

Americans of all ages, all conditions, and all dispositions constantly form associations. They have not only commercial and manufacturing companies, in which all take part, but associations of a thousand other kinds, religions, moral, serious, futile, general or restricted, enormous or diminutive.⁽⁷¹⁾

Oakeshott는 결사체를 시민 결사체(civil associations)와 기업 결사체(enterprise association)로 분류한다. 시민 결사체는 구체적인 조직을 의미하지 않고, 회원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의 수용을 의미하며, 이 도덕적 기준은 평등,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 결사체는 도덕적 결사체라 할 수 있다. 그는 기업 결사체에 특정한 이기적 목적달성을 위해 조직되는 자발적 결사체뿐만 아니라 인종단체, 민족(ethnic group), 종교단체 등 비영리 목적의 비자발적 결사체도 포함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국가도 시민결사체의 이상형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Oakeshott는 기업 결사체에 모든 대표단체(제1, 제2, 제3차 그룹)를 포함시킨다.⁽⁷²⁾

Lucio Baccario의 정의는 이와 같은 정의의 혼돈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는 회원제 그룹과 시민사회단체(NGO)를 구별하고, 결사체를 시민사회단체와 동일시하고 있다.⁽⁷³⁾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여의 영역은 공공영역(public sphere)과 사적영역(private sphere)으로 구분되는 바, 공공영역은 국가가 담당하는 영역이며, 경제적 영역은 사적 영역에 속한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제2차 집단 즉, 이익 단체가 활동하고, 시민사회에서는 제3차 집단과 제1차 집단이 활동한다. 그러나 시민사회 단체는 회원 구성이 극히 유동적이며, 탈퇴가 자유롭다.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때는 시민사회는 공적영역(public sphere)이 된다.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에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공존한다. 결사체 민주주의는 시민사회 단체의 정부 참여를 통해 시민사회의 공적영역화를 도모한다. 그 근본 목적은 대의 민주주의의 민주주의 결핍(democracy deficit)을 보완하는데 있다.⁽⁷⁴⁾

Cohen과 Arato는 시민사회의 양면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If, however, one develops a more complex model of civil society, recognizing that it has public and associational components as well as individual private ones, and if, in addition, one sees that the idea of moral autonomy does not presuppose possessive individualism the rights thesis begins to look a bit different.⁽⁷⁵⁾

결사체 민주주의 하에서는 정치적 영역은 시민사회단체의 경제·사회 업무 통영을 감독하고 규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결사체는 정치적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을 연계시킴으로써 권리 중심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중심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동시에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⁷⁶⁾

(7) 공동체민주주의(Communitarian Democracy)

공동체민주주의는 목적에 있어서 자유보다 평등(정치, 경제, 사회, 법적평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이익, 즉 공동선을 중시한다. 통영의 단위에 있어서 국내·국제 모든 통치기구와 지역에 적용되어야 하고, 모든 기능을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대표의 형태에 있어서 직접참여를, 대표단체에 있어서 제2차 집단과 제3차 집단의 참여를 주장한다. 제1차 집단의 역할에 대하

여는 부정적인 것 같다. 제1차 집단은 정치체제의 공동체적 성격을 약화 내지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의 형태에 있어서도 제2차 집단과 제3차 집단은 정책결정에 직접참여 한다. 이에 따라 세 참여의 영역도 붕괴된다. Burnheim같은 공동체주의자는 민족국가를 종식시키고 공동운명의 자취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할 것을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는 모든 사회생활을 정치화하고 정치생활의 양분화(외국·내국/ 공적·사적/ 사회·자연)를 없앨 것을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 시민사회의 세 구분은 무의미하게 된다.⁽⁷⁷⁾

공동체민주주의가 전술한 다른 민주주의와 크게 다른 점은 공동체민주주의가 범세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국내·국제 모든 공간적, 조직적 단위에서 실시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하나 전술한 민주주의와 다른 점은 결사체 민주주의를 제외하고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 내에서 더 잘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의 목적 중 개인의 자유와 평등보다 공공선에 우선순위를 두는 점에서도 특이하다.

(8) 급진적 민주주의(Radical Democracy)

국가의 목적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보다 평등(정치, 경제, 사회, 법적 평등)을 우선시 하고, 민주주의는 조직적, 공간적, 기능적 모든 통영의 단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정치의 정의(정치적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권력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가설)를 부인하고, 정치의 이분법적 분류(국내·국외/ 공적·사적/ 자연·사회)를 반대한다. 따라서 국제기구와 국제관행의 민주화를 주장한다. 이점에서 공동체민주주의와 같다. 그러나 공동체민주주의가 인간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고, 하나의 공동선의 추구를 위해 단결한다고 보는데 대하여, 급진적 민주주의는 인간은 여러 가지 목적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여러 자치적 운명공동체에 속하며, 특정한 영토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는 점에서 공동체민주주의와 다르다. 여러 목적이란 개인과 공동체의 권력확장, 공공선의 신장, 인도적 통영, 자연과의 조화 등을 말한다. 대표의 형태에 있어서 직접 참여, 대표 단체에 있어서 모든 단체의 참여를 주장한다. 다만 공동체민주주의처럼 개인의 참여보다 단체의 참여를 중시한다. 그리고 이익단체, 시민사회단체, 제1차적 단체보다는 사회운동에 의한 공동체 통영을 중시한다. 사회운동은 사회 모든 단체간의 민주적 균형(democratic equivalence)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구

체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증진과 여성의 이익, 소비자의 이익 등 여러 다른 그룹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며, 어느 한 그룹의 이익을 위해 다른 그룹의 이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란 권력쟁취를 위한 투쟁이 아니고 가치의 전환, 문화의 변화를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정치를 계급과 권력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정체성(identity)과 자치적 운명공동체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참여의 영역 중, 정치적 영역을 최소화시키고 시민사회영역을 극대화시키려 노력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민주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 접목시켜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⁷⁸⁾

(9)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민주주의의 목적보다는 통치방식에 더 관심이 있다. 통영의 단위에 있어서도 영토에 의하여 제한된 정치공동체보다는 민중이 자신의 이익과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운명공동체의 통영에 더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심의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민중(demos)은 한정된 영토에 의하여 결정되나, 심의민주주의 하에서는 기능적 분야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국민을 관할하는 국가에 의하여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된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통영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공동체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할 뿐 구체적 기구와 절차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심의공동체가 국제적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침묵하고 있다.

통영의 단위는 조직적, 지역적, 기능적 모든 측면을 망라한다. 단 대표의 형태와 참여의 형태에 있어서 직접참여와 심의를 통한 정책결정을 주장한다. 집단의 토의 참여보다 개인의 토의 참여가 핵심이다. 개인이 공동으로 심의하여 어떤 정책을 선택하게 되면, 이것이 구성원 전체의 선택이 된다. 이것은 자유주의 원칙(개인의 자유)과 민주주의 원칙(다수결)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의 형태에 있어서 심의(deliberation)를 가장 중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모든 사람의 의지(will of all)에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의 토의(deliberation of all)에 두고 있다.⁽⁷⁹⁾ 참여의 영역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역에의 적극적 참여를 중시한다. 그러나 공동체민주주의나 급진적 민주주의와는 달리, 시민사회 영역이 정치적 영역을 대체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John H. Dryzek은 세계

화 현상에 부흥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정부 없는 통영을 하고, 이 통영을 민주화(심의를 통한 정책결정)할 것을 제의한다.⁽⁸⁰⁾

심의민주주의의 이론적 핵심은 지식과 진리는 권력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오직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동문제를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충분히 토론한 결과가 진리로 인정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만이 개인의 상호이익을 넘어 공동선을 발견하고 집단적 정체성과 상호이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⁸¹⁾

(10) 세계 민주주의 (Cosmopolitan Democracy)

세계 민주주의의 주창자인 David Held는 민주주의의 목적을 7개 범주(신체적 건강, 사회복지, 문화, 시민단체, 경제, 평화, 정치)로 분류하고 이 목적이 민주주의 권리가 되어야 하고,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법적 질서라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자유(문화의 범주는 사상, 신앙,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고, 시민단체의 범주는 결사의 자유를 포함)와 평등(경제의 범주는 최저 임금제, 생산·금융 자원에서의 접근 등 공평한 부의 분배, 국민건강보험제, 의무 교육제, 지역사회 봉사 등 사회복지를 포함)을 포함시키고 있다.⁽⁸²⁾ 그러나 Held의 경제균등은 자본주의의 개선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경제균등과 같다.⁽⁸³⁾ 그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이익 간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점에서 결사체 민주주의, 공동체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세계 민주주의는 통영의 단위에 있어서, 조직적, 지역적, 기능적 측면에서 국내·국제적으로 모든 단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개 범주의 민주주의 권리는 모든 인류가 향유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공동체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급진적 민주주의와 같다. 대표의 형태에 있어서는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를 그리고 대표단체에 있어서는 개인과 집단의 동시참여를 주장한다. 참여의 형태는 선거, 국민투표, 심의 등 모든 형태의 참여를 포함한다. 참여의 영역은 정치, 경제, 시민사회영역의 조화로운 권한분배를 상정하고 있다.

세계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 사회의 모든 기능을 영토에 바탕을 둔

민족국가가 전적으로 관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이에 적합한 통영의 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종래 민족국가가 통영해 오던 각종 기능을 그 성격에 따라 국내의 지방, 지역, 중앙 기구의 관할 하에 두어야 할 기능, 지역 기구의 관할 하에 두어야 할 기능, 지역간 기구의 관할 하에 두어야 할 기능, 그리고 범세계적 기구의 관할 하에 두어야 할 기구로 분류하고, 이 기구들로 하여금 자신에 할당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기구는 정부기구일 수도 있고, 비정부기구일 수도 있다. 정부기구, 비정부기구를 막론하고 모든 단체는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사항에 관한 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다. 이 세계 민주주의는 세계국가가 아닌,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의 중간 형태의 통치기구를 상정하고 있다. 지방, 국가, 지역 통치기구는 범세계적 민주주의 질서(민주주의 법) 하에서 통치하며, 이 법적틀 안에서 자결권을 갖는다.⁽⁸⁴⁾ 민중들은 지방으로부터 범 세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치 단체에 소속될 수 있다.⁽⁸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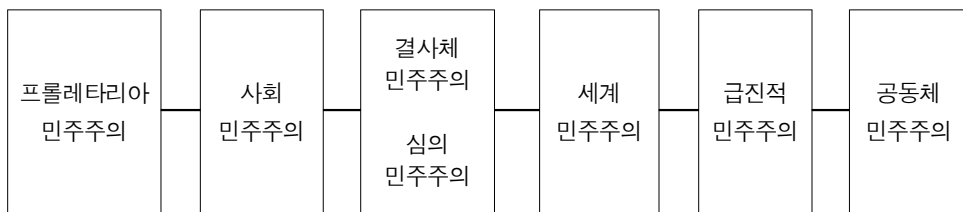
냉전 종식 후 서구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였다. 세계화와 서구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포함)가 동시에 확대·강화됨에 따라 서구 민주주의가 국가 단위의 통치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 지역간, 범세계 통영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국가 단위의 서구 민주주의도 사실상 진정한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인식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냉전 종식 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결사체민주주의, 공동체민주주의, 급진적 민주주의, 세계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등은 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의된 것이다. 민주주의 핵심 사상이 민중(demos)이 통치(rule)한다는 사상이라면, 민중이 무엇인지, 통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서구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결핍증(democracy deficiency)을 앓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개인간은 전체 인류의 한 부분이라는 르네상스 사상을 따른다면, 민중은 인류전체이어야 하고, 따라서 민주주의는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치가 단순히 대의원의 선출에 그치고 정책 결정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라면 서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 하겠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민중이 어떤 형태로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민중이 통치한다」는 근본원리에 부합한지를 알아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가 민중이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에서 중요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동체민주주의와 급진적 민주주의가 모든 단체가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 선거·피선거권뿐만 아니라 대표와 참여 면에서 민중의 직접 참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이들 민주주의 이론은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욕적인 개인주의만 강화되고, 민주주의의 측면, 즉 공동체의 이익(민중전체의 이익)을 소홀히 한 결과 개인과 공동체가 공히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른 것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후기 민주주의 이론은 개인과 공동체 중 어느 것을 보다 중시하느냐, 시민사회와 정치 영역 중 어느 영역의 강화를 더 원하느냐, 그리고 민주주의를 국가 단위에 국한하느냐 범세계적으로 적용하느냐, 그리고 개인과 단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 결사체 민주주의, 공동체민주주의, 급진적 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세계민주주의로 분류된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무시하려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정치권력이다. 그들은 국가 주권에 바탕을 둔 권력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정도에 따라 이들을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다.

← 국가의 시민사회 완전통제(혹은 흡수) - 시민사회의 완전한 국가통제(혹은 흡수) →



이런 점에서 급진적 민주주의와 공동체민주주의는 무정부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고 규정할 때, 또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때, 민주주의를 권력에 바탕을 두지

않고 수립·유지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후기 민주주의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그들이 정치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권력을 무시 내지 무력화하려는 기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인류가 실험해 보고, 또 학자들이 제창해 온 여러 민주주의의 비교연구에 바탕으로 조영식 박사의 보편적 민주주의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그는 보편적 민주주의를 1948년 발간 「민주주의 자유론」과 1951년 발간 「문화세계의 창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자유, 평등주의인 정치적 민주주의와 동노공영주의인 경제적 민주주의가 <제3차 대전>으로 해결되어짐에 따라 자유, 평등, 공영주의인 보편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며, 그때까지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⁸⁶⁾ 「민주주의라는 것은 특수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이며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인 만큼, 민주주의는 특권자를 위하지 않고 일반 대중인 국민을 위하며, 한 민족만의 영달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공영을 신조로 하고 있다.⁽⁸⁷⁾ 그 후 조박사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보편적 민주주의를 정의하였는데, 1990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12차 휴머니즘 세계대회에서 한 정의는 전형적인 예이다.

A universal democracy that will realize concurrently and fully liberty, equality and co-prosperity not confined within national boundaries but applying to all the people of the world based on the basic spirit of popular sovereignty.⁽⁸⁸⁾

여기서 보편적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보편적 민주주의는 목적에 있어서 자유, 평등, 공영을 동시에 중요시하고 동시에 추구한다. 영국 명예혁명(1688-1689)은 정치적 자유획득을 목적으로 하였고, 미국 혁명(1779)은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법적 평등을 쟁취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프랑스 혁명(1789)은 정치적·사회적 민주주의, 법적 평등의 쟁취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정치적 혁명(제1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러시아 혁명(1917)은 사회·경제적 평등(노동자와 동노공영권)을

위한 투쟁이었으므로 경제적 민주주의(제2혁명)혁명이라 하겠다. 자유, 평등(정치, 사회, 경제, 법적), 공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명은 보편적 민주주의 혁명(제3혁명)이라 할 수 있다.⁽⁸⁹⁾ 공영이 민주주의의 실질적 목적이며, 자유와 평등은 이 실질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자유와 평등은 상호 모순된 사상이므로 공존하기가 어려우나, 이 둘을 융화시키는 것이 공영이다.⁽⁹⁰⁾ 공영이라는 개념은 공동체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 즉 공동선을 보장한다. 자유만 추구하면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고, 평등만 추구하면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공동체를 위협한다.

여기서 우리는 조박사의 보편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변증법적으로 승화(통정)시킨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가 자유주의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통정한 민주주의라는 견해는 옳지 않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수정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사회주의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에 의한 대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절충이라 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다같이 시민사회영역과 경제영역을 극도로 제한하는 점에서는 보편적 민주주의와 다르다.

- ② 개인과 공동체는 상호독립을 유지하면서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하여 조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체 없는 전체가 없고 전체 없는 개체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전체는 개인의 집합체 이상의 권력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체의 전부는 그것이 곧 전체요 국가인 것이다. 이 전체인 국가는 전체인 동시에 하나하나의 집합이요, 「하나」들이 모인 전체이므로 그것은 항상 「하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의사가 될 수 없는 성질을 본래부터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필경 개인은 개인의 전체인 국가 집합체의 발전을 위해 또 국가는 개인의 안녕 복지를 위해 상호 협조해야만 국가의 진정한 대내적 운영은 달현될 수가 있는 것이다.⁽⁹¹⁾

그의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에 관한 이론은 Rousseau가 말한 일반의지(*general will*)와 전체의지(*will of all*)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상기시킨다. Rousseau는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합한 전체의지는 공동체 자체의 의지와는 다르다고 말한다.⁽⁹²⁾ 그는 개인은 이 일반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자유(사회적 자유)를 얻는다고 말한 점에서 전체주의 사상을 정당화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조박사는 일반의지를 부인하고 전체의지만 인정한다. 즉 전체(국가)에 인격성을 부인하면서 전체(국가)는 개인의 집합체이지, 개인과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 점은 조박사의 자유에 대한 정의를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Rousseau는 자유를 개인의 자유(자연 상태)와 사회적 자유로 분류하는데 대하여 조박사는 자아적 자유와 타아적 자유로 분류했다. 앞의 두 자유는 완전한 자유라 할 수 없으며, 이 두 자유를 통정한 「우리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 했다. 자아적 자유는 자기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방종적 자유를 말한다. 따라서 미래보다 현재,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 합리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것을 중시한다. 타아적 자유는 행동의 자유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이며 사회질서와 국가의 복리를 교란,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타아적 자유는 이기적이기 보다 이타적인 것, 감정인 것보다 합리적인 것, 현재보다 미래지향적이다. 우리의 자유는 이 두 자유를 승화한 자유로 이 두 자유를 인정하되, 이 두 자유가 충돌할 때는 자아적 자유를 양보해야 하나, 타아적 자유의 경우처럼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가 되거나 인민의 진정한 복리와 인권을 유린할 때는 자아적 자유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공동체를 개인과 완전한 독립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집합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³⁾

이상으로 볼 때, 조박사는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에 흡수시키는 공동체 민주주의, 급진적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는 자유는 선천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후천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본다.⁽⁹⁴⁾ 이 점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이론과 다르고 Rousseau의 사회적 자유와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인간이 모든 사회제도와 인

간조직의 기초임을 강조한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인간 개개인을 중시하면서도 인간이 인류전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는 인간 개개인과 전체인간(공동체)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쪽 때문에 다른 한쪽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공동체 민주주의와 급진적 민주주의가 개인을 전체에 희생시킬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 ③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집단에 적용하여야 한다. 조박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concept and meaning of democracy in terms of freedom, equality and prosperity, peoples and nations will not confine it exclusively to their own nations and their own nations only. It will be applied to all nations and all peoples of the world whether they are big or small, powerful or weak for the sake of building a true world community.⁽⁹⁵⁾

바로 이 때문에 조박사는 자신의 민주주의를 “보편적” 민주주의라 부른 것이다. 국가 내에서만 실시되어온 민주주의를 국제기구(지역, 지역간, 범세계)에서도 실시하여야 하는가, 또 실시하여야 한다면, 실시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은 1990년대에 와서야 서구 학자들간에 벌어졌다. 어떤 학자들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⁹⁶⁾

그러나 최근에 구미학자들에 의하여 제창되고 있는 공동체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급진적 민주주의, 세계민주주의는 다같이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범세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장하는 근거가 조박사의 근거와 근본적으로 같다. 민주주의는 민중을 위한 정치체제이지, 국가만을 위한 정치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민주주의의 범세계적 적용은 더욱 필요해졌다. 이 새 민주주의 제창자들은 국제기구에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들은 시민사회단체 자체도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박사는

민주주의는 통정의 단위에 있어서 조직적, 지역적, 기능적 모든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초의 학자이다.

앞으로 보편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자유, 평등, 공영이 보장된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 보편적 민주주의를 국제기구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 보편적 민주주의와 같이 민주주의를 범세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여러 민주주의가 연대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이들 민주주의와 보편적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학자간의 교류와 상호연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넷째, 보편적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대표와 참여의 영역, 특히 시민사회영역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Notes

1. Young Seek Choue, "Is It Really Impossible to Realize Lasting Peace?" Toward Global Common Society vol. 1 (Seoul: Kyung Hee University Press, 2001), 142-43.
2. 조영식, 문화세계의 창조(대구: 문성사 1951), 286-88.
3. Bruce Russett,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the World Order(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6).
4. 조영식, 인류사회의 재건(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75), 227-30 및 235-36;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no. 2 (Spring 1992): 391-425.
5. **개인적 차원의 이론** - Freud,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1905);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s (1920). Konrad Lorenz, On Aggress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66).
국가적 차원의 이론 - Tom Broch and Johan Galtung, "Belligerency the Primitive," Journal of Peace Research (1966): 33-45; Quincy Wright, Study of War, Appendices, 9, 10, and 20; Erich Fromm, The Autonomy of Human Aggressiveness (Greenich, Conn: Fawcett Publications, 1973), 234-243; Nazli Chaucri and Robert North, "Lateral Pressure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ncept and Theory", Manus I Mil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Chap. 12; idem, Nations in Conflict (San Francisco: W.H. Freeman, 1975); Jack S. Levy, "Diversionsary Theory of War: A Critique," Manus Midlarsky, ed., ibid., Chap. 11; T. Clifton Morgan and Kenneth Bickers, "Domestic Politics and Aggressive Foreign Policy: A Causal Link?" paper presented at the 1989 Annual Meeting of the APSA(Atlanta, Georgia: August 31-September 3, 1989); Jonathan Wilkenfield, "Domestic and Foreign Conflict," idem, ed., Conflict Behavior and Linkage Politics (New York: David Mc Kay, 1993), 107-123.
국가간의 관계 차원의 이론 - B.F. Skinner, Beyond Freedom and Dignity, (New York: Knopf, 1971); John Herz,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Atomic A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231-243; A.F.K. Organski and

Jacek Kugler,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Kugler and Organski, "The Power Transition: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Evolution" Midlarsky, *ibid.*, Chap. 7; Bruce Bueno de Mesquita, "The Contribution of Expected Utility Theory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nflict," Midlarsky, *ibid.*, Chap. 6; Rudolph Rummel, Understanding Conflict and War, vol. 4, War, Power, Peace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79); Bruce Russett,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Chap. 1 and 2; Thomas Schwarz and Kiron K. Skinner, "The Myth of the Democratic Peace," Orbis, 46, no. 1 (Winter 2002): 159-172.

국제체제의 차원 - Karl Deutsch and J. David Singer, "Multipolar Systems and International Stability," World Politics 16, (1964), 392-406. Kenneth Waltz, "Stability and a Bipolar World," Daedalus 43, (1964), 881-909; Richard Rosecrance, "Bipolarity, Multipolarity, and the Futur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0, (1966), 314-327; A.F.K. Organski, World Politics (New York: Knopf, 1968); Frank Wayman, "Bipolarity, Multipolarity, and the Threat of War", Alan Neal Sabrosky, ed., Polarity and War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5), Chap. 7; Michael Wallace, "Polarization: Toward a Scientific Conception," Sabrosky, ed., *ibid.*, Chap. 6; Mesquita, "Measuring Systemic Polarit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9 (1975): 187-216; Jack S. Levy, "The Polarity of the System and International Stability: An Empirical Analysis", Sabrosky, *ibid.*, Chapter 4; David Graham, "The Causes of War", Sabrosky, *ibid.*, Chap. 2; Sabrosky, "Alliance Aggression, Capability, Distribution, and the Expansion of Interstate War," *idem*, Chap. 8; George Modeski and William Thompson, "Long Cycle and Global War", Midlarsky, *ibid.*, Chap. 2; Modeski,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7); Immanuel Wallerstein, The Politics of the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문명충돌론 -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Touchstone Books, 1997).

종합이론 - Alexander Wendt, A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46-312.

6. 분쟁해결은 국제정치학의 특수연구분야로 분류되어 대학에서 별도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있고, 연구도 활발하다. Frank Pfetsch and Christoph Ruhlof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flicts 1945-1995 (London: Routledge, 2000); Peter Wallensteen, Understanding Conflict Resolution (London: Sage, 2002)는 전형적 예이다. Morgenthau는 전쟁방지 방법으로 군축, 집단안전보장, 사법적 해결, 평화적 변화, 국제정부, 세계국가, 세계공동체, 외교 등을 들고 있다. Kegley와 Wittkopf는 세력균형, 동맹, 군비제한, 국제법, 국제기구, 정치통합, 민주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World Politics, 9th ed. (Belmont, CA: Wadsworth/Thompson Learning, 2004), 551-609.
7. Kant, Perpetual Peace; Maritain, Man and the Stat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181-216; Russell, Has Man a Futur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1), 68-86.
8. 조박사의 모든 저서 및 연설문이 영구평화론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음 저술은 특히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Is it Really Impossible to Realize Lasting World Peace?”, Toward Global Common Society, vol. 1, 142-143; “In Search of Ways Toward Peace,” ibid., vol. 2, 687-699; “Grand Design for Peace in the Global Village,” White Paper on World Peace, (Seoul: Kyung Hee University, 1991), 410; “India, Korea, and the GCS Movement,” Toward Global Common Society, vol. 161-166; “Grand Design for Global Common Society in the New Millenium,” ibid., 43-55; “Oughtopia Peace Model,” ibid., 153-160.
9. Tony Davies, Humanism, (London: Routledge, 1997), 24.
10. Ibid., 125-126.
11. Hamlet, Act II, Scene 2.
12. Alan Bullock, The Humanist Tradition in the West (1985), 홍동선 역(서울: 범양사, 1989), 234.
13. Louis Althusser, Pour Marx: Marxism and Humanism; 오세영 “한국현대문학과 휴머니즘,” 오세영 외, 휴머니즘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1985), 4.
14. Mihaelo Markovic, The Rise and Fall of Socialist Humanism: A History of the Praxis Group, (Nottingham, 1975), 18-19. Karl Marx, Early Writings

- (Hammersmith, 1995); Erich Fromm, Marx's Concept of Man (New York: Frederick Ungor, 1966) 등 참조
15. Pope, Essay on Man, Epistle II, 2; Rousseau, Social Contract, Book I, Chapter 1; Paine, The Rights of Man.
 16. Davies, ibid., 98.
 17. Swift, letter to Pope, September 29, 1725, quoted in Davies, ibid., 121.
 18. Hume, Treatise of Human Nature, Book III, Part III, Section 1.
 19. Davies, ibid., 15-17. For details, Jacob Burckhardt, The Civilization of the Renaissance in Italy, Benjamin Nelson and Charles Trinkhaus, eds., 2 volumes (New York: 1958).
 20. Jean Paul Sartre, Existentialism and Humanism, trans. by Phillip Mairet (London: Methuen, 1988), 29.
 21. Bullock, ibid., 234,
 22. 務台理作, 현대의 휴머니즘, 풀빛 편집부 역(서울: 풀빛사, 1982), 163-165.
 23. Lamont, Humanism as a Philosophy, 박영식 역(서울: 정음사, 1973), 163-65.
 24. Martin Heidegger, "Brief an den Humanismus," his Gesamtausgabe, vol 9, (1986), 320, quoted in Davies, ibid., 127.
 25. Bullock, ibid., 184.에서 인용.
 26. Quoted in Davies, ibid., 95-96.
 27. Davies, ibid., 135.
 28. Bullock, ibid., 201-203.
 29. Fromm, On Disobedience and Other Essays, 100, quoted in 오세영, "한국현대 문학과 휴머니즘", 오세영 외, 휴머니즘 연구, 9; Lamont, ibid., 박영식 역, 휴머니즘, 23-24; Bullock, ibid., 201-203.
 30. Davies ibid.; Bullock, ibid. Lamont는 휴머니즘을 academic humanism, Catholic humanism, subjective humanism, naturalist humanism으로 분류하고, Encyclopaedia of Philosophy는 Marxism, pragmatism, personalism(spiritualism), existentialism으로 구분한다. Lamont, ibid., 박영식 역, 30-38. 필자는 각 휴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기준으로 휴머니즘을 분류한 이 두 분류법보다는 역사적으로 등장한 휴머니즘의 성격을 규정한 Davies의 분류법을 주도 따랐다. 물론 반드시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Davies는 Marxist humanism

을 radical humanism이라고 불렀으나 필자는 Bullock의 집단적 인도주의 속에 포함시켰다. 물론 Bullock은 집단적 인도주의 대신 집단주의(collectivism)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Bullock, *ibid.*, 221).

31. 인류사회의 재건(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부, 1975), 252. 조박사는 여기서는 인본주의를 인간중심주의와 동일시하고 있으나 후에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32. 오토피아(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부, 1979), 76.
33. 문화세계의 창조, 68-68.
34. 오토피아, 77.
35. Sartre, Existentialism and Humanism, 27, quoted in Davies, *ibid.*, 134.
36. "Toward Human Society Free From Threats of War," Toward Global Common Society, vol. 2, 779-816.
37. 인류사회의 재건
38. Oughtopia (Oxford: Pergamon Press, 1981), 193.
39. 문화세계의 창조, 21, 109.
40. 오토피아, 66-67, 78.
41. 문화세계의 창조, 13-22, 45-68, 79, 181, 290.
42. 인류사회의 재건, 243-253.
43. 문화세계의 창조, p. 233-234;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1996), 41, 43.
44. S.T. Coleridge, The Constitution of Church and State (1837); Thomas Carlyle, Sign of the Times (1829); Mathew Arnold, Culture and Anarchy (1869);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1951); Karl Marx, German Ideology; Edward Burnett Tyler, Primitive Culture; B. Malinowski, A Scientific Theory of Culture (1944). 위 학자들의 정의는 Chris Jenks, Culture(London: Routledge, 1993), 16-24, 28, 33, 40-43, 59-61, 66-77 에서 요약한 것이다.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43; Immanuel Wallerstein, Geopolitics and Geocultur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158-160; Alexander Wendt, A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41-142, 250; Alfred North Whitehead,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Macmillan; Mentor Books, 1933), 273, 283.

45. Jenks, ibid, 28.
46. Wendt, ibid, 142.
47. Marx, The German Ideology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70), 47.
48. David Harrison, "Introduction : Why Culture Matters," Harrison and Samuel Huntington, eds. Culture Matters (New York: Basic Books, 2000), xxviii.
49. Anthony Smith "Toward a Global Culture," David Held and Anthony Smith, eds. Global Transformations: Reader (Cambridge, UK: Polity Press, 2000), 239-247.
50. Immanuel Wallerstein, Geopolitics and Geoculture, 198.
51. Ali Magrui, "World Culture and the Search for Human Consensus," Saul Mendlovitz, ed., On the Creation of A Just World Order (New York : Free Press, 1975), 1-37.
52. 문화세계의 창조, 233.
53. 문화세계의 창조, 308; 오토피아, 232; 인류사회의 재건, 198.
54. 문화세계의 창조, 287-289.
55. "Magna Carta," Toward Global Common Society, vol. 1, 107-108; "Oughtopia Peace Model," ibid., 153-160. 그는 문화세계의 창조에는 문화규범은 「인류사회의 안녕 복지와 문화(광의)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선이요 이와 반하여 해가 되는 것은 모두가 악」이라고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89-290).
56. 문화세계의 창조, 181-276.
57. 문화세계의 창조, 233-250.
58. 인류사회의 재건, 202.
59. 문화세계의 창조, 305-310.
60. John Tomlinson, "Globalization and Cultural Identity," David Held and others, eds., Global Transformations: Reader (Cambridge, U.K.: Polity Press, 2000), 269-277.
61. Dahl, O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8.
62.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실제로는 공산주의 체제를 의미하나, 공산주의 국가는 한결같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서구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는 위장된 부르주아 독재라고 주장한다. C. B. Macpherson은

칼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노동계급이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일리가 있으나, 레닌의 전위부대에 의한 지배체제인 소련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는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The Real World of Democracy (New York: Oxford Press, 1965), 14, 15, 18.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Author P. Mendel, Essential Works of Marxism (New York: Bantham Books, 1961), 170-171.

63. M. Rejai, Democracy (New York: Atherton Press, 1967).
64. C. B. MacPherson, The Real World of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마르크스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와의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를 규정한다.
65. David Held, Models of Democracy(Cambridge, U.K.: Polity Press, 1987). 그는 민주주의를 classical democracy, protective democracy, radical model of developmental democracy, developmental democracy, direct democracy, competitive elitist democracy, pluralism, legal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으로 분류한다.
66.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중요 서적 — L.T. Hobhouse, Liber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Robert A. Dahl, A Preface to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idem, O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J. Roland Pennock, Liberal Democracy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1950); H.B. Mayo, An Introduction of Democratic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67. 사회 민주주의 (Social Democracy)와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는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분열되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 같은 사회주의운동 내에 급진적 사회주의자와 온건파 사회주의자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제1차 대전을 계기로 온건파 사회주의자는 사회민주주의자로 불리고, 급진적 사회주의자는 공산주의자라 불리게 되었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본주의 타도와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는 민주사회주의 운동과 자본주의의 개혁을 통한 보다 인도주의적이고 평등한 사회건설을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 운동으로 분열되었다. Social Democracy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Democracy>
68. MacPherson, The Real World of Democracy, 14, 15, 18.

MacPherson은 이 저서에서 자유민주주의, 비자유민주주의(공산주의), 그리고 비 자유민주주의(후진국 민주주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69. Held, Models of Democracy, 260-263; John Stewart, "Thinking Collectively in the Public Sphere," Soundings 4 (Autumn 1996): 213-223; MacPherson, The Life and Times of Liberal Democrac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92-115.
70. Arend Lijphart, Democracy in Pluralistic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71.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Alfred Knops, 1960), Phillips Bradley, ed., vol. 2, 106.
72. Richard Boyd, "Michael Oakeshort on Civility, Civil Society, and Civil Association," Political Studies 52, no. 3 (October 2004): 603-22.
73. Baccario, "Civil Society Meets the State: A Model of Associational Democracy,"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r Studies, ILO, DP/138/2002 www.ilo.org/inst
74. Boyd, ibid. ; MacLynch, "The Dialogue of Civiliza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pheres," Millennium 29, no. 2 (2000): 307-330; Terry Nardin, "Private and Public Roles in Civil Society," Michael Walzer, ed., Toward a Global Civil Society(Providence, R.I.: Berghahn Books, 1995).
75. Jean L. Cohen and Andrew Arato,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Blaug and Schwarzmantel, eds., Democracy 481.
76. Cohen and Arato, ibid., 480; Paul Hirst, Associative Democracy (Cambridge, U.K.: Polity Press, 1994), 21-26. 김의영 교수는 결사체 민주주의에 대하여 심층적 연구를 하고 있다. "결사체 민주주의에 대한보고", 목요세미나, 2005. 6. 9.
77. Janet Thompson, "Community Identity and World Citizenship," Daniel Archibugi and others, eds., Reimagining Political Community: Studies in Cosmopolitan Democracy (Cambridge, U.K.: Polity Press, 1998), Chap. 9; Job van der Meer, "Communitarian Political Thought and Trust in Political Institutions," paper presented at ECPR Conference 2000, 2-3; J. Burnheim, Is Democracy Possible? (Cambridge, U.K.: Polity Press, 1986); Philip Selznick, From Socialism to Communitarianism," Walzer, ed. ibid., 127-132; Jean Bethke Elshtain, "In

- Common Together: Unity, Diversity, Civic Virtue,"Walzer, ed. ibid., 77-97.
78. Barbara Epstein, "Radical Democracy and Cultural Politics: What about Class? What about Political Power?" David Trend, ed., Radical Democracy: Identity, Citizenship, and the State(London: Routledge, 1996), 128-137.; Chantal Mouffe, "Radical Democracy: Modern or Post-modern?" A. Ross, ed., Universal Abandon? The Politics of Postmodernism (Edinburgh: University of Edinburgh Press, 1988), 41-44; Tony McGrew, "Transnational Democracy: Theories and Prospects," <www.polity.co.uk/global/mcgrew.htm>
79. B. Manin, "On Legitimacy and Political Deliberation," Political Theory, August 1987: 351-359.
80. John H. Dryzek, "Transnational Democracy,"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7. no. 1 (1997): 30-51.
81. Richard Blaug, "New Developments in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s 16, no. 2. (1996): 72-76; Tony McGrew, ibid. 8-9; Jurgen Habermas,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Cambridge, U.K.: Polity Press, 1990).
82. Held, Democracy and the Global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189-201.
83. ibid., 239-266.
84. Held, ibid., 229, 234, 237.
85. Held, ibid., 271-284; Janna Thompson, "Community Identity and World Citizenship," Archibegui and others, Reimagining Political Community, Chapters 9 and 10; Tony McGrew, ibid., 6-7; 유영학, "초국가적 민주주의와 보편적 민주주의," 목요세미나, vol. 6 (2003): 19-30.
86. 조영식, 민주주의 자유론 (서울: 한일공인사, 1948), 158.
87. 조영식, 문화세계의 창조, 274. 초창기에는 국제민주주의라 부르다가 그 후 부터는 보편적 민주주의로 바꾸었다.
88. "Construction of the World Community," Young Seek Choue, Toward Global Common Society vol. 1, 418-419.
89. 조영식, 문화세계의 창조, 175-179; 민주주의 자유론, 137-142, 152-158; "In Search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Young Seek Choue, White Paper on

- World Peace (Seoul: Kyung Hee University, 1991) 3-42.
90. 문화세계의 창조, 124-127.
 91. 문화세계의 창조, 107-108.
 92. Rosseau, Social Contract, Book II, 3.
 93. 민주주의 자유론, 151; 문화세계의 창조, 116. 민주주의 자유론에서는 자아적 자유를 본능적 자유, 타아적 자유를 인격적 자유, 우리의 자유를 발전적 자유라 불렀다. 민주주의 자유론, 61-104.
 94. 자아적자유, 타아적자유, 우리의 자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문화세계의 창조, 113-120.
 95. "Democracy and the New International Order Under Pax UN in the 21st Century," Young Seek Choue, Toward Global Common Society, vol. 1, 275.
 96. Joseph Nye는 필요할지 모르나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Bruce Russett는 필요하지도 않고,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Nye, "Globalization's Democratic Deficit: How to Make International Institutions More Accountable," Foreign Affairs 80, no.4 (July/August 2001): 2-6; Russett, "A Neo-Kantian Perspectiv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Building Security Communities," Emanuel Adler and Michael Barnett, eds., Security Communiti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368-94.

대안정보사회를 위한 사회운동의 과제

임 정 근*

I. 서론

NGO, 인터넷, 지구화 (Globalization)¹⁾는 21세기를 나타내는 키워드 중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용어일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NGO는 민중운동이 성취했던 형식적 민주화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개혁을 각 방면에 걸쳐 주도해 오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정치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정보기술이 전 지구를 뒤덮어 가고 있었고 한국은 추호의 주저함이 없이 인터넷과 이동전화로 대표되는 정보화의 핵심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²⁾

*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 1) 지구화 (Globalization)는 여러 경제·기술 세력들에 의해 전 세계가 급속히 하나의 공유된 사회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폭넓은 인식, 그리고 세계의 어느 한 지역의 발전이 지구 반대편의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에 심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폭넓은 인식을 반영하는 용어이다. 지구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리적 영토성, 경계, 기하학 등의 의미가 배제된 정치적 동질화를 막연히 암시하고 있는 ‘세계화’라는 용어의 사용은 지구화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D. Held and et. al., *Global Transformation*, 1999 (조효제 역, 전지구적 변환,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p. 13.
- 2) 세계 인터넷 이용인구는 2002년 말 6억 6,500만 명에서 2005년 9억 577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인터넷 사용자가 65%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www.internetworldstats.com) 한국의 경우 인터넷 이용인구는 2005년 6월 현재 3,257만 명으로 절대 숫자로는 세계 7위, 이용률로는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2004년 현재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1,117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전국 1,450만 가구기준으로 77%, 4,700만 인구기준으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사회는 지구화의 환상과 시련과 실체를 한꺼번에 체험하는 미증유의 학습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지구화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의 문제, 세계 시민사회의 성장, 글로벌 가버넌스의 필요성 등은 지구화의 근본적인 성격 규정에 관한 논쟁과 더불어 이제 전 지구적 시각과 연대만이 지구화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각각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국의 NGO와 사회운동에 관한 문제도 국제적인 흐름, 관계, 연대의 맥락 속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들이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을 통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변화의 본질적인 특성과 사회적 영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때가 되었다. 특히 NGO (또는 사회운동)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이제 단순히 NGO나 사회운동 조직이 정보통신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도구적 관점에서 벗어나 정보사회의 본질을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본과 권력에 의한 갈등과 폐해를 극복하고 대안적인 정보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NGO와 지구화, 인터넷의 관계를 살펴보고, 둘째,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정보사회의 담론과 현실을 비판적 관점에서 정리한 후, 셋째, 대안 정보사회를 이루기 위한 NGO의 과제와 몇 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NGO, 지구화, 인터넷

지구화의 급속한 진전은 일국의 어떠한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 맥락에서 수립되고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반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은 전 지구화 과정을 빠른 속도로 단축시키고 있으며 사회의 각 부문은 국가와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서로 각축하고 교류하는 전방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김석준의 주장대로 앞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한편 공공 부문의 가버넌스는 확대될 것이며, 비록 정부는 작아지더라도 더 확장하는

로는 23.8%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율은 인구기준으로 환산한 가입자 비율을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국전산원, 2004 정보화백서)

가버너스를 담당할 주체는 시민사회의 확산으로 그 역할이 강화된 NGO와 제3 섹터, 그리고 일정 영역에서의 민간 혹은 공공 국제기구(예: global NGO, 국제기구들)들로 채워지고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는 매체는 인터넷이 될 것이다.³⁾

지구화에 관한 매우 다양한 논의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예를 들면 생태파괴, 자원고갈, 빈곤의 확대, 지역갈등, 문화충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원론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지구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들이 인류와 자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이념의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한 지역의 위험은 곧 세계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공고히 함으로써 전 지구를 자본의 논리 속에서 기능하게 하려는 정책과 전략은 이에 반대하는 민중과 제3세계의 반발과 공동대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지구화의 성격과 방향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다보스 포럼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내세우며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경제 질서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고 세계사회포럼은 약자와 소수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세계시민사회의 형성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인 지구화를 주장한다. 결국 지구화는 전 지구적 변화의 성격과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갈등하고 타협한 결과에 따라 진전되어 갈 것이다. 또한 지구화는 특정 영토 내에서 절대적 주권을 국가가 행사하는 국민 국가적 근대 모델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

그렇다면 지구화는 NGO의 활동방향이나 역할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지구화의 진전에 따른 국제적 공론의 필요성 증대와 국민국가의 근대적 권능의 약화가 NGO를 비롯한 사회운동에 미치는 기본적 영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⁵⁾

첫째, 개별 국민국가의 권능과 역량의 약화는 NGO들이 전통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던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즉 NGO들은 국

3) 김석준, 사이버국가와 사이버 가버너스, 뉴가버너스와 사이버 가버너스, 2001, pp. 27-68

4) 울리히 벡 (조만영 역), 지구화의 길, 서울: 거름, 2000, pp. 25-34

5) J. A. Guidry and et. al., "Globa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Globa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Culture, Power, and the Transnational Public Sphere*, ed. by J. A. Guidry and et. al.,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p. 1.

제적 연계나 파트너십을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을 택하게 되는데 이는 자국에서 NGO들이 운동을 독립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지구화는 NGO들에게 국가를 비롯한 관련 행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롭고 중요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해 준다. 썩과 시킹크는 한 국가 내의 인권 운동이 자국의 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고 다른 국가와 국제 인권운동 세력의 압력을 이용하여 자국 내에서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를 ‘부메랑 효과’로 부르고 있다.⁶⁾

이러한 지구화의 영향력은 결국 각국의 개별 사회운동이나 NGO들을 ‘초국가적 공공영역’(Transnational Public Sphere)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화에 따른 문제의식의 공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교환과 협력의 필요성, 정부에 대한 압력과 정책 개혁을 위한 국제연대의 효용성의 증대는 NGO들 간의 상호관계를 더욱 활발하게 하고 국제사회에서 사회운동이 차지하는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이 이러한 추세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시켜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내의 정책 또한 지구화의 흐름, 초국가적 영역에서 형성된 공론과 압력, 개별 NGO들의 다양한 국제연대와 전략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도 한국의 NGO들이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광범위한 관심과 일정한 지지를 끌어내면서 정부가 NGO의 동향과 견해를 주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대형 NGO 중의 일부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은 각각 1만 명에서 십수만 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매우 큰 조직과 활동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이들 NGO들이 국가와 정부영역에서 전개되는 제도정치 및 정책참여 활동과 결부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조대엽은 이러한 현상을 순응적 정치참여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자기제한적 급진성’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우려하고 있다.⁷⁾

6) M. Keck and K. Sikkink,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7) 조대엽, 시민운동의 제도화와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시민사회와 NGO, 제1권 제1호 2003 봄/여름, p. 36

한국의 시민단체, 특히 이른바 ‘종합적’ 시민운동단체들은 시민사회의 거의 모든 쟁점들을 망라해서 취급할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정책 개발이 가능한 전문성도 갖추어 제도화의 수준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단체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안정책의 개발은 그 자체가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준정당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같은 조건에서 정부와의 협조적인 정책참여는 시민 단체의 중요한 기능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순응성에 바탕한 이러한 협조적 정치참여만이 확대된다면 시민단체의 중간정치는 제도정치의 보완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그치려면 한국의 NGO들이 시민사회의 민주화와 자율성이라는 목표를 최상의 목표로 두고 공론장의 활성화를 통한 공공성의 확보를 이룩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같은 논리로 지구화의 급속한 진전이 정책 참여를 포함한 한국의 NGO와 한국 정부의 다양한 관계설정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한국의 NGO들이 단순한 ‘국제사회에 발 맞추기’나 막연한 상호교류의 확대라는 화두에 매달릴 경우 결과적으로 지구화 이데올로기의 정당화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하거나 자본주의적 헤게모니나 서구 산업사회의 사회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⁸⁾

보다 급진적인 시각에서 페트라스는 전지구적 자본이 국가의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키는 사이에 NGO들은 국가권력과 갈등, 충돌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기여하는 한편 신자유주의가 “공동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⁹⁾ 물론 이러한 비판이 모든 NGO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 NGO들의 활동이 전지구적 권력의 저변을 형성하면서 제국의 질서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하트와 네그리의 지적

8) "사회운동의 지구화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방적 견해들은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행위들을 관장하는 원칙들이 전 세계의 사회와 문화들 속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사회운동 분석가나 행동가들은 이러한 합리화를 민주화나 시장 자본주의로 인식할 수 있다." J. A. Guidry and et. al., "Globa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Globa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Culture, Power, and the Transnational Public Sphere*, ed. by J. A. Guidry and et. al.,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p. 6.

9) J. Petras, "Imperialism and NGOs in Latin America", *Monthly Review*, 49 (December, 1997), pp. 10~27

은 주목할 만하다.¹⁰⁾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내외의 사안과 관련된 NGO들의 정책 참여 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할 때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서구위주, 선진국 위주, 산업사회 위주, 엘리트 위주의 국제적 공론장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내고 대중을 위한 정책의 민주적 시행과 대중 스스로가 만드는 공론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NGO들이 지구화의 성격과 흐름, 초국가적 공론장 형성의 방향과 본질,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간 불평등과 힘의 불균형,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헤게모니의 위력 등에 대한 올바른 성찰과 분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초국가적 공론장의 형성을 주도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들이 그 운영과 사용에 있어서 불평등하므로 민주적 공론장이 이루고자 하는 평등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¹¹⁾, NGO와 인터넷에 관련된 논의가 인터넷이나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대해 도구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즉, 인터넷을 그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면서 단지 이것을 NGO의 활동이나 사회운동의 전략과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유일한 과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관점이라 할 것이다¹²⁾. 인터넷은 애초에는 개방적이고, 관대하며, 정부와 기업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소통의 길로 태어났으나, 이러한 인터넷의 구조와 성격을 더욱 폐쇄적이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압력 또한 줄곧 계속되어 왔다. 노튼이 지적하는 대로 시민사회의 집

10) “때로는 넓게 인도주의적 조직들로 특징지어지는 이러한 NGO들은 사실상 현대의 전지구적 질서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드러진 조직들의 하나가 된 조직들이다... (중략) 이러한 NGO들은 생채권력의 부식토에서 널리 확장된다. NGO들은 현대의 네트워크들의 말단에 있거나 혹은 (우리의 일반적인 은유로 돌아가서) 전지구적 권력 삼각축 [미국, 유럽, 일본]의 넓은 토대이다. 이제 이러한 가장 넓고 가장 보편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NGO들의 활동은 생채권력의 영토 위에서, 삶 자체의 요구들에 대처하면서 ”정치를 넘어서“ 제국의 작용과 일치한다.

Hardt, M. & Negri A., *Empire*, 2000.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지음, 제국, 서울: 이학사), pp. 408-409

11) J. A. Guidry and et. al., "Globa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Globa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Culture, Power, and the Transnational Public Sphere*, ed. by J. A. Guidry and et. al.,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p. 7.

12) Naughton, J., "경쟁적 공간: 인터넷과 지구시민사회“, (헬무트 안하이어 등 지음, 지구시민사회, 조효제, 진영중 역, 서울: 아르케, 2002, p. 233)

단들이 언젠가 발견할지도 모를 위험은 바로 자신들의 필요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인터넷이 진화하였다는 사실일 것이며¹³⁾, 보다 치명적인 것은 이미 그 구조의 일부가 되어 버려 그러한 위험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정보사회의 담론들이 그려내는 장밋빛 미래와 첨단과 기술에 관련된 술한 이데올로기들의 진위를 가려내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진정으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어떠한 NGO활동도 중국에는 자본과 권력이 그들만을 위해 짜 놓은 정보사회의 그물망 속으로 포섭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세계시민사회와 글로벌 가버넌스를 지향하는 모든 사회운동과 NGO의 활동가들은 인터넷과 지구화의 성격이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전 지구적 정보사회화의 배경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민주적인 소통체제를 위해 함께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Ⅲ. 전 지구적 정보사회화

지난 10년간 인류사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로 인터넷의 확장과 그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대두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인류는 인쇄기술의 혁명, 무선통신을 거쳐 라디오와 TV라는 대중매체의 시대를 경험했고 개인용 컴퓨터가 책상에 놓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로 연결된 Net에서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 1991년 World Wide Web이 개발된 이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속속 개발되면서 인터넷은 매우 친숙한 형태로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처음에는 인터넷이 인터페이스가 좋은 피시 통신처럼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사람들은 곧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시시각각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처럼 급격히 형성된 인터넷을 통한 사회관계와 문화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감각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특징인 익명성, 다대다통신, 쌍방향성, 개방성 등은 독특한 온라인의 사회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을 새로운 세계로 인식하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은 시, 공간적 제약을 넘어 인간의 사회적 삶의 거의 모든 면들을 실행하고 반영하며 추구하는

13) Naughton, J., "경쟁적 공간: 인터넷과 지구시민사회", (헬무트 안하이어 등 지음, 지구시민사회, 조효제, 진영중 역, 서울: 아르케, 2002, p. 233)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거의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각종 디지털 정보의 바다로 사람들을 향해하게 한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만나고 이야기하고 같이 놀며 때로 싸우고 논쟁하며 울고 웃는다. 거기에는 온갖 포르노가 범람하고 있고 해킹과 사기, 무례와 폭언이 가득한 곳도 있다. 한편에서는 자발적인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지식과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도 하다.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으로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 매우 빠른 새로운 기술의 채택, 문자/ 음성/ 영상 등 멀티미디어의 합성 및 재합성, 장르, 채널, 배급수단의 다양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은 사이버 공간에서 중요한 변화들을 초래했는데 먼저 World Wide Web (www)은 미디어 분야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기존의 미디어가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소비자에 밀어내는(push) 방식이라면 www은 pull media로서 인터넷 상의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콘텐츠를 끌어오는 형태의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선택이 훨씬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나아가 인터넷 사용자들의 일부는 스스로의 web page (블로그)를 통해 자기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생산자가 되기도 한다.

둘째로 인터넷 기술은 인터넷 상에서 문자와 영상을 제작하고 전파하는 것을 매우 쉽게 만들었다. 인터넷 출판이나 방송은 기존의 출판사나 방송사 운영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편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도 가능해졌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애초부터 인터넷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즉, 중앙통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가 허용되는 네트워크의 종류를 미리 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한 전 지구적 규모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국가의 지원, 사용법 공개, 협동적이고 자발적인 자기조직화에 기초해 미국의 군·산·학 복합체에 고용되어 있던 과학기술 노동자들(교수, 시스템 관리자, 특히 대학원생)의 손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런 자발적 행동들이 확산되어가자 원래의 군사 네트워크는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라는 급진적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체계로 바뀌게 된다. 나아가 소통에 대한 사람들의 잠재적인 욕망과 관심은 인터넷이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증폭되었다. 상술한대로 보다 편리한 웹 브라우저가 사람들의 인터넷

항해를 인도해주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 대화하고 정보를 나누기 위해 밤을 새워 모니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 예상치 못했던 대중의 폭발적 관심을 자본이 놓칠 리가 없었다는 점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와 공급자의 연결, 종업원 감시, 일자리 축소, 출장비 삭감, 경쟁력 있는 자료의 수집 등 자체 내의 목적을 위해서 초고속 정보고속도로에 관심을 두는 한편 e-비즈니스, 사이버 쇼핑 물, 거대 정보·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은 곧 바로 인터넷을 시장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던 것이다. 예컨대, 전화, 케이블, 비디오,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다양한 응용방법(VOD, 온라인 도박, 컴퓨터 게임, 정보광고 등)을 통해서 사이버스페이스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전자국경을 넘나드는 정보고속도로가 19세기 후반의 미국 철도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보았던 사람들은 이미 ‘벼락부자’가 되었다.

e-비즈니스의 급속한 발전이 온라인상의 자유에 대한 주요한 위협이 된다는 것은 근거 있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온라인 상거래는 다양함을 허용하는 인터넷의 현재 구조를 더욱 통제된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덧 인터넷의 상당 부분은 장터로 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장터를 유지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공적, 사적 자본이 퍼부어졌다. 그 결과로서, 한국만 하더라도 2000년에는 58조 4590억원 규모이던 전자상거래가 2003년에 235조 250억원을 기록하여 총 거래의 16.5%를 차지하였고, 2001년 2166개였던 사이버쇼핑몰은 2003년에는 3558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친시장적 신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상업적 공간을 확대하고 “불온하고 시끄러운” 공간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와 체제를 확대해 왔다.

전자 상거래를 위한 전자 서명, 개인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 IPv6 주소체계(각 컴퓨터의 인터넷 연결 하드웨어의 고유 시리얼번호가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연결장치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추적할 수 있다.), 인터넷 2.0(지속적인 고속 연결 방식과 고정 IP 주소를 갖는 DNS 체계내의 서버들에 의한 인터넷 체제: 이 서버들을 통제하면 이를 이용하는 접속자들에 대한 통제도 가능), 포탈 사이트의 상업적 권력과 정보 통제 등이 그 실례라 할 수 있다.

P2P확산에 따른 지적재산권 분쟁의 근거에도 분산 시스템으로 출발한 인터넷이 상업화하게 됨에 따라 웹을 기반으로 하고 서버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자가

다운로드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게 되어, 실제로는 텔레비전과 신문 등 기존 매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다운 스트리밍의 방식과 비슷해져 버린 현실이 놓여 있다. 웹은 콘텐츠를 제어하는 기술을 통합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사용자들 대부분은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전통적인 단방향 매체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화와 생각의 교환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으로의 역할이 강화되어 버렸고 이러한 상황이 고착되자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지식과 정보는 유료화되어 가고 있다. (리포트, 학술 논문, 생활 정보 등등)

이러한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변화는 몇 가지 중요한 사회적 흐름과 논쟁을 낳았다. 첫째는 무지향성으로 이는 사람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에 접근할 때 느끼는 혼란, 방향감각의 상실, 인터넷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 기대와 실망, 도덕적, 규범적 판단의 어려움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유토피아적, 디스토피아적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둘째는 디자인에 관한 논의로서 이는 인터넷 또는 사이버 공간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흐름을 의미한다. 초기부터 인터넷을 개척해 온 사람들은 자원모형을 제시하면서 인터넷은 시민적 덕성을 되살리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한다. 빌 게이츠 등 기업가들은 인터넷을 후기산업사회의 철도로 간주하는 상업적 모델을 주장한다. 최근에 여기에 사이버 공간을 공공영역으로 간주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와 자원을 무료로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공공서비스모델이 가세하였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상업적 모델이 다른 두 모델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인터넷에서 점하고 있는 것으로 무조건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변화들, 예를 들어 사이버공간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융합, 경계의 무너짐, 이미 형성된 비상업적 공간의 존재 등은 사이버 공간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모델들의 힘겨루기의 장소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모든 논란의 근저에는 정보통신혁명의 기본적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¹⁴⁾ 애초에 정보사회의 혁명성을 전도했던 이론

14) 정보화 사회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크게 정보화 사회를 과거로부터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새로운 성격의 사회가 출현했다고 보는 ‘단절론’과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이 정보화사회를 표방하며 변형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

가들은 전통 산업의 침체와 자본주의의 위기감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명, 기술결정론적인 기계와 기술에 의한 대대적인 사회적 변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정보혁명의 도도한 물결, 거기에 익숙하기 짝이 없는 효율과 속도와 경쟁의 강조, 정보통신 산업이 가져다 줄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정보사회의 전도사들이 줄을 지어 나타났던 것이다. (마수다, 벨, 토플러 등) 이에 맞서서 지구화와 정보통신혁명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논의들은 현재 NGO와 시민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인터넷의 정치경제적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본주의적 헤게모니의 일방적 세례를 거부할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해 준다. 하산은 전 지구화 과정을 공간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이론적 틀에서 분석하면서 정보통신혁명을, 실질적인 지리적 공간의 확장을 통한 지구화의 확장과 더불어, '내향적 침투'를 통해 문화와 사회에 자본의 공간을 확고히 자리잡게 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¹⁵⁾

이러한 내향적 전지구화는 문화와 정신이 바탕이 되는 정체성의 공간을 식민화하고 사이버 공간을 철저하게 시장 의존적으로 만들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확산된다. 결국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혁명은 자본에 의한 사회포섭을 목표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산물이자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자원을 둘러싼 통제는 새로운 긴장을 낳을 수밖에 없다. 정보화된 생산은 자본의 지배력을 증대시켜주기도 하지만, 자본의 명령에서 벗어나 이윤에 무관하거나 이윤을 전복하는 능력들을 활성화해주기도 한다.¹⁶⁾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확장시켜 이윤을 확보하고 사회적 노동을 통제하려는 자본은 이 기술이 또한 대항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다.¹⁷⁾ 예컨대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은 (유료시청 제도와 소비자 감시를 통해) 상품화를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도 하겠지만, 전자적 소유권에 대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위반 (P2P, 해킹, 크래킹, 무단 다운로드 등)을 통해서 상품화에 저항할 수 있

치는 연속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F. Webster,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1995 (조동기역, *정보사회이론*, 1997, 서울: 나남)

15) R. Hassan, "Globaliz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Culture within the Space Economy of Late Capitalism",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 vol. 2, no. 3, 1999

16) 닉 다이어-위데포드, *사이버 맑스*, 2003, p. 188

17) 닉 다이어-위데포드, *사이버 맑스*, 2003, p. 189

는 수단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다.

결국 NGO와 사회운동들이 하트와 네그리가 지적한 ‘제국의 토대’로서의 국제적 공론장의 포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디지털 문화에 흡착되어 있는 ‘제국의 유혹과 내면화’를 뿌리치고 인터넷의 장점들을 시민사회를 위해 복무하게 해야만 할 것이다. ‘탈중심화’와 ‘다수자의 권능강화’라는 목표를 뚜렷이 하고 네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러한 운동의 중심에 NGO와 국제 사회운동이 연대한 국제적 공론장이 위치해야 할 것이다.¹⁸⁾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사회의 주요 미디어들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보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대안적인 정보사회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실천운동이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

IV. 대안 정보사회를 위한 실천적 과제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지역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운동의 사례는 인터넷이 한 지역의 풀뿌리 운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세계의 호응과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이다. 이미 치아파스와 사파티스타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전파하는 수십 개의 웹 사이트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전 세계의 반 신자유주의 연대를 형성하는 핵심 세력이 되었다.¹⁹⁾ 더욱이 사파티스타는 인터넷을 민족해방군의 조직을 멕시코 전역과 국제 공간으로 확장하는 데 활용하는 한편 전 세계의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고 그들과 상호 소통을 하는 데 인터넷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²⁰⁾ 이외에도 WTO를 반대하는 시애틀 시위, 한국의 촛불 시위 등은 모두 인터넷이 NGO를 비롯한 전 세계의 시민사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연대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18) 백옥인, 정보 사회와 전지구화: 정보사회에 관한 논의의 진전을 위하여, 비평, 가을 호 09, 2002, p. 397

19) H. M. Cleaver, "The Zapatista Effect: The Internet and the Rise of an Alternative Political Fabric",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1, no. 2, pp. 621-640, 1998.

20) S. Marcos, *Our Word is Our Weapon*, 2001 (후아나 폰세 데 레온 엮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서울: 해냄, 2002).

구체적으로 인터넷과 NGO의 국제연대 활동 및 세계시민사회²¹⁾와의 연관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²²⁾

첫째, 세계시민사회나 국제 NGO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국제적으로 정의된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강한 연관성이 있다.

둘째, 인터넷이 지닌 국제성, 적용의 용이함, 참여를 유도하는 디자인, 정치적 성격 등은 세계시민사회의 기본적 성격과 부응하면서 세계시민사회를 위한 사회적 연결망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도구로 쓰이면서 세계시민사회의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인터넷과 세계시민사회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양자는 매우 역동적인 발전을 해 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키는 관계에 있다. 즉 인터넷이 세계시민사회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활용되는 한편 세계시민사회의 성장은 인터넷의 성장과 발전 방향에 기여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물론 상술한 인터넷의 정치경제학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인터넷이 세계시민사회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위해 기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의 사용이 NGO들의 제반 활동 내용과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NGO활동을 위한 편이를 제공하는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 조직의 운영방식, 체계 및 역학관계, 회원과의 관계를 비롯한 각종 사회집단과의 관계 방식, 운동방식과 전략 등 NGO의 핵심적인 성격과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²³⁾

인터넷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국제적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세계시민사회와 공통점을 가진다. 결국 인터넷의 발전과 변화의 방향은 시민사회가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동시에 인터넷에 대한 시민적

21) 위켄틴은 시민사회를 “정치적 관여를 위한 이념적으로 다양한 기회의 통로를 제공해주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국제적으로 정의된 관계들의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C. Warkentin, *Reshaping World Politics: NGOs, the Internet, and Global Civil Society*, 2001, p. 19

22) C. Warkentin, *Reshaping World Politics: NGOs, the Internet, and Global Civil Society*, 2001, pp. 32-33.

23) 김준기, 정보통신기술과 NGO: 변화과정의 관리학, 한국비영리학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 정보기술, 시민사회, 그리고 지식인의 역할, pp. 51-53, 2002

접근성, 인터넷 구조와 운영의 민주적 성격 등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공론장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을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활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²⁴⁾

첫째,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공론장에 참여하기에 아직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인터넷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적 기반, 전문인력, 운영 비용, 언어적 장벽 등, 제3세계 국가들은 물론 한국의 NGO들조차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이 그 실례라 할 수 있다.

둘째, 국내외적인 정보격차 (Digital Divide)의 문제이다. 국내외적인 사회, 경제적 격차가 사회적 약자를 정보사회의 흐름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는 정보사회가 진전될수록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권의 문제로서 첨예한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정보사회의 자본주의적 속성은 첨단 정보 기술 및 자동화를 통한 인력 수요 절감과 비정규직 고용을 초래하는 한편, 이 결과로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만성적인 실업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운동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셋째, 인터넷 상에서 여하히 의사결정을 위한 민주적 절차와 토의과정을 확립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상술한 대로 이 문제는 단순히 온라인의 현상에만 국한해서 논의하기보다는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와 공론장의 형성이라는 틀 속에서 사고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최근 국제인터넷주소위원회 (ICANN)의 선거과정을 연구한 논문²⁵⁾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ICANN의 일반선거과정에서 아시아 사회에 고질적으로 존재하는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적 동원이 인터넷 가버넌스의 자율적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국 인터넷 가버넌스는 기존의 아시아적 공론장의 수준을 그대로 투영한 상태에 머물렀다는 것이다.²⁵⁾

넷째, 상술한 대로 인터넷 사회의 상업화, 사유화가 공론장의 형성을 가로막고 사용자의 접근권, 온라인 미디어의 공공성을 갈수록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4) A. G. Wilhelm,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2000, pp.6-7

25) 민주적 공론장은 인터넷 기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민주적 인터넷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가능해짐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민주적 공론장을 구성하는 운영의 규칙, 결정권의 소재, 결정에 승복하는 구성원들의 문화 등이 저발전된 아시아와 한국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는 기존 공론장과 다름이 없었다. 강명규, 인터넷 거버넌스와 한국의 공론장, 계간 사상, 2003 여름호, p. 31

이러한 네가지 과제는 인터넷이 국내외를 막론한 시민사회,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가 민주적 인터넷 가버넌스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NGO와 시민의 인터넷을 통한 참여가 보다 민주적으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이러한 참여 활동이 단순히 개별적인 정책들의 적합성,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을 어떻게 하면 공공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고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시민의 채널로 확보할 수 있느냐를 결정해 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NGO와 사회운동 또한 자신들의 활동을 위한 도구의 확보와 활용,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참여의 한 통로라는 시각을 넘어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정보습득 확대, 시민과 정부 그리고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 활성화, 시민들의 정책결정 영향력 강화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²⁶⁾ 나아가 지구화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지구적 차원에서 통찰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 공론장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욕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 활동을 위해 인터넷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의 경우 인터넷 기반이 개인적 수준에서는 매우 잘 갖추어진 것이 사실이나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 인터넷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 시민조직을 위한 지원 제도 등은 너무도 빈약하다. 한국의 NGO들이 인터넷의 공공적 사용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 국내외 인터넷 가버넌스의 민주화, 시민을 위한 인터넷 교육과 문화의 형성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이러한 모든 과제는 결국 현재의 자본 편향적인 정보사회를 넘어 대안적 정보사회를 위한 전망과 실천방안의 모색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좀더 부연하자면 첫째, 사람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서비스보다는 전 지구적, 공동체적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는 속도, 효율, 경쟁에 대한 주장은 현실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주문이기도 하다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인류”는 무차별적인 경쟁과 도태를 바탕으로 한 현존 “정보사회”를 넘어서기 위한 주문이 될 것이다. 수많은 사이버공동체들의 존재가 이러한 주문이 공염불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

26) 윤성이, 한국의 사이버 민주주의, 계간 사상, 2003 여름호

고 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공유권”을 창출하는 데에 사회운동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공공서비스와 대안적 양식의 요소가 결합된 민주적 매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탈집중적이지만 집합적·협력적으로 운영되고, 사람들이 해당 미디어의 모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다양한 미디어에 공적인 출자를 해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RTV가 이러한 실험을 실천하고 있다.

셋째, 사이버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기획과 실험이 필요하다. 지역화폐에 기반한 지역경제의 자율적 운영이 실험 가능한 것이라면 사이버 화폐와 상호부조를 통한 경제 공동체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미 유료화되어 가고 있는 인터넷의 지식 나누기 문화를 되살릴 수 있도록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이 지식나누기 사이버 공동체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지식인 사회는 인터넷을 창출한 지식인간의 열린 협력을 음미한다면 온라인 학술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보사회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을 지속시키고 강화하는 “당신들의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폴라니가 갈파한 대로 경제는 사회에 “묻어 들어가” 있다. 시장 중심의 논리에서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개인들의 상호작용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시장에서의 교환이며, 노동 분업과 국가, 사회제도 등은 그 결과로서, 혹은 그것을 보조하는 장치로서 그려진다. 그러나 폴라니는 역사적,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경제적 과정이 오히려 사회적 관계와 과정의 한 측면으로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폴라니는 사회적/인간적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작동되는 모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아마티아 센은 윤리에 기초한 경제학, 진정한 자유의 보장과 신장을 위한 경제 모델의 개발을 제의한 바 있다. 네오 르네상스 기획의 의제에 ‘인간과 사회의 품에 안긴 정보사회의 모색’이라는 화두가 포함되기를 바란다.

청소년에게 조명된 가족공동체

유도진*

1. 연구의 목적

저의 연구는 Oughtopia 사상을 어떻게 하면 다양한 문화권에서 응용적용할 수 있는가? 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보면 1978년부터 목요세미나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되면서 1979년에는 Oughtopia가 출간되었습니다. Oughtopia가 출판된 후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은 1979년10월 26일 사태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예정지였던 Lotte Hotel에서 개최장소를 학교로 옮겨 10월 27일부터 Roma 크립과 일주일간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국제회의에는 많은 노벨수상자들과 저명한 국.내외학자들이 참여하여 당시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사회의 불안정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크게 공헌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1983년 까지 적어도 5년간은 Oughtopia사상 연구에 집중한 것이 인류사회연구원의 과제였습니다.

인류사회재건연구원에서는 학원장님(조영식박사)의 저서 1) 민주주의 자유론(1948년. 서울 한일공인사), 2) 문화세계의 창조(1951년. 대구 문성사), 3) 인류사회의 재건(1975년. 경희대 출판국), 4) Oughtopia(1979년. 경희대 출판국) 를 근거로 학문분야별로 즉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에서 심화된 연구를 하였고 다수의 연구업적을 단행본으로 출판도 하였습니다.

인류사회재건연구원에서는 이와같이 Oughtopia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하여왔고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그 역사를 보면 오늘까지 30여 년에 가깝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농경시대의 격언이 있습니다만 기계기술이 발달되어 시공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30년은 상대적으로 꽤 긴 세월입니다. 이점을 감안할 때 이제부터는 Oughtopia사상의 실천적 접근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천적 접근의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던 중 2000년 독일 학술원으로부터 초대되어 6개월간 Oldenburg 대학에서 연구하던 중 사회학과 Kolloquium에서 “선한 자유의지가 창조하는 Oughtopia”를 소개하였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낙원과 지옥을 만들 수 있고 선한 자유의지가 창조하는 문화세계는 천국이며 이 천국이 바로 Oughtopia이다¹⁾ (문화세계의 창조 1951 대구 문성사. p. 305-310) 라는 학원장님의 문화화된 인간의 자유의지와 Oughtopia 사상에 공감하고 있는 본인은 2002년에 Oldenburg 대학 가족연구 국제심포지움에서 국제적공동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Hegel의 “Weltgeist auf den Volksgesit 즉 세계정신은 민족정신으로 부터” 라는 철학적 방법론을 Oughtopia사상전파의 방법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모든 사회의 원초적인 집단인 가족에서부터 세계사회로의 Oughtopia사상의 전파라는 것입니다. 전파의 방법은 교육이며 그 연구대상은 가족구성원인 청소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조명된 가족공동체를 일차적으로 연구하여 실상을 파악 한 후 그에 부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과제입니다. 환언하여 6개국이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음으로 일차적으로 각국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국제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각국문화에 걸 맞는 Oughtopia 사상전파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발표하는 부분은 그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에게 조명된 가족공동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2. 문제제기

한국사회구성원을 세대별로 구분하여보면 경제지향주의 세대인 60대, 이념지향주의 세대인 40대 그리고 자유지향주의와 가치관의 다원화를 지향하는 20 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3 세대들은 불교와 유교적 가치관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으며 사회화된 집단들이다. 자유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청소년들은 1950년 한국동란

1) 조영식. 문화세계의 창조. 1951. 대구 문성사. p. 305-310

이후 급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문화이식과정(Akkulturationsprozess)에서 탈문화과정(Dekulturationsprozess)의 피해자인 동시에 신문화형성과정(Neokulturationsprozess)의 창조자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이며 이 세대가 지향하는 가치는 구미 선진사의 청소년들이 지향하는 것과 같이 자유주의 가치관이다.

한국청소년들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가치관의 형성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지체현상(Cultural lag)과정에서, 신문화형성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는 가치관의 갈등구조 속에서 그리고 극대화되어가는 사회적 아노미현상과정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입지를 확보하는 유일한 선택의 결과일수도 있다.

이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가치는 “쉽게 돈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이해하는 일“Arbeit”의 개념은 ”땀 흘리지 않는 일“로서 다른 세대가 생각하는 일의 개념과는 상이하다.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조명되는 가족공동체의 의미는 과연 어떠한 것일지? 만약에 오늘의 가족제도가 해체된다면 다음의 대안공동체는 무엇이 올지?를 연구하여 보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이 발표문은 한국을 비롯하여 독일(Germany), 스페인(Spain), 폴란드(Poland), 리타우엔(Litauen) 그리고 칠레(Chile) 즉 6개국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청소년 가족관의 이념적 모델”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청소년에게 조명된 가족공동체 연구에 근거하고 있다.²⁾

가족공동체³⁾가 건강할 때 그 사회와 국가도 건강하다.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참여하고 봉사하며 건강한 국가의 국민들은 단결하고 애국하며 인류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건강한 가족공동체는 부부애를

2) 본 주제에 대한 국제간 비교연구는 2002년 Oldenburg대학 가족연구소주최 국제심포지움에서 본인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 (2003년과 2004년)을 통해 연구를 심화했으며 2005년 4월 독일에서 개최된 제 4차 심포지움을 바탕으로 현재는 비교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년 말 또는 2006년 초 출간예정).

3) 이 논문에서 거론되는 가족공동체는 1차적 집단으로서의 가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적공동체(familiaere Gemeinde)는 반듯이 1차적 집단이 아닐수도 있다. 그 한 예로 2차적 집단에서도 가족적 공동체의 특성(familiaere Gemeinschaft)을 유지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emeinde는 Gemeinwesen적 속성과 Gemeinschaft적 특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기반으로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기능적인 역할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리스 신화에서 부부의 이상은 함께 죽음을 맞는 것이다. 착한 노 부부 필레몬과 바우키스에 감복한 제우스가 “그대들의 소망은 무엇이나?” 고 묻자 필레몬은 아내와 한 날 한시에 죽게 해 달라고 한다. 부부는 함께 세상을 떠나면서도 “여보 잘 있어요.” 라고 한다. 그리고 제우스는 부부를 참나무와 보리수로 만들어 마주보게 한다는 신화가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보듯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실현되는 돈독한 부부애를 근거로 적어도 자녀들의 정상적인 사회화를 돕고, 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 시킬 수 있는 재생산과 경제적 활동을 하는 보편적인 제도와 구조이기 때문일 것이다(Nave-Herz, 2002). 이러한 보편적인 가족제도와 구조를 대분하여 보면 동양의 집합주의적 가족구조와 서양의 개인주의적 가족구조라는 두개의 이념 틀을 상정할 수 있다.

집합주의적 가족구조와 개인주의적 가족구조의 혼재 속에서 나타나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 혼란(옥선화,1999; 신수진,1998; 김경신,1998; 이순형,1996; 유영주,1990)은 개인의 일상에서만 아니라 한국의 가족구조변화(김혜숙, 김은희, 김항원, 유철인, 장현섭,1999; 이여봉, 이미정,2003)에도 전혀 없는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두개의 이념적 틀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가족의 변화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뚜렷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즉 한국의 가족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기준으로 삼던지, 아니면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족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여과하여 정책수립에 참고 하던지 양자택일을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때로는 집합주의적 가족관을 때로는 개인주의적 가족관을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생활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유도진, 1995). 그 한 예로 가족의 협조를 필요로 할 때에는 집합주의적 가족관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주의적 가족관을 주장하고 있는 편의주의적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리사랑”이란 가치관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의무는 강

조하고 있지만 부모를 위한 자녀의 의무는 아직도 서구에 비해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을 들 수 있다.

혼재하는 두개의 가족관의 충돌에서 야기되는 문제는(Yoo, Do-Jin, 2002) 가족구성원간의 심화된 물질적 내지 비물질적 갈등관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형제자매간, 친인척간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해체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사회문화적 여과 없이 서구에서 수입한 이른바 “핵가족”(안병철,1980; 이미경,1999)이라는 개념을 한국사회가족구조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되어가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가족구성원관계의 친밀도가 떨어지거나 파괴되고 있다. 서구에서의 핵가족이라 함은 개인주의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과 부부간의 경제적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그 대표적인 특징인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성년이 된 자녀라 할지라도 결혼 전까지는 부모와 동거하며 학교 교육비와 생활비를 부모로부터 지원받고 그리고 결혼할 경우 결혼비용과 주거비까지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설사 결혼을 하여 독립가구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부모와의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부부간의 경제적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혼인을 성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핵가족”과 서구의 “핵가족”이라는 개념 간에는 큰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정황을 살펴 볼 때, 서구의 핵가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보다는 우리정서에 맞는 “소가족”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그 의미에 상응하는 듯 하다(장현섭, 1993).

한국의 가족이 한국사회의 역사성과 전통성 속에서 성장하며 변화할 때 한국가족의 정체성이 확보되고 그 속에서 생산되는 가족문화의 특성은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은 물론 그 문화력은 개인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웃 나라와 협동 할 수 있는 대상이나 대상국으로서의 기반을 조성 할뿐 아니라 협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유도진, 2001). 따라서 가족이 건강할 때 국가도 건강하고 건강한 국가의 국민들은 단결하고 애국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은 건강하지 못하다. 자녀와 부모들은 그들 나름대로 각자 살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타의 간섭을 불허하고 있다. 가정에서 가족공동체의 내용을 구현하는

밥상공동체 실현은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고, 한 지붕 아래 동거는 하고 있지만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는 기능적 관계로 변모하여 이제는 가정이라기보다 이른바 “단순한 숙소”로 그 의미가 변하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유도진, 2001).

이와 같이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나빠지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 친인척과의 관계 등)만이 아니라 저 출산이나 이혼율의 증가 그리고 독신의 증가 등은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저 출산과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유교주의적 가족관과는 상반되는 것이며 이는 한국가족구조의 위험수위를 의미하는 사회현상이다.

한국의 조 출산율을 보면(통계청, 보도자료 2004, 가임여성(15-49세) 1인당 출산 수) 1970년:4.53명, 1980년:2.83명, 1990년:1.59명, 2000년:1.47, 2002년에는 1.17명으로 세계최저수준(통계청, 보도자료 2004, 한국:1.17, 일본:1.32, 미국:2.01, 프랑스:1.88, 호주:1.75)이다. 저조한 출산율의 이유는 미혼여성에게 있어 54.5%가 ‘자신을 위해 투자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미혼자들의 결혼관과 직결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혼여성은 62.3%가 ‘육아교육비 부담이 커서’,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15.2%)’, 그리고 ‘자신을 위해 투자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005.2.18 ‘아이 안 낳기’ 한국 미래가 없다.; 함인회, 1993).

2004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조 이혼율의 경우 1970년:0.4%(조 혼인율:9.2%), 1980년:0.6%(10.6%), 1990년:1.1%(9.3%), 2000년:2.5%(7.0%) 그리고 2003년에는 3.5%(6.3%)로 나타났다.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고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다. 2003년도 혼인건수는 30만 5천 건으로 2002년보다 0.6% 감소한 반면 이혼건수는 16만 7천 건으로 전년에 비해 15.0% 증가했다. 이는 하루평균 835쌍이 결혼하고 458쌍이 갈라섬으로써 한 해 동안 결혼한 건수에 대비한 이혼건수 비율이 절반이 넘는 54.8% 이다.

이와 같이 가족의 해체위기가(함인회, 2002; 장경섭, 1995) 현실로 나타나는 현대 사회에서 한국청소년들에게 조명되고 있는 가족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앞으로 10-20 년이 지나면 이들의 의식이 가족생활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 이고 이들의 가족관이 한국의 미래사회구조의 초석이 될 것이기에 청소년들의 가족관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김기연, 신수진, 최해경, 2003).

이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가족관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중 한국청소년에게 조명된 가족공동체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주 연령층인 17세부터 27세의 청소년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며⁴⁾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성별 연령별 분포

		성별				총계	
		여자		남자		수	%
		수	%	수	%		
연령	17	37	7.2	41	6.8	79	7.0
	18	91	17.7	106	17.7	197	17.7
	19	37	7.2	52	8.7	89	8.0
	20	55	10.7	62	10.4	117	10.5
	21	88	17.1	46	7.7	134	12.0
	22	72	14.0	48	8.0	120	10.8
	23	67	13.0	54	9.0	121	10.9
	24	42	8.2	70	11.7	112	10.1
	25	18	3.5	45	7.5	63	5.7
	26	5	1.0	47	7.9	52	4.7
	27	3	.6	25	3.9	28	2.5
합 계		515	100	597	100	1112	100

4) 청소년에 대한 연령구분은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된다.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연령적으로 불분명하게 규정되고 있다. 즉 청소년을 규정하는 법적인 연령을 보면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0-18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24세,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연령 기준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 바, 연구참여국의 개개 상황을 고려하여 위에서 17세부터 27세의 연령으로 규정하였다. 물론 이러한 청소년의 연령 규정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도 역시 위의 합의에 의해 17-27세의 연령층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회조사에 필요한 설문지의 내용과 표본의 크기는 6개국에 동일하며 한국에서의 조사는 2004년 6월과 9-10월 총 3개월에 걸쳐 표본의 크기 1200을 4개의 지역 남녀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실시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 결함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1112개의 표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청소년의 사회적 신분을 보면 30%의 고등학생과 64%의 대학생 총 95%가 학생이며 직업을 지닌 청소년은 약 3%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본 연구의 대상이 주로 학생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자료입력 및 분석은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SPSS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의 방법으로는 요인 분석, 교차분석 또는 상관분석을 주로 사용했다.

청소년의 가족관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가 설정한 조사의 범위는 주로 4 개로서, 즉 가족의 의미, 부부관(결혼·이혼), 자녀관, 부부의 역할분담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위의 4개 범위에 따라 소개하고자 한다.

3. 청소년에게 조명된 가족공동체

가족구조 또는 가족공동체의 변화와 관련되는 한국사회구조의 일반적 변화양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급격히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변동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주는 사회적 충격으로서의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적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되면서 개개인의 일상에서 그 행태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사이에 한국사회에서 야기된 괄목할 만한 사회변동 내용은 전통적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가치관 변화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박민자, 2005; 임희섭, 1996).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사회가 세계 2차대전 이후 약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경험하였던 먹기시대(Fresswelle), 마시고 장식하는 시대(Trink- & Einrichtungswelle), 여행과 성시대(Reise- & Sexwelle)라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충족”의 과정을 우리는 60-70년대에 가난의 상징이었던 이른바 ‘보리 고개’를 넘기자마자 극히 외형적이면서도 무질서하고 혼잡적인 경험을 장기간에 걸쳐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회적 사실은 한국사회가 과소비 지향적이며 이는 사회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잘못 이해되고 있고 또 이념적으로 전개된 한국의 민주화가 한국의 사회질서구조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무를 권리로 착각한다든가, 가족구조가 여권의 신장으로 이념화된다는든가 또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가부장적 종속관계라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변동의 급물살을 탄 대표적인 분야는 복지국가의 확장, 물질적인 복지수준의 향상 그리고 교육의 팽창이란 사회구조의 변화가 있었고 특히 수확능력에 집중된 학교제도에 의해 가족제도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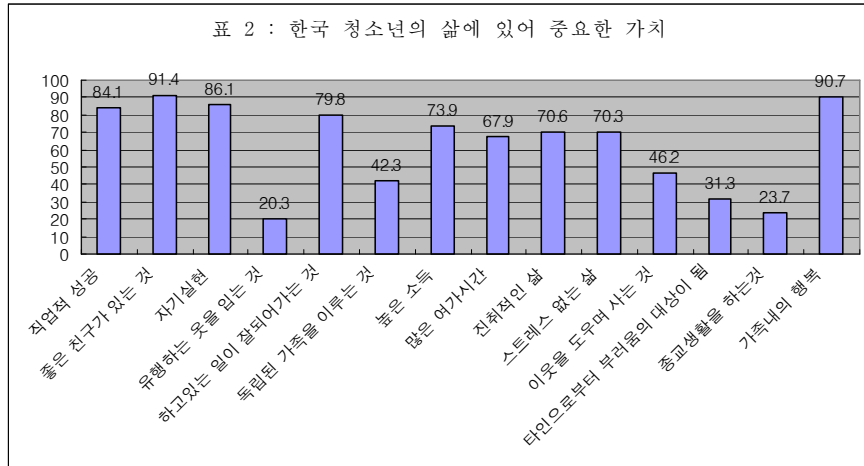
넷째, 사회적 여과 없이 수용한 문화이식에 의해 변화된 가치관은 드디어 한국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거부하고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집합주의(Kollektivismus)를 서구의 개인주의로 대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가족중심의 생활과 가족구성원의 단결력을 강조하는 집합주의가 서구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 삶의 형태로 바뀌고 있고 “우리들”이라는 공동체의식이 점차 상실되어가고 있는 반면 물질주의적 가치가 모든 것에 우선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사회적 의무의 이행보다는 권리주장이 앞서고, 배려보다는 이기적 행동이 우선하고 그리고 지나친 이해관계중심의 사회적 행위는 사회적 내지 이웃에 대한 불신풍조를 만연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적 긴장은 구성원들이 정신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여섯째, 아직도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협조원리는 남아있지만 일상생활형태의 세분화와 개인주의화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형태의 노부모 부양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3.1 가족의 중요성과 의미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서(표2), ‘좋은 친구가 있는 것(91.4%)’이 ‘가족 내의 행복(90.7%)’이나 ‘자기실현(86.1%)’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또래집단 또는 친구가 일상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와 더불어 가족의 중요성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높은 연령군인 대학생(89.3%)이나 직장인(90.9%)보다 낮은 연령군인 고등학생(94.5%)이 ‘가족 내의 행복’을 더 높게 평가 하고 있다는 것은 일면 연령에 비례한 자립도의 향상과 이면 연령에 비례한 의존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친구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좋은 친구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실현을 원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각인된 가족이란 ‘부부와 적어도 한 자녀(91.9%)’, 또는 ‘아이 없는 부부(78.6%)’ 아니면 ‘편부모와 자녀(77.0%)’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한국 청소년은 서구청소년에 비해 가족을 규정짓는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근거를 보면 동성 파트너에 대한 법적인 관계 인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동성파트너도 결혼 할 수 있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한국 청소년은 17.4%, 독일 청소년은 34.6%였으며, ‘동성파트너도 결혼 할 수 있으며 양자를 기를 권리가 있다’에 한국청소년은 22.2%가 독일 청소년은 43.9%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한국의 청소년은 39.6%가 독일 청소년은 78.5%가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한국 청소년의 경우 ‘동성파트너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45.5%로 15.7%의 독일청소년에 비하면 아직 동성파트너에 대한 용인의 폭이 넓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혼전동거자의 법적인 부부 권리부여에 대해서도 ‘혼전동거자도 법적인 부부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한국 청소년은 34.5%로 51.2%의 독일 청소년에 비해 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낮다.

가족의 중요성 대한 질문에서 청소년들은 가족의 의미가 강화(33.4%)되기보다는 점차 약해질 것(36.4%)이라고 보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이 앞으로 가족의 의미가 점진적으로 낮아 질 것 이라는 생각은 남성(35.7%)보다 여성(37.3%)에게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변동과정에서 남성

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유교주의적 가정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유는 여권신장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인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김혜영, 2003).

가족에 대한 정의는 물론 가족의 중요성과 의미 등에 대한 분석에서 이미 나타났지만 한국청소년들의 가족관은 서구의 청소년들의 가족관에 비해 아직도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점차 개인주의적 가족주의 경향이 강조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2 부부관, 결혼관, 이혼관

학교교육기간의 연장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심지어 독신주의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청소년들의 부부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결혼과 부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제도(84.9%)’라고 응답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있어 결혼의 중요성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또한 ‘파트너를 사랑하고(23.2%)’, ‘안정되게 살 수 있기 때문(22.2%)’ 이라는 것이 결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반면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은 첫째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기 때문(6.7%)’이며 둘째로는 ‘결혼을 통하여 확고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4.4%)’라고 한다⁶⁾.

결혼 전 동거에 대한 견해는 부정적이나 동거를 한다면 결혼을 전제로(21.0%)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혼전 동거에 대한 성별차이를 보면 남성(31.4%)보다는 여성(44.1%)의 반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동거에 대해 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혼전 동거관에 대한 여성의 보수적 태도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순결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반증일수도 있지만 사실 혼전 동거나 더구나 그로 인해 자녀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여성에게 돌아오는 개인적, 사회적 부담은 남성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5) 이는 부부 또는 결혼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질문으로서 "부부란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아니면 부부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제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6) 결혼하기를 원하는 이유와 또한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각각 9개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 중 가장 적합하게 생각하는 3개의 이유만을 선택하는 질문으로 구성됨.

연령별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17~19세 연령 군에서는 반대가 41.1%, 20~24에서는 37.6%, 25~27에서는 26.8%로서 연령이 높을수록 동거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혼전 동거와 직업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고교생의 경우 반대가 43.4%, 대학생은 36.1%로 나타난다.

표 3 : 혼전 동거에 대한 견해

혼전동거에 대한 견해	성별		Total
	여성	남성	
바람직	36 7.0%	75 12.6%	111 10.0%
반대	227 44.2%	188 31.5%	415 37.4%
관계없음	251 48.8%	334 55.9%	585 52.7%
Total	514 100.0%	597 100.0%	1111 100.0%

$$\chi^2=23.072 \quad df=2 \quad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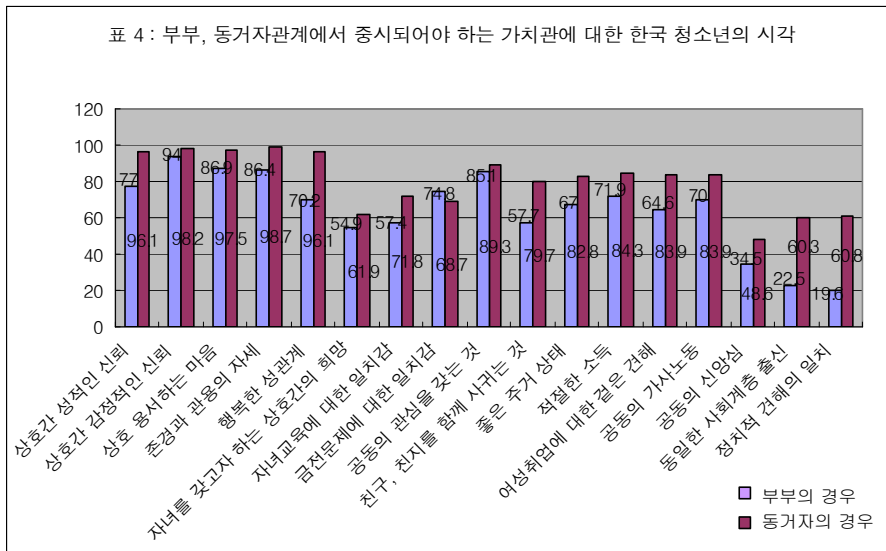
부부간 또는 파트너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치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즉 결혼한 부부(파트너)에게는 ‘상호간 감정적인 신뢰(67.2%)’가 중요하다는 것이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파트너의 경우에는 ‘상호 감정적인 신뢰(48.5%)’보다는 ‘상호간 성적인 신뢰(68.2%)’,(부부 39.7%)를 우선시 하고 있다. 다음은 양자가 공히 ‘존경과 관용의 자세’(56.2% : 58.0%)순이다.

부부든 또는 동거파트너든 상호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요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부부간의 성관계를 들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견해는 성별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즉 성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관점에 대해 남성의 경우 40.3%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28.6%에 불과하였다. 한국의 남성은 여성보다 행복한 성관계에 대해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 이는 여성들에게 성적 정숙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든가 아니면 여성들의 인위적 관심전환에서 발생하는 의식변화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에게는 ‘감정적인 신뢰’,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파트너 간에는 ‘성적인 신뢰’가 중요하다는 청소년들의 진술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부부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로서 부부가 아닌 다른 가족구성원과

의 도덕적이며 감정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관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감정적인 신뢰가 중시되는 것이라고 설명 할 수 있고 파트너의 경우 성적인 신뢰가 중시되고 있다는 것은 가족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자 즉 부부관계가 아닌 파트너 관계일 뿐이며 ‘부부가 아닌 파트너란 육체적 관계가 우선시되는 부적절한 관계’라는 편견이 섞인 답변으로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진술은 부부와 파트너라는 개념에서 중요시 되는 사회적 특징을 지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청소년 자신이 생각하는 부부와 파트너간의 차이를 의미 하는 답변일수도 있다.



부부와 동거파트너의 대한 의식에서 큰 차이가 나는 다른 요인 즉 ‘공동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을 보면 부부(36.2%)보다는 동거파트너(46.9%)의 경우 이를 더 중시해야하고 부부(40.1%)보다는 동거파트너(48.2%)간에는 더 많은 ‘공동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가족해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이혼에 대한 청소년들의 견해는 “가능하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감안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한다. 이러한 진술이 의미하는 것은 부부생활의 보수성을 점진적으로 탈피하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표 5: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이혼관

이혼에 대한 견해	성별		Total
	여성	남성	
절대반대	40 7.8%	140 23.5%	180 16.2%
조건부 찬성	443 86.2%	414 69.6%	857 77.3%
모르겠다	31 6.0%	41 6.9%	72 6.5%
Total	514 100.0%	595 100.0%	1109 100.0%

$$\chi^2=52.289 \quad df=2 \quad p=.000$$

위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혼은 절대 반대 한다’는 보수주의적인 입장은 16.2%에 불과한 반면,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견해는 77.3%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이혼에 대한 가치가 점차 서구와 유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혼관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보면 여성(7.8%)의 3배가 되는 남성(23.5%)은 이혼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여성(86.2%)은 남성(69.6%)에 비해 조건부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은 차별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 여성들의 자유는 어느 정도 구속되었고 결혼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 다른 것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이혼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둔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원화된 오늘의 사회에서 참고 사는 것 보다 각자의 인생을 구가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롭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것 같다.

이혼의 이유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사실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편의 물리적 폭력(69%)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혼의 이유로 폭력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50%)에 비해 더 중요한 이혼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부부폭력에 있어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폭력의 가해자로서 피해 당사자에게 나타나는 부부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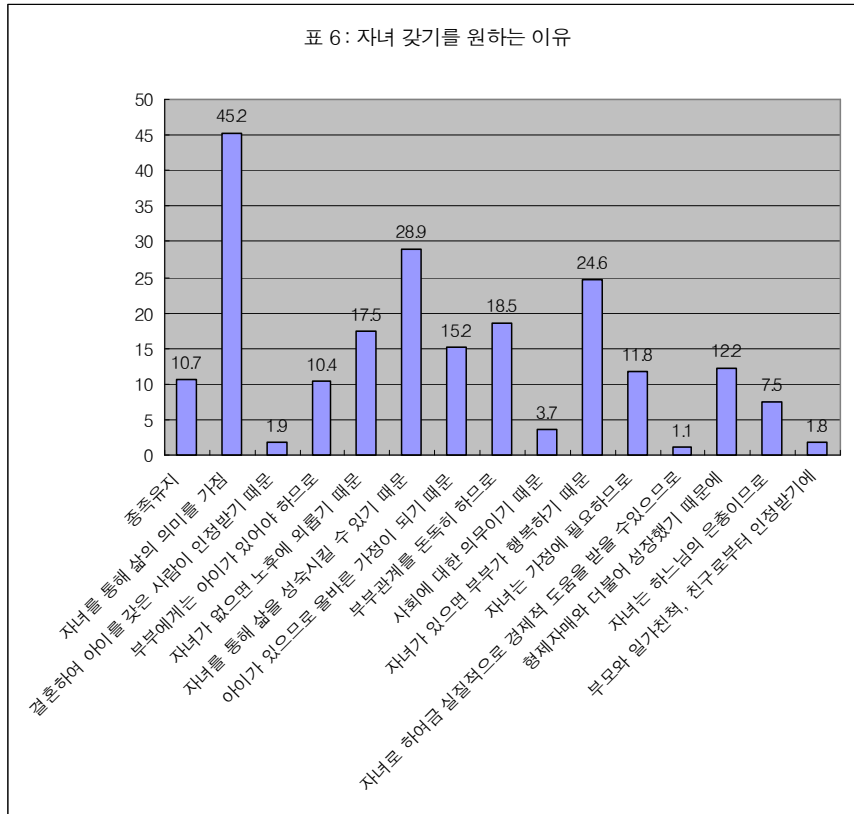
혼외부정이 있더라도 이혼은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측은 여성(13.5%)보다 남성(29.8%)이 2배나 더 많은 반면, 반드시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은 오히려 여성(36.1%)이 남자 청소년(30.5%)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질병이 중요한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아무리 개인주의적 사고가 확대되었어도,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젊은 이들의 긍정적인 사고인 것 같다. 다시 말해 부부간의 사랑을 신체적 질병이 깨뜨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점은 서로 이해하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혼의 이유로 거론되는 다른 기타 요인들 즉 애정이 식은 경우, 별거, 배우자의 약물중독이나 질병, 지속적인 다툼과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문제 등을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러한 요인들을 대부분 이혼에 적합한 사유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대체로 이유가 있다면 이혼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여성은 이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자녀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이혼만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3. 3 자녀관

청소년응답자의 73.6%가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자녀의 수는 최소한 2명(43.4%) 아니면 3명(16.7%)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를 통해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45.2%)’이며 ‘자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숙시킬 수 있고(28.9%)’, ‘자녀가 있으면 부부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24.6%)’이라고 한다. 어쩔 수 없는 경우(74.2%)를 제외하고 낙태는 반대(24.9%) 하고 있다. 자녀의 유무와 남녀의 행복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남자가(46.1%) 여자(45.9%)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자녀관이다.



남녀모두 자녀는 미래에 있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녀에 대해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자녀유무와 남녀행복도와와의 관계유무를 알아본 결과 ‘자녀가 있는 여성이 더 행복하다’라는 관점에 대해 여성(40.2%)자신 보다는 남성(50.9%)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있는 남성이 더 행복하다’라는 관점도 역시 남성(51.5%)이 여성(40.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녀의 유무에 따른 개인의 행복정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보다 남성에게 자녀가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부각된다는 사실은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당연한 결과로서 행복은 자녀와 무관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바,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에게 있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 갖기를 원하지 않는 응답자(9.7%)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모르겠다(16.3%) 는 응답자를 합하면 무려 26.0%가 된다. 자녀 갖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

에 대한 9 개 답변 문항 중 3개까지의 중복응답을 허용한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답변은 ‘아이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다. 전체 50.5%의 청소년이 선택한 이 답변에 대한 남녀성차가 존재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56.7%가 ‘그렇다’고 답한 것에 반해 남성의 경우 42.6%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서 나타나는 약 14.1%의 차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가 여성의 것이라는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내 직업 활동에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에 대한 응답과 비교해볼 수 있다. 모두 39.3%의 청소년이 직업 활동의 제한을 이유로 자녀 갖기를 거부하였는데,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43.3%가 그리고 남성의 경우 34.0%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다. 즉 여성의 경우 자녀가 직업 활동의 더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성청소년의 경우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되고 사회활동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더 많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여성에게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과 장애요인으로 비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녀 갖기를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 ‘아이들 육성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이유에 전체 39.3%가 응답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보면 여성은 36.7%가 남성은 42.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자녀 양육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여성이 그리고 재정적 부담은 남성이 느낀다는 라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남성은 가장으로서 가정의 재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식이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이러한 응답은 2003년 여성부가 발표한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에서 제시한 청소년의 자녀양육 비용에 대한 가치관과 일치하고 있다.

결국 출산율 저하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자녀교육비와 여성의 의식변화에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01년 기준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GDP대비 8.2%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은 3.4%로 이 또한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프랑스(1992년 1.73명)의 출산율은 2002년도에 1.89명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92년의 1.78명에서 1.17명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율의 감소는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켜 국가발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인구정책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조선일보 2005.5.26: 출

산울저하원인).

서구청소년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가치관과는(Scholz, W.D.,2002) 대조적으로 한국청소년들은 자신의 대학교육비용이나 결혼비용 등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대학교육비의 경우 부모가 전적으로 또는 일부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90%를 넘고 있고, 대학원의 경우에도 부분적이거나 부모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고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일부책임의 경우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결혼비용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자녀의 집 마련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표 7).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경제적 압박을 어쩔 수 없이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 한국적인 현실이다.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녀들의 양육비를 자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의식의 선택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동시에 가정적으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만 강조하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은 부재한 한국사회의 제도적인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는 면이 있다.

<표 7> 부모의 경제적 책임

(단위 : 명, %)

	성별	책임 있음	전혀		무응답	
			전적으로 책임	일부 책임		
자녀의 대학교육비	남	90.6	47.4	43.2	9.4	0.0
	여	92.7	44.9	47.8	7.3	0.0
자녀의 대학원교육비	남	83.0	30.8	52.2	16.9	0.1
	여	83.5	27.3	56.2	16.5	0.0
미취업자녀의 용돈	남	74.8	20.5	54.3	25.1	0.1
	여	76.1	23.4	52.7	23.7	0.1
결혼준비비용	남	83.5	15.1	68.4	16.5	0.0
	여	87.5	18.0	69.5	12.3	0.3
결혼당시 자녀의 집, 전세마련	남	74.0	13.9	60.1	26.0	0.0
	여	71.7	13.5	58.2	28.3	0.0
결혼한 자녀의 생활비	남	27.2	12.7	14.5	72.7	0.0
	여	25.4	9.1	16.3	74.6	0.0

여성부,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2003

여성의 경우 낙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20%, 남성의 경우 29%로 여성보다 남성이 낙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마도 이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생명을 더 존중한다는 의미와는 무관하며 한국적 상황에서 미혼모는 있지만 미혼부는 극히 드물다는 상황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원치 않는 아이’가 여성에게 주는 부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강간, 질병 등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낙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낙태에 대한 여성의 견해는 모성을 기대한 것과 사뭇 달랐지만 이는 자녀 양육이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그를 뒷받침할 사회적 제도가 있다기보다 ‘집’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육아와 출산의 대부분을 책임지기 때문에 태아를 자신의 몸의 이물질 또는 경우에 따라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책임이 중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낙태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3. 4 역할분담

부부에 있어서 전통적인 역할기대는 변하고 있고 성에 따른 역할은 점차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이동원, 이근후, 박영숙, 1990; Nave-Herz, 1999; Beck-Gernsheim, 1990). 응답자의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와 성 구분 없는 가사분담을 원하고 있다(62.4%).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 평생 대감님 모시는 삼월이로 살기보다 조건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삼돌이를 만나 일생을 마님으로 지내겠어요(조선일보 2005.5.9).”라는 여성들의 바뀌고 있는 가정 생활관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가사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남성의 인지도는 여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아직도 집안 일 즉 세탁, 시장보기, 육아, 음식 만들기, 집안청소 등은 부인의 일이고 집 밖의 일 즉 집수선, 정원 일 등은 남편의 일이라는 견해의 충돌은 있으므로 한국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특히 여성들이 성 역할분담을 위해 기대하는 배우자관을 보면 ‘백마 탄 왕자(높은 연봉, 좋은 집안)보다 삼돌이(가사분담, 친근한 머슴 형)형’이 좋다고 하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셔터맨(가게 문 여닫는 일만 하는 남편)을 하더라도 용모는 떨어져도 돈이 많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원하고 있다.

가사노동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보면 가사노동을 중시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공동의 가사노동에 대해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응답자의 대부분이 공동의 가사노동을 중시하고는 있으나 인식차이가 있을 경우 결혼생활에 있어 공동의 가사노동 문제가 남녀 간 갈등의 소지 중 하나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남성(28.0%)보다 여성(45.9%)이 공동의 가사노동을 더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은 남녀 공히 동등한 가사노동을 하여야 한다는 요구라고 분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는 여성에게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다.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를 중시하는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다. 여성 청소년들은 자신의 취업에 대해 비교적 깊이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결혼상대의 동의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자신의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결혼과 양립시키는 것은 중요한 가치의 하나라고 보는 반면 남성 청소년들은 아직 여성들에 비해 여성취업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 된다(이현송,1996; 방하남,1996; 조혜선,2002; 이주희,2003. 통계청(2004년도 청소년통계)에서 발표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특성과 우리의 연구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청소년들의 중요한 생활관심사는 17-19세에서는 ‘학업·진학’이고 20-24세에서는 ‘돈(경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인 고민은 학업(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의 대상으로는 부모도, 선생도 아닌 친구를 택하고 있으며 가족(부모, 형제, 자매)과의 만족도는 1998년(59,7%)에 비해 2002년도(67,8%)에는 높게 나타났다. 20-24세 청소년 중 남자 78.1%, 여자 55.1%가 결혼에 찬성하였으며 결혼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자가 20.0%, 여자가 남자의 2배가 넘는 40.9%로 나타났다. 청소년(17-19세,20-24세)의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는 「공평하게 분담」이 각각 64.6%, 56.3%로 15세 이상 인구전체 30.7% 보다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별에 따른 역할분담에 대한 기대감과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일상생활간의 차이는 장래 한국 가족 갈등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4. 결론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가족은 확대가족에서 소가족(핵가족)으로 변하였고 급기야는 저 출산율, 늦어지는 결혼연령, 독신자와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한국가족의 새로운 변화의 축이 형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합주의적 가족구조와 개인주의적 가족구조 이데올로기가 중첩되어 가족의 일상을 지배하는 가치 공유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의 50대 후반과 60대는 빈곤타과가, 그리고 40대와 50대 초반은 민주화정착이 그들의 확실한 사회적 삶의 목표였으나 오늘의 20대 전후세대의 사회적 삶의 목표는 너무나 다양한 것 같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에게 각인된 가족은 ‘부부와 적어도 한 자녀(91.9%), 또는 아이 없는 부부(78.6%)’ 아니면 ‘한 부모와 자녀(77.0%)’ 이다.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1위는 ‘좋은 친구(91.4%)’이며, ‘가족 내의 행복(90.7%)’ 그리고 ‘자기실현(86.1%)’ 순으로 나타났다.
-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의미가 증대(33.4%)되는 것보다 점차 약해지고(36.4%)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성별의 큰 차이는 없지만 남성(35.7%)보다 여성(37.3%)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 결혼과 부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제도(84.9%)’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이유는 ‘파트너를 사랑하고(23.2%)’, ‘안정되게(22.2%)살 수 있기 때문’ 이라고 한다. 결혼 전 동거에 대한 견해는 부정적이나 동거를 한다면 결혼을 전제로(21.0%)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혼전 동거에 대한 성별차이를 보면 남성(31.4%)보다는 여성(44.1%)의 반대 비율이 더 높으며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동거에 대해 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간 또는 파트너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치로는 결혼한 부부에게는 ‘상호간 감정적인 신뢰(67.2%)’가 중요하다는 것이며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상호 감정적인 신뢰(48.5%)’보다는 ‘상호간 성적인 신뢰(68.2%)’,(부부 39.7%)를 우선시 하고 있다.
- 부부와 동거파트너의 대한 의식에서 큰 차이가 나는 다른 요인 즉 ‘공동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을 보면 부부(36.2%)보다는 동거파트너(46.9%)의 경우 이를 더 중시해야 하고 부부(40.1%)보다는 동거파트너(48.2%)간에는 더 많은 공동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 이혼관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보면 여성(7.8%)의 3배가 넘는 남성(23.5%)은 이혼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여성(86.2%)은 남성(69.6%)에 비해 조건부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들이 조건부 이혼을 더 많이 주장하는 이유를 보면 남성들의 물리적 폭력(59.1%), 혼외부정(32.9%) 그리고 약물중독(26.2%)등이다. 혼외부정이 있더라도 이혼을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측은 여성(13.5%)보다 남성(29.8%)이 2배나 더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혼을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측은 여성(36.1%)이다(남성;30.5%). 혼외부정에 대한 남녀의 부정적 인식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 청소년응답자의 73.6%가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자녀의 수는 최소한 2명(43.4%) 아니면 3명(16.7%)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를 통해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45.2%)'이며 '자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숙시킬 수 있고(28.9%)', '자녀가 있으면 부부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24.6%)'이라고 한다.
 - 성별과 자녀유무에 따른 남녀의 행복도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에게 자녀가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확인 할 수 있다. 자녀를 원치 않는 경우 성별의 차이를 보면 여성에게는 '아이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반면 남성에게는 '아이들 육성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에게는 사회적 활동을 위한 신체적 구속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남성은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본다.
 - 청소년들은 맞벌이 부부와 성 구분 없는 가사분담을 원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공동의 가사노동에 대해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를 중시하는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다.
- 청소년들의 가족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요인 중 대표적인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의 다원화는 가족의 기능을 세분화 시키고 있다. 즉 가족적인 생활영역은 직업적인 생활영역으로 대체되고 있고, 학교제도는 가정교육을 대신하고

있다. 공동체적 사회관계는 가족에서만 아니라 직장이나 지역사회 또는 활동단체에서 형성된다. 이 때문에 가족의 기능과 가족의 영향은 약해지고 있고 가족의 연대감인 “우리의식”은 약해지고 있다.

- 2) 가족사회학에서 거론되는 “소가족(핵가족)의 일반화”가 한국가족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이고 그리고 사회의 기능적 세분화과정은 60년대 이후 한국가족의 형태를 소가족(핵가족)화로 변화시켜왔다. (진정한 의미의 서구의 핵가족개념은 아직 한국에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소가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1997년 IMF 위기 이후 발생한 사회적 문제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혼의 증가와 과도한 사교육비지출 부담으로 인한 출생율의 감소이다.
- 4) 개선된 산아제한 방법과 증가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성역할분담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고 이는 성에 대한 전통적인 역할기대의 해체원인이 되고 있다.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이러한 역할기대와 역할분담은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가족위기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다.
- 5) 부부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권위적 구조나 위계질서가 해체되고 있다. 전통적 가정에서의 가부장적 권위는 약화되어 자녀의 독자성지향이나 자녀위주의 생활로 변하고 있다.
- 6) 부모들은 이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해소할 때 상담대상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의논하는 대상은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닌 자신들의 친구나 선배이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이제 정적인 관계에서 기능적관계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한다.
- 7) 아직도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협조원리는 남아있지만 일상생활형태의 세분화와 개인주의화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노부모부양문제는 지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 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노년, 중년,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6. pp.150-160
- 김기연, 신수진, 최혜경. 2003.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과 생활행동.” 「한국가족 관계학회지」 제3권 1호: pp 43-
- 김혜영. 2003. 한국의 가족문화와 여성인권, 아세아여성연구 32집. pp.10-40
- 김혜숙, 김은희, 김항원, 유철인, 장현섭. 1999. 한국가족/친족연구의 쟁점:도시중산층과 제주도의가족/친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11(1). pp.5-15
- 박민자. 2005. 21세기 한국가족,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가족문화 편, ‘21세기한국가족- 문제와 대안’ 서울 (경문사). pp.5-15
- 방하남. 1996.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 전이과정의 동태적 분석. 한국사회학 30 (겨울호). pp.93-124
- 신수진. 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병철. 1980.상업화와 가족형태: 비판적 고찰, 사회변동과 사회과학연구, 홍승직 교수회갑기념논문, 홍승직교수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pp.268-275
- 안호용. 1996. 두개의 가족원리와 새로운 가족의식의 형성. 정신문화연구19(2).
- 안호용, 김흥주. 2000. 한국가족변화의 사회적 의미. 한국사회3집한국사회연구소
- 옥선화. 1989. 현대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도진. 2001. 한국사회의 이해. 서울: 다사랑 , pp.140-150.
- 유도진. 1995. 한국가족생활의 도덕적 원리의 재구조. 경희대학교. 국제평화연구소. 관용, 도덕과 인간성회복, 유엔창설50주년 유엔 “관용의 해” pp. 29 - 35
- 유영주. 1990. 한국가족의 기능분석-가족내 행동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원, 이근후, 박영숙. 1998. 도시가족의 부부역할갈등과 가족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pp.1-33
- 이미경. 1999. 신자유주의적 반격 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페미니즘적 비판의 쟁점들’ 경감이론신서. pp.82

- 이순형. 1966. 가족주의, 집합주의, 성취지향성과 양육가치관의 관계. 한국사회학 30집
- 이여봉, 이미정. 2003.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가족과문화15(1) pp.427-435
- 이주희. 2003. 여성관리직 진출 기업의 특성. 한국사회학 37-5. pp.107-123
- 이현송, 1996.가족의 생애주기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학 30(겨울호) pp.759-777
- 임희섭, 1986.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정음사), pp.23-55
- 장현섭, 1993.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 하고 있는가?”, 한국사회사연구편, ‘한국 근대현대 가족의 재조명’, 서울 : 문학과 지성사 pp. 42.
- 장경섭. 1995. 가족의 미래,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pp.432
- 조선일보. 2005.5.26: 출산율저하원인
- 조선일보. 2005.2.18 ‘아이 안 낳기’ 한국 미래가 없다.
- 조영식. 문화세계의 창조. 1951. 대구 문성사. p. 305-310
- 조혜선. 2002.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6-1. pp.145-167.
- 함인회. 1993.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여성연구 제11권 2호,pp.80
- 함인회. 2002. 한국가족의 위기: 해체인가 재구조화인가? 가족과 문화 제14집3호, 한국가족학회 pp.164
- 통계청. 보도자료 2004
- Beck-Gernsheim, E., 1998. Was kommt nach der Familie? Einblicke in neue Lebensformen. Muenchen. pp. 17-25.
- Esser, H., 2002. Ehekrisen. Das Reframing der Ehe und der Anstieg der Scheidungsraten. in: Zeitschrift fuer Soziologie 31. pp.472-496
- Nave-Herz, R.,2002. Family Change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Germany. In: R. Nave-Herz(Ed). Family Change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Different Cultures. Familie und Gesellschaft Bd.9. Wuerzburg pp.216-230
- 1999. Familie Heute. Wandel der Familienstrukturen und Folgen fuer die Erziehung Darmstadt(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pp. 20-52.
- 1997. Die Hochzeit. Ihre heutige Sinnzuschreibung seitens der Eheschliessenden:

- eine empirische-soziologische Studie. Wuerzburg (Ergon). pp.99-101
- Nave-Herz, R., Sander, D., 1998. Heirat ausgeschlossen?. Ledige Erwachsene in sozialhistorischer und subjektiver Perspektive. Frankfurt/NewYork (Campus). pp.21-25.
- Scholz, W.D., 2002. Zwischen normativem Anspruch und praktischer Lebensgestaltung. Vorstellungen von Jugendlichen ueber Ehe, Familie und Kinder. In: F.W. Busch/R.Koelblin(Hsg.), In Hoffnung widerstehen. Beitrage im Kontext wissenschaftsorientierter Bildungsarbeit unter den Bedingungen der deutschen Teilung. Oldenburg. pp.253-276.
- Yanagisako, Sylvia Jun. 1972. "Family and household: The analysis of domestic group."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8: 161-205.
- Yoo, Do-Jin, 2002. Family Structure in South Korea. In: R. Nave-Herz(Ed). Family Change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Different Cultures. Familie und Gesellschaft Bd.9. Wuerzburg . pp.50-57.
- Yoo, Do-Jin, 2003. Stand der Forschung zum Thema Familienvorstellungen Jugendlicher in Korea. In: Busch, F.W., W.D.Scholz(Hrsg.), Familienvorstellungen von Jugendlichen. Universitaet Oldenburg. pp.83-94.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

이 동 수*

1. 서론

오늘날 정치이념으로서나 정치체도로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방식의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해 민주주의는 그 하위 개념으로 다양한 종류의 - 비록 층위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 민주주의, 예컨대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정당민주주의(party democracy),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등을 상정한다.

이 중 직접민주주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의적 성격을 지닌다. 고대엔 작은 도시국가라는 조건 속에서 공직자 선발을 추천에 의존하는 제도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다. 하지만 근대국가의 크기가 확장되고 추천이라는 생소한 선출방법이 자취를 감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의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이념과 제도로 간주하고 인민을 어떻게 대의할 것인가에만 골몰한다.

근대 대의민주주의는 인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의 이념과 대의정부(represen-

*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tative government)라는 제도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그리하여 대의민주주의는 인민주권의 이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한편으로 주권과 권리(right)는 인민에게 있으며 다른 한편 그것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권한으로서의 권력(power)은 주권의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요컨대 권력의 근원은 인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권력의 직접적인 행사는 선거를 통해 인민의 위임을 받은 정부와 의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사회가 보다 다양한 선호와 의견이 표출되고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탈산업화·세계화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대의민주주의는 점차 그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의제가 더 이상 다양한 욕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대리하지 못함으로써 시민의 불만을 고조시켰으며, 대의정부 입장에서도 불만스런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더 이상 효과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성(legitimacy)과 효율성(efficiency) 모두에 있어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혹자는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을 대의제 자체의 내재적 한계, 즉 대의의 어려움이나 대표자의 귀족화 등에 돌리며, 다른 혹자는 현대사회의 환경적 요인인 외재적 한계, 예컨대 세계화와 탈산업화 등에 귀속시킨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더욱 중요한 원인은 대의제가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원래 추구했던 원칙과 정신을 망각하고 왜곡된 형태로 전락한 데 있다. 마넵(Bernard Manin) 역시 이런 점에 주목한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대의제의 한계는 ‘탁월성의 원칙’에 입각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대의제의 기본정신이 소위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훼손되고, 그럼으로써 결국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마넵의 논의에 주목하면서 정당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들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어 2장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일반론들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 마넵의 대의제의 기본 정신과 타락과정에 대한 분석을 살펴본 후, 마지막 결론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2.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일반론

1. 대의민주주의

일반적으로 대의민주주의는 근대 이후 방대한 규모의 영토 내에서 다수의 이질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통치의 원리로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대의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느 정도 보다 큰 인민의 집합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것”(Heywood 1994, 176)을 의미한다. 이때 인민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장치는 선거이다. 대의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대표자 선거를 통해 인민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고 대표자들에게 집단적 의사의 실현을 위임하여 인민의 지배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개념적으로는 ‘인민의 지배’임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주의 대신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이다. 먼저 사회의 공간과 관련된 것으로서, 근대국가들의 영토가 커짐에 따라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다(Dahl 1970). 사람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함께 모여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룹의 규모엔 어떤 상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단 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수가 어떤 최대의 규모를 초과하면, 현재 고려중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에 대해 각 사람마다 의견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간적 규모(human scale)’¹⁾와 같은 크기의 작은 공간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근대인의 시간과 연관된 것으로서, 근대인은 고대의 귀족과 달리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정치에 전념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치를 정치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Dahl 1970). 시민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과

1) 인간적 규모란 한 사람이 공동체 안의 다른 사람들을 모두 알 수 있고,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으며, 각 구성원들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규모를 뜻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물론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규모의 최대 한계를 대략 500명 정도로 간주한다. 의회와 같이 회합과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통 500명 안팎의 구성원을 갖는다.

생산과 같은 경제활동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통치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대 직접민주주의의 시민들은 노동과 생산을 노예와 여성에게 맡기고 정치에만 전념할 수 있었지만 근대 부르조아적 시민이나 일반시민들은 사적인 가족문제나 기타 생활문제 등을 비롯하여 각양각색의 상이한 일에 관여하고 또 자신의 관심도 분산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일반적인 회합에 시간상 계속 참여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근대사회는 선거를 통해 인민의 의사를 위임받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의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때 대의민주주의의 주된 관심은 보다 많은 사람을 선거라는 국한된 정치행위에 참여시켜 대의의 정당성을 높이는 한편, 선출된 대의정부에 대해 인민이 감시하고 평결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발전시키는 데 놓여 있다. 근대인은 이것을 ‘보통선거권의 확립’과 ‘권력의 분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의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 주된 이유는 소위 ‘국가의 실패(state failure)’라는 말로 함축되듯이 한 국가의 운영능력에 대한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해 혹자는 대의제 자체의 내재적 문제점에 주목하며, 다른 혹자는 외재적 요소로서 대의제가 성립될 때와는 다른 종류의 사회적 환경의 등장을 지적한다. 그러면 대의제 위기의 내재적, 외재적 요인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2.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내재적 요인

먼저 대의제 자체가 안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서 대의민주주의가 과연 시민의 집합적 의사 즉 공동의사(common will)를 대변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민주주의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 간의 면대면(face-to-face) 토의를 통해 집단적 의사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가 집합되는 선호집합적(aggregate)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사회적 선택에 의해 인민의 의사가 표출되고 결집되기 어렵다.

즉 시민의 공동의사가 선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들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어느 특정한 의사(particular will)만 대변되는 것이다.

이와 연관되어 둘째, 대의민주주의는 ‘공동선(common good)’에 대한 추구가 어렵다. 선호집합적 방식에 따르는 정치과정에서는 모든 시민이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사와 공동선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이익들이 자신의 선호가 사회적 선호(집단의사)로 채택되기 위해 경쟁한다. 여기서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적 토의과정이 배제된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광장에서의 토론과 토의를 통해 공동선을 발견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광장(forum) 민주주의’였다. 이에 비해 선호집합적 민주주의는 분산적 경쟁을 통해 서로 갈등하는 사적인 이기적 이익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장(market) 민주주의’에 불과하다(Elster 1986).

셋째, 대의민주주의가 대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선거라는 장치를 통해 주권자인 시민을 대리하는 대표자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또한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들로 하여금 위임자인 시민들의 복리를 극대화하도록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을 대의하는 대신, 강력한 특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시민의 완벽한 대리인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대의제는 일반적으로 다수결주의에 의거하여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이때 다수파는 소수파의 의사를 무시하면서도 그들의 순응을 강제한다(임혁백 2000, 7-8).

넷째, 대의민주주의는 위임자인 시민과 대리인인 대표 사이의 거리가 점점 확장됨에 따라 사실상 귀족적 민주주의의 경향을 띤다. 일찍이 슈페터(Joseph Schumpeter)가 지적했듯이, 대의민주주의는 엘리트 민주주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Schumpeter 1975). 대의제는 대표인 정치인과 시민 간의 분업을 전제로 한다. 이때 시민들은 정치적으로 정보가 부족하며, 냉담하고, 조작당하기 쉬운 존재로 여겨지고, 따라서 통치는 투표로 선출된 지배엘리트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주권은 단지 다음 선거에서 대표를 자리에서 축출할 수 있는 권력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분업은 시민들의 정치적 소외감과

냉소주의를 초래하고, 소위 정치전문가들은 주권자인 시민을 대표하는 대신 이를 대체하면서 기술관료적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 시민의 정치적 참여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단지 선거 때에만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단속적인(intermittent) 성격만 가질 뿐이다(백승현 2005, 257). 그런데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시민을 민주주의의 주체로 만드는 교육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그 결과 민주주의는 점차 귀족적 민주주의로 변질되는 것이다.

3.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외재적 요인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외재적 요인으로는 먼저 1970년대 ‘국가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정부의 능력이 의심받기 시작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것은 통치에 있어서 정부의 독점적 지위를 크게 의심하게 만들었다. 대의정부가 사회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고 공동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대신 정부는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료들의 집단이거나 혹은 이익집단들의 영향력 행사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무능력한 제도로 간주되었다(서창록 외 2002, 3). 그리하여 정부가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합리적인 행위자로서의 능력이 부정되기에 이른다.

한편 세계화는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사회의 경계(boundary)를 급속하게 해체시킨다.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가 선거투표권을 행사하며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해주는 국민인지, 누구의 의사를 존중, 반영하며 사회규칙(정책)을 결정할지, 공간적으로 어느 경계까지 법이나 정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행위자가 정책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명백하게 내릴 수 있어야만 한다(임성호 2002, 100). 즉 국가의 경계가 분명한 주권국가 시대에만 주권재민 원리에 입각한 대의모델이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구성원의 범위도 분명하고 사회규칙의 적용범위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국가간의 경계가 낮아지고 애매해진 오늘날엔 이 원리의 적실성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대의제의 작동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사회적 환경 변화로는 탈산업화가 있

다. 요즘 거의 대부분의 국가사회는 안정된 전통적 산업구조가 아닌 유동성이 극심한 탈산업단계에 접어들었다(Bell 1973). 이런 환경에서 대부분의 일반대중은 급변하는 사회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 불만감에 시달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경향이 심화될수록 사람들은 각자의 외부 환경조건에 의해 규정된 좁은 자기이익만을 고집하고 타인과의 흥정과 타협에 응하려 들지 않는다. 또한 탈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인간들이 사회성원으로보다는 원자화된 개인들로 존재하는 경향이 커진다. 산업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 노조, 이익단체 등의 대조직에 속하기 때문에 집단 의식이 제법 형성된다. 반면 직업구조가 작은 규모의 단위들로 파편처럼 쪼개지고 사회이익이 너무나 복잡하게 나뉘어지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인간들의 원자화가 촉진된다. 원자화된 개인은 자연히 강한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고 공동의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그런 만큼 집단 차원의 민의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대표(의원)들이 사회이익을 집성하고 타협점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진다. 그 결과 대의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이 방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위기의 내재적, 외재적 요인들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본질보다는 그 부수적 측면에 대한 지적의 성격이 강하다.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천착없이 대의제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제도사상사적 측면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담겨 있는 철학적 원칙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대의제의 제도적 특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마넝의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대의제의 위기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준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마넝의 논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마넝의 근대 대의제 비판

(1) 고대 민주정과 공화정

마넝은 오늘날 직접민주주의 대신 대의민주주의가 채택된 원인이 일반적인 지적처럼 근대국가의 규모확대와 근대인들의 시간부족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근대 대의제는 고대의 민주정과 공화정을 적절히 혼합하면서 그것을 넘어

서는 제도로 성립되어 발전해오다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등장한 ‘정당민주주의’의 발호가 이의 타락을 초래했다고 본다.

먼저 마넝은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을 일반적인 시각과 다르게 분석한다. 그에 의하면, 아테네 민주정은 자유로운 시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isonomia), 누구든지 의회나 공공장소에서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isegoria), 출신배경과 상관없이 시민이면 누구든지 참정권을 갖고(isogonia), 오늘 다스리는 사람이 내일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isokratia)는 정치적 원칙에 입각해 있다.

하지만 아테네가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완전한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 비록 아테네에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모든 시민이 모이는 민회(ekklesia)와 법정(dikasteria)에서 이루어졌지만, 특정한 기능은 선출된 소수의 행정관에게 위임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상당한 권력과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테네 민주정도 근본적으로는 대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순수한 직접민주주의란 이념형(ideal type)으로만 존재할지 모른다.

아테네 민주정의 특징은 대의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직접민주주의라는 사실보다 오히려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있다. 즉 아테네 민주정은 행정관을 ‘선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추첨(kleros)’에 의해 선출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아테네 행정부에는 700명가량의 행정직이 있었는데, 이 중 600명 정도가 추첨을 통해 충원되었다. 이들은 주로 협의체에 근무했으며, 임기는 1년으로서 일생동안 다른 행정직에 임명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직책을 한번 이상 가질 수는 없었다(마넝 2004, 26).

아테네가 추첨을 선출방식으로 삼은 이유는 그것이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의 평등(equality of possibility)’과 ‘유사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resemblance)’을 가장 높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능성의 평등’이란 공직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직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유사성의 원칙’은 대표와 대표되는 사람 사이에는 유사성(resemblance)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곽준혁 2005).

하지만 아테네 시민들은 단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또 추천으로 선발되니까 모두에게 확률이 동일하다고 해서, 누구나 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았다.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관에는 미숙하거나 무능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아테네 민주주의는 이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현하였다. 우선 시민들 중에서 행정관이 되려는 사람은 언제나 민회와 법정의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 추천은 사전에 먼저 자격심사(dokimasia)라는 엄격한 자기선별과정을 거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임기가 끝나면 행정관은 결산보고서(euthynai)를 제출해야 했고, 임기 중에도 시민들은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직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공직은 사실상 능력있고 자격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개방되었으며, 이들 중 추천을 통해 행정관이 선출되었던 것이다(마넝 2004, 29).

뿐만 아니라 장군직과 같이 업무수행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직책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공직은 투표로 선출되었다. 이들의 임기는 추천으로 선출된 행정관들과 같이 1년이었지만 동일한 직책에 연속해서 여러 번 재선할 수 있었고, 임기에 대한 제한은 달리 없었다. 기원전 5세기엔 페리클레스(Pericles)가 20년이 넘게 최고위직 장군(strategos)으로 선출되었으며, 기원전 4세기엔 포키온(Phocion)이 무려 45년 동안이나 장군직을 수행하였다. 대체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추천으로 충원된 행정관들보다는 선거를 통해 뽑힌 공직자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아테네에서 모든 시민은 민회와 법정에는 항상 참가할 수 있었고, 여기서 통치행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 점에서 아테네 민주정은 민회와 시민법정의 지도 아래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후보로 등록된 가장 탁월한 시민들 중에서 추천을 통해 공평하게 행정관을 선출하여 그에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위임했던 정치체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마넝은 고대 로마의 공화정이 민주정과는 다른 제도로서 ‘가능성의 평등’과 ‘유사성의 원칙’보다 ‘탁월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distinction)’에 입각한 정치체제라고 평가한다. 그에 의하면, 비록 로마 공화정에도 민회와 호민관 제도가 있었지만 그것은 전혀 민주정이 아니었으며, 그렇게 생각한 로마인은 아무도

없었다. 로마 공화정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정치적 비중이 차등적으로 부여된 선거제도를 통해 대표를 선발하고 이렇게 선발된 대표의 탁월성으로부터 비롯된 대표자의 ‘독립성(independency)’을 정치적 원칙으로 삼아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했다.

로마 시민들은 행정관을 선출하기는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행정관이 될 수는 없었다. 비록 모든 부족이 참여하는 민중의회(comitia tributa)에서 군사통치권이 없는 말단 행정직이 선출되었고, 평민들만이 참여하는 특별회의(concilium plebis)에서 평민의 대표인 호민관이 선출되었으며, 기원전 3세기경에는 평민도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로마 공화정은 아테네에서와 같이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려는 정치적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낮은 계층에 속한 시민의 자손도 명목적으로는 부와 지위가 충분히 증가하면 행정관이 될 수 있었지만, 하위계층이 누렸던 유일한 권력은 상위계층에서 나온 후보들 중에서 투표로 선택을 하는 것이었다(마넝 2004, 70-71).

민중의회의 역할이 행정관 선출에만 전적으로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의회에서 시민들은 법률을 통과시키고, 특정 소송을 다루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발의권은 전적으로 행정관의 전유물이었으며, 민중의회는 그 책임을 담당하는 행정관에 의해서만 소집되어 표결하였다. 또한 로마의 군사통치권을 갖는 행정관은 귀족의 독점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의회(comitia centuriata)에서 선출되었고, 원로원 의석을 할당받는 관직을 가지려면 8년 동안 군사호민관으로 복무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관직의 단계(cursus honorum)를 거쳐야만 했으며, 군통수권을 부여받은 호민관조차 귀족으로 채워졌다. 키케로(Cicero)가 “권력(potestas)은 민중에게 있지만, 정치적 권위(auctoritas)는 원로원에 있다”고 말했듯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비준하고 권고안을 통해 행정관들을 구속하고, 전쟁과 관련된 외교업무와 재정일반이 사실상의 주권자인 원로원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 결과 로마 공화정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엘리트가 심의하고 민중은 투표만하는 대표의 독립성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마넝 2004, 72-73).

(2) 근대 대의제

마넝은 영국, 미국, 프랑스 혁명을 통해 구성된 근대 대의제가 민주주의 이념을 순수하게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기보다는 고대의 민주정과 공화정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부(mixed government)’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²⁾

마넝이 보기에, 근대 대의제가 확립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매디슨(James Madison)과 시에예스(Emmanuel Joseph Siéyès)이다. 먼저 매디슨은 대의정부를 광대한 국가에서 시민들을 한 데 모으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아울러 인민에 의한 정부의 유사형태로도 보지 않는다. 반대로 그는 대의정부를 고대 민주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보다 우수한 체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의제는 대중의 견해가 선택된 시민집단이라는 매개를 거치면서 보다 정제되고 확대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매디슨은 대의제는 가장 현명한 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출된 집단은 나라의 진정한 이익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의 애국심과 정의에 대한 사랑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나라의 진정한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규제 하에서 민중의 대표들에 의해 선언된 민중의 목소리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소집된 민중 스스로의 선언보다 공동선에 더욱 부합할 것”(Madison 1961a, 82; 마넝 2004, 150)이라고 주장한다.

단지 대의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그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하고 선거를 통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매디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 따라서 루소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옹호론자는 18세기 영국의 대의제를 민주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거 때에만 일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노예제로 묘사했다. 즉 스스로 법을 만드는 자유로운 인민과 자신을 대신하여 법을 만들어줄 대표를 선출하는 인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Rousseau 1993, III-15).

모든 정치적 헌법의 목적은 첫째, 사회의 공동선을 분별할 수 있는 최상의 지혜,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덕을 가진 사람을 통치자로 얻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들이 계속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한편, 그들의 덕성을 지키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견제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정부에서 그들의 타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다양하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 임기를 제한해서 국민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Madison 1961b, 350-351; 마넝 2004, 150).

이런 원칙 하에 대의제는 선거를 통해 탁월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에 대중을 참여시킴으로써 대의의 정당성을 확대하며 그 대표자의 전횡과 무능력을 막기 위해 임기제한을 두어 인민이 평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시에예스는 시민들이 직접 법을 만드는 민주주의와 선출된 대표에게 권력행사를 위임하는 대의정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시에예스가 보기에, 대의제가 민주정보보다 우월한 이유는 보다 덜 편파적이고 감정적으로 덜 격한 결정을 내놓기 때문이 아니라, 개개인이 경제적 생산과 교환에 압도된 근대 상업사회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정부형태이기 때문이다. 시에예스는 근대 상업사회에서 시민들은 공공업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여가시간을 누릴 수 없으며, 이런 이유에서 공공업무를 위해 모든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를 위탁하는 선거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대의제를 사회발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노동분업의 원칙이 정치영역에 적용된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시에예스는 사회상태의 향상이라는 공공의 관심사 그 자체가 우리에게 통치를 어떤 특별한 전문적 직업으로 만들 것을 요구함에 따라 대의제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또한 시에예스는 대표의 역할은 토론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토론은 대표된 사람들이 얼마나 합의와 동의를 이루어내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린다. 토론과정은 대표자들이 일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어느 의견이 타당한가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토론은 의견들의 경쟁이며, 이를 통해 합의와 동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대의정부 창시자들에게 있어서 토론은 합의와

동의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에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심의에서 해결되어야 할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주어진 사례에 있어서 일반이익이 지시하는 바를 아는 것이다. 토의를 시작할 때, 누구도 이러한 일반이익을 발견할 수 있는 확실한 방향을 판단할 수 없다. 의심할 바 없이, 일반이익을 발견할 수 있는 확실한 방향을 판단할 수 없다. 의심할 바 없이, 일반이익은 만약 이것이 누군가의 이익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즉 이것은 가장 많은 수의 유권자에게 공통되는 개별이익이다. 이로부터 의견들 간의 경쟁이 필요하게 된다. 모든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는 혼돈은 빛을 향해 필수불가결한 예비단계이다. 우리는 이런 모든 개별적 이익들이 서로를 압박하고, 경쟁하도록, 논점을 부각시키려고 다투고, 각각 제 힘에 따라 제안한 목적을 향해 밀어붙이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유용한 의견과 해로운 의견이 구별된다. 후자는 탈락되고, 전자는 계속 진행되고, 그러한 의견 사이의 상호간의 효과로 수정되고 정제되어 마침내 하나의 단일한 의견으로 융합될 때까지 그들 스스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Siéyès 1789, 92; 마넝 2004, 231-232).

그러나 토론이 그 자체로 정책결정의 원칙인 것은 아니다. 어떤 제안을 공공결정으로 바꾸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 동의이다. 게다가 이런 동의는 다수의 동의이지 보편적 동의가 아니며, 더군다나 어떤 진리의 표현도 아니다.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이 여기에 적용되는데, 이 원칙의 본질적 기능은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결국 마넝은 매디슨과 시에예스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의제의 원칙을 세운다(마넝 2004, 19). 첫째,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거를 통해 통치할 사람을 임명한다. 둘째, 통치하는 사람의 정책결정은 유권자들의 요구로부터 일정 정도 독립성을 갖는다. 셋째, 피통치자들은 통치자들의 통제에 종속되지 않고, 그들의 의사와 정치적 요구들을 표현할 수 있다. 넷째, 공공결정은 토론을 거친다. 그리고 근대가 이런 원칙을 갖는 대의제를 채택한 이유는 능력있는 자들이 공동선을 지향하면서 시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통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3) 현대 대의제의 문제점

마넵은 대의제에 담겨있는 이와 같은 원칙과 정신이 현대사회에서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마넵은 그 주된 이유를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전적으로 선거에 의존한다는 사실과 연관시킨다. 본시 선거는 추첨이 내포하고 있는 ‘가능성의 평등’과 ‘유사성의 원칙’과는 다른 ‘탁월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탁월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근대 초기와 달리 후기로 접어들면서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전문집단인 정당이 등장한다. 그러나 원래 근대 대의정부는 조직된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확립되었다. 대부분의 대의정부 설립자들은 정당이나 과당으로 분할되는 것을 장차 건설하려는 정치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이후 유권자들의 의견표출을 조직화하는 정당이 대의제의 구성요소로 등장하고, 각 정당들은 대중의 인기를 끌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강과 공약을 남발하면서, 점차 선거는 탁월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중정당과 정강의 등장은 “대표와 대표되는 사람의 질적 관계, 그리고 피통치자의 바램과 통치자의 결정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대의제 그 자체를 변형”(마넵 2004, 240)시켰다. 우선 대표자는 헌법제정자들이 원했던 재능과 부를 가진 엘리트가 아니라, 전투적 행동과 어떤 주장 또는 운동에 대한 헌신으로 정당의 최고 지위에 도달한 보통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더욱이 대표는 시민의 선거로 선출되었다 할지라도 정당의 내부 규율과 정당 운영자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전의 대표가 임기 동안 누렸던 자율성은 침해된다. 이와 같이 변형된 대의제는 새로운 성격의 대의제, 즉 ‘정당민주주의’를 성립시켰다.

정당민주주의의 장점은 대표자를 서민과 더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변화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보다 많은 민주적 동일성과 유사성을 향한 진보로 해석되었다. ‘정당민주주의’는 공적 업무의 수행에서 대중 의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민중통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마넵은 대중정당이 진정 대중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한다. 미헬스(Robert Michels)가 지적한 것처럼, 전형적인 대중적, 계급적 정당에서 지도자와 평당원 사이의 차이는 심각하다. 정당의 지도자와 대의원들이 노동계급이라는 배경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들은 노동자라기보다는 뿌티부르조아와 같은 생활을 유지한다. 정당은 노동계급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에게 그 사회계급 내에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가장 유능하고 가장 박식한 노동자를 등용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이러한 더 똑똑하고, 더 야망찬 노동자들이 소기업가가 되었던 반면, 지금은 정당의 관료가 된다. 노동계급 정당은 노동계급으로부터 뚜렷이 구별되는 ‘탈노동자화’된 엘리트들이 지배할 뿐이다(Michels 1962).

결국 대중정당이 대의정부를 지배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정부의 엘리트주의적 성격은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엘리트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 정당엘리트인 대표자의 두드러진 특성은 행동주의와 조직기술에 있다. 투표자는 이제 더 이상 대표자의 자질을 판단하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당인가를 보고, 또 그 정당의 조직과 행동에 익숙한 정당대변자를 자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투표란 유권자가 정당이 내세운 자신의 후보에 대해 동의하고 인준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정당민주주의는 활동가와 정당관료의 통치로 전락한다(마넵 2004, 255).

정당민주주의 하에서도 대의제의 기본원칙인 토론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 토론은 피대표자들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된 토론이라기보다 정당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일 뿐이다. 그리고 이 토론은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토론이 아니라, 정당이 내세운 정강들의 경쟁 속에서 다수파와 소수파의 타협만 내포한다. 그리하여 선거는 어떤 정책이 추구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정강을 가진 정당들의 상대적 힘만 결정할 뿐이다. 결국 사회적 타협은 정당과 지도자 사이의 협상에만 국한될 뿐, 시민들의 의사는 대변되지 못한다(마넵 2004, 264).

결국 현대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은 대표자와 피대표자와의 ‘유사성의 원칙’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장악하는 전문 정치꾼들에게 대의정부를 내줌으로써 대의제를 채택한 근본적 이유인 능력있는 자들이

공공선을 지향하면서 통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차 차단하고 만다.

4. 결론: 참여민주주의를 향하여

이와 같은 마넩의 논의에는 ‘탁월한 대의’라는 관점이 들어있다. 즉 근대 대의제의 기본 원칙과 정신은 인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자들은 피대표자인 대중들과 유사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탁월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도 사전자격심사와 결산보고서를 통해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통해 행정관을 선출했으며, 로마 공화정은 아예 ‘탁월성의 원칙’을 통치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근대 대의제는 보통선거권의 확립과 권력의 분립, 대표자의 독립성, 대표 임기의 제한 등을 통해 민주정과 공화정의 요소를 혼합하여 더욱 정교한 체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는 ‘유사성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허한 바가 있지만 - 그런데 미헬스적 맥락에서는 정당민주주의가 진정한 의미의 ‘유사성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 정당인인 대표들은 대중의 의사를 대변하지도 않고 대중들의 이해로부터 독립되어 공동선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단지 정당과 정당의 운영자들의 이해만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중은 정당인인 전문정치가에게만 통치를 맡겨서는 안 된다. 비록 고대 그리스와 같은 직접민주주의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정당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대중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즉 현대사회의 민주주의는 이제 ‘참여민주주의’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참여민주주의란 대의정부 하에서 시민들이 직접 공적인 직무를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정치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체제를 일컫는다(이동수 2004, 72-74). 즉 시민들의 정치적 역할을 투표를 통해 대의정부를 구성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의정부를 견제·감시하고 정치과정의 여러 층위에서 대표자들과 함께 토의하면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요컨대 참여민주주의는, 바버(Benjamin R. Barber)가 지적하는 것처럼, 대의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의정부에 대한 대중적 통제와 시민교육, 그리고 정당성과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Barber 1984).

아렌트(Hannah Arendt) 역시 정당민주주의의 한계를 참여민주주의(아렌트적 의미로는 ‘공화민주주의’)를 통해 넘어서고자 한다. 먼저 아렌트는 마넩과 마찬가지로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시스템, 예컨대 대중정당, 직업정치인, 유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호소하는 선거 캠페인 등을 비판한다. 그녀는 물론 정당민주주의가 독재로부터 인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시민을 진정한 정치적 존재로 고양시키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인간을 자유로 인도하지 못한다.

정당민주주의에서는 대중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하는 정치의 장이 형성되기 어렵다. 그런데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형성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대중들은 신뢰할 수 없고 변덕스러운 개인으로만 존재하게 된다(Arendt 1963, 268). 즉 어느 정도의 정치참여가 없는 상태의 대중은 개인(individual)일지 언정 결코 시민(citizen)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러하다면 정치의 장에서 대중들의 배제는 자연스러워지고, 정치는 결국 정당의 대표자들, 즉 정치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정치꾼들에게 독점되어 민주주의의 귀족화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아렌트는 사람들이 정치적 주제와 관련해서 적절한 의견형성을 위한 공적 토론에 반드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해야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그저 TV나 신문 등을 통해 바라다보는 정치에 대한 관찰만으로는 결코 정치적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투표행위는 유권자인 대중에게 있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와 전체 공동체의 문제 사이의 의미있는 관계를 연결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즉 개인은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비정치적이고 사적으로만 향유하는 개인적 자유만 고려할 뿐이며, 투표에 반영되는 정치적 견해는 기껏해야 개인적 자유를 방해하는 대의정부의 권한만 제한시키는 데 국한된다. 즉 투표에서는 공

동체 전체를 고려하는 시민적 정치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렌트는 정당민주주의의 대의정부를 넘어서 참여민주주의, 더 나아가 평의회(council)의 활동을 강조하는 공화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런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근대 대의제를 구성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탁월한 대의’는커녕 대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으며, 따라서 대의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때에만 비로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곽준혁. 2005. “아테네와 로마: 대의제의 정치철학적 뿌리.” 『시민의 신문』 . 2005. 4. 18.
- 백승현. 2005. 『정치와 정치사상』 .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 서창록·이연호·곽진영. 2002.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과 쟁점에 관한 소고.”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정치학』 . 서울: 법문사.
- 이동수. 2004. “디지털시대의 토의민주주의.” 『철학연구』 . 제64집 별책: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폴리즘.
- 임성호. 2002. “의회와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정치학』 . 거버넌스연구회. 서울: 법문사.
- 임혁백. 2000. “21세기 한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 심의민주주의, 결사체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 2000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정윤석. 2000. “아렌트의 근대 비판과 새로운 정치의 모색: 근대적 정치기획을 넘어서 공화주의에로.” 『철학사상』 . 제11호.
- Arendt, Hannah. 1963. *On Revolution*. London: Faber and Faber.
- Barber, Benjamin R.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 Cicero. 1998. *The Republic and The Laws*. Tr. Niall Rud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hl, Robert. 1970. *After the Revolu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Elster, Jon. 1986. "The Market and Forum: Three Varieties of Political Theory." *Foundations of Social Choice Theory*. Eds. Jon Elster and A. Hyll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bermas, Jürgen.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Tr. William Rehg. Cambridge: The MIT Press.
- Heywood, Andrew. 1994. *Political Ideas and Concepts: An Introduction*. London: MacMillan.

- Madison, James. 1961a. "Federalist 10." 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and John Jay. *The Federalist Paper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Madison, James. 1961b. "Federalist 57." 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and John Jay. *The Federalist Paper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Manin, Bernard. 1997.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버나드 마넵 저. 곽준혁 역. 2004. 『선거는 민주적인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 후마니타스.
- Michels, Robert. 1962.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c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 New York: Free Press.
- Rousseau, J.-J. 1993. *The Social Contract*. Tr. G. D. H. Cole. New York: A. A. Knopf.
- Schumpeter, Joseph. 1975.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 Siéyès, Emmanuel Joseph. 1789. *Vues sur les moyens d'exécution dont les représentants de la France pourront disposer en 1789*. Paris: unnamed publisher.

오토피아 2005년 겨울 (제20권 제1호)

후기 근대 민주주의와 지구시민권 :

이론 구축을 위한 탐색

Theorizing Global Citizenship in Late Modern Democracy

서 유 경*

I. 서론

이 논문은 한 편의 시론(試論)으로서 현재 지구 곳곳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지구시민권’ 개념에 관한 하나의 이론적 관점 제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소박한 목표를 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구시민권이란 주제는 근래 지구화 현상이 다방면에서 진전되면서 빠르게 관련 학계의 연구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논의의 합의수준은 비교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¹⁾ 둘째, 이런 상황은 이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에게 제법 높은 수준의 접근법적 자유를 허용한다. 필자는 상식 수준에서 보편타당한 정치이론적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접근법상에 주어진 자유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제목 〈후기 근대 민주주의와 지구시민권〉에는 논문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핵심 용어—즉 후기 근대(late modernity), 민주주의, 지구시민권(global citizenship)—가 등장한다. 이 글을 읽게 될 독자의 적실한 이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그것들의 사용과 관련하여 약간의 사전 설명이 제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후기 근대’라는 용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 즉 근대의 후기를 지

*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1) 이런 견지에서 *Global Citizenship: A Critical Introduction*(N. Dower & J. Williams, 2002)은 학계의 논의수준을 끌어올리는 초기적 기여를 하는 적실한 입문서로 보인다.

칭한다. 이 용어는 서구의 경우 60년대 (우리의 경우는 80년대) 말 이후 한동안 회자되던 “탈근대(post-modern)”라는 용어의 대칭어로서 근대의 성찰적 특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래쉬(Scott Lash)로부터 차용하였다.²⁾

두 번째 용어 ‘민주주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정치체제의 형태를 가리킨다. 필자가 이해하는 한,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 이념을 구현하는 정치체제 유형이라는 것보다 더 핵심을 찌르는 정의는 찾기 어렵다. 근래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따라 붙는 다채로운 운용형식을 규정하는 수식어들—예컨대, 대의-, 심의-, 참여-, 절차적-, 보편적-, 지구적-, 코스모폴리탄-, 제3세계 민주주의 등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요체는 인민 혹은 시민 다수의 지배라는 실질적 내용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지구시민권이다. 논문의 집필 목적은 현재 지구시민사회 내에 어떠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구시민권을 하나의 정치학적 개념 범주로 이론화하는 것이다. 이 작업의 관건은 아직 이론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분석에서 하나의 실제적이고 분석적인 개념으로 도입되는 데 한계를 보이는 ‘지구시민,’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지구시민권’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론적 체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본 논문은 지구시민의 권리와 의무 발생의 이론적 논거와 소재, 그리고 그것의 이론적 논의 수준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논문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의된 개념으로서 마살의 시민권 개념을 고찰한다. 추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개념은 분석적 범주로서는 명료성을 가지고 있는 한편으로, 국민국가 체제의 운영을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드러난다. 요컨대 그것은 현재 국민국가 체제의 이완 혹은 지구시민사회의 형성이라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소 시대착오적이며, 조만간 정치학적 개념으로서 그 적실성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는

2) 래쉬는 근대(성)를 이분하여, 전자를 “초기 산업사회”로, 후자를 “성찰적(reflexive) 근대”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후자—그의 용어상 후기 “근대(late modernity)” 혹은 “고도 근대(high modernity)—는 “근대가 자신을 성찰의 대상으로 삼”은 시대이며, 이 시대의 표상은 “심미적 양식(an aesthetic mode)”과 “표현적 개인주의(expressive individualism)”이다(Beck, Giddens & Lash, 1994 참조).

것이다.³⁾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상을 최대한 반영하는 새로운 시민권 개념을 탐색해야 할 이론적 필요성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필자는 서구 정치사상 전통 속에 존재하는 사회계약(social contract) 이론들을 추적해봄으로써 문제의 단초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플라톤이 《크리톤Crito》에서 제시한 소크라테스의 암묵적 사회계약과 근대 사회계약론자 3인방—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에 의해 제시된 사회계약 이론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이어 그러한 형식들이 갖는 특징들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고찰하고, 나아가 그것들이 지구시민권의 개념화에 내포하는 정치이론적 함의들을 제시할 것이다.

결국 필자는 소크라테스와 루소의 시민권 개념이 지구시민권 개념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이론적 기여를 한다는 판단에 도달하고 있다. 요컨대 필자가 정립하고자 했던 지구시민권 개념은 모종의 ‘소크라-루소(Socratic-Rousseauvian)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자.

II. 마샬(T. H. Marshall)의 시민권 개념과 그 한계

마샬은 <시민권과 사회계급> 4)에서 근대 시민권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주목하면서 시민권의 세 가지 요소들을 명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18세기에는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개인의 자유 개념이 확립됨에 따라 시민적 권리(civil rights)가 시민권 개념의 요소로 확정되었다. 이는 개별 시민이 자신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필수적인 일련의 권리로서 개인의 권리, 즉 표현·사상·신앙의 자유,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주로 사법부가 이러한 시민적 권리의 보호 의무를 지게 된다.

3) 같은 맥락에서 Falk는 현재 세계가 “탈(脫)베스트팔렌 국가(the post-Westphalian state)” 체제로 이행 중이라는 Linklater의 주장(1988)을 수용하면서, 국민국가 체제에 존립의 근거를 둔 기성의 시민권 개념을 “베스트팔렌 시민권(Westphalian citizenship)”으로 지칭한 바 있다(2002). 아울러 그는 지구화 시대의 시민권 개념은 신생 구성요건들을 고려하여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4) 이것은 Marshall의 1949년 <Cambridge Reform Club> 강연 원고로서 나중에 T. H. Marshall/Tom Bottomore,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London: Pluto Press, 1992)에 편입·출간되었다.

19세기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가 확정된 시기로서, 이것은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대체로 참정권 운동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시민이 재산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치적 권위를 위임받은 기관—의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성원이 되거나 혹은 구성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20세기에 이르면 전 세기 말 초등학교 의무 교육의 무상 보급을 기점으로 전후 본격화된 복지국가의 전 방위적 사회복지 정책 하에서 시민들이 각자의 경제적 복지와 안전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 권리로서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 요소가 시민권 개념에 더해지게 된다.

마샬의 근대 시민권 개념은 국가가 국정 수행과정에서 형성된 국가-시민 사이의 갈등 국면들을 타개하는 방안으로서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 방식은 국가가 법의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특정 권리들을 합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었다. 물론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한 의무를 져야한다는 단서가 수반된다. 이런 견지에서 그는 시민권을 “한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들에게 [국가로부터] 부여된 지위”로 정의한다(1949, 28).

이 시민권 개념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평등한 삶의 조건을 구현한다는 사회정책 전문가로서 마샬의 좋은 의도와 별개로 국가-시민 관계를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거래되는 ‘기능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권은 국가가 사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혹은 통제하는 일종의 통치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은 특히 복지국가 체제에서처럼 국가가 물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주체로 시민들이 국가의 실질적 수혜자로 설정되는 경우, 즉 마샬의 세 번째 요소인 사회적 권리와 관련하여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런 국가-시민 관계 속에서 시민들이 국가에 대해 다분히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적극적으로 국가와 ‘정서적’ 통합을 이루기는 어렵다(Low 1997).⁵⁾

5) 이와 관련하여 Low(1997)는 고대 그리스의 “능동적(active)” 시민권과 로마제국의 “수동적(passive)” 시민권 개념을 비교하면서 전자는 “개별 시민 도덕적, 문화적, 사적인 선(善)”과 묶인 개념이며 후자는 제국의 대규모 정치 조직 운영방식과 관련된 “법률상의 관념”을 담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유사한 시각에서 Follesdal(2002)은 정치참여와 관련된 시민권의 차원을 “능동적” 특성으로, 국가의 보호와 관련된 차원을 “수동적” 특성으로 규정한다.

한편 우리는 시민권 이론 구축의 관점에서 고대 아테네의 참여적(능동적) 시민권은 시민의 수준에서 개념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로마의 보호적(수동적) 시민권은 국가

한편 이러한 기능적 혹은 물질적 시민권 개념은 비록 그것이 영국의 정치·사회적 경험과 맥락 속에서 개념화되었다는 태생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시민권 이론 분야에서 최근까지 거의 반세기 이상 별다른 도전도 받지 않고 일종의 정설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주된 이유는 아마도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신생국가들이 영국의 국가와 시민사회가 경유했던 것과 유사하게 전후 재건 및 복지국가에 대한 공고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통합의 경로를 거쳐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컨대 뼈아픈 식민지배와 전쟁의 고통에 대한 유사한 공통의 경험, 국가 독립의 쟁취 이후 다급해진 국가건설(nation-building)이라는 하나의 일치된 목표와 그것의 긍정적인 사회적·기능적 통합 효과가 창출되었다. 또한 이제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건실한 토대를 구축한 국가가 어려웠던 과정들 속에서 국가와 동고동락한 국민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복지정책 실시는 일련의 보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들 대부분—제1세계는 물론 후발주자인 제3세계에 속한 나라들—이 시민들에게 마샬이 제안한 3종의 시민권을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부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저 시점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마샬 자신도 지적하고 있듯이 그의 시민권 개념은 한 정치체제 혹은 국민국가라는 닫힌 정치체제—혹은 “베스트팔렌 국가체제”—에 적합한 개념이다. 요컨대 명확한 국경과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마땅한 권리를 부여하며 또 때로는 강제력의 동원도 불사하며 그 권리에 따른 의무를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국가라는 명확한 행위의 주체가 존재할 때 성립하는 개념이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로서 시민권 개념은 성격상 국가라는 명확한 주체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샬이 제시한 바, 3종의 시민권 개념은 이제 그 수명을 다해가는 듯이 보인다. 이를테면 ‘지구적 자본주의’는 국경을 모른다. 그런가 하면 국가의 영토 역시 과거처럼 특정 국민의 집합적 삶의 경계나 울타리로서

혹은 통치자의 수준에서 개념화된 시민권의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구분방식은 ‘지구시민권을 어떤 수준에서 개념화해야 하는가, 혹은 개념화될 수 있는가’라는 필자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추후 III장 사회계약 이론에 관한 논의에서 다시 이 문제를 언급하게 될 것이다.

고유한 배타적 권위를 표상하지 않는다. 현재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자의반타의 반 타국인들의 자유로운 유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어떤 경우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방 시민들의 이주를 적극 유인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외래 노동력과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교통·통신수단의 획기적 개선에 힘입어 전 지구적 차원의 인적·물적 이동 수위 또한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지구화’는 최상위의 제도화된 권력, 즉 주권국가가 관리하는 ‘대체로 잘 정비된’ 영토 너머에서 발생하는 비질서적 성격”의 과정들이다. 또한 지구화가 창출하는 “새로운 지구적 권력구조는 이동성과 정주성(定住性), 우발성과 규칙성, 강제가 희박한 상태와 밀집한 상태”의 대립구도에 의해 형성되며, 극적인 표현으로, 그간 기득권을 향유해온 “정주민들(the settled)에 대한 유목민들(the nomads)의 복수극”을 예고한다고 볼 수도 있다(Bauman 2001, 34~5). 이런 시대상을 간파한 뒤 해체주의 철학자 데리다(J. Derrida)가 “민주주의를 운위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묻는 것은 어쩌면 그가 정치학자들에게 거는 기대감의 표시인지도 모른다(Honig 2001).

최근 우리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이른바 M-세대, N-세대, P-세대라는 신종 ‘정치’세대—“신유목세대(New Nomadic Generation)”—의 등장을 목도한 바 있다. 이들은 기성의 이념적 정체성이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 구현과 연동되는 이슈—예컨대 월드컵 게임의 응원, 촛불시위, 혹은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지원 등—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고 연대하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다음, 홀연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유목민’ 방식으로 사유하고 행동한다. 이들의 문화적 잠재력은 이미 사이버 공동체, 심미적 공동체 “축제 공동체(Carnival Community)”라는 어휘(Bauman 2001; 강수택 2002)로, 그리고 정치적 잠재력은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임혁백 2005)라는 개념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다시금 민주주의가 새 옷으로 갈아입는 전환점에 도달한 듯하다.

혹자는 이런 모든 변화상이 지구시민사회를 특성이며, 우리 모두는 그것을 함께 구성하는 지구시민이라고 말한다.⁶⁾ 물론 이 주장이 사실무근의 것도, 또 그

6) Williams(2002, 12)에 따르면 이러한 정의, 즉 모든 “개인들은 세계의 시민”이라는 생각의 기원은 고대 스토아학파(the Stoics)의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조의 심각성을 고려하건대 결코 지나가는 주장쯤으로 간단히 일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듯하다.⁷⁾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우리가 지난 수백 년에 걸쳐 익숙해진 국민국가 체제의 틀 속에 이 새로운 변화상을 수용하려고 하는 관성 혹은 사고의 순진함에 있는 듯하다. 현재 국민국가의 틀 자체가 심하게 뒤틀리고 있는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시민권 개념에 수정을 가하도록 강하게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는 지구시민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구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해야만 한다. 지구시민으로서 우리가 고유하게 담지하고 있는 혹은 적극적으로 쟁취해야할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쟁취하는가, 또 그 권리에 따르는 의무는 없는가? 이런 질문들은 모두 지구시민권 개념이 어떻게 이론화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로 초점이 모아지게 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구시민권 개념 구축을 위한 이론적 요소들을 탐색해보기로 하자. 이 목적상 우리는 3절과 4절을 통해 시민권 개념의 발원지인 사회계약 이론의 원형들을 검토할 것이다.

Ⅲ. 서구 정치사상 속의 4가지 사회계약 이론 유형

서구 정치사상 속에서 사회계약이라는 주제는 주기적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그 시기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이론 특유의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준 것도 사실이다. 물론 현재도 개인-공동체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적 틀로서 이것만큼 견실한 설명력을 보유한 대체물을 발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비근한 예로 지난 몇 십년간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롤즈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1971)만해도 사회계약 이론 틀을 원용한 중요한 연구결과물이다. 그런가 하면 클린턴 정부의 ‘미국과의 계약’ 정책 역시 의심의 여지없이 동일한 기원을 가리키고 있다.⁸⁾ 같은 이유에서 필자는 이 절에서

7) 최근 지구시민권 제정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Negri, A. & Hardt, M. (2000)과 Follesdal, A. (2002)가 있다. (전자의 논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서유경 2004 참조).

8) 한 일간지 칼럼의 다음 제목 ‘대한민국과의 계약이 필요하다’의 발상 역시 동일한 기원을 공유한다고 하겠다(<동아일보> 2005. 10. 22.).

사회계약 이론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 지구시민권의 이론화를 위한 통찰들을 끌어내려고 한다.

사회계약 이론의 시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고대 아테네의 시민적 삶에 근거를 둔 소크라테스의 시각이다. 이것은 플라톤의 대화편 《크리톤Crito》에서 발견된다. 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은 근대 초입의 2세기에 걸친 이론적 진화과정을 주도하면서 이 사회계약 이론의 맹아를 서로 밀접한 유사성을 보유하면서도 나름대로 차별성을 담지하고 있는 개별적인 정치이론의 형태로 발전시킨 바 있다. 주지하듯이 홉스는 《리바이어던Leviathan》(1651), 로크는 《시민정부론Civil Government》(1690),⁹⁾ 그리고 루소는 《사회계약론Social Contract》(1762)을 통해 자신의 독자적인 사회계약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그들의 사회계약 이론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각각 조명해보기로 하자.

1. 소크라테스의 ‘암묵적(implicit)’ 사회계약

플라톤은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던 감옥 속에서 고향 친구 크리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전해 주고 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에게 아테네를 떠나 목숨을 구하도록 권유한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아테네와 약속을 맺은 터이므로 자신의 고결성을 걸고 아테네[법]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일축해버린다. 아테네 시민으로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약속의 형태, 즉 그가 제시하는 사회계약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이것은 원초적이며 암묵적인 약속이다. 그가 다른 곳이 아닌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살기로 마음을 정한 것과 동시에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전에 도시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¹⁰⁾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약속은 “자발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조건에서 맺

9) 이 저작의 원제목은 *Two Treatises on Government*이며, 2권의 제목, *The Second Treatise of Civil Government*가 책의 제목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10) 본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태생이 아니었으나 어떤 경로인지 분명치 않지만 아테네 시민권을 얻었던 듯하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가한 두세 차례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도시를 떠난 적이 없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간혹 사람들이 그에게 출신지를 물으면 ‘나는 세계시민이요.’라고 대답했다는 기록이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끈다.

어진 계약이다(Villa 2001, 46). 반면에 크리톤의 탈출 권유는 죄수가 감옥을 탈출하여 다른 도시로 가서 목숨을 부지하는 일 역시 당시의 관행이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의 권위에 복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선택과 관련하여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탱해준 율타리아자 자기 존재의 근원이 바로 아테네의 법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해서 합법적으로 자신을 낳아 키우고 교육시키며 결혼시키기까지 모든 일들은 아테네의 법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껏 자신에게 그러한 시민적 특전을 베풀어준 고마운 법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은 법과 자신의 유죄판결에 관해 법의 부당성을 아테네인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하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500인의 시민배심원들을 상대로 이미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무죄를 설득한 바 있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남은 것은 법에 복종하는 것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아테네 시민으로서 소크라테스의 법에 대한 충성심과 궁극적인 복종은 일종의 “입헌적 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¹¹⁾의 이상적 모델처럼 보일 수도 있다(Villa 2001, 49). 그러나 이것은 결과에 대한 해석이다. 빌라의 견해를 빌리면, 소크라테스가 법의 준수를 선택한 행위 동기와 관련하여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양심적 개인주의(conscientious individualism),” 즉 자신의 “영혼에 대한 보살핌(care for the soul)”이었다(Ibid, 43). 요컨대 철학자로서 소크라테스는 도덕적 고결성을 지키려는 자기이익을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는 자기이익에 부응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2. 토머스 홉스의 절대군주제적 사회계약 이론

황제권과 교황권의 오랜 권력 다툼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절대군주의 시대에 살았던 홉스는 인간의 행위가 이기주의에 의해 추동된다는 절대 명제를 가지

11) 하버마스는 현대 국가의 시민들 간의 결속은 더 이상 공통의 실질 가치가 아닌, 법의 합법적 집행 및 권력의 합법적 행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한 합의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입헌적 권리와 원칙들이 제 권리체계를 법 공동체의 역사적 맥락에 위치지우는 입헌적 애국심의 준거점을 형성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1998, 225). 바우만 역시 이와 유사한 시각에서 “공동체는 공유된 합의 이외의 어떠한 토대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2001).

고 있었고, 이 이기주의가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따지는 인간의 합리성에 의해 매개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 결과 그의 자연상태는 모든 사람이 자익을 극대화하려는 이전투구의 장이자 극도의 불신(不信)의 장으로 묘사된다. 그는 그러한 맹목적인 이익추구가 개인의 목숨조차 불사한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다.¹²⁾ 어쨌든 이러한 안전 부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이 바로 사회계약이다. 그러므로 홉스의 사회계약의 명백한 목적은 생명 안전의 확보, 즉 평화상태로의 진입이다.

홉스의 사회계약은 형식상 2단계 계약이다. 1단계는 개인들 간의 계약으로 그들이 자연상태에서 타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2단계는 절대 주권자(혹은 국가)와 맺는 계약으로 자신들의 포기된 권리를 리바이어던, 즉 군주에게 전면적으로 위양하고 그로 하여금 그들의 1단계 계약을 집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계약당사자로서 군주는 개인들에게 안전의 상태를 보장해줄 의무를 진다고 가정된다.

1단계 계약은 효과 측면에서 명시적인 계약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권리를 포기한 결과 개인들의 지위는 신민(subject)으로 바뀌게 되며, 더 이상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계약의 효과가 명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군주와 맺은 계약은 암묵적이다. 일단 권력이 이양되면 개인들은 계약상의 다른 일방의 임의적 계약 불이행, 즉 안전한 상태의 확보 실패 혹은 그의 전제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의 초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홉스의 입장은 개인들이 비록 최악의 절대군주 밑에 놓이더라도 그것이 자연상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예 책임을 물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계약이 성사된 후 계약의 일방인 군주의 실체는 은폐되는 반면, 다른 일방은 지속적으로 계약에 묶이게 된다. 홉스는 개인들에게 ‘계약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자연상태로 복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주문일 뿐이다. 후자, 즉 자연상태로의 복귀는 계약파기

12) 이 입장은 홉스 자신이 설정한 ‘이해타산’에 밝은 인간상과 충돌한다. 생명을 잃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손실임에 분명하므로 비록 사회계약의 돌입 이전에도 그러한 상황을 피하려는 이성적 노력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David Gauthier는 이러한 모순을 적시한다(《동의에 의한 덕행 *Morals by Agreement*》(1986) 참조). 한편 Fran Moran (1999)은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루소 사회계약의 합리성에 관해 설득하고 있다.

를 전제하지만 군주는 이미 계약을 초월하여 생사여탈권을 손에 쥔 절대 권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 불능의 조건하에 있으므로 유지되는 계약상태는,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와 맺은 계약의 효과는 개인들의 상호작용 방식에 한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절대 권위로서 군주는 개인들의 무절제하고 방만한 이익추구 행위에 제동을 걸고 규율하는 심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³⁾ 결국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들이 확보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안전보다 그들 상호간에 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하겠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은 바로 이러한 홉스의 통찰로부터 국가의 역할을 도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존 로크의 입헌군주제적 사회계약 이론

로크는 홉스의 이론 틀을 계승하여 그것에, 시민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회계약 이론을 발전시키게 된다. 그는 자연상태 속에서 인간이 온전하고 평등한 자유를 향유한다는 홉스의 가정을 수용하는 한편, 홉스와 달리 자연상태 속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인간은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고 설명한다. 로크에게 자연상태는 결코 홉스 식의 무법천지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법칙(the Law of Nature)의 질서가 지배하는 상태이고, 인간은 스스로 이 법이 명령하는 도덕적 기준들을 준수할 만큼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개인들이 그러한 만족스러운 자연상태를 포기하고 정치사회를 수립하는 계약을 맺는 것일까?

로크의 설명에 따르면, 자연상태 속에 사유재산 관념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자연상태 속에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노동을 통해 자유롭게 취했던 자연적 재화가 인간의 욕구수준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서 사유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촉발되고, 이는 홉스가 상정한 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전회된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가 자연의 법칙을 해석함에 있

13) 홉스는 군주가 사회계약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관습법과 행정적 장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그가 이론의 틀 속에 군주의 자의성을 용인함에 따라 법치의 기제로서 법과 행정적 장치는 단순히 군주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어 온전하고 평등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유효한 어떤 ‘권위 있는’ 혹은 ‘우월한’ 해석을 제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서 이성적인 개인들은 자신들 각자보다 우월한 “시민적 권위(civil authority)”를 함께 세움으로써 자신들이 이전의 자연상태에서 누리던 완벽한 자유의 상태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것이 로크가 제시하는 사회계약의 동기이다. 따라서 로크는 개인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common-wealths)”를 수립함으로써 3가지를 얻게 됨으로써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다시금 평화상태를 회복하게 된다고 간주한다. 요컨대 그들은 “법률, 재판관, 법집행기관”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로크의 사회계약도 홉스의 경우에서처럼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자연상태 속에서 누리던 온전하고 평등한 자유의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고, 2단계는 시민적 권위의 담지자와 더불어 자신들의 재산과 복리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 성격상 이 2가지 계약은 모두 명시적이다. 로크의 2단계 계약 형식은 홉스의 2단계 계약과 다음 3가지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로크의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참여와 탈퇴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결사계약이다. 개별 시민은 결사의 성립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중간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시민 ‘다수가’ 동의한 계약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탈퇴라는 용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로크의 2단계적 계약은 대체로 명시성의 수준을 확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로크의 계약은 쌍방의 평등성을 전제하고 있다. 로크의 계약당사자로서 ‘시민적 권위’의 피위임자는 군주일 수도 있지만 다른 형태여도 무방하다. 하지만 누가됐든, 그의 용어로, “왕 혹은 지배자”의 자의적 통치는 용납되지 않으며, 더욱이 그는 시민들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올바로 대변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의 시선을 받게 된다. 만약 그가 계약의 이행에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명될 경우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위임했던 개별 주권을 철회하고, 자연상태로 복귀하여 다시 새로운 상대와 더 나은 계약을 모색할 수 있다.

끝으로, 시민적 권위의 피위임자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은 임시적인

것이며, 궁극적이고 영구적인 형태의 주권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잠재적 형태로 존속한다. 요컨대 시민 개개인의 주권은 계약 이후에도 실제상 그들 자신과 완전히 유리(遊離)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주정의 옹호 측면에서 주권을 위임받은 지배자가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법에 반하는 “특권(prerogatives)”을 지닌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지배자의 자의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양보의 자세를 보인다. 이 점은 다음에 다룰 루소의 인민주권 개념과 대비적인 측면이 아닐 수 없다.

4. 장-자크 루소의 공화제적 사회계약 이론

근대 사회계약 이론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회계약론》에서 루소가 제시한 이론은 홉스나 로크의 이론과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그가 군주정의 틀 밖에서 자신의 이론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루소는 공화정(republic)의 통치 형태¹⁴⁾에 기초하여 국가-시민의, 그리고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계약을 통해 인민의 주권이 위임되는 대상은 군주나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의 집합적 “공적 인격(public person)”으로서 “일반의지(the General Will)”이다. 그는 “주권자(the sovereign)는 실제로 [계약에 참여한] 집합적 존재이며 자기 자신이 아니면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대의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이 점은 아래의 논의과정에서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루소는 로크와 매우 유사한 자연상태를 상정하고 있다.¹⁵⁾ 그에 따르면 본래 자연상태는 자연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인간이 “고귀한 미개인(Noble Savage)”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마음껏 구가하는 목가적이며 자기충족적인 삶의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인류문명이 진보하면서—예컨대 노동 분업이 일어나고 사회 구성원 사이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자유를 침범하게 되었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사유재산 제도가 등장함으로써--사람들 사이에 야욕과 경쟁, 오만과 경멸, 수치심과 부러움, 불평등과 악

14) 여기서 “나는 모든 종류의 법치국가를 ‘공화국(Republic)’으로 지칭한다.”는 루소 자신의 언명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15) 루소의 자연상태는 《인간불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론》에서 약간 다르게 기술된다. 본 논문은 후자에 나타난 자연상태 개념을 주목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용민 2004 참조).

습이 팽배한 사회로 변질되어버렸다. 이제 본래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은 그가 어디에 있든 [사회로부터] 속박을 받는다.”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루소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대신 그는 정치적 해법을 찾게 되는데, 핵심은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며 사람들 사이에 인간적인 유대감이 존재하는 자연상태와 유사한 삶의 조건을 구비한 새로운 정치체제를 정초(定礎)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루소는 “사회계약에 의해 우리는 정치체제에 존재와 생명을 부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의 사회계약은 인간의 생래적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민들이 하나의 정치적 결사체를 함께 형성하는 혁명적 행위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루소의 사회계약이 생명이나 재산의 보전과 같은 물질적 목표를 지향했던 이전의 사회계약들과 차별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계약의 형식면에서도 루소의 계약은 이전의 계약 형식들과 다르다. 루소의 이론에는 오직 하나의 계약만이 존재한다. 홉스나 로크의 계약 형식에서 최초의 계약인 자연상태의 포기는 효용적 측면에서 제3자와의 추가적 계약을 맺기 위한 선결조건이었다. 하지만 루소의 계약에는 사실상 제3자가 부재한다.¹⁶⁾ 루소의 “사회계약은 개인들의 어떤 실질적 [주권의] 포기와 [하등] 상관없다”기 때문이다(바로 이 점이 로크를 대의민주주의 주창자로, 루소를 참여민주주의 옹호자로 분류하게 하는 근본원인이다).

부연하면, 루소의 사회계약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개별 주권과 자유를 포기한 후 그들 모두가 심의에 참여하여 함께 규명해 낸 “공동선”을 지향하는 하나의 정치공동체—어떤 “도시, 공화국, 혹은 정치체제”—를 창립하기로 합의하는 것과 동시에 체결된다. 이 과정에서 창립된 정치공동체는 계약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지의 산물인 공동선, 즉 “일반의지”에 바탕을 두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는 “일반의지만이 국가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개인들이 구성하는 것으로서 주권자는 결코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이익을 보유하거나 또는 보유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사회계약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루소가 개인의 이익과 공동선으로서 정치공

16) 결국 “개인으로서의 ‘나’는 나의 신체와 재산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공동체 전체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을 ‘남’과 같이 체결하지만, 이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나와 남간의 계약의 모습을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와 ‘우리라는 전체’와의 계약이며, 더욱 본질적으로는 나와 나 자신과의 계약으로 나타난다.”(김용민 2004, 156~7).

동체의 이익 사이의 간격을 없앤 것은 이론적 개가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루소의—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이 일반의지 속에서 하나로 통합된다는—확신은 그로 하여금 개인들이 포기한 개별 주권 및 자유를 일반의지 속에 위치지우는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일반의지의 정초 작업에 관여하는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며, 그가 자연상태에서 향유했던 “자연적 자유” 대신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된다. 게다가 “일반의지에 따라 행동할 때 나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남도 똑같이 자유롭”기 때문에 정치적 평등역시도 확보된다(김용민 2004, 129).

이렇듯 루소의 일반의지는, 적어도 이론상, 주권(the sovereignty)의 소재지와 주권자를 동시에 표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루소의 입장에서 시민권은 “주권적 권위”에 참여하는 권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루소 이론의 특징들은 사회계약 이론 전통에 어떤 중요한 이론적 전기(轉機)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루소의 논의에는 홉스나 로크의 이론 속에 뚜렷이 제시되는 절대군주나 입헌군주와 같은, 시민보다 우월한 권위를 담지하거나 혹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지배자의 존재나 역할에 대한 기술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그가 주권과 주권자 양자를 각각 일반의지와 일반의지의 담지자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정치이론의 전통 속에 공고하게 뿌리내린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지배-복종의 관념을 와해시키는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양자 모두에게 명령하는 역할은 오직 일반의지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일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간 비약한다면 루소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사회계약 이론 속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적 평등을 구현할 수 방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V. 사회계약 이론이 시민권 개념에 제공하는 이론적 요소 및 함축

1. 사회계약 이론가들의 관점 비교

이 절에서는 III절에서 기술한 사회계약 이론들의 주요 논점들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제시한 다음, 우리의 시민권 개념에 이론적 적실성을 갖는 요소들을 이

론가별로 설명할 것이다. 아래 표는 선명한 논의를 위해 앞서 살펴본 사회계약 이론의 4가지 유형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비교·정리한 것이다.

<사회계약 이론가들의 관점 비교표>

사회 계약 이론가	정치체제 형태	주권의 소재 (Sovereign Power)	주권자 (Sovereign)	계약의 형식	계약 이행의 목적	계약의 변경
Socrates	[고대] 민주제	인민 (people)	[개별] 시민	암묵적 [假定]	양심적 개인주의 실천 (conscientious individualism)	가능: (설득·복종 원칙)
Hobbes	절대군주제	[절대] 군주	[절대] 군주	1차: 명시적 2차: 암묵적	안전(security): 생명	불가능
Locke	입헌군주제	[입헌] 군주	[입헌] 군주	1차: 명시적 2차: 명시적	보전(preservation): 생명, 재산	가능: (정치적 저항권)
Rousseau	공화제 (1)	인민: 일반의지 (General Will) (2)	집합적·공적 인격으로서 일반의지 (3)	명시적: 정치체제 수립 (a body politic) (4)	[정치] 결사체 창립을 통한 '자연상태'의 자유와 평등 회복 (5)	가능: (동의 철회)

일러두기: Rousseau's *Social Contract* (* SC로 약칭) 내 출처와 원문

(1): "I give the name 'Republic' to every State governed by laws."(SC B. II, Ch. 6)
 (2): "...the General Will alone can direct the State... the Sovereignty, being the exercise of the General Will, can never be alienated, and that the Sovereign, who is actually a collective being, cannot be represented except by himself."(SC B. II, Ch. 1)
 (3): "The Sovereign, being only the individuals who compose it, neither has nor can have any interest contrary to theirs."(SC B. I, Ch. 7)
 "...the Social Contract does not involve any real renunciation by individuals, rather, the contract gives them the advantage of security and protection."(SC B. II, Ch. 4)
 (4): "By the Social Contract we have given the Body Politic existence and life."(SC B. II, Ch. 6)
 (5): "This public person, formed by the union of many, is called a city, or a Republic or Body Politic, its people citizens, the members of, and collective owners of, The Sovereign power."(SC B. I, Ch. 6)

2. 사회계약 이론이 시민권 개념에 제공하는 정치 이론적 함의들

1) 소크라테스: ‘자발적 동의’와 ‘설득·복종 원칙’

시민권 계약으로서 소크라테스의 사회계약은 암묵적이고, 자발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조건하에서 맺어진 계약이다. 그는 아테네 시민으로서 자신이 왜 아테네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2가지 분명한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는 ‘자발적 동의’이다. 우선 그는 아테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아테네 법에 동의를 표시한 것과 다름없다. 계약의 결과 아테네는 그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주었으므로 지금껏 아테네를 떠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둘째는 ‘설득·복종 원칙’의 원칙이다. 그는 이미 아테네 법의 부당성에 대해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보았지만 허사였기 때문에 계약 이행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는 법에 복종함으로써 계약상에 합의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설명은 우리에게 시민권이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시민권적 윤리 혹은 시민적 양심의 모델을 발견하게 된다.

2) 홉스: ‘국가의 시민보호 의무’와 ‘국가권력에 대한 예속(隸屬)’

홉스의 사회계약은 개인들이 자연상태에서 향유하던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절대군주의 통치 밑으로 들어간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 가정은 이재(理財)에 밝은 인간의 본성상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를 선택할 것이라는 홉스의 인간심리학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시민권 계약으로서 홉스의 사회계약이 ‘국가의 시민보호 의무’를 주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맺은 계약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이행된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절대군주 자신이 신민의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약은 파기가 불가능하므로 도망쳐서 자연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 이것은 시민의 ‘국가권력에 대한 예속’이라는 시민권 개념의 한 가지 부정적 측면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러한 홉스적 사회계약은 보호대상자로서의 시민에게 적합한 계약형태로 볼 수 있으며, 현대 복지국가와 복지정책의 수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안성맞춤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수자들과 국가권력의 관계는 모두 이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 문제는 그러한 국가-시민 관계 속에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될 위험성이 잠복해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3) 로크: ‘법치주의’와 ‘정치적 저항권’

앞에서 논의했듯이 로크의 사회계약은 홉스 이론의 결함을 보완한 좀 더 세련된 사회계약 형식을 보여준다. 우선 계약에 참여하는 방식에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탈퇴도 가능하다. 시민권 계약으로서 로크의 사회계약은 우리에게 2가지 이론적 요소를 제공한다. 하나는 법에 따른 지배, 즉 법치주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정치적 저항권이다.

한편 로크의 자연상태는 자연의 법칙 아래서 개인들이 가족과 더불어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도덕적인 상태로 가정된다. 그러나 이 상태는 사유재산 제도의 등장과 더불어 재산분쟁이 빈발하게 되므로 홉스 식의 전쟁상태로 변하게 된다. 그들의 분쟁을 종결시키는 길은 그들 다수가 동의하는, 그들보다 우월한 혹은 권위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재판관을 발견하는 것이다. 요컨대 로크적 사회계약의 목적은 대리인에게 한시적인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과 복리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시민권 계약으로서 로크의 사회계약은 어떤 함축을 갖는 것일까? 로크의 계약은 대의민주주의의 선거제도 운영방식에 비추어 보면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요컨대 시민들은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주권을 한시적으로 위임한다. 선출된 대표자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국가를 운영하게 되며, 다음 선거에서 그들의 재선 혹은 낙선이라는 결과를 통해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대체로 시민들은 대표들의 임기동안 묵묵히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무시될 경우 극단의 조치로서 정권에 정면도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로크적 사회계약은 시민권의 정치적 권리, 특히 참정권의 권리 측면을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4) 루소: ‘시민계약’과 ‘정치적 자유·평등’

루소의 사회계약은 ‘동등인 사이의 계약(a contract among equals)’ 혹은 ‘시민계약(a contract among citizens)’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것의 특징을 가장 잘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루소의 계약에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어떤 타자가 아

닌 일반의지, 즉 ‘집합적 자아(the collective self)’로서 바로 자신들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주권 위임은 결과하지 않는다. 이 계약은, 간단히 말해서, 사적 인격을 버리고 공적 인격을 획득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 시민으로서 “제2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에 비견될만하다.

이런 계약의 특성상 개별 계약당사자 자신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주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양도될 수 없다. 또한 계약은 일반의지라는 결과물을 산출한다. 따라서 루소의 계약은 ‘의지형성(will-formation)’을 위한 심의(審議)과정을 수반하는 계약이다. 계약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만든 결과물인 일반의지에 개별적으로 구속되는 동시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경신함으로써 공동선이 수호될 수 있도록 보살핀다. 이는 마치 국회(國會)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의 정초와 이후의 입법행위들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듯하다.¹⁷⁾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시민권 계약으로서 루소 사회계약이 갖는 정치이론적 함축은 무엇인가? 그것은 시민들이 공동선을 함께 규명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제시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일반의지에 종속시킴으로써 사적인 이해관계와 관심사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정치적 자유의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 혹은 지배자와 맺지 않고 동등한 시민들끼리 상호 계약을 맺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한다는 가정을 통해 정치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 루소적 사회계약의 형식은 이른바 ‘결사체(associational) 민주주의’와 ‘심의(deliberative) 민주주의’의 작동 동학을 가장 적절히 설명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이론적 효용을 이미 입증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약간 앞선 시기에 아렌트와 하버마스에 의해 제시된 의사소통적 정치 패러다임, 그리고 근래 키인(John Keane, 2003)과 같은 지구시민사회 이론가들이 주창하는 담론공동체의 형성과 그들이 함께 실천하는 “담론정치(dialogic politics)”는 바로 루소의 ‘자기입법’의 방식으로 일반의지 형성과정의 ‘재현’에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루소의 사회계약은 ”탈-베스트팔렌 시대“에도 여전히 이론적 적실성을

17) 루소의 다른 저작 《폴란드 정부론》(1772)은 그가 《사회계약론》에서 제시한 순수한 정치이론적 이상들을 실존하는 폴란드 정부 개혁안에 적용시킨 저술이다(Kendall 1985, xvi). 이 제안서의 내용 중 특히 다음 2가지 제안이 우리의 주의를 끈다. (1) 폴란드를 작은 지방행정구역들로 나누어 연방제를 실시할 것과, (2) 비용이 들더라도 의회[그리고 의원]을 가능한 한 매 6주마다 교체할 것(Ch. VII) 등이 그것이다.

담지한다는 것이다.

V. 결론: 지구시민권, 어떻게 이론화시킬 수 있는가?

아마 우리는 지구시민권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개념이지만 우리의 인식과 생활 속에 배태되어 있는 사실적 개념이라는 점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빠르게 우리의 인식과 감각을 파고들면서 그 실체를 확인시키고 있는 지구시민사회 혹은 지구공동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중에 ‘당신은 지구시민(혹은 세계시민)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될 때 잠시 멈칫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지구시민권이 제도화되어 있다면 사정은 180도 다를 것이다.

사실 논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통상 시민권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하는 범주들로 이 지구시민권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별 소득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예컨대 시민권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는 능동적-수동적, 포섭-배제, 권리-의무, 보호-참여 등의 기준은 대체로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만 분석기준으로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실제의 삶에 있어 시민권은 국민국가의 정치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점을 당연시한다. 이처럼 시민권은 국민국가와 묶여있는 개념인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마샬의 시민권 개념은 국민국가가 자국의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권리 측면에서 기술된 것이다. 그것은 로마적 전통을 따르는 수동적 시민권 개념의 전형인 동시에 영국에서 복지정책 집행상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기능적 시민권이다. 이 개념은 국민국가 내 시민의 권리를 제외한 시민권의 다른 측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시민권 개념의 다른 의미들—일례로 시민적 의무와 정체성의 토대로서 시민권—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국가 내에 단지 거주자로 존재하는 부류들이 많이 늘어난 덕에 이 시민권은 개념의 확장이 또 다시 불가피해졌다. 그것의 4번째 요소로서 인권(human rights)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필자는 논문에서 국민국가 체제를 초월하는 시민권 개념을 이론화시킬 목적에서 사회계약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논문에서 살펴본 4개 사회계약 이론 가운데 흄스와 로크의 이론은 국민국가 체제에 제법 적합하다. 반면에 소크라테스와 루

소의 이론은 지구시민권에 직접적이고 적실한 이론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시민권을 암묵적이고 자발적인 약속으로 제시한 측면이, 후자의 경우는 시민권이 지배자-피지배자 간의 약속이 아닌 동등인들 사이의 약속으로 기술한 측면이 그러하다. 아직 지구시민사회 내에는 국가 내에서처럼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지배-피지배의 구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우리가 소크라테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구시민권의 형식에 관한 통찰이다. 그의 ‘자발적 동의’의 원칙은 지구시민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또 그의 ‘시민권적 윤리’의 원칙 역시 지구시민권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시민권 이론화 작업에 적용시킬 경우 가장 큰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루소의 사회계약 이론이 제시하는 ‘정치적 자유·평등’의 확보를 전제로 한 의지[혹은 합의] 형성의 방식일 것이다.

주지하듯이 지구시민사회에는 크고 작은 담론의 장들이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담론공동체들 속에서 지구시민들은 ‘능동적’인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지구공동체 전체의 공동선을 규명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무법천지’로 간주되는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을 위한 보편타당한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입법의 과정이다. 일례로 그러한 규범 중에 막강한 자원과 기술력을 가지고 강대국의 이익을 좇는 국제기관들과 초국적 기업들에게 정의로운 경영방식의 도입을 촉구하는 것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점은 지구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흔히 국민국가들이 자국의 이익 극대화에 매진하는 국제정치의 장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요약되는 홉스의 자연상태에 비유되곤 한다(Bobbio 1995, 21). 이런 견지에서 지구시민권과 관련하여 홉스의 사회계약 이론은 ‘안티테제(an antithese)’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¹⁸⁾ 그의 이론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요컨대 현재처럼 절대적 권위의 담지자로서 세계정부가 부재한 상황이 우리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역(逆)의 경우도 고려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만약 우리가 사회계약을

18) 물론 이것은 현실주의적 국제관계이론이 상징하는 시각이고, 이상주의나 혹은 비교적 최근 이론들 예컨대 상호의존론과 같은 시각이 이와 정반대로 우호적 협력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통해 세계정부 혹은 지구공동체를 건설하기로 한다면, 그것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며, 또한 부득이한 경우 계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통찰을 주고 있다. 따라서 로크의 ‘시민의 저항권’이 지구시민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은 적잖은 위안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지구시민권의 이론화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지구시민들의 정체성 문제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유럽연합이 유럽시민들의 정체성 수립과 관련하여 밟고 있는 일련의 입법—헌법을 포함하여—의 사례들과 다양한 초국가적 협동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방식 등에서 한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나 문화적 동질성이 결코 유럽시민의 정체성의 토대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법과 제도의 매개를 통한 신뢰 구축의 가능성이 더 믿을만하고 정체성 확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Follesdal 2002).

하지만 지구시민사회는 유럽연합처럼 위로부터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구시민들 스스로 아래로부터 규범을 형성하고 협업의 관행을 스스로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공통의 토대를 넓혀가는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길은 지구시민들의 다양한 ‘심’ 속에서 발견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¹⁹⁾

19) 필자는 논문을 통해 지구시민권의 ‘제도화’를 지원하려는 암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다음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지구시민권이 제정되면 현재 각국의 시민권 제도에 의해 배제와 차별을 받는 ‘지구시민’의 인간존엄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지구시민권이 제도화되면 약소국의 국민이 지구시민사회 내에서 강대국 시민들과 동등해질 수 있는 정치적 평등을 보장받고, 나아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시민권의 제도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은 필경 UN총회의 ‘지구시민권 제정 결의안’의 통과이며, 이것은 1948년에 제정되고 1996년에 수정·보완된 <보편인권선언>이 훨씬 내용과 실질 면에서 구체적이고 강화된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택. 2002. 〈월드컵과 신공동체문화〉, 《한국사회학비평》 (3),
- 김용민. 2004. 《루소의 정치철학》 (도서출판 인간사랑).
- 서유경. 2004.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의 두 가지 전체주의적 질서체계 비판〉, 《오토피아》 제19권 1호, 경희대학교 출판부.
- 임혁백. 2005. 〈민주주의 공고화와 민주적 거버넌스: 3김 시대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Bauman, Zygmunt. 2001. *Community: Seeking Safety in an Insecured World* (Cambridge: Polity Press).
- Beck, U., Giddens, A. & Lash Scott. 1994. *Reflexive Modernis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 Bobbio, Norberto. 1995. "Democracy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in Held, D. (ed.). 1995. *Cosmopolitan Democracy*. Oxford: Polity Press, pp. 17-41.
- Dower, Nigel. 2002. "Global Citizenship: Yes or No?" in N. Dower & J. Williams (eds.) *Global Citizenship: A Critical Introduction* (NY: Routledge), pp. 30~40.
- Falk, Richard. 2002. "An Emergent Matrix of Citizenship: Complex, Uneven, and Fluid?" in N. Dower & J. Williams (eds.) *Global Citizenship: A Critical Introduction* (NY: Routledge), pp. 15~29.
- Follesdal, Andreas. 2002. "Citizenship: European and Global" in N. Dower & J. Williams (eds.) *Global Citizenship: A Critical Introduction* (NY: Routledge), pp. 71~83.
- Hardt, M. & Negri, A. 2000.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obbes, Thomas(1588~1679)
1. 홉스의 생애와 대표작:
http://oregonstate.edu/instruct/phl302/texts/hobbes/hobbes_life.html
<http://cepa.newschool.edu/het/profiles/hobbes.htm>
 2. 사회계약론: <http://www.iep.utm.edu/s/soc-cont.htm>
 3. 신분의회: http://people.ktug.or.kr/~nomos/lhistoire/civillaw_u8/node6.html
 4. 《리바이어던Leviathan》 설명: <http://en.wikipedia.org/wiki/Leviathan>

<http://www.marxists.org/reference/subject/philosophy/works/en/hobbes.htm>

5. 《리바이어던 *Leviathan*》 전문:

http://www.infidels.org/library/historical/thomas_hobbes/leviathan.html

Honig, Bonnie. 2001. *Democracy and the Foreign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Keane, John. 2003. *Global Civil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klater, Andrew. 1998.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Community: Ethical Foundations of the Post-Westphalian Era*. (Cambridge: Polity Press).

Locke, John(1632~1704)

1. 생애: <http://oregonstate.edu/instruct/phl302/philosophers/locke.html>

<http://www.philosophypages.com/ph/lock.htm>

2. 《시민정부론 *Civil Government*》 : <http://www.constitution.org/jl/2ndtreat.htm>

3. 철학 개관: <http://iep.utm.edu/l/locke.htm>

4. 이론과 사상: *The Cambridge Companion to Locke* (Cambridge Univ. Press, 1994)

Low, Eugenia. 1997. "A Tale of Two Citizenships: Hery Jones, T. H. Marshall and Conceptions of Citizenship in Twentieth-Century Britain," (<http://www.psa.ac.uk/cps/1997%5Clow.pdf>)

Marshall, T. H. 1992. "The Development of Citizenship on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T. H. Marshall/Tom Bottomore, 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London: Pluto Press), pp. 8-17.

Moran, Fran. 1999. "Reconciling 'Private Interest' and 'the Common Good': Rousseau and Citizenship" (<http://faculty.njcu.edu/fmoran/apsa99.htm>)

Plato. *Crito* (<http://classics.mit.edu/Plato/crito.html>)

Richter, P. Richard. 2003. "Reflexivity: The Modern World Turns Back on Itself" (<http://webpages.ursinus.edu/rrichter/becketalnotes.htm>)

Rousseau, Jean-Jacques(1712~1778)

1. 루소의 생애:

http://en.wikipedia.org/wiki/Jean-Jacques_Rousseau

<http://oregonstate.edu/instruct/phl302/philosophers/rousseau.html>

<http://www.kirjasto.sci.fi/rousse.htm>

<http://www.philosophypages.com/ph/rous.htm>

2. 계몽: <http://www.ciudadesilustracion.org/ilustracion.php>
 3. 《사회계약론*Social Contract*》 목차: <http://www.constitution.org/jjr/socon.htm>
요약본: <http://www.btinternet.com/~glynhughes/squashed/rousseau.htm>
 4. 민회: http://www.sas.upenn.edu/~ekondrat/Rome_Govt.html
 5. Moran, Fran. 1999. "Reconciling 'Private Interest' and 'the Common Good': Rousseau and Citizenship"(<http://faculty.njcu.edu/fmoran/apsa99.htm>)
 6. 리쿠르구스(Lycurgus): <http://www.e-classics.com/lycurgus.htm>
 7. 폴란드 정부: <http://www.constitution.org/jjr/poland.htm>
- Shabani, A. P. 1998.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Legitimizing Power?"
(<http://www.bu.edu/wcp/Papers/Poli/PoliShab.htm>)
- Treanor, Paul. 1996. "The Political of John Rawls"
(<http://web.inter.nl.net/users/Paul.Treanor/rawls.html>)
- United Nations.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http://www.un.org/Overview/rights.html>)
- Villa, Dana. 2001. *Socratic Citizenship*.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Chap. 1.

21세기를 지향하는 헤겔적 국제정치 패러다임 이론 : 인정의 메커니즘을 통해

권기봉*

[W]e find three principal causes of quarrell. First, Competition; Secondly, Diffidence; Thirdly, Glory. The first maketh men invade for Gain; the second, for Safety; and the third, for Reputation. The first use Violence, to make themselves Masters of other mens persons, wives, children, and cattell; the second, to defend them; the third, for trifles, as a word, a smile, a different opinion, and any other signe of undervalue, either direct in their Persons, or by reflexion in their Kindred, their Friends, their Nation, their Profession, or their Name.¹⁾

1. 서론

홉스는 그의 저서 *Leviathan*에서 갈등과 분쟁의 원인으로 경쟁 (competition), 불신(diffidence), 영광(glory)을 지적했다. 이 세 요인 중에서 전자의 두 가지는 정치 이론에서 주요한 갈등의 원인으로 이해되어 왔다. 예로, 국제정치 분야의 주류 이론들이 주로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되어 있다.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신현실주의 이론이든,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적 한계에 주목하는 전통적 현실주의 이론에서이든 중앙에서의 합법적 강제력 행사의 부재 상태인 무정부 상태 (Anarchy)는 경쟁과 불신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상정되고 있다. 자유주의 이론 또한 기본적 전제에서는 현실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자

*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1) Thomas Hobbes, *Leviathan* (New York: Macmillan, 1968), p. 185.

유주의 이론은 시장으로 개념화 되는 무정부 상태에 천착한다는 점에서는 현실주의와 같으나 시장의 혼란과 갈등을 반드시 통제 혹은 극복되어야 할 상황으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 자체를 주요한 질서유지의 기제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대표적인 구조주의 이론인 마르크스주의 이론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계급 간의 갈등, 투쟁을 역사 발전의 주요 동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 모든 주류 이론들이 영광으로 표현된 인정(recognition)의 기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론화를 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의 영광, 개인의 명예 등을 행위와 정책의 주요 동인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많으나 이러한 동인이 어떠한 기체를 통해 사회, 정치적으로 여타 동인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지 혹은 이러한 동인에 바탕을 둔 행위나 정책은 실제로 어떻게 다른 동인과 구별되는 지 등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화가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정의 기체가 차별화된 이론적 구성 틀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세 번째 요인에 주목하면서 국제사회의 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치 이론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요인이 제대로 개념화 된다면 다른 어떤 요인보다 포괄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한 가능성이 헤겔의 철학체계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인정의 기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헤겔의 두 저서, 즉 "정신 현상학"과 "법 철학"을 검토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²⁾ 이를 바탕으로 국제체제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틀 (paradigm theory)을 제시하고자 한다. 헤겔의 사상체계 중 현실 국제정치에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던 부분들은 국제정치의 주류 이론으로 군림하여 왔던 현실주의(realism) 이론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헤겔 사상체계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게 이해를 시도할 경우 현실주의 이론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연구의 주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 본 논문에서 주로 참고로 하고 있는 헤겔의 저작은 원문이 아니라 영문 번역본인 G. W. F. Hegel, *Philosophy of Right*, trans. T. M. Know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7)과 G. W. F. Hegel, *Phenomenology of Spirit*, trans. A. V. Mill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이다.

2. "정신 현상학"에서의 인정(recognition) 과정과 유형

사람은 누구나 사물의 대상인 물건이 아닌 인격적 주체자로 인정 받기를 원하며, 특히 특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인정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정 인격체로의 성장과 인정에는 타자의 존재가 전제되는 사회적 관계가 필수적이다. 타자의 존재 없이는 자신을 특정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또한 그러한 인정이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특히 타자에게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고, 타자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특정 인격체(person)로 성장하는 지가 중요하게 결정된다.³⁾

그 이유는 인간의 존재적 가능성과 한계에 있다. 인간은 의식적 존재이지만 하지만 자신이 직접 외부적 관점에서 자신을 확인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과 자기가 구현하고 있는 실체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인식 그 자체가 가시적 실체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 없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회의하게 된다. 그러한 회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우선 자신을 객체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객체화 된 대상으로서의 자신이 되돌아서 자신으로 인식되어 질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정 알게 된다. 이 자기 발견의 과정에서는 타자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에게 대해 타자가 확인해 주는 인정이 필요하다. 타자의 존재 없이는 자신이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갖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타자에 의한 확인과정 없이는 자신이 가진 자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실체화 되지 못한다. 즉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한 철학자가 헤겔이다. 헤겔은 그의 "정신 현상학"에서 "인정을 위한 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기 인식의 존재(self-conscious being)인 인간이 어떻게 자신만의 세계를

3) 자신과 타자의 관계의 구조적 논리에 대해서는 Brian Fay, *Contemporary Philosophy of Social Sciences: A Multicultural Approach* (Cambridge: Blackwell, 1996), p. 42 참조.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의 타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Robert R. Williams, *Recognition: Fichte and Hegel on the Other*(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참조.

벗어나 상호주관적인(intersubjective) 더불어 사는 사회를 형성하게 되는지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정신 현상학"에서 보여지는 인정의 메커니즘은 그 원리면에서 위에서와 개략적으로 언급한 내용과 같은 법칙성을 가진다. 하지만 "정신 현상학"을 주목하는 이유는 인정의 과정과 방식은 인간과 사회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띌 수 있다는 점을 헤겔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헤겔이 언급하고 있는 인정 메커니즘의 다양한 발현들은 바로 인정이라는 인간 욕구의 한 행위 동인이 사회 제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메타 이론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헤겔이 "정신 현상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정의 다양한 양태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문 후반부에서 현대적인 이론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⁴⁾

헤겔의 "정신 현상학"에서 인정을 위한 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이 원형으로 소개되는 부분은 자기 인식(self-consciousness)의 형성과정과 관련해서이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자기 인식은 개개인이 가진 여러 욕구(desire) 중의 하나인 인정의 욕구(desire of recognition)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헤겔은 말하고 있다. 이 인정의 욕구는 대상의 소비, 소멸, 파괴를 통해 충족되는 식욕, 성욕과 같은 일반적 욕구와는 달리 욕구의 대상 자체가 우선 또 다른 욕구의 주체인 인간이라는 점과, 그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대상이 소멸되지 않고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한다. 인정의 욕구로 인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매몰된 삶의 주체에서 벗어나 자신을 타자적 관점에서 객관화하여 보게 되고, 그러한 객관화된 자신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객체화(self-othering)에는 자신과 비슷한 욕구의 존재인 다른 사람과의 대면이 최소한 자연상태 혹은 자연상태에 상응하는 인간 발달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헤겔이 인정의 과정에는 투쟁이 수반되는 것으로 파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혼자만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제한 없이 충족시킬 수가 있다. 물론 그 욕망 자체가 불가능한 대상을 획득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하다. 예로, 배고픔에 대한 욕구는 먹을 거리를 구함으로써 해소된다. 혼자만의 세계에

4) 헤겔 철학의 충실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정의 과정과 그 매개에 대해 "정신 현상학"에서 논하는 개념을 따라서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으나 논문의 분량의 제한으로 본 논문에서는 인정의 주요 메커니즘을 언급하고 그 메커니즘의 다양한 변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서는 먹거리를 구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인위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 것이고 일단 확보되면 그 욕구는 쉽게 충족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헤겔은 혼자만의 세계를 자신에 매몰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모든 대상을 욕구 충족의 대상 이상으로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자유로움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아의 발견이란 있을 수가 없다고 한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를 못한다. 자기 자신을 인식할 계기를,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유자적의 자기 중심적 상태는 다른 사람과 맞부딪치게 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 우선 이 세상에는 나와 비슷한 욕구의 존재가 있다는 것과 이 욕구의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나는 더 이상 절대적인 자유를 구가할 수 없게 된 것이다.⁵⁾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즉 자신의 욕구를 편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유로움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그 자유의 제한은 상대방의 존재로 인해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 극복은 상대방을 제거 함으로서만 가능하다. 상대방과 자신이 공히 원하는 바를 서로 나눈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상상할 수 없으며, 오로지 상대방의 존재를 부인하는 방법만이 이러한 최초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가능한 선택인 것이다. 상대방과 자신이 같이 살아야 하는 동반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적대적 상황이 인정을 위한 투쟁이 상징하는 개별적 존재들의 최초 대면 상황이며 그에 따른 관계적 과정의 시발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헤겔이 강조하는 투쟁의 필연적 측면과⁶⁾ 투쟁의 과정에 잠재된 순간적 가능성으로서의 개별적 존재 간의 상호주관적 인정이다.⁷⁾ 자신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생사를 건 투쟁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점은 주체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 욕구 추구자라는 전제에서 도출되

5) Hegel, *Phenomenology of Spirit*, §§178, 179, p. 111 참조.

6) *Ibid.*, § 187 참조. 생사를 건 투쟁이 이 상황에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Piotr Hoffman, *Violence in Modern Philosophy*(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pp. 10-26 참조.

7) 순간적인 상호주관적 인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Paul Redding, *Hegel's Hermeneu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p. 110-111 참조.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투쟁의 과정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잠재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헤겔은 파악하고 있다. 생사를 건 투쟁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절대절명의 죽음 가능성에서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 통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자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계를 궁극적으로 초월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 자아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순간적이거나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주관적 인정의 가능성은 잠재적일 뿐이기에 생사를 건 투쟁으로 돌입하게 된다. 즉 타자의 존재를 발견하고 대면하게 됨에 따라 이 세상에는 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목숨까지 감수하는 절대, 절명의 투쟁의 과정으로 돌입하게 된다.

그 과정의 결과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승자와 패자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이다. 투쟁의 승자인 주인은 또 다른 욕구의 주체인 상대방을 노예로 만듦으로 하여 자신의 자유를 회복하게 되고, 노예는 욕구의 주체에서 자신을 목숨을 유지하는 대가로 그 주체성을 상실하고 주인의 소유물로 전락하게 된다.⁸⁾ 노예는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살 수 없는 물건과 같은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종관계가 인정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에 잠재한 변증법적 해방의 가능성 때문이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 수립 단계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 받은 셈이지만 이들이 유지하는 일상관계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다. 자신의 욕구 실현, 자아 인정을 얻지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유를 버림으로써 주인의 도구가 되었던 노예가 오히려 주인을 위한 도구적 생산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자유의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자신만이 세상의 중심으로 알았던 욕구의 존재가 타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을 객관화, 객체화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지만 이러한 대면의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에게 폭력(violence)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헤겔이 제시하는 첫 번째 인정의 과정이라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인정의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노예가 행하는 주인을 위한 노동에 있고, 이 노동을 통해

8) Hegel, *Phenomenology of Spirit*, § 190, pp. 115-116 참조.

자신을 객관화, 객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을 인정하고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초를 얻게 된다.⁹⁾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욕구 제한의 기회를 가질 기회가 없는 주인은 결국 자신의 욕구 세계에 매몰되어 영원히 빠져 나올 수가 없는 자기 중심적인 주체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노예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욕구를 자제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그러한 자제는 노예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자신의 의지를 주인을 위해 생산하는 사물을 통해 실현해 봄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실제화해 볼 수 있게 되고, 그 사물을 통해 자신은 자신이 생산하는 다양한 사물의 진정한 주인임을 발견하게 된다. 최소한 자신이 만든 사물로 구성된 세계에서의 진정한 창조자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인 자신임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헤겔이 제시하는 두 번째의 인정 방법은 노동과 노동의 산물을 통한 인정 과정이다. 전술한 인정을 위한 투쟁의 경우와 비교를 해 본다면, 노동은 목숨을 건 투쟁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현재 존재를 극단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자신에게 내재한 진정한 자아를 발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객체화 과정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정을 위한 투쟁에서는 타인을 통해서 자신을 객체화 하게 되지만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는 사물, 특히 노예가 생산하는 노동의 결과인 생산물을 통해서 자신을 객체화 시키게 된다. 노예 자신이 주인이 소유한 물건, 특히 도구 이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가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사물과의 관계 이상일 수 없다는 것은 주인과 노예 관계의 구조적 특성 상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가능성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주인과 주인과의 관계 그리고 노예와 노예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주인은 그 성격상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에 다른 주인과 대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정을 위한 투쟁이 여기서는 재현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는 자연상태와 같은 단순 욕구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는다. 최소한 노예와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유권에 바탕을 둔 재산(property)을 통해 체현(embodied)된 주체가 주인이다. 따

9) *Ibid.*, § 196, p. 118 참조.

라서 또 다른 형태의 인정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가능성의 구체적 발현은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재산권을 매개로 한 시민사회에서의 인정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형태의 인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된다.

노예와 노예의 관계는 또 다른 형태의 사물 간의 관계이다. 따라서 노예의 사물성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사물을 통한 인정의 과정을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노예는 일반적인 사물과는 다른 인간으로서 단지 사물화 된 존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주관적인 인정의 과정이 이들 간에도 발생할 여지는 있다. 단 노예들이 봉기를 하여 주인과의 소유관계를 파기하지 않는 한 이것이 실체화될 가능성은 없다. 노예 상태에서는 그들 간의 관계에서 자신이 자유의지의 주체임을 증거 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사물의 진정한 주인이 자신임을 자신을 자각할 수 있지만 다른 노예들이 이를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생산물의 소유자는 자신들의 소유자인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오히려 자유의지의 주체로 간주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도 인간인 이상 또 다른 형태의 인정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랑을 매개로 한 인정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노예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랑의 관계가 진정한 자아의 발견으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정신현상학"에서 논의되는 세 번째 유형의 인정의 과정은 헤겔이 불행한 인식(*unhappy consciousness*)이라고 부르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노예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신을 발견할 토대를 마련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은 노예 신분이라는 엄연한 사실로 인해 불행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불행함을 회피하기 위해 또 다시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게 된다. 최소한 자신의 정신세계에서는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헤겔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 로마 후기의 스토아 학자들(*stoics*)과 회의주의(*skepticism*)가 처해 있던 상태라고 보고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God*) 혹은 신의 현존인 예수를 필요로 하고, 그의 현실적 대변인인 사제(*priest*)를 통해 다시 불행한 인식은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고 헤겔은 말하고 있다.¹⁰⁾

불행한 인식(*unhappy consciousness*)과 사제의 관계는 그 논리에 있어서 주인과

10) Jean Hyppolite, *Genesis and Structure of Hegel's Phenomenology of Spirit*, trans. James H. Nichols, J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pp. 184-191 참조.

노예의 인정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불행한 인식의 철학자는 자신의 내적 세계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모든 욕망과 즐거움을 부정하는 금욕주의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몸을 노예와 같이 사물화 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는 자기의 특수성 개별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과정에 상응한다고 하겠다.¹¹⁾ 또한 불행한 인식은 자신이 행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신 혹은 그의 매개인 사체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는 행동을 객관화, 객체화 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는 타자나, 작업의 결과(work)가 아닌 초월적 주체 혹은 절대 진리인 신 그리고 이의 매개를 통한 인정의 과정을 발견하게 된다.

개별적 존재들의 자기 인식과 존재 확인의 인정 과정이 더 발전하여 개별적 존재를 넘어서는 한층 높은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진정한 자아는 개별적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 혹은 시대 정신의 구현인 윤리적 공동체 삶(ethical life)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헤겔의 윤리 공동체(Sittlichkeit)에 대한 논의에서 또 다른 유형의 인정 과정을 보게 된다. 그것은 제도화 된 매개를 통한 인정의 과정과 비폭력적인 진정한 의미의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 인정 과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 삶(ethical life)은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의 도시 공동체적 삶이다. 이와 같은 공동체 중심의 삶 혹은 공동체를 통한 개인의 자유의지 실현이 현대에도 국가를 통해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헤겔 정치철학의 요체다. 헤겔은 절대정신의 구현체인 현대적 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편협한 폐쇄성을 극복하고 보다 확대된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보편적 삶의 원형은 소규모의 도시 공동체적 삶에 있고, 이를 아름다운 윤리적 삶(beautiful ethical life)이라고 불렀다.

이런 형태의 공동체에서는 그 정신에 있어서 보편적 공동체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게 되지만 실재적 행위(action)들은 그 준거틀이 다름으로 인해 공동체의 정신(spirit)을 두 갈래로 분화 시키게 된다고 한다. 그 하나는 윤리적 실체(ethical substance)와 윤리적 인식(ethical consciousness)의 분화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 실체에서의 분화로서 인간의 법과 신의 법(divine law)의 분화이다.¹²⁾ 전자의 분화는 구성원인 각자 개개인들이 결국은 공동체가 체현하는 윤리적 실체를 인식

11) Hegel, *Phenomenology of Spirit*, § 201, p. 123 참조.

12) *Ibid.*, §§ 444-5, 455, p. 266, 272, 273 참조.

하고, 해석하며 행위로 실행하기 때문에 생길 수 밖에 없는 개인과 전체 사이의 인식의 괴리이고, 후자는 보편성의 근거로서 인간의 법과 신의 법 혹은 도덕률과의 사이에 존재할 수 차이이다. 인간의 법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들고 준수하는 법을 말하고, 신의 법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닌 개별적으로 준수하는 가족의 영역 혹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규범을 말한다. 진정한 시민인 남자는 도시의 법을 그리고 여자는 후자를 따르게 된다고 한다.¹³⁾ 고대 그리스적 도시 공동체적 삶인 아름다운 윤리적 삶은 도시 구성원 자체가 시민인 남자로 한정됨으로 인해 보편성도 그 범위에서 제한되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신의 법과 공동체의 법 사이의 괴리로 인해 윤리적 삶 자체가 한계를 가졌다는 것이 헤겔의 입장이다.

이러한 헤겔의 논의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법률적 구성원인 시민들은 공동체의 법을 통해 재산권을 가진 법률적 주체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인정의 다른 유형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적 영역과 공적영역의 괴리로 인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나마 그 두 영역은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했다는 사실과 그 한 이유로 사랑을 매개로 한 인정의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 또한 인정 과정의 한 유형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가 진정한 의미의 상호 주관적인 인정으로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헤겔은 남녀간의 사랑을 두 욕망에 휩싸인 개별 존재들을 묶어주는 매개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남녀 간의 사랑은 순간적이기에 영속적인 관계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사랑이 영속적인 관계를 맺는 매개로 작용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 제도는 바로 그러한 욕구에 기인한 우연적인 것을 영속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으로 고안된 장치라고 한다.¹⁴⁾

여기서 문제는 결혼이 전적으로 제도적인 것이라면 그 당사자들은 결혼제도에 의한 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즉 상대방과 자신이 일체화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헤겔은 소외(alienation)의 한 유형으로 보았고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제도와 구성원 간의 괴리로 인해 소외(alienation) 현상이 다음 단계의 윤리적 공동체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의 극복은 시대 정신이 구현된 보다 보편적인 공동체 삶을 통하지 않고

13) *Ibid.*, § 460, p. 276 참조.

14) *Ibid.*, §§ 456, 460, p. 273, 276 참조.

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헤겔의 입장이다.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아 실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인정의 과정의 중요한 한 유형으로 역할하고 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제도적 장치 외에도 남녀 간에는 그들의 사랑을 실체화 시키고 영속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결실인 자녀이다. 즉 부부는 자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관계를 끝임 없이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욕구와 감정을 넘어서는 실체성을 갖게 된다. 이것이 가족 관계의 핵심이고 작은 공동체로서 가족은 시민사회, 나아가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적 구성요소이자 그 자체가 주요한 주체로 간주된다.

헤겔이 언급하는 사랑에는 욕망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의 유형이 있다. 오누이 간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오누이는 남과 여라는 완전한 타자적인 욕구 대상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욕망이 개재하지 않고 서로를 자신과 같이 아끼고 보살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헤겔은 소개한다.¹⁵⁾ 이와 같은 욕망에 바탕을 두지 않은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상호 주관적인 인정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완전히 다른 형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오누이는 서로를 아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일반 남녀간의 사랑과 같이 체현화 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바탕에는 혈연이라는 서로를 묶어 주는 고리가 있다. 그 고리가 없다면 투쟁을 포함한 다른 유형의 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혈연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어떤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호 주관적인 인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 윤리적 삶은 그 자체의 한계로 인해 그 다음 단계의 윤리적 공동체인 "문화(culture)"로 발전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아름다운 윤리적 삶에서와 같은 자신과 공동체의 체현화 된 일체성은 사라지고 윤리적 실체가 내면화 되면서 공동체와 구성원 개개인의 윤리 사이의 괴리로 인한 소외가 일반화 된다. 헤겔은 이와 같은 상황을 '자기 소외의 정신(self-alienated spirit)'이라고 부르고 있다. '문화'의 시대에서 우리는 인정 과정의 또 다른 변형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인정 과정의 원형을 발견하게 된다. 헤겔이 문화의 시대에서 고매한 인식(noble consciousness)과 비천한 인식(vile consciousness)으로 명명한 귀족

15) *Ibid.*, § 457, p. 274 참조.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의 인정 과정은 그 매개의 차이로 인해서 상이한 인정의 방식과 결과를 가지게 된다. 고매한 인식의 귀족들은 국가 혹은 국왕을 통해서 자신을 인정하고 받지만 비천한 인식의 상인들은 부의 축적을 통해 자신을 인정받고자 한다. 고매한 인식은 국왕과 자신의 관계에서 자신의 개별성을 부인하고 국왕에게 전력을 다해 봉사하는 궁중관료가 됨으로써 자신을 국왕으로 대변되는 전체와 일체화 시키게 된다. 하지만 비천한 인식의 부르주아는 그와 같은 체현화 된 영속성을 얻지 못한다. 부는 항상 소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속적이지 못하고 그로 인해 돈과 재산을 인정이라는 것도 불만족스러운 것이며 이것이 사회적 불안정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즉 이 두 가지 형태의 인정 과정에는 인정의 매개 차이로 인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¹⁶⁾

여기서 언급된 국왕을 통한 인정과 부 혹은 돈을 통한 인정은 또 다른 유형의 인정 과정이다. 헤겔은 "법철학"에서 이 두 가지의 인정 과정을 국가와 시민사회를 논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킨다. 그 만큼 현대사회에서 일반화 되어있는 인정이 국가와 부를 통한 인정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인정의 또 다른 중요한 매개가 고매한 인식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외연화 수단인 언어(language)이다. 고매한 인식(noble consciousness)의 귀족은 보다 깊은 소외의 과정을 겪으면서 궁정의 관리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나"인 국왕을 알현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언어이다. 추상화 된 매체의 사용을 통해 자신을 외연화하고 보편성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¹⁷⁾

언어를 통한 인정의 과정은 정신의 다음 단계인 도덕(morality)을 지칭하는 '자기 확신의 정신(spirit that is certain of itself)'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칸트적인 도덕의 세계에서 자아는 도덕적 의무가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며 자기 자유의 실현임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도덕의식 자체가 실체화 되지 못한 인식의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고 자기 인식이 초월적인 도덕률과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선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구체적 인정의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매개하는 것이 개별적 존재

16) 자기 소외의 정신에 관한 부분은 주로 Hyppolite의 해설에 의존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yppolite, *Genesis and Structure of Hegel's Phenomenology of Spirit*, pp. 369-429 참조.

17) *Ibid.*, pp. 401-2 참조.

인 자신의 외연화 된 보편이고 보편의 개별화 된 자기 표현인 언어이고 이를 통해 도덕적 인식의 요체인 양심(conscience)이 함께 앎 (con-scientia)으로서 보편적 자기 인식(in-and-for-itself)이 된다는 것이다.¹⁸⁾ 즉 각자가 자신의 의무에 따라 행동한다는 확신이 있고 그러한 확신이 언어를 통해 표현되어 실체화 되면서 그것이 또 다른 도덕적 존재에 의해 인정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헤겔의 "정신 현상학"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유형의 인정 과정 및 그 매개를 소개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인정의 과정이 헤겔의 개인 및 사회의 발달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략히 소개하겠다. "정신현상학"에서 주로 인식과 정신(spirit)의 문제로 인정을 논하고 있지만 "법 철학"에서는 인정 과정이 사회 정치적 구성원리로 발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3. 현대적 주체의 형성,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

헤겔에 의하면, 개별적 주체(individual subject)의 실질적 형성 과정은 그 자신의 도구를 통한 경험에서 시작된다. 즉 주체의 형성과정은 본연적으로 노동, 도구, 그리고 생산의 과정과 내적인 관계를 지닌다. 주체(subject)는 노동의 과정과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통해(work) 자신의 자유 의지를 인식하고 되고, 이를 통해 주체적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자유 의지의 첫 번째 발현인 도구적 경험만으로는 규범적 인간인 성숙한 현대적 주체(subject)로 발전하기에는 부족하다. 개별적 발달 과정을 거치는 개인은 동시에 현실 세계로 실재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타자와의 첫 번째 상호 인식으로서 헤겔은 "사랑"을 개념화 하였다. 즉 남녀 사이의 관계(sexual relationship)는 자아 인식을 위한 상호 주관적 조건을 이끌어낸다. 욕망을 통해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화된 관계로 구체화된다. 사랑으로 형성된 가족은 재산이라는 매개를 통해 현실세계에서 또 다시 실체화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

18) 헤겔은 다음과 같이 언어를 정의하고 있다. "Language is self-consciousness existing for others, self-consciousness which as such is immediately present, and as this self-consciousness is universal... It is the self that separates itself from itself, which as pure 'I' = 'I' becomes objective to itself, which in this objectivity equally preserves itself as this self...Hegel, *Phenomenology of Spirit*, § 652, p. 395.

의 관계도 규범적 인격(person)으로서 발전하기에는 부족하며 가족을 넘어선 보다 넓은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각기 독립적 구성 단계인 작업과 사랑(work and love)의 과정을 겪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주체(subject)는 "사회 속의 투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¹⁹⁾

이는 홉스의 이론적 바탕인 자연상태의 생존을 위한 투쟁과 유사한 상황이다. 그러나 자연상태라는 홉스의 가상적인 설정은 어떻게 개별적 주체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이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책임 있는 주체로서 "사회 계약"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다.²⁰⁾ 따라서 헤겔은 사회계약의 발생과 법적 관계를 실질적 사건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계약의 주체는 더 이상 욕망에 사로 잡힌 즉흥적 존재가 아니며 자신의 존재를 필수적으로 인식하며 그 과정에서 남을 인식하는 자기 인식의 주체이다. 이들 간의 상호 대면 과정은 투쟁을 발생시키게 되지만 여기에서의 투쟁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인정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 헤겔의 입장이다. 사회적으로 무시된 주체가 타인의 소유를 손상시키려 하는 것은 그의 일반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회성의 부재로 인해 자신이 모욕당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존재를 인정 받기 위해서 투쟁의 과정으로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의도로 수행된 인정의 투쟁 과정에서 주체는(subject)는 자신과 타자를 인격(person)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인격적 주체들은 사회를 구성하고 종국적으로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으로 발전한다. "법 철학"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정신현상학"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인정 과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근대 시민 사회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적인 소규모의 전통적 윤리의 삶을 극복함으로써 나타난다. 헤겔의 "법 철학"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와 가족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개념화 되어 있다. 개인의 주관적 의지(individual subjective will)의

19) 현대적 주체 형성 과정에서의 투쟁에 대한 헤겔의 입장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Axel Honneth,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 (Cambridge: Polity Press, 1995) 참조.

20) 홉스에 대한 비판과 자연상태에서의 인정을 위한 투쟁에 대해서는 ibid. P. 40-47 참조.

관점에서 시민사회는 개인의 이익과 욕구의 영역이지만 시민사회는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과의 매개 영역이기도 하다. 시민사회에서 그러한 매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계급조직(estates), 길드 등과 같은 사회 조직이 보편을 인식하는 교육의 장 (a sphere of education)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²¹⁾ 제2의 사회적 가족으로 개념화 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 조직을 통해 규범적인 인격은 자신을 넘어서는 보편을 인식하고 내재화 한 이성적인 시민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일차적으로 욕구의 체계이고, 재화의 생산과 재산을 통해 개별적 주체가 인격으로 인정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²²⁾

이를 보완하여 완성시키는 것이 국가이다. 국가는 보편적인 제도의 영역이고 구성원인 시민은 국가 제도를 통해 보편과 개별을 자신이 직접 체현하고 이를 자신의 실체로 인식하는 이성적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 헤겔에게 있어서 국가는 단순히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연장이 아니다. 국가는 시민 개개인에게 있어서 각자가 실체화하는 보편과 전체의 '모멘트'로 내재화 되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국가는 마치 생명체의 생명과 같다. 국가의 부분인 입헌군주, 의회, 관료조직이 서로 간에 변증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²³⁾ 각 부분이 한편으로는 인정의 과정 그 자체를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⁴⁾ 따라서 국가는 그 자체가 인정 관계의 총체(the totality of precognitive relations)라고 할 수 있다.

국가들의 관계인 국제관계에 대한 헤겔의 견해도 인정 과정의 확장으로 해석해야 한다. 헤겔은 국제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위에서 상술한 논리적 구조를 탈피하여 새롭게 이론을 구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헤겔의 국제정치 이론의 핵심도 그의 변증법적인 인정 과정과 인정을 위한 투쟁의 개념인 것이다.²⁵⁾ 물론 19세기 당시의 국제 관계는 시민사회나 국가 내부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제3자적인 인정의 매개와 중재가 부족하였다. 중재적 매개자 부재는 결국 국제법의 추상성, 즉 논리에 근거하기 보다 당위성(ought to be)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헤겔은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성을 극복하기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해결책이 존재한다면, 도덕성의 영역에서 사제나 판사의 역할

21) Hegel, *Philosophy of Right*, § 209, p. 134 참조.

22) 헤겔의 시민사회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위해서는 Peter G. Stillman, "Hegel's Civil Society: A Locus of Freedom," *Polity*, 12: 4 (summer 1980): pp. 622-646 참조.

23) Hegel, *Philosophy of Right*, § 273, p. 176.

24) *Ibid.*, § 301, addition, p. 292 참조.

25) *Ibid.*, § 331, p. 212 참조.

과 같이 보편적 의지(혹은 세계 정신)를 대변할 수 있는 제 3자적 매개를 통해 추상적 법이 실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국제 기구의 존재 및 중재 기관의 설립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중재자의 역할은 국제 영역에서 실현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헤겔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국제관계는 세계정신이 아직 구현되지 못하고 단지 함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국제영역은 추상적인 개개인의 인정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²⁶⁾

4. 결론: 헤겔적 페러다임 이론의 21세기 함의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인정(recognition)'이다. 특정 개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는 그가 타인에 의해 어떻게 인정 받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현실적으로 개인은 주로 물질적 체현(material embodiment)을 통해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과정은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정의 매개(recognitive medium)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매개는 사회적 구성 과정 그 자체를 반영하게 된다. 단적인 예로, 부르주아 계층이 사회적 인정을 얻게 된 것은 바로 부(wealth)가 귀족적 태생을 대신하여 사회적 지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헤겔은 이러한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인정을 인식의 역사적 발전 과정 측면에서 규명하였고, 이를 사회현상의 이해에 체계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헤겔이론의 21세기적 함의를 단적으로 정리한다면, 자유의지로서의 인간(human beings qua freewill)은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과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의 창조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헤겔이 보여 주는 다양한 인정의 생성적 과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꼭 지금 이대로일 필요는 없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다음은 논문을 통해 논의한 다양한 인정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포함된 모든 유형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능성이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26) *Ibid.*, § 333, p. 213 참조.

Table I:

인정의 영역과 유형	인정 과정의 매개
가족	사랑
자연상태	폭력
주종관계	작업과 명령
윤리적 공동체	추상적 도덕률과 사제 혹은 재판관
시민사회	재산권, 돈, 기타 사회 조직
국가	국가제도, 언어

헤겔의 통시론적 이론이 포함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다양한 가능성을 통해 우리는 포스트모던 이론을 넘어서는 기존 국제관계 이론의 대안을 발견할 수 있으면, 21세기 국제 관계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틀을 제공받게 된다.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이론은 정치를 궁극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파악한다.(Walker, 1988; Shapiro, 1988) 나아가 국제관계는 국내질서를 국제적 무질서보다 우선시하는 지식관행(knowledge practice)의 결과로 해석한다. (Der Derian, 1987; Ashley, 1984, 1990; Walker, 1988)

그러나 국제관계의 영역은 단지 국내정치에서 파생된 현상이 아니다. 이 영역은 국가의 정체성 결정에서 이미 전제 되어있다. 즉, 타인의 존재는 자아 구성의 근본적인 동기이자 존재론적 메커니즘이다. 국가는 타 국가들과 맺고 있는 인정 관계를 통해서만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다.²⁷⁾ 타인(사회)을 존재론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이 헤겔의 통시론적 이론과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차이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포스트모더니즘 국제관계 이론에서는 자신과 타인이 담론적 전체(discursive whole)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자신과 타인 사이의 관계를 상관적으로 구성한다. 차이(difference)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체 담론(discursive whole) 내에서의 차이이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이 다르지만 전체담론(discursive whole) 내에서 자신이 이해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타인은 다른 존재이기는 하지만 독립적 존재

27)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차별의 과정에서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헤겔은 주장한다. *Ibid.*, § 322, p. 208 참조.

성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타인은 자신의 반영이거나 혹은 자신을 통해 이해되는 존재이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존재론이 여전히 초월적 관념주의(transcendental idealism)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은 타인을 무지의 영역(realm of unknowable)으로 몰고 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근본적인 타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치의 결과는 열려있다. 새로운 정체성의 출현은 정치적 투쟁의 결과이다. 정치가 기존의 담론의 전체(discursive whole)내에서 진행이 된다면,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가 정체성의 큰 전환을 가져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치라는 것이 사회적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제도화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체성의 정치가 기존의 담론(discourse)에서 벗어나 대안적 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정치는 기존의 정체성을 수정하고 변형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론적 측면에서, 포스트모던 이론은 담론(discourse)의 분석과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수단으로서의 정치 사이에는 단절이 있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체가 양립할 수 없도록 이론이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은 정치의 문제이다. 대안적 견해들 사이의 경쟁으로 이해되는 정치는 전지전능한 것이 되어버린다. 정체성의 전환은 체계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단지 임의적(ad hoc)인 방식으로만 설명될 뿐이다.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은 정체성의 주관성(subjectiveness)와 그것의 구성성(constructability)를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망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에 매개되어야 하는 물질적 바탕을 간과하고 있다.

반면 헤겔의 철학은 자신과 타인의 근본적 분리와 차별로부터 시작된다 (즉 자연상태에서 인식을 위한 경쟁). 헤겔의 철학은 재산 관계(property relation)에 의해 구성된 관계적 타자성(relational "Otherness")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정을 통한 상호 자유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헤겔 철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담론 분석(discourse analysis)보다 더욱 포괄적일 뿐 아니라 정체성의 정치를 구성하는 생성적 기제(mechanism)를 또한 규명한다. 사회이론은 생성적 기제를 지닐 때에만 비로소 정체성의 전환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헤겔의 존재론적 현실주의적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발전적 가능성으로서의 다양한 선택의 범주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계측하는 이론으로 구성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이론적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가 국제사회이다. 헤겔이 본 18세기의 국제관계는 개별국가로 구성된 시민사회와 유사성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현대의 국제관계가 윤리적 영역으로 진입했고, 순수한 상호주관적 인정의 영역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이 수용된다면 비국가적 행위자도 국제 무대의 정당한 주체자로 인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상호주관적 인정은 단지 폭력, 일, 재산 혹은 추상적인 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언어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인식이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가능한지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국제 관계에 있어 불분명하다.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체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형상화된 매개(determinate medium)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가족관계의 수준을 넘어 현대 사회집단에는 너무 편협하다. 폭력은 항상 모든 형태의 상호주관적 인정에 있어 숨은 가능성으로 존재해 왔다. 왜냐하면 인정의 부재는 폭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폭력을 대체할만한 다른 인정의 매개(recognitive medium)가 국제 무대에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앞으로의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work)은 물질적 대상(material object)과 관련해 항상 노동의 형태를 띠 필요는 없다. 일은 예술적 표현의 형태를 띠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 후자는 전문인 사회(professional society)와 문화 예술계(literary society)에서 소규모로 실현된다. 유명한 헤겔 전문가인 코제브(Kojev, 1980)는 역사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봉건시대의 일본에서 계서적 주인(hierarchical master)의 관리 하에 번성했던 장인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가 현대 상업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진정한 상호주관적 인식이 실현될 때 위와 같은 형태가 파생적으로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와 사회제도의 경우 문제는 상호 주관적 인정의 매개로서 언어의 소통(communicative) 잠재력이 얼마나 강력하느냐는 것이다. 변증법적 해석 과정은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언어 자체가 상호 주관적 인정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회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를 사용해 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과거에도 상호 주관적 인정의 원동력이 되지 못했다. 언어의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서로 자

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사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제도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이것이 역사의 종말 뒤에 숨겨진 논리이고 자유 민주주의적 테제이다. (Fukuyama, 1992) 동구 공산권의 몰락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계의 논의도 결국 헤겔적 패러다임 이론의 한 축을 구성할 뿐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여지듯이 다양한 가능성이 헤겔적 패러다임 이론에서 도출될 수 있다. 현재 국제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이론으로 발전 가능한 이론 체계이다. 이의 이론적 한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Bibliography

- Ashley, Richard K., "The Poverty of Neore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 -2 (1984).
- _____, "Untying the Sovereign State: A Double Reading of the Anarchy Problematique," *Millennium* 17 -2 (1988).
- Ashley, Richard K., and R. B. J. Walker, "Reading Dissidence/Writing the Discipline: Crisis and the Question of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4 - 3 (1990).
- Avineri, Shlomo. *Hegel's Theory of the Modern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 Biersterker, Thomas J., "Critical Reflections on Post-Posi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3 3 (1988).
- Burchill, Scott, and Andrew Linklater, ed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St. Martin Press), 1996.
- Buzan, Barry, Charles Jones, and Richard Little, *The Logic of Anarchy: Neorealism to Structural Re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Camilleri, Joseph A., and Jim Falk, *The End of Sovereignty*, (Brookfield, Vt: Edward Elgar), 1992.
- Carr, E. H.,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1939.
- Cerny, Philip G., *The Changing Architecture of Politics: Structure, Agency and the Future of the State*, (London: Sage), 1990.
- Cohen, Jean L. and Andrew Arato,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The MIT Press), 1997
- Connolly, William F., *Political Theory and Modernity* (Oxford: Blackwell), 1988.
- Cox, Robert W., *Power, Production and World Order: Social Forces in the Making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 Crossley, Nick, *Intersubjectivity: The Fabric of Social Becoming* (London: Sage), 1996.
- Dallmayr, Fred., *Margins of Political Discours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89.

- _____, G. W. F. Hegel: Modernity and Politics,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1993.
- Der Derian, James, On Diplomacy: A Genealogy of Western Estrangement, (Oxford: Basil Blackwell), 1987.
- _____, Antidiplomacy: Spies, Terror, Speed, and War, (Cambridge, MA: Blackwell), 1992.
- Der Derian, James, and Michael J. Shapiro, eds., International/Intertextual Relations: Postmodern Readings of World Politic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89.
- Ferguson, Yale H., and Richard W. Mansbach, "Between Celebration and Depair: Constructive Suggestions for Future International Theor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5 4 (1991).
-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Avon Books), 1992.
- _____,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6.
- George, Jim, Discourses of Global Politics: A Critical (Re)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1994.
- Haber, Honi Fern, Beyond Postmodernism Politics: Lyotard, Rorty, Foucault, (New York: Routledge) 1994.
- Habermas, Jurge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translated by Thomas McCarthy. 2 vols. Vol. 1. (Boston: Beacon Press), 1984.
- _____,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Lifeworld and System: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translated by Thomas McCarthy. Vol. 2., (Boston: Beacon Press), 1987.
- Hegel, G. W. F., Philosophy of Right, translated by T. M. Knox,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_____, Phenomenology of Spirit, translated by A. V. Mill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_____, Jena Lectures on the Philosophy of Spirit, in Hegel and the Human Spirit:

- A Translation of the Jena Lectures on the Philosophy of Spirit (1805-6) with Commentary, edited by L. Rauch, (Detroit, Michigan: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83.
- Hirschman, Albert O., *The Passions and the Interests: Political Arguments for Capitalism before its Triump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Hobbes, Thomas, *Leviathan*, (New York: Macmillan), 1962.
- Hoffman, Piotr, *Violence in Modern Philosophy*, (Chicago, Illino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 Honneth, Axel,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 (Cambridge: Polity Press), 1995.
-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72 (Spring 1994).
- Hyppolite, Jean., *Genesis and Structure of Hegel's Phenomenology of Spirit*, translated by Samuel Cherniak and John Heckman. Evanston, (Illinoi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4.
- Jackson, Robert, "Quasi-states, Dual Regimes and Neo-classical Theory: International Jurisprudence and the Third World,"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 - 3 (Fall 1987).
- Jung, Hwa Yol, *Rethinking Political Theory: Essays in Phenomenology and the Study of Politics*,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1993.
- Klein, Bradley, *Strategic Studies and World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Kojeve, Alexandre, *Introduction to the Reading of Hegel: Lectures on the Phenomenology of Spirit*, translated by James H. Nichols, J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 Layder, Derek, *The Realist Image in Social Scien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 Linklater, Andrew, *Beyond Realism and Marxism: Cr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9.
- Liotard, Jean-Francois,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lated by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Minneapolis,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 McCarthy, Thomas A., *The Critical Theory of Jurgen Habermas*, (Cambridge: MIT Press), 1981.
- Nardin, Terry, *Law, Morality, and the Relations of Stat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 Redding, Paul, *Hegel's Hermeneu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 Ritter, Joachim, *Hegel and French Revolution: Essays on the Philosophy of Right*, translated by Richard Dien Winfield, (Cambridge: The MIT Press), 1982.
- Rosenberg, Justin, *The Empire of Civil Society: A Critique of the Realist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Verso), 1994.
- Sakamoto, Yoshikazu, ed., *Global Transformation: Challenges to the State System*, (New York: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1994.
- Seligman, Adam B., *The Idea of Civil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 Shapiro, Michael J.,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Writing Practices in Biography, Photography, and Policy Analysis*, (Madison,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8.
- Shapiro, Michael J., and Hayward R. Alker, eds., *Challenging Boundaries: Global Flows, Territorial Identities*, (Minneapolis,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 Sylvester, Christine, *Feminist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Postmodern Er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Walker, R. B. J., *One World, Many Worlds: Struggles for a Just Peace*,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1988).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1979.
- Wendt, Alexander E,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 (1987).
- Williams, Robert R., *Recognition: Fichte and Hegel on the Other*,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 _____, *Hegel's Ethics of Recogni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오토피아 2005년 겨울 (제20권 제1호)

성(性) 중심적 사회의 와해

— 조화를 지향하는 공동체

하 영 애*

미래는 여성적이다. 근대성과 페미니즘-에서

다가오는 동아시아 시대는 동양의 아름다운 정신문화와 서양의 물질문명이 조화된 종합문명사회가 되어야 한다

조영식, 오토피아 중에서

I. 서론

오랜 옛날에 인류가 무리를 지어 공동의 생활을 시작 했을 때 얹이 모자라 대자연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으나 최소한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사이에는 오늘날과 같은 반목, 불평등, 비인간적인 관계보다는 서로가 가족과 무리공동체를 위해 역할구분 없이 평안한 생활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과거보다 더 편리해지고 더욱 풍요롭고 더욱 과학과 되어 왔는데도 행복하거나 평화롭지 못하며 오히려 불평등한 생활을 하고 있다. 여권론자들은 모권제 사회의 존재에 대해 강한 주장을 하고 있다. 모권제의 짧은 기간에 비해 남성중심의 새로운 부권제사회는 오래도록 현대사회를 유지 발전시켜왔으나 가부장제라는 제도에 의해 많은 여성들은 억압, 불평등,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여왔다. 학문분야에서도 여권론자들은 남녀불평등, 여성해방운동을 중심주제로 연구를 거듭하여 남녀평등문제에 적지 않는 변화를 가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사회

*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에서도 형식적 평등은 있으나 여러 가지 실질적 평등은 아직도 요원하며, 여성관 현 불평등은 여전히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은 가부장제도에 기인하며 가부장제는 정치, 사회, 교육은 물론 모든 분야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남성들 역시 갖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남성다위야’ 하는 고정 관념들이 ‘여성다위야’ 하는 고정관념 못지않게 사회에 팽배하고 있어서 남성 자신들이 본연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없지 않거나와 현실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IMF 영향으로 고개숙인 가장들, 가정기피 증후군 현상, 심지어 황혼이혼 등 남성들이 느끼는 심리적 사회적 역차별, 역 평등 또한 적지 않아서 남성사회도 점차 와해되어 가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性) 중심적 사회의 와해-조화를 지향하는 공동체의 주제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문의 여성 중심적이란 구체적으로 고대사회의 모권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남성 중심적 사회란 가부장제를 지칭한다.

모권제사회의 와해와 위기에 처해있는 가부장제의 와해에 대한 연구를 통해 21세기 대안문명으로 조화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추구해본다.

무엇을 조화라 하는가? 한자에 계집‘女’와 아들 ‘子’가 함께 복합되어 좋을 好를 구성하며 중국어로는 ‘하오’好 로 발음 한다. 뜻은 좋다, 멋있다, 동의한다, 훌륭하다 는 의미로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의 하나이다.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은 함께 있기만 해도 그 자체로서 좋고 어느 한쪽이 없는 경우 삭막하고 쓸쓸하고 빈 것 같이 모양새가 없다. 가정도, 작은 모임도, 사회조직체도 세계 각 국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남녀가 함께 어울림은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한 예로 얼마 전 중국 산둥성에서 개최한 국제대회에서 남녀노인으로 구성된 개막행사는 조화의 극치였다. 60세-80세로 이루어진 이들 혼성의 16명의 울동은 저 나이에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하는 감탄과 함께 조화의 의미를 새삼 일깨워줬다. 조화는 한글사전에 따르면, 충돌이나 모순됨이 없이 서로 적당하게 잘 어울림. 고르게 하여 알맞게 맞춤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문에서의 harmony 는 조화, 화합, 일치로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하여 더욱 함축성이 있으면서도 이해를 돕고 있다.

현대사회는 여성중심의 모권제 시대도 와해되었고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역시

흔들리거나 와해되고 있다. 왜 모권제와 가부장제는 와해되었는가? 남녀의 진정한 조화를 지향하는 공동체는 불가능한가? 본 연구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추구하는데 있어 화합, 평등, 행복, 인간적인 인간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남녀의 조화 지향 공동체를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동체 관련 주요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자

II. 공동체 관련 주요 개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을 위한 가치추구에 있다고 하겠다. 이는 또한 공동체의 이상과도 무관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라 했을 때 무엇을 공동체라 하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공동체의 개념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다.

퇴니스는 그의 저서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에서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체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적 실체와 인간의 의지를 연관시키고 본질의지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 실체를 게마인샤프트(공동사회, 공동체)라고 부르며 반면에 선택의지에서 나타나는 부분적 사회관계를 게젤샤프트(이익사회)라고 불렀다.¹⁾ 또한 그는 게마인샤프트를 물리적인 공간이나 사회관계의 형식보다 행위의 동기와 가치 측면에서 기술하려 했다. 그러나 퇴니스가 게마인샤프트가 혈통, 장소, 정신적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다차원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이런 다차원적 요소는 힐러리(Hillery, 1955)의 공동체의 세 차원-지리적 공간, 상호작용, 공동의 연대-에서 체계화 되었다. 그 외에도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찾아 볼 수 있다. 사회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는 공동체를 ‘인간간의 상호 교환망’으로 보았다. 그는 사회과정이 인간들의 단순한 신체적 욕구충족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자아형성의 과정이며 이상추구의 불가피한 조건으로 보았다. 미드는 인간의 존

1) 퇴니스의 공동사회란 취향, 습관, 또는 신념에서 의지된 형성체를 말한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형제간과 촌락 공동체내에서의 이웃간의 관계, 자율적인 폴리스(police, 그리고 신조협동체 신앙 단체 등을 들 수 있다. 『퇴니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황성모 역, 만하임,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황성모 역』 삼성출판사 ; 1982. 11. pp.17-18.

재를 타인과의 관계, 즉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보며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자신과 타자가 함께 사회적 존재로 발전해 간다고 보았다.²⁾ 헌터(Hunter, 1975)에 의하면 공동체는 ①생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적 공간적 단위이며, ② 유형화된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위인 동시에, ③집합적 정체성을 가지는 문화적·상징적 단위이다. 그래서 공동체는 대인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생산, 소비, 분배와 같은 집합현상이며 사회화나 정치적, 행정적 기능들을 포함한다.³⁾ 무엇보다도 공동체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지리적 영역과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공동의 목적을 가진 정신적 연대의 전일적(holistic) 실체를 말한다. 그러나 공동체 개념은 유동적이며 그 말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그 말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뜻이 달리 이해될 수 있다.⁴⁾

그리고 마즐리쉬(Mazlish, 1989:167)는 퇴니스가 상호작용을 두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 하나는 생계활동의 망 web of relations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의 망 net of relations이라 하여 상호작용이 인간의 기본적인 두 욕구-생존과 자아실현-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퇴니스가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게마인샤프트의 속성은 자본주의적 이해타산에 물들지 않은 본연적 인간의 상부상조였다.⁵⁾ 그러나 다양한 개념규정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사람은 조지 힐러리다. 그는 1900년대 초부터 1950년대 초 사이에 이루어진 공동체 문헌을 분석한 결과 공동체가 지리적 영역 geographic area,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동의 연대 common ties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⁶⁾ 이들 세 차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 영역은 사회현상의 시공간차원의 속성으로서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상황조건이 된다. 또한 지리적 단위로서의 공동체는 경험적 차원의 위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위로서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하비는 인간의 현상인식과 행위가 시간과 공간개념에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인간의 기본

2)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 한가』, 아카넷, 2004, 2. p. 49.재인용

3)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 한가』 p. 93. 재인용

4) 김남선·김만희.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 학술지』 Vol.10, No.2., 2000. p. 4.

5) 강대기, “패러다임 변화와 공동체의 통합개념 구축”, 숭실대 농촌사회학, pp. 5-7.

6) 강대기, “패러다임 변화와 공동체의 통합개념 구축”, 숭실대 농촌사회학, pp. 6-7;

범주라고 했다.⁷⁾ 또한 르네상스 문명원 출범의 국제학술회의 ‘21세기 대안문명을 말한다’의 기조연설에서 정화열 교수는 횡단성 transversity이란 개념으로 시간에 대해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⁸⁾ 조영식 박사는 그의 저서 오토피아에서 시간에 대해 ‘시간은 영속성을 가지고 처음과 끝이 없으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무한히 꿰뚫는 가운데서 사물의 변화와 생멸을 성립케 하며 유한(有限)에서 무한(無限)으로 흐른다고 제시하며 시간과 함께 공간, 환류, 실체의 4기체의 개념을 정리한 바 있다.⁹⁾ 시간이란 이를테면 통신기술이 발달하여 공간개념에 변화가 오면 그 공간에 관련된 모든 현상인식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기술발전에 의한 시공간질서의 변화는 현대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근본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대기 교수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 대상이 아니라 ‘추상화’될 수 있는 상대적 대상이라고 제시한다.¹⁰⁾

둘째, 상호작용은 인간은 대인관계를 통해서만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아의 실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면에서 미드의 상호작용은 불가피하게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상호작용은 사회조직을 설명하는 기본개념으로 공동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간관계의 망과 조직, 그리고 사회체계 및 제도를 포괄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이며 잠정적인 구조를 말한다.

셋째, 공동의 연대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상징적, 문화적 현상을 말한다. 이런 현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 간의 일치감과 협동정신이다.

강대기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 한가』라는 저서에서 공동체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 공동체의 개념은 이 세 가지 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즉, 농경사회에서의 공동체는 지리적 여건,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적 연대의 세 가지가 하나로 통합된 실체로 파악 되었고, 산업화 이후 교통과 통신

7) 하비, 1994:250,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p.283. 재인용.

8) Hwa Yol Jung, " On Humanity in Transition : The Past, Present, and Futur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of the 24th Anniversary of the UN international Day of Peace, After Ideology : The 21st Century Talks, Keynote Speech.,pp.7-9.

9) 조영식 박사는 오토피아에서 주의 생성론을 원리론으로 전승화 이론을 작용론, 기능론으로 발견하고 이 4기체를 전승화 이론의 개념으로 제시 하고 있다.

10) 강대기, “패러다임 변화와 공동체의 통합개념 구축”, 숭실대 농촌사회학, p. 6.

의 발달에 따라 해체되는 과정을 겪어왔으나 공동체의 기본적인 이 속성은 변하지 않았다.¹¹⁾ 그러므로 공동체는 인간들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활동무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장 life field’ 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장’이란 인간이 육체적 생존과 이상추구를 위해 타인과 작용하는 물리적 사회문화적 범주를 말한다.

비록 공동체가 하나의 사회조직 형태를 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그 속성을 세 차원-물리적 차원으로서의 지리적 영역, 사회적 차원으로서의 상호작용, 문화적 차원으로서의 공통의 연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초점은 근대사회에서 갈등관계를 유지해 온 성 역할관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는가에 맞추어져 있다. 즉 여성과 남성이 삶의 장인 공동체에서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 상부상조하여 평등사회, 화합사회, 협동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가가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동체의 출발점인 상호작용이 어떠한 성역할 관계로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그러한 상호작용이 어떠한 물리적, 사회 문화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었는가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 한다. 그러면 먼저 상호작용이 어떻게 사회적 제도를 형성하게 되는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상호작용

공동체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시작된다. 상부상조하는 사회체계가 공동체문화는 반복되는 대인관계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유형이나 특성은 그 공동체성원들이 어떠한 내용과 형태의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상호작용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사회관계를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 집단보다는 개인 간의 사회관계를 의미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두 차원의 역학적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행위의 주체자인 자아 또는 개인이며 다른 하나의 요소는 행위자가 처한 상황조건이다. 그러나 행위자는 단순한 구성요소이기 보다는 행위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행위자는 신체적 개체가 아니라 사회화된 행위자로서 상호작용의 중심을 이룬다.

피슨스는 인간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기위해 단위행위라는 개념체계

11)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pp. 282-286.

를 개발했다. 단위행위는 상호작용의 주체자인 행위자 actor, 행위자가 처한 물리적, 사회 문화적 상황조건 situational condition, 행위자가 지향하는 행위의 목표 goal,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행위자가 처한 물리적, 사회문화적 상호조건 가운데서 동원하는 수단들 means로 구성된다. 또한 나아가 이러한 단위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행위자 인데 그는 행위자를 인격체계로 보았다. 인간에게는 이 인격체계가 있기 때문에 자아의 상황판단 능력과 사회적 상황을 평가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¹²⁾ 따라서 공동체 연구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는 인간관계, 즉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개인이 동기도 중요 하지만 상호작용의 상황조건¹³⁾도 공동체의 제반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문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간관계의 망과 조직, 그리고 사회체계 및 제도를 구성하는 사회과정(social process)로서 공동체를 형성유지 시키는 과정으로 잠정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

제도/제도화

파슨스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화 과정을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라 하였다.

사회관계는 거의 모든 제도화된 행위유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물질이나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교환, 상호간의 느낌이나 정서의 공유, 대상에 대한 심미적 판단의 일치, 다양한 상호작용의 내용이 유형화 된다 그리고 제도화된 행위양식은 주관적 상황정의에 의해 끈임 없이 수정 보완 된다. 조선시대 초기의 남녀공동 재산의 분배, 딸에게도 동등한 비율의 토지와 노비를 분배하는 제도, 남편의 처가살이¹⁴⁾ 등은 남 성중심의 지배사회에서 남성이나 일반사회대중 들에게 무의식

12)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 한가 pp. 171-172. 재인용.

13) 자아의 행위 동기는 거의 전적으로 주어진 상황조건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화 된다 하나의 실례를 들면 상황조건 즉 시공간적 영향으로 인해 혹은 행위자(남성이나 시어머니) 사회에서 차츰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 좋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답습 및 사회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가사를 분담하거나 손주들을 돌보아준다거나 계속적으로 학업에 증진하게 하며 심지어 며느리를 유학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아온다. 물론 이 경우 시어머니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행동할 수 도 있으나 이는 과거생활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로서 현대사회에서 이미 시어머니들이 변화하고 새로운 시대관습을 받아들이고 제도화 되어가는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14) KBS 역사 스페셜, 조선시대여성은 어떻게 살았는가, 2002. 9. 20.

적으로 일상화되었으며 오랜 세월동안 가부장제도의 악습으로 자리 잡아서 남녀 불평등 사회를 지속시켰다고 하겠다.

공동체 성원들의 상호작용이 <습관화 habitualization>되는 과정을 <제도화>라 한다. 인간은 행위가 발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범들 중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습관화된 규범체계는 전통이나 전례라는 일반화된 행위원칙으로 정당화 된다¹⁵⁾. 왜 여성들은 과거의 억압, 불평등, 관습, 인습의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 하였는가 예를 들면 열녀, 순절, 전족 등은 사회가 이들에게 표창하고 3대에 이르기 까지 열녀 효녀들을 칭송함으로써 여성들은 자기목숨하나 희생함으로써 가문에 영광을 가져오는 이 악법적인 제도를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기꺼이 죽음을 다투어 택하기도 하였다. 16) 이와 같이 어떠한 심리적 부담 없이,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같은 습관을 계속하게 되고, 다양한 습관적 행위가 행위자들 간에 호혜적 관계로 정착되면 사회제도로 정착 된다¹⁷⁾ 가부장제도는 이러한 습관이 동시대 여성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찬미되어짐으로서 더욱 굳건한 자리를 지켜나갔다고 하겠다.

제도는 어떻게 변화 하는가

제도화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당연시하는 습관으로 물화 된다. 물화 (reification)란 오랫동안 관습화되어 온 공동체의 제도들은 외적 환경변이에도 안정을 유지하는 자율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의 전반적인 변화는 혁명적인 외적 충격 없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공동체인 기틀인 제도가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제도변화는 상호작용을 통한 제도화 과정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제도에 대해 말하면 여성문제와 관련한 각종 제도여하에 따라 당시대 여성들은 억압받기도하고 여성의 권한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조선시대 중기-후기의 여성차별과 여성이 받아야 했던 각종 사회제도는 봉건시대의 폐쇄적인 수절, 정절 강요로 관습화되어 비인간적인 억압제도들을 양성케 하였으며, 또한 참정권제도, 모성보호제도, 남녀 차별 철폐제도, 호주제도 등은 여성들

15)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p.235. 재인용.

16) 하영애, “5.4 운동 시기 중국여성운동의 연구”,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5. 8.10. p.9.

17) Berger and Luckmann, 1967, p.154 ;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p.235. 재인용.

이 권한을 발휘하고 의식변화와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꾸준한 노력한 결과로 이루어진 양호한 제도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또한 시대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존재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한다. 또한 하나의 기존제도 혹은 신제도는 기타 기존제도 혹은 신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그 제도로 하여금 본래의 성질과 작용에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¹⁸⁾

특수한 제도라 할 수 있는 모권제와 부권제(가부장제)에 관해서 공동체와의 변화차원에서 논의 해보자

Ⅲ. 공동체의 변화와 모권제 및 부권제 와해

인류는 대체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시작하여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단계를 거쳐 진화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평양 역포구 대현동 동굴에서 호모 에릭투스에 속하는 역포인 에서부터 호모사피엔스(네안테르탈인)에 속하는 덕천인과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계인 승리산인에 이르기까지 인류 진화 단계를 보여주는 화석인골 등이 발견되었다.¹⁹⁾

공동체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시작된다. 인류사회의 초기생활은 성역할이 분화되지 않은 공동생활을 했으며 많이 모자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협력하며 공동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흔히 우리는 “이전에는 여성이 지배하는 모권제 사회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으며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사회에서는 “모권제 사회”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이 모권제 사회의 존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하늘의 절반의 성에 대한 이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모권사회가 어떻게 출현이 가능한가는 여성과 남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모권제의 제도화로 가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화 과정은 전통적인 사회관습과 수렵과 채집 및 농경의 생태학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8) 제도는 조직구조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제도는 사회대중의 반응여부(베도를 베척하느냐, 받아 들이느냐)에 따라 폐지되기도 하고 채택되기도 한다, 하영애, 『대만지방자치 선거제도 에 관한 연구』, 삼영사, 1991. 제1장.

19) 김선주, “고교자료를 통해 본 원시 고대의 여성,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 연구실 지음, 『우리 여성의 역사』, 도서출판 청년사: 2004. 9. p. 32.

1. 모권제 논의

19세기경에 인류는 모계에서 부계제로 진화되었다고 하며, 진화론적 발전단계로 설명되고 있다 1861년경 바호펜 Ba chofen 모권론 연구에서 인류초기 구속 없는 성생활을 함으로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모계만을 따지게 되고, 그 결과 여성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어버이로서 존경받게 되어 여성 통치의 모권사회를 이루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모르간 Morgan 은 『고대 사회』에서 고대 아메리카 인디언이 이로코이 족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저서에서, 일반적으로 모계적 혈통이 부계적 혈통에 선행했으며 모계에서 부계제로의 변화는 재산이 증가하고 또 아버지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고 제시 한다. 또한 인류는 야만-미개-문명 의 3단계를 거쳐 진화했으며 혼인의 형태도 사회의 진화에 따라 난혼- 푸날루아혼- 대우혼-일부일처제의 단혼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엥겔스Engels는 1891년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에서 이러한 학설을 계승하여 야만시대 인류는 집단혼으로 모계사회만이 확인 가능했기 때문에 모계사회를 이루었고, 미개사회가 되면서 고정되는 대우혼으로 대체되었지만, 아직은 모계 씨족사회로서 재산은 남자의 여자형제 후계자에게로 상속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명사회에 이르러 사유재산과 함께 결혼제도도 일부일처제로 바뀌면서 부계제가 확정되고 여성은 자녀생산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²⁰⁾ 이해를 돕기 위해 가족형태에는 혈연제 가족, 푸날루아 가족, 대우혼 가족, 일부일처제 가족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²¹⁾

20) 김선주, “고고 자료를 통해 본 원시 . 고대의 여성”, pp.30-31.

21) 가족의 단계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혈연제 가족형태이다. 이 가족 형태에서는 부모의 세대와 자식의 세대간의 성교는 금지되며 동일한 세대에 속한 성원은 상호간의 남편이자 아내이다. 둘째, 푸날루아 가족에서는 남매간의 성교가 금지되고 특히 모계에 속하는 남녀간의 결혼이 금지 되었다. 혈연가족에서 푸날루아 가족으로의 발전은 우생학적인 자연도태 법칙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 가족은 가까운 촌수의 자매들이 한 가정의 핵을 구성하고 이들은 그 가정에 속한 남자들(형제가 아닌 남자들)을 공동 소유했다. 이러한 남편들은 서로를 치밀한 동반자, 혹은 배우자라는 의미에서 ‘푸날루아(Punalua)’라고 불려졌다. 남자 형제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매들을 제외한 다수의 여성을 공동의 아내로 가지고 있었으며, 아내들 끼리 ‘푸날루아’ 라고 불렀다. 이 푸날루아 가족의 특성은 일정한 가족 범주 내에서의 아내와 남편들의 공유이다.

셋째가족 형태는 대우혼 가족이다. 부족이 발달하고, 금혼의 대상인 ‘형제’ ‘자매’의 계층이 불어남에 따라 각각의 남성과 각각의 여성은 많은 여자와 많은 남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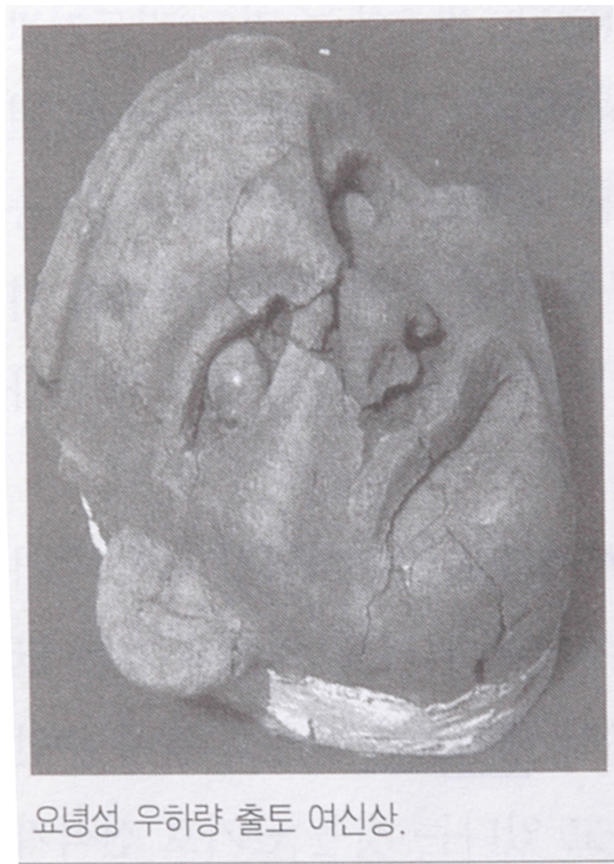
백남운 역시 1973년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신석기 시대의 무계급 씨족사회에서 혈연가족(근혼)-푸날루아혼-대우혼 가족으로 가족형태가 바뀌는 것을 주장했다. 북한에서도 구석기는 원시무리사회, 신석기를 모계사회로 청동기는 부계 씨족사회로 파악하였다. 김선주는 “고고자료를 통해서본 원시, 고대의 여성”에서 신석기 문명혁명의 주인공을 여성으로 평가대리고 있다. 그는 “1만 2천 년 전쯤 신석기 시대 농경은 식량채집 단계에서 식량생산 단계의 질적 변화를 가져와 인류최초의 혁명인 신석기혁명을 일으켰다. 그런데 농경의 실마리는 구석기 시대여성들이 담당했던 채집활동에서 시작 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인류최초의 혁명의 주인공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고고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유물에서 나온 뼈, 바늘, 바늘통 및 토기, 의류 등 이 원시고대의 여성의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많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은 ‘지모신’으로 숭상되었는데 이는 중국 요녕성 여러 곳에서 출토한 여성상과 일본 죠몽 시대 출토한 여성 토우상등을 근거로 임신과 출산담당자로서의 여성이 생산과 번식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상징적 존재로 부각되었다고 제시한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에는 여성의 평균연령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당시 구석기 시대에 사람의 수명은 40세를 넘기지를

본처와 본부를 택하게 된다. 이 관계는 남녀 어느 쪽에서건 결혼 관계가 쉽게 끊어질 수 있으며, 별거 후에도 자녀는 이전처럼 여전히 어머니에게만 속한다. 그러나 대우형 가족은 약하고 불안정한 것이어서 독립가족은 필요불가결한, 혹은 바람직한 형태로 만들 수 없었고 결코 이전부터 내려온 공동체적 가족을 파괴 시킬 수도 없었다. 공동체적 가족이 여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우세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부친은 여전히 확실히 인정될 수 없었으므로 모친이 대신 존경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이 발전하면서 이 공동체적 가족은 일부일처제로 변화되었다. 즉 가족의 사육과 노예제도가 이전에는 생각지 못한 부의 원천이 되었으며, 그것은 가족의 소유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부가 가족의 사적 소유로 전환되고 증대하기 시작하면서 대우혼과 모권제 부족에 기초한 사회에 일격을 가 하였다. 가족의 소유자인 남성이 죽으면 그의 가족들은 우성적으로 그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그의 자매의 자녀, 혹은 그의 이모들의 자녀들에게 상속되곤 하였다. 그의 친 자녀들은 상속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적 소유의 발전은 이와 같은 과도기적 상황을 타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부계중심의 일부일처제가 이루어졌다. 심정인, “여성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여성 1, 허위의식과 여성의 현실, 창작과 비평사, 1985. 12. 15. pp. 209-210; 정현백, “새로 쓰는 여성의 역사 원시. 고대편 -모권제 논의를 중심으로, 여성 1. 변혁기의 여성들, 창작과 비평사, 1990. 4. 재판, pp. 256-257.

못했으며 남성은 약 40세, 여성은 약 33세를 나타내어 여성보다 남성의 수명이 더 길었다. 신장은 성인 남성이 약 155 센치메타 반면, 성인 여성의 신장은 약 144 센치메타 로서 남성과 여성의 신장차이는 약 11 센치메타 로 구석기 시대부터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²²⁾



자료출처 : 김선주, 고고자료를 통해 본 원시·고대의 여성 p.40

22) 김선주, “고고 자료를 통해 본 원시. 고대의 여성”, p.34.



자료출처 : 김선주, 고고자료를 통해 본 원시·고대의 여성 p.41

신라시대에서는 여왕들이 탄생하였고 남성보다 더 우위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여왕시대는 단지 선덕여왕(632-647)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진덕여왕(647-654)대를 이어 240여년 뒤인 진성여왕(887-897)의 시대로 까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신라시대의 최대의 왕릉인 98호분 표고형쌍분(票高形雙墳)의 기록을 보면 국왕보다 왕비의 묘가 규모나 장식 모든 면에서 더 화려하고 성대히 장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우위와 여성의 제사장적(祭司長)적 왕자의 신분을 설명할 수 있다. 23) 신라여왕들이 이 처럼 한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신라만이 가질 수 있었던 여성과 남성의 평등문화에 기인한다고 하겠다.24)

근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변화는 자본주의적 산업구조의 확산과 교통기

23) KBS 역사스페셜, 왜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나, 2002. 8.20

24) 신라여왕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물론 전임 왕 들의 슬하에 아들이 없기도 했으나 여왕들의 통치력 또한 남성 국왕에 뒤지지 않은 용맹과 과단성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선덕여왕의 후임 진덕여왕은 자신의 여왕즉위에 대한 ‘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덕여왕은 이를 진압하고 당당히 왕위계승을 하였다. 또한 진덕여왕은 외교에서도 통치력을 발휘하여 군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가 하면 중국과의 ‘라.당 외교’를 구축하여 당나라에 청병(병력을 요청) 하여 백제를 물리치는 등 남자 왕 이상의 통치력을 발휘하여 신라를 빛낸 인물로 기록 되고 있다. 하영애, “신라시대 여왕들의 통치스타일 비교분석”, 『밝은사회운동과 여성』, 범한서적 출판: 2005. 2. pp.308-309.

술의 발달 이었다. 18세기 서구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9세기 초에 절정을 이루면서 범세계적 근대화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런 시공간의 변화는 공동체의 개념에 중요한 지리적 영역이 모호해 진다. 모권제사회는 점차 와해되면서 남성중심의 사회로 힘이 쏠리게 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자료를 통해 우리는 여성이 고대 사회, 신석기 시대 혹은 신라시대를 통해 남성우위에서 여성의 역할을 발휘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왜 여성들은 모권제를 계속유지하지 못하고 부권제 사회로 넘기게 되었는가?

심정인은 부권제사회의 출현은 노동과 관련되어있다고 제시한다. 그는 여성중속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중시하며 ‘모권의 전복은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라고 주장한다.

“부의 증대에 비례하여 한편으로는 가족 내에서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상속의 전통적인 질서를 타도하기 위해서 이 강화된 지위를 이용하려는 충동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것은 모권에 따른 가계(家系)가 인정되는 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모권은 타도되어야 하고 또 타도되었다. ----이런 혁명은 한 부족의 전 구성원 중 어느 누구하나 침해 하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성원의 자식들은 그들의 아버지 부족에 양도되어 있음으로 그녀의 부족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는 단지 하나의 법령으로 족했다. 그리하여 여성혈통에 의한 가계승인과 상속의 모권적 법령은 타도되고 남성혈통에 의한 상속의 부권적 법령이 이를 대신 하였다. 이러한 혁명이 문명인들 사이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역사 이전의 시대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집된 수많은 모권의 흔적들로서 증명되고 남는다---모권의 전복은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였다.”²⁵⁾

다른 하나는 사유재산과 일부일처제 가족과의 관계에서 부권제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25) 심정인“여성운동의 방향 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여성』 1, 허위의식과 여성의 현실 창작과 비평사, 1985. p.207.

부의 증대(사유재산의 발전)와 더불어 역사의 어느 순간엔가 모권 혹은 모권제의 전복이 일어나고 여성의 종속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와 더불어 그 가족 형태는 일부일처제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 또한 계급의 발생과 일부일처제 가족의 발생 (여성종속의 발생과정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유재산의 발생은 계급의 발생을 가져왔으며 이는 한편 일부일처제 가족을 발생하였다.

일부일처제적 가족과 사유재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유재산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인간 노동력은 그 노동력의 소유자 본인 아니 다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았지만 사유재산제 발생과 더불어 이제 인간의 노동력은 더 이상 노동력의 소유자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결국 사유재산제의 발생과 더불어 인간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여성의 노동 역시 타인의 지배 하에서 이루어졌다. 즉 상속자의 확보와 피지배계급의 노동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메카니즘이 일부일처제적 가부장제 가족제도였다.

혈연가족에서 대우혼까지의 발전이 우생학적 경로였다면 대우혼에서 일부일처제로의 전환은 사유재산의 발전에 따른 사회제도인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이 종속적 상황을 상징하는 가부장제적 일부일처제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남성에게 일부일처제가 필요했던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신의 확실한 자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의 정절이 강요되었으며 여성은 마치 노예와 같이 남성에게 예속되었다. 결국 사유재산의 발생과정은 계급의 발생과정인 동시에 가부장제적 가족제도의 발생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다.²⁶⁾ 모권제는 생산력 증가와 사회변화에서 남성에게 권력을 이양하게 되었고 금속무기를 사용한 전쟁 등을 통해 무력적인 힘에 대한 가치가 부각 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 국가의 핵심 분야에서 경제적 활동가나 권력가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고대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것과는 다르게 생산에 있어서 여성이 더욱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고 있다. 조혜정은 『한국의 여성과 남성』에서 “식량 획득의 70-80% 는 여성

26) 심정인, “여성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여성 1, 허위의식과 여성의 현실, 창작과 비평사, 1985. 12. 15. p. 210.

의 채집과 작은 짐승 수렵에 의해서 충당되며 남성이 가끔 가져오는 식량(고기)은 ‘귀한’ 음식물로 취급되나 그것이 없다고 사회의 존속에 위험이 온다고 보기는 힘들다” 고²⁷⁾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사회는 분화가 적고 전문적 정치지도자 등의 역할도 없으며 남녀가 모두 각자의 자율성을 상당히 누린 사회이었다.

또한 김선주는 ‘여성이 담당했던 채집은 사냥(수렵)에 비해 오히려 안전된 식량을 제공했으며, 또한 채집은 일정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요구해 도구 발명 등 인류문명을 발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인류최초의 혁명의 주인공은 여성이다²⁸⁾ 고 제시함으로써 ‘남자는 위대한 사냥꾼’, ‘여자는 조용한 채집가’²⁹⁾에서 혁명의 주역을 여성으로, 그리고 여성의 채집식량의 중요성을 새롭게 제기했다. 이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두 가지 목적 중의 하나인 생존을 위한 욕구충족의 실권을 여성이 가지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제시되었다고 하겠다.

강대기 교수는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관점에서 설명 될 수 없는 새로운 측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공동체 패러다임의 변화’로 분석하고 있으며 힐러리의 공동체의 세 차원을 다시 분화시켜 시공간차원의 변화, 사회적 차원의 변화, 문화적 차원의 변화로 제시 하고 있다.

하비는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시간단축은 곧 공간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의 시공간 압축 (time-space compression)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객관적 성질들이 통신기술에 의해 급진적으로 변하여 생활세계의 표현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하며 ‘지구촌의 축소’에 대해 말한다.³⁰⁾

공동체 구성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³¹⁾는 특정 장소에서 반복된 오랜 시간의 상

27) 조혜정은 Slocum. S.(1975), "Women the Gatherer : Male Bias in Anthropologist," Toward an Anthropology of Women, ed. R. Reither,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와 Martin, M.K. and B. Voorhies (1975), Femail of the Species, New York: Cloumbia University Press. 의 참고자료를 인용제시하였다.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p.235.

28) 김선주, “고고 자료를 통해 본 원시·고대의 여성” p.29.

29) “인간 진화에 있어서의 성” 마가렛 L. 앤더슨, 이동원, 김미숙 등 역, 『성과 사회학』 pp. 66-70.

30) 강대기, “패러다임 변화와 공동체의 통합개념 구축”, 송실대 농촌사회학, p. 5.재인용.

31) B. Misztal, Trust in Modern Societies : The Search for the Bases of Social Order, Cambridge UK: Polity Press : 1996, pp.67-69.

호작용의 결과이다. 시공간 압축은 바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면에서 통신기술의 발달은 공동체 변화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다. 시공간은 압축될 뿐만 아니라 서로 분리된 상태로 사회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시공간의 분리 중 가장 극적인 변화는 사이버 공간의 출현이다. 사이버공동체에 대해서는 주목적이 아니므로 설명을 줄이기로 한다

2. 부권제, 가부장제와 여성억압

고대사회에서의 가축과 채집이 남성과 여성의 중요한 업무와 역할로 구분되어 왔던 여성중심의 모계사회는 알려진 바와 같이 여성이 70-80%의 생필품을 전담하게 되었고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여성은 자질구레하나 실제적인 일을 많이 담당하였고 나름대로의 힘(권한)을 발휘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교통, 통신시설의 발전과 시공간의 압축으로 산업사회가 근대사회의 생활세계로 바뀌면서 점차 남성중심의 사회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사회의 행위 주체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었다는 주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 생활조직체계에서 남성은 힘(육체적인 힘, 권리)을 강화하여 남성 중심 사회를 정착시키고 가부장제라는 새 제도로 고착 시켰다.

다양한 여성문제의 개념을 가부장제라는 틀로 묶은 것은 케이트 밀레트의 ‘성의 정치학’(1971)을 통해서였다. 밀레트는 여성을 억압하는 힘이 가부장제에서 온다고 정리하면서 가부장제는 모든 사회관계에 내재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부장제는 카스트와 계급, 봉건제와 관료제 등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을 포괄한다. 물론 역사적 시기와 장소에 따라 유형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³²⁾ 마르크스 혹은 사회주의 여권론은 여성억압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구조 및 가부장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한다. 급진주의 여권론자들 역시 가부장제 그 자체를 여성억압이 성립될 수 있는 일차적 원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부장제란 무엇인가 ?

32) 이정옥, “1,2,3 차로 진보 거듭하는 여성의 ‘존재선언’”, 현대사상 키워드 60-지성인으로 거듭나기, 신동아 2004년 신년호 특별부록, pp. 188-189.; 줄리에트 미첼, “여성의 지위”, P. 스트렐/A.재거 편저, 신인령 역,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풀빛, 1983. pp. 242-243

가부장제란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를 뜻한다. 그 지배의 양상은 단순한 동물 세계에서의 지배현상과는 달라서 사회제도와 문화적 차원의 기제를 매개로 한다.³³⁾ 우리나라의 가부장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대립되어 주목을 끌어왔다. 하나는 “한국여성들의 권한은 이미 너무 세어서 여권신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모권이 강했다는 점, 여성이 결혼 후에도 성(姓)을 남편의 성으로 같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여성이 경제권(소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 여성들은 극히 억압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왔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전통적인 칠거지악, 재가 금지법, 정절의 규범과 호주제의 존속(최근에 폐지되었지만)을 강조 해 왔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나름대로 각 각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는 그 만큼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부장제는 통일신라 때부터 제기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조선시대를 중점으로 다루기로 한다.

여성의 행동상의 규제가 수절과 정절을 중심으로 비인간적인 관습으로 발전되는 현상은 여러 연구에서 알 수가 있다. 정절의 핵을 이루는 과부재가금지의 관습은 1474년 경국대전에 법규화 되어 정절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켰다. ‘몰락한 양반층에서는 열녀가 난다는 것이 가문을 일으키는 길이 되기도 하였고, 천인층에서는 신분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열녀의 행태는 더욱 과격해지고 남편이 죽으면 자살을 하거나와 외방 남자의 손을 잡었다고 투신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여성으로 하여금 살신케 하는 정절 이데올로기는 한편 여성억압의 극단적인 지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여성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였음을 알려준다. “아들을 낳으면 충신, 딸을 낳으면 열녀”라는 속어에서 열녀가 사회적으로 크게 칭송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여성적 삶의 사회적 조건은 ‘칠거지악’이라는 처벌의 조항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여자의 일곱 가지 내쫓김이 있으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쫓

33)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p.58.

으며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내쫓으며 음란하거나 질투하거나 내쫓으며---” 문장의 의미대로 당시 여성의 목표는 시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견디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고달프고 억압된 여성의 생활을 시집살이의 연륜이 경과되면서 점차 자식들로부터 응분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자궁가족을 통해서 가능했다. 울프(wolf)는 한국과 비슷한 유교적 전통을 가진 중국을 연구한 후, 중국여성의 삶에 성취적, 획득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궁 가족 uterine family’의 개념을 소개했다. 남편의 집에 시집온 젊은 여성은 점차 자신이 낳은 핏줄을 집안에 더해가면서 그들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간다. 자궁가족 내에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 며느리가 포함되며 남편은 별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주목할 점은 이 자궁가족은 구성원에게 공식적 가족 못지않게 구속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울프는 유교적 가부장제가 여성을 상당히 흡수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자궁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며 여성의 노후의 이러한 보상은 여성으로 하여금 억압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즉, 세대간의 차별이 성적 차별을 상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조혜정 교수는 한국가부장제의 유형을 구조적 특성, 성역할, 지배의 기제, 권위의 특성, 인성의 특성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조선중기, 조선조말-1960년대 그리고 1960년대 이후와 후기산업사회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³⁴⁾ 지면관계로 구체적 설명을 부연하지 못하지만 이 표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제도를 이해하는데 함축적인 묘사를 하고 있으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1960년대 이후 새로운 가부장제는 남성이 경제적 활동을 독점하고 여성은 가정에 머물면서 정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서구 가부장제의 자본주의적 변형을 경제적 기반의 변화와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본 해밀턴 1982은 이를 잘 분석하고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봉건제의 물질적인 기반이 무너지고 공장제 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남성의 노동은 사회적인 임금노동으로, 여성의 노동은 무보수 가사노동으로 이분화 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중산층 여성들은 부와 지위의 상징적인 지표이자 정서적인 인간관계의 전문가로서 ‘가정전담주부’라는 특수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즉, 전문직 직업 활동에 집중하게 된 남편을 쉬게 하

34)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p.149.

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전념하는 가정의 관리자인 주부중심의 핵가족이 현대의 이상적 가족으로 대두되었다.

일제시기를 거쳐 현대사회에 형성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최근 낭만적 사랑을 강조한 ‘성공하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형태로 발전 된다. 최근 30여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러한 핵가족주의 사회를 상당히 보편화시켰으며 그 존속의 기제도 전통적인 유형이라기보다는 현대적인 특징을 두드러지게 띠게 되었다.

조선조 가부장제는 공식적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을 극도로 억압해 왔으나 다른 한편 다수의 여성은 가부장의 어머니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전통적 가부장제는 일제시대를 전후한 역사적 혼란기를 통하여 변화하였다. 공식적 영역은 축소되고 남성적 영역이 줄어들고 어머니의 실질적 권한이 확대된다. 모중심의 가족의 성격은 두드러지나 이념상으로는 여전히 삼종지도의 규범과 아버지의 상징적 권위가 강조되어왔다.

조선조의 가부장제는 공식적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을 극도로 억압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다수의 여성은 ‘가부장의 어머니’로서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왔다. 안채의 주인으로서, 정승을 낳은 어머니(최정승 과 어머니) 그리고 명분사회를 뒷받침한 주요 행위자로서 여성은 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인정을 받아왔던 것이다. 모계사회에서는 ‘여성 중심적 사회’가 형성되어 남성보다 여성이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인류사회는 짧은 모계사회의 쇠락을 거쳐 긴 세월을 ‘남성 중심적 사회’인 가부장제도가 지배하여왔다. 삼라만상은 우주의 섭리에 의해 변화하고 영원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오토피아의 저자 조영식 박사의 대명제와 같이 짧은 모계사회를 가졌던 여성 중심적 시대를 거쳐 남성 중심적 시대의 장구한 역사는 모든 영역에서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억압이 있었다.

여성은 가부장주의의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봉건주의의 병폐가 갖고 있는 관습과 인습으로부터 수많은 억압을 받았고, 현대사회에서도 각종 성차별을 비롯하여, 형식적평등과 실질적 평등에서 야기 되는 갖가지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 제도로부터 억압과 차별을 받아왔다.³⁵⁾

35) 하영애, “권력구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김정숙 편, 여성과 정치,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 1992 : 河暎愛, “當代韓國女性參與政治與社會活動的 研究”, 北京大學中外婦女問題研究中心香港珠海書院亞洲研究中心 공동주최, <亞洲婦女問題的檢視與展望>, 國際學術研討會, 2004. 12.17- 12.20. 참고

이상의 여러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억압의 근본적인 문제가 가부장제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한 성(性)의 중심적 지배사회에서 벗어나 남녀가 조화지향공동체로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새 가치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원시사회에 이어 고대사회 신라시대 까지 의 여성은 상당한 위치에 있었으나 통일신라시대부터 여성에 대한 유교관습이 강화되었고 조선시대 중기부터 여성은 인격체적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 효부, 열녀제도 등의 기제들이 유교적 사회풍습과 더불어 여성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가문을 빛내기 위한 여성들의 순고한 죽음은 인습-지속적인 습관-제도화로 강화되면서 국가에서는 표창으로 까지 고착화 시키니 폐쇄주의 국가에서 여성의 삶은 비인간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관습이나 상황들은 타 국가에서도 대동소이하였다. 일본에서 여성은 ‘주인님’으로 호칭하며 남편의 노예로서 생활하였고,³⁶⁾ 중국에서도 절부, 삼종사덕(三從四德)의 제도,³⁷⁾ 봉건사회의 전족 등 여성생활은 모두 인간적인 대우, 인격적인 대우와는 거리가 먼 생활이었다. 그러면 당시 이러한 여성들의 억압이나 불평등한 생활은 왜 바뀌지 못 하였는가? 이는 아이러니 하게도 그 당시의 제도, 자궁가족 uterine family 정절 이데올로기 등이 중년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의 허물을 덮어주고 심지어 축첩을 일삼는 남편을 두둔해 주는 상황조건으로 문화적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성은 당시 사회풍조인 시대사조에 따라 여성의 삶은 제도개선을 통해 변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더 억압받는 상황이 전개되어 여성과 남성의 조화 공동체생활은 점차 와해 되어가기 시작했다고 하겠다.

36) 가이 후사노, “가족과 사회에서의 평화를 위한 여성NGO 들의 연대”, 밝은사회 한국본부 여성클럽, 한. 중 여성 교류협회 공동주최, ‘99 서울NGO 세계대회 여성분과 워크샵, 가정평화와 밝은사회를 위한 여성NGO의 역할과 연대, 1999, 10, 12, p. 60.

37) 중국여성은 한국여성과 동일한 3 從之德 외에 4가지 여성이 지켜야할 덕목을 명시 하였으니 婦德, 婦容, 婦功, 婦言이 있으며 또한 “女子無才便是德”이라 하여 여자는 지식 교양 사리판단력, 문제해결능력, 능력이 없어야 德이 있다고 인식 하고 있다, 하영애 “5.4 운동 시기 중국여성운동의 연구”,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5. 8. 10.

3. 공동체의 변화와 가부장제의 와해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동체의 문화적 사회적 차원으로의 전환은 여성들로 하여금 의식개혁, 의식혁명을 통해 여성의 삶에 변신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개인차원을 넘어 여성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여성들의 의식변화는 현대 가부장제도의 와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관해 몇 가지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의식변화는 내재적 외재적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외재적 영향으로는 세계여성대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99 서울 NGO 세계대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내재적 영향으로는 각 국 GO와 여성NGO들이 각 국가에서 '북경행동강령 12개 항목'³⁸⁾ 등 제반활동에 대한 이행과, 여성운동의 새로운 방향설정, 각 종 NGO의 활동과 학계, 여성단체, 사회대중의 여론을 끌어냄으로서 각 국가에서 여성들의 의식개혁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산물이라고 하겠다.

둘째,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문화교류 및 연대활동과 제도개선의 영향.

교육만큼 인간의 인식과 의식을 바꾸는데 중요한 기제는 없다. 여성들이 오늘의 발전이 있기까지는 앞에서 살펴본 대외적 영향 외에 교육, 각종세미나 참여 등을 통한 의식혁명은 더욱 직간접적으로 여성들의 의지작용을 불러일으켜 가정 내는 물론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였다.

동북아 여성들은 국제세미나, 국제포럼, 또는 각종 교류활동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교환하며 세 나라 여성들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등 여성들의 의식개혁, 의식혁명을 통한 자아발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중국 북경대학 부녀연구중심과 이화여대, 숙명

38) 북경행동강령은 총6장 361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은 임무의 기술, 제2장 세계적 구도, 제3장 주요관심분야, 제4장 전략목표와 행동, 제5장 제도적 조치, 제6장 재정적 조치이다. 12개 관심분야는 1.여성과 빈곤, 2.여성의 교육과 훈련, 3.여성과 보건, 4.여성에 대한 폭력, 5. 여성과 무력분쟁, 6. 여성과 경제, 7.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8.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9. 여성의 인권, 10. 여성과 미디어, 11. 여성과 환경, 12. 여아.

유엔 여성지위 위원회 50년과 한국 활동 10년, 한국여성개발원발행, 1997. 12. pp. 185-191 ; 정책자료 95-7,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 참가보고서(1995.9.4-15, 북경), 정무장관 (제2)실 발행.

여대가 공동으로 매년 서울과 북경에서 번갈아 학술활동과 세미나를 개최하며 최근에는 교환교수 제를 실시하고 있다. 북경대학에서 개최한 개교 100주년 기념 [21세기 여성발전 국제학술회의], [‘99 서울NGO 세계대회 여성분과 워크 샵], 한국여성부가 개최한 [한중일 여성지도자 회의], [한-중 여성국제세미나], [아태 지역의 여성과 정치], [한-일 양국여성지도자교류세미나]를 비롯하여 최근에 [한중일 여성교류대회] 등의 연대활동 속에서 각종 세미나, 워크샵, 포럼 등을 통해 동북아 여성들은 가까우면서도 멀었던 동북아 각 국가들과 여성관련 각 분야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며 서로가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한 여성의 의식변화는 여성들에게 연대의식을 심고 연대활동을 가지게 하였다. 연대라는 가치는 자유와 평등보다도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연대가 가능한 것은 인간 삶의 공통성에 기인 한다. 인간으로서 공동체함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연민을 느끼고 연대를 이루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인간적 연대(strong human bond)가 되어야 한다. 주 동북아여성들에게 정치참여와 여성지위향상에 가장 큰 성취를 갖게 하였는데 예를 들면 ‘여성당선할당제도’는 대만여성들로 하여금 정치권력에 10명의 장관을 발탁케 하여 여성정치참여에 있어 동북아의 ‘신기원’을 낳게 하였으며, 한국에도 [여성당선 할당제 연대]를 구성하고 학계, 여성계, 사회 각 분야의 협의를 이끌어 내어 여성당선 할당 제도를 시행하였고 정치참여자들에게 대한 후원 회비를 모아주는 등 정당법에 비례대표제 30%를 도입하여 여성 국회의원 5.9%로 끌어 올리는 쾌거를 가져왔다.³⁹⁾

셋째, 여성의 경제사회의 참여와 남여의 역할 변동

다른 한편 가부장제도의 와해는 한정된 공간에서 교통, 통신과 과학기술의 발

39) “동북아 최초의 여성부통령 : 대만 총통선거와 여성정치참여의 신기원”, 하영애, 밝은사회 운동과 여성, 2005, 2. 제17장 참고; 여성당선할당제도란 중화민국 헌법 134조에 명시되어있는 세계 유일의 제도로서 모든 선거에서 일정한 비율의 당선정수를 여성들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과 남성이 각종 공직의 경선에 있어서 입후보 하여 똑같이 투표에 참여하고, 득표결과를 계산할 때 여성은 여성끼리 비교하여 최다득표자를 뽑는데 이 경우 여성에게 일정한 당선숫자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하영애, 대만지방자치선거제도, 삼영사, 1991.3. 제2장, 補論 -한국지방자치선거에 대하여 .참고.

달로 인한 남녀의 역할 변동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남성들이 IMF의 영향의 실업률 증가, 자아반 타아반의 조기퇴직 제도, 가정해체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 가부장의 권위하락 등 사회적 상황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와는 다르게 여성들은 정규학교 교육에서의 높은 교육수준의 증가, 각종 사회교육의 참여와 수혜의 증가를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전문직 여성들의 수도 점차 늘어가는 사회의 변화상황을 겪게되어 여성지위가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표 2>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율 추이에 따르면, 한국여성의 경제참여율은 1985년에 41.9%였는데 10년 후인 1995년에는 48.3%에 달함으로 6.4% 증가하였다. 반대로 같은 시기에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의 비율은 10년 사이 겨우 4.2%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1년과 2003년도에는 이보다 3-4%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0.1%가 낮아졌을 뿐이다.

<표 2>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율 추이

단위 %

성별	1980년	1985년	1990년	1993년	1994년	1995년	2001년	2002년
남성	76.4	72.3	74.0	75.8	76.4	76.5	73.3	73.8
여성	42.8	41.9	47.0	47.2	47.9	48.3	48.1	47.9

자료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년 보, 1995년

여성의 이러한 양호한 취업증가율은 여성노동력의 고학력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분리할 수 가없다. <표3> 경제활동인구의 학력을 비교해보면 1980년-1995년 기간 중등이하의 학력은 81.7%에서 48.4%까지 줄어들었다. 고등학교학력자는 15.7%에서 큰 폭인 38.6% 상승하였고 대학졸업학력자도 2.6%에서 13.0% 높아졌다.

<표 3>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학력 구성비교표

단위 : %

성별	중졸이하 총수	비율	고 졸 총 수	비율	대 졸 총 수	비율	경제활동참 여인구
여성	3,978	48.4 %	3,177	8.6%	1,069	13.0%	8,224
남성	3,715	60.6%	5,684	6.8%	2,755	22.7%	12,153
계	7,693	37.8%	8,861	3.5%	3,824	18.8%	20,377

자료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년 보 1995년.

고학력자가 많아짐과 더불어 여성들의 능력향상과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여성意識의 변화, 가족부양자로서의 여성의 참여 등 갖가지 상황여건은 여성들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경제일선에 참여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MBC 보도에 따르면, 여성의 한 달 수입이 8,000 만원, 1억 원 등을 올리고 있는가 하면 어느 젊은 여성은 매월 4억 5천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⁴⁰⁾ 이는 보편적인 화이트칼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이다. 이 두 여사장은 모두 남편의 실직으로 본인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으나 지금은 자신의 취향을 살리고 사회적 안목도 생겨서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 경우이고, 4억이상 수입의 주인공은 20대의 미혼이라 더욱 미래지향적이다.

넷째, 지나친 권위주의와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의 집착에 의한 자아상실

부권제(父權制)에서 부권제(夫權制)로 이양되었다고 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가부장 제도의 와해는 비단 여성들에게만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게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남성자신들의 권위주의적이고 융통성 없는 전

40) 각 분야에서 전문직 여성들의 수는 점차 늘러나는 사회적 변화를 겪어 면서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머리의 부분가발의 판매를 맡은 여사장은 바빠서 들고뛰면서 월 8천 만원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었고, '인터넷 주문을 받는 팻 선 구두' 주인인 여사장은 자신이 직접 도매 시장 등을 돌아보면서 직접 신어보고 사와서 자신이 모델이 되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뒤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물건이 모자라서 못 파는 실정이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고, 얼마 전 진실게임에서는 20대 사장이 의류판매를 역시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월4억 5 천만원 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통적인 고정관념에 집착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남성다움에서 벗어나게 될 때 자아상실에 빠져 생활인으로서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 또한 가부장제의 와해의 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 다’ 고 사람들은 말한다. ‘남자답다’ 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능력 있고 용감하며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나야 하는 것’으로 표현 될 수 있다. 그래서 남자는 가정에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유지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든지, 혹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이 모여 만든 사회 속에서 맡겨진 일을 남자답게 완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 관념 에 묶여 있다. 한국남성은 가족부양책임을 혼자 감내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 나야 한다. 남성과 여성모두가 이러한 사회통념에서 벗어나 가족이 함께 대화와 의사소통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훈련해야한다.

“가족 부양자 윤리”가 붕괴되어가는 가운데 남녀관계는 불안정한 대립적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지금에 이르른 것은 사실이며 이 와중에 많은 남성들은 외로움과 불안, 자아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⁴¹⁾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제적 불안정과 맞물려 여성의 사회적 노동에의 진출은 남성이 지금까지 누려온 권위적 지위를 잃어버리게 하는 정황으로 바뀌었다.

V. 결 론

여성중심, 남성중심 사회의 진행을 공동체의 속성인 세 차원, 시공간차원의 지리적 영역, 사회적 차원의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적 차원의 공동의 연대의 틀로 파악하고 이 틀에서 여성과 남성의 갈등관계를 한국의 모권제와 가부장제의 변화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권제에서 여성들이 생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혼인형태에서 알 수 있는 것 과 같이 인류초기 구속 없는 성생활을 함으로서 혈통적으로 모계만을 인식할 수 있었음으로 어머니의 위치가 존경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41)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p.259.

이러한 모권시대에서 채집의 70-80%를 여성들이 식량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식량채집’단계에서 ‘식량생산’ 단계로 발전 할 수 있었던 업적으로서 채집은 일정한 지식의 축적을 요구해 도구발명 등 인류문명을 발생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음으로서 여성이 신석기 혁명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계사회의 여성의 위치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남성의 재산이 증가하고 부계를 인지하게 되면서 부권중심사회로 고착되어갔다.

가부장제의 대표적 예로서 조선시대 중기에서는, 조선시대여성의 관습이며 고정관념인 여성이 시집가서는 시댁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던 당시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은 삼종지도, 열녀, 정절, 수절, 칠거지악 등의 습관화된 제도에 의해 비인간적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조 가부장제는 공식적 제도와 이데오르기를 통해 여성을 극도로 억압해 왔으나 다른 한편 다수의 여성은 자궁가족, 안채의 주인 등 ‘가부장의 어머니’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남성중심의 가부장제는 각 분야에서 비록 형식적인 평등은 있으나 실질적 평등에서 여전히 여성억압의 기제로서 존속하였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시공간차원, 문화적 차원의 변화와 사회적 상황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의식개혁과 의지작용을 가지고 인간적인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으며 부단히 노력한 결과를 얻어냈다. 당시 여성들의 의식변화는 대외적 영향을 받았는데 95북경여성대회, 99서울NGO 세계대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등 국제세미나와 상호방문교류, 을 비롯하여 대내적으로 각국의 GO와 NGO여성단체들의 다양한 교육, 전국여성대회, 각종 사회교육, 회원단합을 위한 워크샵에의 참여를 통하여 여성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여성관련 각종 제도들에 대한 캠페인, 공청회 개최, 연대활동 구축의 실제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의 의지는 여성운동과 더불어, 상호작용을 통한 상부상조로 여성들의 의식개혁, 자아발견, 인간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둘째,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문화교류 및 연대활동과 제도개선의 영향. 셋째, 여성의 경제사회의 참여와 남녀의 역할 변동. 넷째, 지나친 권위주의와 남녀성역할 고정관념의 집착에 의한 자아상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 가장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의 연대활동의 성과들로서 이루어 낸 ‘제도의 개선’ 이라고 하겠다. 제도개선의 대표적 사례는 가족법과 남녀고용

평등법, 성폭력법 제정을 이루어 내었고 ‘여성발전기금법’을 통과시켜 여성들의 단결된 힘을 국내내외에 파급시키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여성운동들은 평등, 인격적인 인간, 자아의식을 갈구하는 여성들의 상호작용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사회적 상부상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의 행위와 남성행위⁴²⁾인 인격체계가 남성중심사회의 대표적인 가부장제를 와해시키는 직간접적인 작용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사회문화적 변화로 후기 산업사회는 근본적으로 가부장제를 극복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생산이 공적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임금 노동화 함에 따라 개인의 경제자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이념이 대두되고 점차 평등원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원리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 궁극적으로 가부장제의 극복은 개인, 가정과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가 후기, 내지 조직적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 구조변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현대인은 한계상황에서 생산의 영역에서는 소외되더라도 사적인 영역에서는 참다운 인간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주관주의적 신념에 매달리게 된다. 이 주관주의적 자아의식의 성장은 개인을 억압하고 도구화 시켜온 ‘일터’의 원리에 정면도전하는 근원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70-80년대에 일어난 많은 여성운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생활세계에서 시작하는 운동은 경제적 측면이나 제도적 권력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기보다 우선 인간의 삶의 조건과 좀 더 의미 깊게 연결된 문제를 발굴함으로써 더 깊은 동의를 얻어내고 지지 기반을 확보해 가고자 한다. 여성자신의 자율성, 평등성, 인간성 회복을 강조해온 여성운동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증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고 또 할 것이다. 즉 근대사회의 모권에서 아내권으로 바뀐 여성 중심적 사회와, 부권(父權)에서 부권(夫權)으로 바뀐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극복의 중요한 관건은 결국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장악하고 비대해진 사적영역내지 공적 영역에 메

42) 인격체계-인간에게는 이 인격체계가 있기 때문에 자아의 상황판단 능력과 사회적 상황을 평가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물 되지 않고 그 구조자체를 변혁시키는데 있다. 최소한의 공적영역을 축소시키고 공/가정 영역 간에 유기적 연결이 보장되는 새로운 공동체-조화지향 공동체적 생활양식을 창조 해 가는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서

첫 번째 과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후기산업자본주의적 가부장제를 극복 하는 것이다. 즉 한편에서 강화되고 있는 일터의 조직화와 기술 관료적 통제 및 정부, 군부, 산업체간의 연합체제 형성, 다른 한편의 전통적 가족주의와 현대적 가족주의의 결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보다 심층적인 경제 및 국가기구 그리고 문화 심리적 통제기제 및 그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와 이를 위한 보다 적절한 분석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과 남성이 한 성(性)이 아닌 인간으로서 조화를 이루어 바람직한 양성평등사회를 추구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과제로서 남녀가 평등한 사회와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천방안들이 제시되도록 연구되어야 하고, 오늘날 공동체의 중요한 속성인 사회문화적 차원의 '공동의 연대'를 통한 힘을 규합하여 실천하는 일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네오르네상스 문명원의 개원 이후 지속적인 활동, 밝은사회운동의 범세계적 추구, (B.A.R SOCIETY-Beautiful Society, Affluent Society, Rewarding Society) NGO 운동, 제2 르네상스 운동의 심대한 역할이 요구 되고 있다.

참고문헌

- 강대기. 2004.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 한가』. 서울: 아카넷.
- _____. 2003. “패러다임 변화와 공동체의 통합개념구축,” 『농촌사회』 제13집 2호.
- 강성호. 2005. 산업화의 확산과 새로운 공동체의 모색. 목요세미나 발표 논문
- 김남선·김만희. 2000.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 학술지』 Vol.10, No.2.
- 김정숙 편, 1992. 여성과 정치1,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김성균. 2002. “한국 공동체의 흐름과 스펙트럼,” 『지역사회발전연구』 Vol.27. No.2.
- 김수중 외. 2002. 『공동체란 무엇인가』. 서울: 이학사.
- 여성부, 2001. 동아시아 여성 지도자 회의 (자료집).
- 민경배_____. 2004b. “보편적 민주주의를 위한 온라인 기반의 NGO 지구촌 네트워크,” 『오토피아』 2004년. Vol.19. No.2.
- 마가렛, L. 앤더슨 저 이동원, 김미숙 공역, 1989. 성의 사회학, 이화여대 출판부.
- 박상식. 2000. “세계화와 세계인,” 『목요세미나』 제3권.
- 水田珠技·김희은 옮김, 1983. 여성해방사상의 흐름, 백산서당.
- 송재룡(2001), 『포스트모던 시대와 공동체주의』,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여성편집위원회편, 1985, 여성 1, 창작과 비평사.
- 여성사 연구회 편, 1990, 여성 2. 창작과 비평사.
-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1991), 『포스트모더니티』, 서울: 김영사.
-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1987), 『제3의 물결』, 함희준 역, 서울: 배제서관.
- 임성호. 2005. 공공의 적은 바로 “그들”인가? 목요세미나 발표 논문
- 조영식. 2003. “지구공동사회대현장” 『아름답고 풍요하고 보람있는 사회』 제1권, 서울: 경희대출판국.
- _____. 1996. 『오토피아』. 서울: 경희대출판부.
- _____. 1975. 『인류사회의 재건』. 서울: 경희대출판부.
- 조혜정, 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 조(한)혜정,1998,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한국의 여성과 남성2,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최 협 외. 2001. 『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서울: 성인.

- 퇴니스. 1985.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황성모 옮김. 서울: 삼성출판사.
- 하영애, 2005. 『밝은사회운동과 여성』, 범한서적 주식회사.
- _____, 1991, 『대만지방자치선거제도』, 삼영사.
- _____, 1996, 신라시대 세 여왕의 통치스타일 비교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논문
- 하영애, 2005, “ 5.4 운동 시기 중국여성운동의 연구”,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하영애, 1992, “권력구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김정숙 편, 여성과 정치1,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河暎愛, 2004, “當代韓國女性參與政治與社會活動的 研究”, 北京大學中外婦女問題研究中心·香港珠海書院亞洲研究中心 공동주최, <亞洲婦女問題的檢視與展望>, 國際學術研討會, 2004. 12.17- 12.20.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지음,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 황경식. 2004. “시민공동체의 구축: 개인권과 공동선의 조정,” 『밝은사회를 위한 시민포럼』. 경희대학교 밝은사회연구소.
- 동아일보, 여론마당, 김현희, “한국여성이 잘나가려면”, 2001. 8.28.
- KBS 역사스페셜, 조선시대여성은 어떻게 살았는가, 2002. 9. 20.
- Bertman, Stephen(1998), *Hyperculture: The Human Cost of Speed*, New York: Praeger Pub Trade.
- Greer, S.(1962), *The Emerging City*, New York: Free Press.
- Hillery, G.(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111-123.
- Kuhn, Thomas(1979),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Chicago Press.
- Mazlish, B.(1989), *A New Science: The Breakdown of Connections and the Birth of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isztal, B.(1996), *Trust in Modern Societies: The Search for the Bases of Social Order*, Cambridge, UK: Polity Press.
- Parsons, Talcott.(1968),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New York: Free Press.
- Warren, R.(1956), “Toward a reformulation of community theory,” *Human Organization* 10:8-11.

국민국가의 위상과 전망 :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송 병 록*

소련연방과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 시기의 도래는 국제정치무대에 새로운 양상들을 투영해내고 있다. 냉전체제를 지탱해왔던 양극체제의 중심축이 무너진 이후, 한편에선 민족주의의 부활과 이에 기초한 다수의 새로운 민족국가가 등장하였거나 등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선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간의 경제블럭화 현상의 가속화와 세계화 경향의 증대에 따른 소위 ‘근대 국민국가 프로젝트의 종언’이 운위되기도 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통합(integration)과 분열(fragmentation)의 두가지 상반되는 추세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확대되면서 기아와 빈곤, 환경, 인권, 마약, 테러, 해상범죄, 대량살상무기 확산, 투기성 단기 외국자본 문제 등 범세계적 문제(transnational security threat)에 공동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정보, 통신 및 교통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인하여 국제관계는 말 그대로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과거 냉전체제의 이념적 대결구도 속에 묻혀 있던 전근대적 종족주의, 민족주의, 종교적 근본주의 등과 같은 분열적 요소들이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점증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이렇듯 탈냉전시대에는 신민족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민족국가의 형성, 경제적 블럭화 현상, 자본주의의 세계화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호 모순적인 중층적 구조와 흐름을 형성해가고 있다.

탈근대 이행의 국제정치에서 각 지역 간 편차에 따라 유럽의 주권통합(sover-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eignty pooling), 동북아의 세력균형(근대 주권국가) 지속, 미국의 제국화 등이 나타나는데!) 이 글에서는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국민국가의 위상을 논해보고자 한다.

1. 국민국가 약화론의 입장

**민족국가들은 오늘날의 국경없는 세계경제에 참여하기 위한
유용한 단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상실했다. 민족국가는 점차
향수어린 허구적 존재이다. - Kenichi Ohmae -**

민족국가²⁾의 종말과 새로운 지역경제국가의 부상이라는 주제를 다룬 오마에 겐이치는 「국가의 종말」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민족국가란 죽음을 기다리는 공룡에 불과하며 이제 더 이상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도 아니며, 오늘날의 ‘국경없는 세계경제’(borderless world economy)에 참여하기 위한 유효한 단위조직으로서의 역할도 이미 상실했다고 단언하고 있다(오마에 겐이치 1996, 8 & 32). 그는 네가지 강력한 힘들, 즉 자본, 기업,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대한 힘이 한때 민족국가가 거머쥐고 있던 경제적 힘들을 빼앗아버렸으며, 새로운 ‘경제단위’를 형성하는 경제지대가 21세기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투자는 더 이상 지리적 제약 없이 받지 않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돈은 국가의 돈이 아니라 개인기업의 것이다. 다국적기업은 소속 국가의 이익에 개의치 않으며 동시에 정보기술의 비약

1) 전재성, 2005년 11월 17일 목요일 세미나 토론요지 일부

2) ‘nation state’는 한국어로 ‘국민국가’ 혹은 ‘민족국가’로 번역되어질 수 있으나 엄밀히 개념규정을 하자면, 프랑스적 전통의 입장에서 인종, 혈통, 종족 등과 무관하게 시민공동체적 의미를 함유할 때는 ‘국민국가’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독일 낭만주의 계열의 전통에 따라 혈통적, 혈족적, 종족적 의미를 강조할 때는 ‘민족국가’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국민국가’와 ‘민족국가’ 개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황태연의 논문 “국제화와 ‘민족’국가의 딜레마”를 참조할 것). 그러나 하버마스는 이 ‘민족’이라는 개념도 철두철미 인위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민족은 자연적으로 성장한 언어공동체와 혈통공동체로 멋대로 날조되었고 동시에 여러가지 유형의 이야기들을 통해 역사적인 운명공동체로 멋대로 구성되었다고 지적한다(Die Nation ist nämlich als eine naturwüchsige Sprach- und Abstammungsgemeinschaft bloss imaginiert und gleichzeitig als eine historische Schicksalsgemeinschaft narrativ konstruiert worden. Habermas, “Nationale Einigung und Volkssouveränität”, 22).

적 발달로 인하여 소속 국가 내에 사업조직을 만들 필요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역시 세계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제 지리적 국경선은 의미를 잃었고 실제로 시장들이 번성하고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지리적 단위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 ‘지역 경제국가’는 소속 국가를 초월하고 새로운 세계경제권에 편입, 다른 지역국가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의 저서 전편에서 이제 인류는 ‘역사의 종말’(end of history)이 아닌 ‘국가의 종말’(end of the nation state)를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민족국가들과 특히 그 지도자들에게는 영토와 자원, 취업, 산업, 심지어 이데올로기의 보호가 (앞으로도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과제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위책, 130)

1) 미래학자들의 견해

그러나 그의 ‘국가의 종말’ 주장은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니며 이미 오래전부터 일군의 미래학자들과 신사회 운동론자들에 의해 국민국가의 퇴조경향을 부각시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주지하듯이 근대 민족국가는 획정된 경계(국경)의 영토에 대해 행정의 독점권을 유지하는 제도적 통치형태이며, 그 지배가 국내외의 폭력수단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과 법에 의해 보장받게 되는 기구이다(Giddens 1985, 149). 또한 민족국가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는 동질화와 규격화, 공통의 언어, 행동양식의 사회적, 문화적 표준화 그리고 ‘시민’(citoyens)의 사회적, 문화적 표준화이다(Hirsch 1994, 191).

그런데 최근의 자본주의의 세계화과정은 전지구적, 지역적 수준에서 다양한 초국가체제들을 증대시키고, 이 초국가체제들은 기존 국민국가의 주권을 다양한 형태로 제약하는 현상이 빈번히 관찰되고 있으며 민족국가의 기본원리들이 급속히 약화되거나 해체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의 미래학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산업사회, 즉 지식집약적 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궁극적으로는 국민국가를 소멸시키게 될 것으로 본다. 이들에 따르면, 상품의 급속한 이동과 초국적 자본의 등장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흐려놓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주권 국민국가는 유일한 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상실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곧 정치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주권 국민국가가 몰락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탈 자본주의 정치체제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 ‘탈자본주의 정치체제’(post capitalist polity)는 범국제적 조직, 지역적 조직, 주권국가와 지방정부, 종족적 조직 그리고 각종의 여러 조직들이 서로 경쟁하고 공존하는 체제이다(Drucker 1993, 24). 한편 국민국가는 비록 앞으로도 계속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관으로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절대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닐 것이며, 국민국가는 국가의 다른 공공기관들과 다른 기구들 그리고 다른 정책수립가들과 권력을 점진적으로 나누어 가질 것이다(위책, 33).

아울러 사람들은 이제 갈수록 국가단위의 정부보다도 초국가적 기구나 국가단위 이하의 기구(sub-national agency)에 의지해서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³⁾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변화들에 따른 사람들의 행동양식의 변화는 민족국가 자체의 유용성을 문제삼게 한다. 사실 지난 몇세기 동안 정치·국제 정세를 주름잡았던 주체로서의 민족국가는 제어력과 완전성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단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어떤 문제의 경우 국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너무 크고 또 어떤 문제의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아서 그리하여 현재 국민국가는 오늘과 내일의 변화의 힘에 보다 잘 대응할 구조를 갖추기 위해 상하향으로 ‘권력의 재배치’(relocation of authority)라는 압력을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어 이제 민족국가 자체도 ‘시대적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Kennedy 1993, 164 & 174)⁴⁾.

3) 이에 대해 토플러는 각종 다양한 업종별 단체·보건관계 압력단체·노동조합·환경단체들이 지금은 모두 국가적 차원보다 큰 이해관계와 독자적인 지구적 조직체 및 당면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비정부 단체(NGO)들은 세계체제의 운영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수한 부류로서 수많은 초국가적 정치운동체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A. Toffler/H. Toffler 1993, 352).

4) 드러커는 국민국가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 스스로 ‘주권’을 가진 ‘범국제적 기구들’(transnational agencies)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Drucker

이런 의미에서 쟈부라(Gilbert Ziebura)는 최소한 국민국가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동안, 국민국가의 성격(character)과 중요성(significance)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Hirsch 1994, 183).

또한 미래학자 토플러 역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국가는 과거의 국민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어떠한 강력한 정부나 중앙은행들조차도 자국의 국경선 통제는 물론 통화량 조절도 못하고 있어 자국의 주권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A. Toffler/H. Toffler 1993, 349).

그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는 정보혁명·반도체혁명·통신혁명의 제 3의 물결이 도래함에 따라 탈근대, 근대, 전근대라는 이 3대 세력 사이 문명간 전쟁⁵⁾이 벌어지고 있다. 전근대 지역이 농산물과 광물자원을 공급하고 근대지역이 값싼 노동력으로 대량생산을 담당하고 있다면, 탈근대지역은 이 두 지역을 통괄하는 지위를 수행하고 있다. 즉, 현재 인류는 근대의 균일성에서 탈근대의 불균형성으로 이행하는 극도의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에는 정치적 의미에서 국민국가의 국경선은 존재하나 경제적 국경선은 급속히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김호기 1994, 115).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의 과학기술 예측부장인 페트렐라(Riccardo Petrella)는 “초국가 기업들은 국민국가의 틀을 무시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으며, 다음 세기 중반쯤이면 독일·이탈리아·미국·일본과 같은 국민국가들은 가장 적절한 사회경제적 실체도, 궁극적인 정치적 구성체도 되지 못할 것이다. 미래의 진정한 정책결정 세력은 도시·지역국가 정부들과 연합한 초국가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A. Toffler/H. Toffler 1993, 350). 그렇다면 어떤 조직들이 기존 국

1993, 216).

5) 헌팅턴은 1993년 *Foreign Affairs* 여름호 (Vol.72 No.3)에 실린 그의 논문 “*The Clash of Civilization?*”에서 세계적인 경제 및 이념분쟁의 쇠퇴와 이를 대신한 문명들간의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이후 많은 논란과 반론을 야기시켰다. 그는 이 논문에서 7대 혹은 8대 문명(서방·유교·일본·이슬람·힌두·슬라브·정교회·라틴아메리카와 혹은 아프리카)을 구분하면서 이 ‘문명들간의 충돌’을 예견한 반면, 토플러는 3개의 초문명(제 1물결 - 제 2 물결 - 제 3 물결)들로 분할되어 있는 세계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A. Toffler/ H. Toffler 1993, 368-389).

민국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미래학자들은 서로 상이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 케네디는 비록 국가의 독자성과 기능이 초국가적 경향으로 말미암아 잠식당했다 할지라도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단위로서 국가를 대체할 만한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면서, 국가는 여전히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시도하기 위한 주요기간이며 대다수 사람들의 1차적인 소속처(locus of identity)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Kennedy 1993, 178).

그러나 토플러는 과거 국민국가를 대신하여 새로운 지구규모의 경쟁조직이 등장하고 있으며 초국적 기업, 초국적 전문가조직, 로비스트, 동업자조합, 환경보호단체 등과 같은 지구적 규모의 조직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비정부조직들은 개별 국민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인간들을 완만하게 엮어내는 이른바 ‘초국가적 시민사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초국가적 시민사회의 형성으로 인해 국민국가는 국내경제와 국내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주권자로 더 이상 행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A. Toffler/H. Toffler, 346-358 김호기 1994, 115-116).

드러커는 오늘날 국민국가의 정치구조와 정체는 탈(post)주권국가의 시대로 이동해가고 있으며 국민국가를 범국제적 정치체제로 대체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⁶⁾. 그는 지금 세계는 범국제주의, 지역주의, 종족주의로 규정되어 질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의 무질서’(Drucker 1993, 175)를 마주하고 있는데 이 국제주의, 지역주의, 종족주의는 급속하게 새로운 정체, 즉 새롭고도 복잡하고 그리고 전례가 없는 정치구조와 정치체제를 창조하고 있지만, 탈자본주의 정치체제의 첫번째 정치적 과업은 거대국가⁷⁾가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시켜버린 정부의

6) 씨로우는 세계경제 작동 측면에서 민족국가의 탈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세계는 지금 비록 세계공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유럽공동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협동과 조화를 필요로 하며 세계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족국가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상당부분 포기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To make a global economy work requires giving up a substantial degree of national sovereignty. Lester C. Thurow, *The Future of Capitalism* 1996, 138).

7) 드러커가 말하는 ‘거대국가’(megastate)란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어 국가가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를 계획·집행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비능률적인 상태의 국가를 말하는데 그는 乳母국가(복지국가), 조세국가, 냉전국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드러커의 책 「post-capitalist society」 제 6장을 참조할 것.

수행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Drucker, 214-23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국가의 몰락을 주장(예견)하는 미래학자들의 기본 논리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탈산업사회의 도래가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이 세계화 경향이 국민국가의 몰락으로 상징되는 탈산업사회, 즉 지식집약적 정보산업사회의 정치체제를 형성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논의는 현대사회의 전환기적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와 국민국가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파악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정보와 지식의 발전에 따라 개별 국민국가에 가해지는 세계화의 충격은 상이한 국제적, 민족적 조건들 - 예컨대, 국제분업상 개별 민족국가의 위상, 특정한 권력블럭에서의 위치, 국제법률체계와 관련된 위치 그리고 주요 국제조직과의 관계 - 에 따라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개별 국민국가들은 세계경제에 동일한 수준과 속도로 통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 나라에서는 세계화 과정들에 의해 민족(국민) 정치가 극심하게 영향을 받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지역적 또는 민족적 세력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D. Held, 한상진 편저 1991, 351).

2) 신사회운동론의 입장

근대 국민국가의 위기는 대외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촉발되고 있다.

이른바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이라 불리는 미시정치의 등장은 관료화하고 집중화한 중앙정부의 정치에 대한 저항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국민국가적 프로젝트를 거부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신사회운동이란 지난 70~80년대 유럽과 북미에서 크게 증대한 환경·평화·여성·반핵·반문화·녹색당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김호기 1994, 116).

이것이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불리는 까닭은 이제까지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운동 형태인 노동운동과 비교해 위치·목표·조직·행동수단의 면에서 새로운 운동양식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전통적으로 노동운동이 경제성장과 분배를 통한 진보를 중심 이슈로 채택했다면, 신사회운동은 이런 물질적 진보와 권력의 중앙

집중을 거부하는 국지적 자율성과 정체성을 추구하는 점에서 그 차이점과 특징이 있는 것이다. 신사회운동의 등장은 근대 국민국가의 주류 정치형태인 정당정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기존 정당의 권위주의화와 관료제화의 증대는 의사결정의 형식적 제도화와 대중에 대한 정치적 조작을 낳고 이것은 다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통로를 폐쇄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층구성원의 일부는 기존 정치체도의 통로를 거부하고 탈의회적인 형태로 조직화한다는 것이다.

즉, 신사회운동으로 상징되는 미시정치는 국민국가적 정당정치에 내장된 억압적 성격을 폭로하려는 이른바 ‘국지적 저항’을 활성화시켰으며, 이런 미시정치의 활성화가 ‘다원적인 주체’의 등장을 야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근대사회에서 사회적 주체는 국민국가 내의 계급관계, 전통적인 윤리규범, 법률 등에 의해 규정되지만, 사·공간 압축으로 등장하는 탈근대 지구사회에서는 국민국가의 구성이 해체됨에 따라 이른바 다원적인 주체가 출현하고 있다.⁸⁾ 이 탈근대적 주체의 정체성은 단일한 중심성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넓게 분산된 준거점을 갖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위치에 동시적으로 놓이고 따라서 유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특징된다. 곧 생활영역에서 여성해방운동, 환경운동, 소비자보호운동, 시민 불복종운동 등은 탈근대적인 정체성을 찾으려는 미시정치의 구체적 사례들이며, 이 미시정치의 주요 저항지점의 하나가 관료제화한 중앙정부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미시정치의 활성화⁹⁾는 국민국가의 틀을 부식시키고 있다(위책, 116-117).

더욱이 탈냉전의 국제정치 환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고차원 정치’(high politics)보다는 ‘저차원 정치’(low politics)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함으로써 미시정치의 활성화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 신사회운동(Neue Soziale Bewegung)의 발기자이기도 한 히르쉬는 이제

8) 이 다원적인 주체의 출현에 대해서는 A. Toffler/H. Toffler의 책 「War and Anti-War」 제 25장 참조할 것.

9) 하버마스 역시 이 미시정치의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사회운동들, 예컨대 여성운동, 생태운동, 노동운동의 (재)결집과 (재)활성화를 주창하며, 적극적인 소수집단은 그들의 정당한 쟁점을 공론의 아젠다에 포함시켜 정당과 국회로 하여금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신의 아젠다로 삼을 수 있도록 할 때 소수집단의 상황이 공식적 권력 회로 안에 복원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Habermas 1996, 40).

민족국가들은 내부적 조정, 사회적 타협, 포괄적 복지정책 등에 의해서 더욱 더 약화되며, 이것은 세계적으로 정치적 배타주의, 지역주의, 맹목적 애국주의(쇼비니즘)과 민족주의를 강화시킨다고 보면서 이제 국내정치는 점차 국가와 지역의 경제적 경쟁의 필연성에 의해서 행동하게 됨으로써 일반적으로 민주적·사회적 요구와는 배치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세계화의 결과로서 발달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연계는 민주적, 사회적인 권리와 인권에 대한 요구를 지지하고 일반화함으로써 개별 국민국가의 주권과 세계적, 규범적 요구 사이의 모순이 증가함으로써 국민국가들은 행동에 제약을 받고 점차 위기에 빠져든다는 것이다(Hirsch 1994, 181-197).

그는 기존하는 정치적, 제도적 구성이 지구적인 경제 및 사회적 변화들에 비추어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한층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족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사회보장적인 세계질서의 기초가 될 수도 있을 새로운 조절양식의 관철은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개혁을 필요로 하며, 이 개혁은 자유민주주의적·민족국가적 모델의 한계를 점차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Hirsch 1995, 197-198).

미래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국가의 위상 약화를 주장하는 신사회운동론(자)들의 ‘미시정치의 등장’ 또한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미시정치(여성·반핵·환경·평화·시민발기 및 대안운동·납세거부운동 등)는 이전까지 이슈화하지 않은 이슈들을 이슈화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지적인 수준’에 머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신사회운동의 이론화에 커다란 기여를 한 하버마스가 이미 지적했듯이, 문제는 이러한 미시적인 다원주의 프로젝트가 과연 기존의 국가주의를 대체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있다(Habermas 1981, 578).

그는 신사회운동의 목표가 아직도 여전히 방어적인 전략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저항의 잠재력을 해방의 잠재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 운동의 최대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¹⁰⁾

10) 코헨과 아라토는 오늘날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정치는 ‘자기한정적 급진주의’라고 규정하고, 이 급진적 자기한정 운동에 의한 (하버마스가 이야기 하는) ‘생활

히르쉬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하나의 ‘해방의 정치’(Politik der Befreiung)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민족국가의 공격적인 본질적 속성 때문에 해방의 정치는 기존 국가제도나 구조들을 토대로 할 수 없고, 해방의 정치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회적 자율조직, 실천적 발안과 프로젝트의 연결망, 국가와 대중매체독점에 종속되지 않은 자율적 정치적 여론의 장, 국가의 권력이익 및 경제적 가치증식이익(Verwertungsinteresse)들로부터 자유로운 지식의 생산 및 경험의 유포 등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방을 지향하는 사회변혁은 제도와 소유형태들의 변혁 뿐만 아니라 포괄적 의미에서의 “문화혁명”을 요구한다. 그 변혁은 특히 자기 자신을 독특한 형태로 정치 제도화시킬 것을 요구하는데, 그러한 제도화는 다원적이고 분권적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익의 다양성, 사회적 적대관계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결, 협력, 상호이해 등과 함께 포괄적인 사회적 정책들과 대안적 도면(Entwurf)들에 대한 토론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해방을 지향하는 변혁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자율조직과 사회적 실천을 필요로 한다. 해방의 정치는 기존하는 사회적 구조들과 제도들 내에서 발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에 반대해야 한다. 즉 “국가와 자본 내에서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in und gegen Staat und Kapital)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Hirsch 1995, 189-190).

그러나 이와 같은 소위 ‘미시정치’와 ‘해방의 정치’가 기존의 거시적인 정치·경제적 문제들인 전쟁, 외교, 경제발전 전략 및 교육제도 개혁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국가의 역할은 불가피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

2. 국민국가 강화론의 입장

민족국가들은 앞으로도 세계문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행위자로
남게 될 것이다. - Samuel Huntington -

앞서 논의된 미래학자들과 신사회운동론(자)과는 다른 시각에서 국민국가는

세계의 보호’라는 모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격 전략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상진 편 1991, 216-217).

여전히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대표하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사회학자인 마이클 만(M. Mann)에 따르면 국민국가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국민국가는 막대하고 반복되는 전쟁을 담당하고 둘째, 군사주의와 자본주의에 의사소통체계 하부구조를 제공하며 셋째 정치적 민주주의가 재생산되는 영역을 제공하며 넷째,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하며 다섯째, 거시적인 경제계획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Mann 1993, 137 김호기 1994, 117).

물론 이러한 권력 중 몇몇은 소멸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국가의 몰락을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¹¹⁾ 헌팅턴 역시 세계문체에 있어서 국민국가는 앞으로도 가장 강력한 행위자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Huntington 1993, 22).

지난 3세기 동안 국제체제의 기초단위는 국민국가(nation-state)였다. 주지하다시피 근대적 의미의 국가체제는 주로 독일에서 벌어진 유럽 각 국가간의 30년 전쟁(1618-48)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형성되었고,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민족주의와 국민국가가 전 유럽에 확산되었으며,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가 등장한 과정은 바로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장구한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국민국가의 시대는 금세기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양차 세계대전 이후 구식민지역의 정치적 독립은 곧 국민국가의 황금시대를 가져왔다. 전후 국제분업구조의 재편과 국제연합의 결성과정에서 그 기본단위는 여전히 국민국가였으며,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특징짓는 ‘복지국가’ 개념이나 제 3세계를 특징짓는 ‘발전국가’ 개념 모두 오히려 국민국가의 강화된 역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김호기, 118).

국민국가의 몰락을 강력히 비판하는 이러한 견해는 특히 80년대 후반 구소련의 해체 이후 민족주의의 부활과 이에 기초한 다수의 국민국가의 등장을 주목하

11) 히르쉬는 오늘날까지 원칙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민족국가들 간의 공격적이고 결국에는 전쟁을 통한 경쟁이 정치지배관계 및 경제적 착취관계가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으로 항상 재차 안정될 수 있는 결정적 매카니즘이라고 말한다. 그는 영속적 경제전쟁이 군사적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타당한 이야기라는 것이다(Hirsch 1995, 189).

고 후진 제 3세계 지역의 경우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은 이미 ‘완료된’ 프로젝트가 아닌, 오히려 국민국가의 형성이 다양한 전근대적인 이유로 지연되고 있으며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로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나 세계화를 추동하는 힘의 하나가 자본의 내재적인 논리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국가가 자국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그 위상은 여전히 중요하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치·군사적 수준에서 국민국가의 위력은 여전히 강력할지 모르지만 초국적기업, 과학기술 및 통신혁명, 전 지구적인 인구폭발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민국가의 영향력이 급속히 상실돼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기든스가 강조하고 있듯이, 세계화는 단순한 상호교류의 양적인 증대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시간과 거리를 재구성하는, 바꿔 말해 그 관계가 질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세계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민국가는 ‘삶의 큰 문제들에는 너무 작고, 작은 문제들에는 너무 큰’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Giddens 1989, 485 김호기 120).¹²⁾

과학기술 혁명과 정보산업의 발전이 가속화하고 이와 연관된 초국적 기업 및 비국가 조직들의 활동이 증대된다면 국민국가의 경계는 약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한편에서 새로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개별 국민국가들의 갈등이 증폭된다면 국민국가의 위상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세계화가 장기적으로는 국가간의 상호의존 및 통합을 증대시켜 나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분절, 경쟁, 대립을 심화시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국면의 특정시기(예를 들어 종교분쟁, 민족갈등, 영토분쟁과

12) 토플러는 삶의 작은 문제들에는 너무 큰 것이 되어버린 국민국가의 앞날에 대해 오늘날에 여러 국민국가들이 분열과 변혁을 겪으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치적 단위는 근대적 의미의 통합국가와는 전혀 다른 부족연맹체에서 제 3 물결적 도시국가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지성을 지닌 싱가포르의 부총리 야오(George Yao)는 미래의 중국이 싱가포르와 같은 수백 개의 도시국가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 전 미국무장관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는 서로 다른 민족집단들이 한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지 못하면.....현재와 같은 100여개국이 아니라 5,000개 국가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A. Toffler/H. Toffler 348).

관련하여)에서는 오히려 국민국가의 위상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세계화가 함축하고 있는 그 양면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민국가의 몰락을 강조하는 시각이나 이를 비판하는 시각은 지나치게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동북아시아 국민국가의 특징

세계의 다른 지역체제와 동북아의 경험이 주는 다음과 같은 차별적 사실 때문에 동북아에서의 국민국가의 위상은 세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강고해 보인다.

첫 번째는 역사적 사례의 차이성 때문이다. 먼저 유럽은 전근대를 포함해 냉전 이전 시기 역내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많은 국민국가가 경쟁하고 공존하는 질서를 유지해 왔다. 역내 단일패권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북미는 지구상 최초의 (연방)국민국가(first nation-state)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 국민국가의 공존과 역내 단일 패권의 중간형태로서 연방형성을 통한 역내해게모니 구축에 성공하였다. 반면 냉전 이전 동북아 지역은 장구한 중국 단일패권(the Chinese World Order)의 유지와 일본에 의한 전면적 대체(Japanese Imperialism)라는 두 번의 역내 단일패권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세 지역은 이렇게 근대적 기원 및 형성의 요인과 과정 자체가 다르다. 동북아 평화체제와 지역공동체 구상은 따라서 당연히 역내패권의 극복문제에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는 냉전시대 지역냉전의 존재 차이이다. 냉전 시대 유럽은 이른바 '긴 평화'를 유지하여 왔다. 반면 동북아지역은 베트남 전쟁, 중국내전과 한국전쟁 등 냉전시대 세계 3대 전쟁이 전부 이 지역에서 치러졌을 만큼 전란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말하자면 냉전의 구조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독자적인 지역냉전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세계냉전의 해체가 곧바로 유럽의 통합, 독일의 통일, 동구 국가들의 국경 재형성을 가져 왔던 이유는 이로부터 연유한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은 중국과 대만, 남한과 북한의 전쟁을 비롯하여 역내 전쟁을 세 번이나 치렀을 뿐만 아니라 중일대결이라는 지역냉전 층위를 하나 더 갖고 있다. 이러한 지역냉전은 역내 단일패권을 교환한 전통적인 중일 경쟁관계에 의해 더욱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 유럽이 세계냉전의 해체와 함께 곧바로 탈냉전으로 접어들었음에 반해 동북아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이와 같

은 역사적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북한의 생존 역시 지역냉전의 지속으로 인한 강한 북중(北中)연대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세 번째는 민족주의 문제이다.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은 '역사적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각각 '민족'과 '국가'단위가 일치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다. 이 지역은 예외적으로 민족국가를 유지해온 특별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적 국경의 분명한 구획 역시 지리적 분획 및 독립적 민족국가 유지에 기여해 왔다. 따라서 그들은 강력한 단일 민족의식 및 독립 민족국가의 장구한 유지 속에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 왔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정체성의 정치란 민족단위의 국민국가를 기준으로 강한 분리성과 단일성, 그리고 독립성을 가능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역사인식 공유, 나아가 지역통합이나 연대를 가능하게 할 혼합정체성이나, 정체성의 공유를 매우 어렵게 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통의 지역 정체성을 창조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예술이 필요하다.

또한 민족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쿠바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동아시아지역에 존재(중국, 북한, 베트남)한다는 점도 중대한 시사를 던져준다.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인 중국, 베트남,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은, 동구와는 달리 식민-반식민 상태에서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을 도입함으로써 계급해방보다는 민족해방 및 국민국가건설의 과제와 더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때문에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강렬한 민족주의 성향은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소련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도하였고, 이는 소련과 동구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멸망한 이후에도 사회주의 국가를 유지하도록 해 준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19세기 중반 중국과 일본의 세계진입, 특히 1876년 개항으로 한국문제가 지역문제-국제문제로 전환된 이후 세계정치의 요충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문제의 경우 세계적 전쟁의 참화에 놓였던 1950~53년을 제외하고 지금처럼 그것이 한반도-동아시아-세계의 평화 및 전쟁의 두 길을 가를 진양으로 작용한 적은 없었다. 이 지역의 세 번의 지역 국제체제, 즉 제국주의-냉전체제-탈냉전 체제에 이르기까지 한국문제가 동북아와 국제정치의 핵심의제라는 점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차원에서 이른바 열강의 쟁패의 초점(Vortex of Powers)이라는, 한국이

지닌 특수한 세계 전략적 위상이 아니고는 설명되기 어렵다. 그리하여 한반도는 그리고 그것이 포함된 동북아는 늘 지역-세계문제의 중심을 가로질러 왔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국민국가의 건설은 아직도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로 남아있는 실정이며, 중국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 지역국가(Region States)

지역국가란 중앙정부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 또는 인접한 국가내의 일부 지역들 사이에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교류와 접촉 등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지역들의 묶음으로 ‘현상으로서 지역주의’(지역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 지역국가가 의미를 갖는 것은 20세기말 경제활동의 기본단위로서 경제적 변영의 원동력이 될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참여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지역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이제 기업가들이 국제전략을 세우면서 국경을 염두에 두던 시대는 지났다. 문제는 국경이 아니라 지역이다. 중국 진출여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어느 지역에 진출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일례를 들자면 더 이상 일본기업들은 미국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단일시장으로 보지 않는다. 캘리포니아북부, 뉴잉글랜드, 5대호주변, 산악지역 등으로 거점(지역)단위를 나누어 기업전략을 세운다.

지역국가는 부산과 일본 큐슈 섬의 북쪽에 있는 후쿠오카, 이탈리아와 밀접하게 상업적·문화적 유대를 지닌 리용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론 알프스 지역, 카탈로니아와 밀접하게 연결된 틀루즈를 중심으로 한 랑게독 루실론 지역, 러시아의 도시인 나훗카, 하바로프스크 및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의 니가타 시를 연결하는 일본해 경제지대, 나진(북한)과 훈춘(중국), 포스예트(러시아)를 포함하는 두만강 삼각주 지역, 중국의 윈난(雲南)과 라오스, 베트남의 국경교역지대, 싱가포르와 조호르(말레이시아), 바탐(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성장 삼각지(Growth Triangle) 지역, 말라카 해협을 가로질러 페낭과 멘단(수마트라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도시)과 태국의 푸켓을 연결하는 대(大)성장 삼각지(Greater Growth Triangle) 지역 등 국경을 초월하여 존재하기도 하지만, 홍콩과 중국남부, 북부이탈리아 지역, 독일의

라인강 상류지역(바덴뷔르템베르크), 도쿄와 그 주변 지역들, 오사카와 간사이 지역 등 한 국가내에서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영토적 분리선’을 의미하기도 한다(오마에 겐이치, 130-135).

초국경시대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지대들이 주역이 된다. 지리적인 크기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들은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¹³⁾ 일반적으로 지역국가는 소비재 상품의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만큼 큰 시장을 제공할 수 있고, 제한된 경제적 이익과 소비자 이익을 공유할 정도, 예컨대 인구로 보자면 5백만 내지 2천만명 정도로 크지않다. 범위는 상당히 넓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즉 50만명이 아니고 5천만명이나 1억명도 아니다. 시민들이 소비자로서의 이해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하지만, 규모의 면(결국 세계 다른 곳으로의 수출을 중계할 수 있는 일정크기의 기지라는 점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이 아닌 서비스의 면 - 즉, 세계경제에 참여하는데 필수적인 통신과 수송, 전문직 서비스의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하나의 경제 임을 확인받기에 충분할 만큼 커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적어도 국제공항 하나와 국제수준의 화물취급시설을 갖춘 양호한 항만 하나를 가져야 한다(위책, 145-146).

13)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지표에 대해선 오마에 겐이치 책, 「국가의 종말」 pp.162-163 참조할 것.

참고문헌

- Z. Brzezinski. 1993. *Out of Control: Global Turmoil on the Eve of the 21st Century*, A Robert Stewart Books.
- Lester C. Thurow. 1991. *Head to Head*, New York: William Morrow & Co., Inc.
- _____. 1996. *The Future of Capitalism*, New York: William Morrow & Co., Inc.
- Peter F. Drucker. 1993.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 Collins,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재규 역, 한국경제신문사, 1993.
- Anthony Giddens. 1985.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London: Polity, 「민족국가와 폭력」, 진덕규 역, 삼지원, 1991.
- Jürgen Habermas.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2, Frankfurt: Suhrkamp.
- _____. 1996. “Nationale Einigung und Volkssouveränität”,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기념 서남초청강좌 발표논문.
- _____. 1996. *New Horizons of Modernity: Seven Lectures in Korea*,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한상진 편, 나남.
- D. Held. 1991. “Democracy, the Nation-State and the Global System”, in *Economy and Society*, Vol.20, No.2.
- Joachim Hirsch. 1994. “Nation State,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the Question of Democracy”, in Jong Yil Ra(eds), *The New World Order and the Role of the UN*, Kyung Hee Uni. Press.
- _____. 1995. *Der nationale Wettbewerbsstaat: Staat, Demokratie und Politik im globalen Kapitalismus*, Berlin: Edition ID-Archiv.
- _____. 1996. “European Integration: Problems and Perspectives” (GIP Special-Lecture).
- _____. 1996.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Democracy”(GIP Special-Lecture)
- Samuel P. Huntington. 1993. “The Clash of Civilizations ?”, *Foreign Affairs* Vol.72 No.3.
- M. Mann. 1993. “Nation-States in Europe and Other Countries: Diversifying,

Developing, Not Dying”, DAEDALUS, Vol.122 No.3.

Kenichi Ohmae. 1995. The End of the Nation State, Mckinsey & company Inc.

「국가의 종말」, 박길부 역,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6.

A. Toffler/H. Toffler. 1993. War and Anti-War: Survival at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New York: Little, Brown & Co., 「전쟁과 반전쟁」, 이규행 감역,

한국경제신문사, 1994.

Immanuel Wallerstein. 1974.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Sept.)

_____. 1979.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lcolm Waters. 1995. Globaliza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김성한. 1995. “세계화, 분권화, 지방화”, 「사상」(계간), 사회과학원, 1995년 봄호.

김호기. 1994.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위상 : 국민국가는 몰락하고 있는가”, 「사상

」(계간), 사회과학원, 1994년 겨울호.

문정인. 1997. “세계화와 한국정치”, 「사상」(계간), 사회과학원, 1997년 여름호.

안병준. 1996. “아태지역의 지역주의: 아시아공동체인가, 태평양공동체인가”,

「사상」(계간), 사회과학원, 1996년 여름호.

윤영관. 1997.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 이론과 현실” 「동아시아 협력의 정치

경제」(이홍표 편), 세종연구소, 1997.

한상진 편저. 1991.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 사회문화연구소.

한류와 문화세계창조의 가능성

홍 용 희*

1. 한류의 지향성과 문화세계창조

우리에게 한류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돌발적인 사건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시아에 한국 댄스 음악과 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다’¹⁾는 류의 대중매체의 보도가 연일 지속되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그 연원, 배경, 실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기한 듯 관망하는 형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류 열풍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 컴퓨터 게임 등의 문화산업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강한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국가 이미지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1999년 중반 중국 언론매체에 처음 등장한 한류²⁾는 이제, 중국, 홍콩, 일본,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부

*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과 교수

- 1) 이종환, 「중국의 한류는 멈추지 않는다」, <<동아일보>>, 2001,2,12
- 2) 한류(韓流)란 1999년에 문화관광부가 한국가요의 홍보용 음반을 CD로 제작하여 해당 국가의 방송사, 잡지사, 대학, 디스코텍 및 한국 공관에 배포할 목적으로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중국어 6천장과 일본어 및 영어 각 3천장씩의 음반을 기획 제작하였다. 이 음반의 영어와 일어 버전은 ‘Korea pop music’, 중국어 버전은 ‘韓流-Song from korea’ 라고 달았다. 이 중국어 버전의 음반기획을 맡은 회사는 지난 1977년부터 베이징 음악방송국을 통해 정기적으로 1시간씩 중국어로 진행하는 한국가요 소개 프로그램인 ‘서울음악실(漢城音樂廳)’의 제작 및 운영을 맡고 있는 (주)미디어 플러스였다. 당시 홍보용 음반의 타이틀을 논의하는 기획회의에서 북경영화대학 연출과 교수가 젊은이들 사이에 새로운 유행 경향을 총칭하는 ‘寒流’라는 신조어에서 ‘寒’을 ‘韓’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타이틀을 ‘韓流’로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혜실, 「한

터 이집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에 이르기까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인기와 관심을 지칭하는 말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류 열풍이 사회적 의제(agenda)로 떠오른 이후 한류열풍의 실체에 대한 규명이 귀납적으로나마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다. 한류의 사회적 원인, 현황, 효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관점에서 활발한 논의가 개진되고 있다. 또한, 한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거품론에서부터 글로벌 지각변동의 가능성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류의 미래에 대한 위기론에는 이미 그 이면에 한류열풍의 토대를 바탕으로 한 위기관리 및 극복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론의 계기를 함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논의의 바탕은 우리나라가 종전의 일방적인 문화의 수용과 소비에서 벗어나 문화 창조와 수출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념, 정치, 경제 등이 시대적 가치의 주요 핵심어로 존재했던 20세기와 달리 문화적 가치가 국가 경쟁력이며 인류발전의⁴⁾ 화두로 등장한 21세기, 즉 ‘문화의 세기’에 우리가 세계 문화사의 하위주체가 아니라 당당한 주역으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한류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동시에 인류문화사적 의미와 가치를 확보하느냐에 있다. 이것은 앞으로 한류가 민족적 정체성의 범주를 넘어 동아시아적 가치와 인류사적 보편성으로 열려있어야 하고 아울러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적 가치와 비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연관된다. 실제로 한류의 바람직한 전개 방향은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문화부흥까지도 선도하고 추동하는 미래지향적인 보편의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류의 궁극적인 지향성은 결국, ‘문화세계의 창조’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영식 박사가 이미 1951년에 저술 활동을 통해 상세하게 규명하고 아울러 경

류현상의 지속을 위한 작품 내적 연구」, 『문화콘텐츠산업포럼』, 2005, 9, 27 발표문재인용

- 3) <겨울연가>의 윤석호 PD가 <봄의 왈츠>를 제작 하려 하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관광청에서 동시에 제작지원을 하기로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새뮤얼 P. 헌팅턴, 로렌스 E. 헤리슨, 공편, 『문화가 중요하다 - 문화적 가치가 인류발전을 결정한다』, (김영사, 2001)

회학원의 창학이념으로 제시한 “문화세계의 창조”가 오늘날 한류열풍의 궁극적인 이정표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문화세계의 창조”에 대해 홍익인간의 이념의 구현을 요체로 강조한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은 21세기의 시대정신으로 강조되는, 정치원리(평등)와 경제원리(자유)로 풀었던 지난 시대의 한계를 극복해나갈 박애(인간성의 신뢰)라는 문화원리⁵⁾에 직접 상응한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문화의 세기’의 성격과 한류 현상에 대해 조영식 박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문화세계의 창조” 및 네오르네상스 운동이 오늘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물질적, 정신적 환경과 시류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조영식 박사는 우주 만물의 존재와 변화원리를 설명하는 주리생성론과 전승화 이론에서 시간, 공간과 함께 실체와 환류를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의지와 더불어 정신적 물질적 특수 환경과 조건을 강조해왔다. 여기에서 한류 현상은 바로 ‘문화세계의 창조’ 및 네오르네상스를 위한 시간, 공간, 실체의 조건을 완성시키는 환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류에 대한 인식의 이론과 실재를 성찰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문화세계의 창조를 이룩하는 네오르네상스와의 연속성 속에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한류 현상의 성찰적 이해와 실제

(1) 한류 현상의 이론적 검토와 모색

한류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초기부터, 정부는 물론 일반인들의 깊은 관심이 집중적으로 증폭되기 시작한 배경은 문화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천 년대 초반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한류에 대한 언급은 주로 단순한 취향의 유행이 아니라 문화 상품 자체의 수익과 함께 이미지 광고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졌다는 점으로 모아진다.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우리문화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

5) 프랜시스 후쿠야마, 구승희 옮김, 『트러스트』, 한국경제신문사, 1999, 70쪽

다”는 내용에서도 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문화가 독점하던 지위를 우리문화가 서서히 무너뜨리면서 “반만년 역사 속에 농축된 한국문화의 저력이 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진단과 함께 “한류열풍을 수출과 직결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⁶⁾라고 강조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문화 상품으로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시작한 한류 현상은 점차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었다. “왜 한국 문화인가?” 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응답이 활발하게 개진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들 논의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유형화하면, 첫째, 아시아 주민이 지닌 공통적 감수성에 대한 강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한국문화의 유교적 전통과 가족 가치 등이 아시아의 주민들에게 호소력을 얻고 있다는 점을 들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아시아적이며 가장 세계적이다.”⁷⁾라는 결론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러한 문화본질론적 언설은 분명 주목되고 탐구되어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성급하게 민족적 자긍심과 우월주의의 고취로 귀착하는 것은 경계해야 될 것이다. 특히 한류 열풍을 일으킨 대중가요와 드라마의 구체적인 성격과 이에 대한 각국의 소비, 향유의 방식, 성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자칫 주변 문화 콤플렉스의 소산으로 취급되기 쉬울 것이다.

둘째,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 대중문화의 지나친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대중문화는 너무 폭력, 말초적이어서 거부감이 있는 데 한국문화는 서구 대중문화를 나름대로 수용하고 유교적 정서로 어느 정도 걸러졌기에 수용하기가 용이하다”⁸⁾는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쉬리> <친구> <태극기 휘날리며>등에서 보듯 매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논리는 한류문화의 특성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특히 대중문화는 거듭 진전될수록 더욱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한국문화가 비교적

6) <<대한매일신문>>, 2001,7,21

7) 박길성, <<수출 성공하는 ‘한국적 감동’>>, 문화일보,2001,6,12

8)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김한길은 “서구 드라마가 선정, 폭력성 등으로 중국 정서에 맞지 않는 데 반해 한국드라마는 중국 국민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다. 중국 담당 장관으로부터 한국 드라마 수입을 규제하지 않고 8월부터 CCTV에서 더 많은 한국드라마를 수입 방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대한매일신문>>,2001년 7월 21일)는 발표에 대한 담당 직원의 부연 설명.

선정성과 폭력성이 약하다는 단평을 한국 대중문화의 고유한 특성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셋째, 아시아 지역에 팽배한 반일감정의 영향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를테면, “미국과 일본이 싫은 상태에서 중국의 선택은 한국인 것이다. 그들은 어쩌면 한류를 통해 한국 대중문화에 숨쉬는 구미(유럽과 미국)의 최신 흐름을 수혈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⁹⁾는 주장이다. 일제 강점의 잔해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문화 상품 교류에 반일감정이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 변수이며 또 오래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반일 감정의 수위는 세대에 따라 크게 다른 증위를 보이며, 특히 한류의 주요 향유층인 10대의 경우 반일감정 보다 새롭고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축제 양식 그 자체를 추구하는 대중문화의 논리에 더욱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한류열풍 현상이 일어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의 증폭 과정과 한류의 원인 및 배경에 대한 논의를 개괄해 보았다. 한류 현상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생성, 변화하는 생물적 존재라는 점에서 어느 하나의 논의가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과정은 그 자체로 한류 현상의 다채로운 생성 배경과 탐구과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한류의 향후 전개 방향을 열어주는 의미를 지닌다.

비교적 근자에 들어오면서 학적 체계의 양식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한류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유형적으로 정리하면,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문화콘텐츠 수출론, 탈식민주의적 문화 공동체 형성론, 문화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한 문화지배론 등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문화콘텐츠 수출론의 중심 내용은 경쟁력 있는 대중문화콘텐츠를 수출하여 경제적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거점으로 여타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¹⁰⁾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류를 한국 문화콘텐츠

9) 임진모, 「한류의 방향성」, <<한겨레신문>>, 2001, 7, 3

10) 이와부치 코이치는 이러한 현상을 문화적 향기(cultural odor)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가 설명하는 문화적 향기란 특정 상품의 소비과정에서 그 상품이 어떤 국가의 문화적 모습 그리고 그 국가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미지나 개념이 긍정적으로 연상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생산국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미지가 그 상품의 이미지로 강하게 환기될 때, 그 상품의 문화적 향기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문화적 무취(cultural odorless)와 상대적 개념으로 쓰인다.

의 해외 시장 경쟁력 확보 및 확산의 전기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탐색이라는 점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앞에는 아직 세계화 전략으로 무국적성과 문화정체성의 전략적 구사, 전지구적 표준화(global standardization)와 전지구적 지역화(global-localization) 전략의 탄력적 적용, 역한류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놓인다. 또한, 경제적 수익의 극대화와 국가 브랜드 향상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경제적 수익의 극대화 과정에서 문화정체성이나 문화적 가치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탈식민주의적 문화 공동체 형성론은 한류열풍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아시아 지역 문화 교류의 계기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한류 열풍의 실체를 전지구적 자본주의화 과정이자 근대화 과정의 산물로 보고, 한류가 지닌 “미국적 소비문화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하위 문화적 특징”을 비판하고 “우리 고유의 역사적 경험, 문화적 성취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류를 “초국적 자본의 이동을 포함한 다층적 이동현상과 맞물려 일어나는 사건으로,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경제력을 확보하게 된 동아시아의 주민들이 스스로 인식의 주체가 되려는 강한 욕망을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고 있는 의미심장한 움직임”¹¹⁾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입장이 더욱 진전되면 아시아권에서 서구나 미국의 문화를 막을 수 있는 문화적 블록 형성의 가능성으로까지 나아간다.

‘한류’는 아시아적 문화블록 형성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류’는 그런 점에서 아시아적 문화 사건이고 지역공동체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건강한 문화적 블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지역적 문화 블록의 중심 요체가 상업적 대중문화, 소비문화가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아시아권 문화블록의 형성이 중요한 이유는 상호 이해를 도모하여 공동운명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¹²⁾

이와부치 코이치, 전오경 역, 『아시아의 문화연구와 문화산업』, 2001, 3 발표

11) 조한혜정, 「동/서양 정체성의 해체와 재구성」, 『한국문화인류학』, 2002, 4,

12) 원용진, <<한겨레신문>>, 2001, 9, 26

북미의 강대함에 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문화 경제적 블록을 형성한 유럽의 경우처럼 아시아에서도 블록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한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류를 동아시아적 대중문화 교류를 통한 공동운명체의 형성 계기로 파악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패권적 긴장 관계의 완화¹³⁾와 상호 협력의 문화적, 정서적 활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 지배론을 들 수 있다.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 지배론은 문화주변국, 문화수입국의 위치에서 문화중심국, 문화 수출국으로 진보했음을 전제로, 다른 국가, 다른 문화권에 대해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기반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한다는 주장이다. 한류의 실체를 구성하는 한국 대중문화콘텐츠의 문화 정체성과 그것의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정체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형성되어지는 구성체이다. 즉, 정체성이란 고유성과 창의성의 상호 견제 및 보완의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지금 이곳’을 사는(현재성) 우리들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서(대중성) 삶에 올바른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 우리들만(주체성)의 내재화된 삶의 원리이다. 따라서, 문화정체성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그것의 문화콘텐츠를 통한 구현이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실정에서 문화적 변별성만을 문화정체성으로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관점은 문화정체성의 강조가 “과장된 민족주의 또는 아류 제국주의적 경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도 내재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류의 전개 방향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층위에서 비교적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와 그에 대한 성찰적 평가는 한류의 실체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앞으로 한류의 지속적인 실현 방향에 대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물론,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할지라도 여기에서 앞으로 전개 될 한류의 방향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성찰적인 검토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공통된 인식소는 한류의 세계적 보편화, 세계적 보편성의 한류적 수용에 있음을

13)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극우파의 독세 등은 한중일관계의 패권적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단적인 실례이다.

알 수 있다. 즉, 한류는 민족적 정체성을 넘어서 인류문화사적 정서와 가치로 수렴되고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공한 한류문화콘텐츠의 사례를 검토할 때 더욱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류드라마의 실제와 신화적 원형의식 : “겨울연가” 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한류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해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적 역량을 어떻게 신장시키고 결집시킬 것이며, 결집된 역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콘텐츠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탐구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류의 관건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고 생산하느냐에 있다. 다시 말해, 한류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획과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기대 이상의 높은 성과를 얻은 한류 현상은 우리에게 콘텐츠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제작 환경을 개선하며 질적 성장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류 문화콘텐츠의 기획 방향은 성공한 한류 문화콘텐츠의 검토를 바탕으로 할 때 가장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한류 드라마에 해당하는 “겨울연가”에 대해 분석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겨울연가”가 동아시아권 뿐 만아니라 이슬람문명권에 이르기까지 강한 한류열풍을 이끌어낸 가장 대표적인 미학적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민족적 정체성 이전의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미적 원형의식에서 찾아진다. 원형이란 동일 유형의 수많은 체험 속에서 형성된 심리적 잔재물이다. 그래서 원형은 무수한 상념들의 선형성(preformation)이나, 혹은 지배적인 심상들을 잉태시키는 원천이 된다. 개인적 콤플렉스는 개인적 편견의 영역을 넘어서기 어렵지만 원형은 한 나라 한 시대에 영향을 주는 특정 종교, 철학, 예술을 탄생시킨다.¹⁴⁾ 마찬가지로 보편적 공감을 얻는 작품은 그것이 보편적 인간 영혼의 깊은 배후로부터 연원했기 때문이다. 그 공감의 정체는 개인의 이해를 초월한 원초적 체험이며 이 원초적 체험이야말로 작가의 창조적 능력의 원천이 된다.

“겨울연가”를 가로지르는 핵심적인 미적 요소는, 인류문화사의 보편적 원형 상상력에 해당하는, 요나 콤플렉스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14) C.G. Jung, 설영환 역, 『존재와 상징』, 동천사, 1983, 70-71

해석된다. 이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준상(배용준 분)은 한없이 외로운 존재이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은 둘째치고 준상의 어머니조차 피아니스트로서 해외연주 때문에 그를 돌보지 못하고 있다. 준상의 어머니는 상혁의 아버지 진우와의 사이에서 준상을 낳기도 했으나, 사랑을 이루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녀는 수 십 년 동안 외국으로 떠돌고 있다. 준상은 사실상 어머니에게서 정서적으로 버림받은 존재이다. 준상이 집요하게 아버지를 찾는 일차적 원인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집착에 앞서 일조의 복수심이었다. 이 상황에서 준상이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은 작품에서 아주 잠깐 일시적으로 나온다. 준상이 외로울 때, 그리고 어머니가 귀국했을 때 모자는 그 집에서 만나 해후의 기쁨을 나눈다. 유년을 체험한 그 집은 준상에게 어머니의 자궁이요, 잃어버린 낙원인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3일을 견딘 후 다시 살아난 예언자이다. 용은 이 모티프에 대해 인간의 리비도의 퇴행과 전진, 유아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심리의 비유로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개념을 바슐라르가 한층 발전시킨 바 있다.

여기에서 고래의 뱃속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결코 공격을 받지 않는 안락함의 상징으로 모든 안식처의 모습을 비유한다. 왜냐하면 뱃속은 인간이 태어난 가장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뱃속은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며 따뜻한 열기로 감싸주는 하나의 우주이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느끼던, 행복하고 따뜻했던 공간의 추억은 우리가 태어난 뒤에,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남아서 배(胚, ventre)에 대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안식처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식처의 가치를 가지게 된 배의 이미지는 이제 점차 그 범위를 확대시켜 외부의 사물로부터 자신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 즉 영원한 요나인 우리들은 현실적인 이미지의 대상들 속에서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곧 요나 콤플렉스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것으로 집, 동굴, 다락방, 지하실, 장롱, 상자, 조개껍질, 구석 등과 같은 것인데 형태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형의 이미지들(les imagees isomorphes)이다. 물질적 상상력 속에서 이 이미지들은 외면적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호와 안락함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¹⁵⁾

15) 김현 「행복의 시학/제강의 꿈」, 『김현문학전집 9』, 문학과지성사, 1991, 102 쪽

남이섬과 준상의 집은 이 상처와 치유의 공간으로서 작동한다. 고등학생인 준상과 유진은 수업을 빼먹고 남이섬에 놀러가 즐거운 하루를 보내며 이 공간에서 준상은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다. 이 공간은 또 한 번 치유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준상은 민형의 입장에 서서 첫 사랑을 잃고 과거의 기억에 괴로워하는 유진의 상처를 치유한다.

작품의 공간인 남이섬의 숲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로수 길은 아늑하고 폐쇄되어 있다. 그리고 옆에는 강이 흐른다.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폐쇄된 숲의 오솔길은 안식처의 기능을 지닌 ‘배’의 이미지를 그대로 상징한다. 자궁의 양수는 모유의 이미지와 합쳐져 물의 모성적 상상력(l'imagination maternelle)을 낳는다. 이것은 어머니 또는 다른 여성에 대한 추억이 무의식에 은밀하게 살아있어 물에 대한 무의식적 갈망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⁶⁾ 물은 자궁의 다산적인 부드러움을 부여한다.

준상은 집이 없다. 이 때문에 유진이 제시한 ‘불가능한 집’은 준상에게 획득하고 싶은 그 무엇이기도 한 것이다. 준상은 눈이 멀어가면서도 설계도를 그리고 마침내 그 집을 완성한다. 집 배란다에서 손에 잡힐 듯이 보이는 물은 그 집이 양수로서의 모성의 공간을 상징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 안전한 ‘자궁’에서 준상은 유진을 기다린다. 그리고 둘은 만난다. 요나کم플렉스의 서사 구조가 재현되고 있는 현장이다.

한편,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하여 딸을 둘 낳게 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눈을 찢러 장님이 된다는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모티프가 “겨울연가”의 심연을 요나کم플렉스와 함께 횡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유진과 준상, 상혁은 준상 어머니(강미희), 상혁 아버지(진우), 유진 아버지가 서로 삼각 관계였다는 점에서 교묘하게 근친상간 금기를 범하고 있다. 처음에 준상은 자신이 유진의 아버지와 강미희 사이에서 태어났는지 모른다고 의심하며 이것은 유진과의 결합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물론 결과적으로 자신이 진우와 미희 사이의 소생임이 밝혀지기는 했으나 그 사실이 자신의 어머니와 유진의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신의 어머니와 유진의 아버지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은 사실이며 육체적 관계까지

16) 최혜실, 「한류현상의 지속을 위한 작품 내적 연구」, 『2005 문화콘텐츠산업포럼』, 2005, 9, 27 참조

도 의심하게 만드는 온갖 기제가 작품에 남아 있다. 이렇게 되면 유진과 준상은 남매 사이가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당연히 준상의 근친상간 금기를 건드리는 것이며 거세 콤플렉스는 시력 상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더구나 준상의 무의식은 어머니에 대한 진한 그리움과 닮아 있다. 준상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과 상혁에 대한 적의에는 기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도한 애착)이 내밀하게 닮아있는 것이다. 그것은 벌을 받아야 하는 위반이다. 그는 시력을 상실함으로써(거세당함으로써) 대가를 치렀으며 어머니의 자궁으로의 회귀로서 ‘불가능한 집’을 짓고 유진을 기다린다. 작품의 마지막에 어머니의 분신으로써 유진이 나타난다. 이제 준상은 어머니와 애인을 동시에 획득한다. 시력 상실에 대한 대가이다.

남이섬과 준상이네 집은 유년 시절의 그리움, 자궁회귀로의 욕구, 리비도의 퇴행이란 인류 공동체의 무의식을 자극한다. 일본의 중년 여성들이 그 장소에 열광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엄마에 대한 갈망과 상실감을 앓고 있는 준상, 윤사마에게 연정과 모성애를 일으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사랑과 안식을 찾아 헤매는 준상의 모습을 연인과 어머니로서 자궁에 품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게끔 작품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이르면, 이 작품이 일본의 남성들이 아닌, 여인들이 왜 작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으로서 남이섬과 준상이네 집을 드는지가¹⁷⁾ 어느 정도 짐작된다. 준상이네 집이 일본 적산가옥이라서 일본인에게 과거 일제 강점기의 향수를 느끼게 한다는 것은 비아냥거림의 수준에 머무르는 해석이다.

이상에서 보듯, 한류열풍의 핵심에는 인류문화사의 가장 보편적인 원형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한류는 한국에서 창조하는 인류사적 원형의 서사라고 할 것이다.

3. 포스트 오리엔탈리즘으로서의 한류와 네오르네상스

한류의 핵심적인 미의식이 세계사적인 보편적 원형의 상상력과 깊이 연관된다는 점은 앞으로 한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를 결론적으

17) 2005년 한해 동안만에도 100만이 넘는 관광객이 남이섬과 춘천의 준상이네 집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로 말하면, 한류는 한류를 벗어나야 한다는 명제에 귀착된다. 한류가 ‘한국적인 것’으로서의 동양주의가 아니라 아시아의 다양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으로 열린 타자의 거울이 될 때 오리엔탈리즘의 폐쇄적인 지역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의 거품론 역시 이와 같이 한류의 동아시아적 가치와 세계문화사적 보편성의 획득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추구해야 할 한류 문화컨텐츠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초문화화 현상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문화접근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문화할인율(culture discount)¹⁸⁾을 극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찾기와 관련된다.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문화적 할인율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문화 정체성을 적극 구현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탐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작품에서는 현재 일본의 문제 즉, 나약하고 이기적이고 비자립적인 십대와 부모세대의 문제를 일본 고유의 전통사상인 신도(神道) 사상과 와(和)사상을 기반으로 해법을 찾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고유의 전통 문화를 다채롭게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텍스트 서사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채, 소재적인 차원에서만 등장했던 <원더플데이즈>의 하회탈, 만다라, 청사초롱, <하얀 마음 백구>에서 중심 모티프였던 투견(鬪犬)이 문화장벽으로 기능하면서 실패했던 점 등은 참고할만한 사례다.¹⁹⁾ 문화컨텐츠를 통해서 구현될 문화정체성은 소재적 차원을 넘어서 텍스트 전체 맥락 속에서 성격화되어야 하며, 세계 시장 진입에 장벽이 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는 섬세하게 성찰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인류보편에 호소할 수 있는 문화적 원형에 대한 탐구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인류 공통의 보편적 문화원형에 대한 탐구와 그 조화의 방법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인류사적 원형과 보편성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형성되어지는 구성체이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하는 원형의 담론이란 과거형의 기억의 서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18) ‘문화적 근접성’ 개념이 수용자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주목이라면, ‘문화적 할인’은 텍스트의 문화적 특성에서 유통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문화적 할인에 주목해야 한다.

19) 박기수, 「한류가 한류를 넘어서기 위한 인문학적 성찰」, 『2005 문화컨텐츠산업포럼』, 2005.9.27 참조

시대의 집단 무의식이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인류 삶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창조적 대화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류사적 원형과 보편성을 창조해 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동양의 문명을 서양의 시각에서 대상화하여 재구성해온 ‘오리엔탈리즘’의 주체적인 복권과 더불어 이를 통해 동, 서양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이 양자를 포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적 담론을 창출하는 것에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오리엔탈리즘의 주체적 복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만의 문화 연구자 첸 관성이 2001년 서울에서 체류 중에 있었던 한류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인터뷰에서 실감 있게 환기된다.

한류문화는 일단 미국의 지배적인 대중문화 생산 시스템에 대한 분산효과가 있고, 아시아문화의 상호 교류와 복수적인 문화의 공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 같은 이전 세대는 문화적으로 단자적인 경험만을 했습니다. 미국에 비해 우리는 지식이나 문화적 정보가 많지 않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반미주의도 그런 맥락에 있지요.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동아시아 대중문화는 새로운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서로 개방적이고, 열려있고, 문화적 변명이 가능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첸 관성의 이와 같은 전언은 미국 중심의 세계문화에 대한 균열뿐만 아니라 ‘동양인’의 동서양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일러준다. 미국을 향한 근대의 제1세계로서의 선망의 시선이 점차 변화되고 있고, 근대화를 나름대로 ‘즐길만한 시차’로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의 나라에서 아시아를 준거집단으로 삼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에서 서양컴플렉스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즉 우리들 자신 속에도 내재하는 주변부 의식에 젖은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을 스스로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서양인에게 동양은 지적, 문화적 탐구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더 직접적접적으로는 식민지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동양은 서양의 열등한 보완체로, 대립적인 타자로,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시켜주는 부정적인 특질의 담지자로 간주되어 왔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에서 4-5세기에 걸친 제국주의 역사를 통해 서양은 줄곧 인식의 주체이고 동양은 인식의 대상이었

음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문명과 근대화는 서양이 가진 특허물이었고, 동양은 그것을 빌리거나 모방하는 하위주체로 존재해왔다. 동양의 근대사는 곧 서양의 언어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워보려고 한 강박적 모방의 역사 과정이었다.²⁰⁾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전지구화 시대의 지각 변동 속에서 서양은 자신들이 기획한 근대가 실패하고 있음을 느끼며 해체와 재구성을 꾀하는 탈근대 논의를 일으키고 있고, 동양은 그 근대의 하위 주체가 아닌 당당한 주체로서 참여하려는 탈식민주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²¹⁾

특히 오늘날 오리엔탈리즘은 문화적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의 개념과 함께 서구 근대의 중심적인 신화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배제되었던 인식론이나 숨겨진 역사의 복원을 주창한다는 점에서 탈근대 논의와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서구의 가치관이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합리성, 개인주의, 진보 신화와 같은 서구적 개념을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의 이러한 속성은 그 자체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탈근대 논의와 상당한 점에서 공유하는 속성을 보인다.

오늘날 오리엔탈리즘이 서구의 일상성 속으로 깊숙이 진입해가는 모습은, 근대 이성중심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는, 그리하여 새로운 건설적 가능성을 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전망의 근거를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다. 동양의 정신적인 사상과 실천운동을 - 선, 불교, 명상, 요가 등 - 채택하는 서구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양의 전일적인 우주관은 생태학 또는 생태주의 운동의 이론과 실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 지각 변동의 배후에는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지리-정치적인 초점이 이행하고,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중국과 인도가 다시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하는 등의 현상들이 토대를 이룬다.

이제, 더 이상 세계 문명의 비전이 서구적 이익과 역사적 선례에 전제를 둔 보편성과 기획일 수만은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는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과제’, 즉 서구중심주의적 근대성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이를 오리엔탈리즘의 문화적 가능성과 교호하는 가운데 극복의 계기를 찾는 과제를

20)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8 참조

21) 조한혜정 외,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출판부, 2003 참조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동양과 서양을 구성해왔던 체험과 지식체계에 대한 재해석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동·서양 이분법 자체를 해체하는 인식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서구적 시각에서 재구성되고 창출된 오리엔탈리즘과 서구 중심의 시각에 감염된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한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대해 ‘포스트 오리엔탈리즘’²²⁾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오리엔탈리즘의 바람직한 방향은 아시아 각국의 문화는 물론 서양의 문화 부흥까지도 선동하고 추동하는 창조적 보편의 문화 창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류는 바로 이러한 포스트 오리엔탈리즘의 실천적인 운동이며 성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정황을 다시 요약하면, 포스트 오리엔탈리즘의 일환으로서 한류의 지향성은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서양의 문화적 변혁과 발전까지 추동할 수 있는 전지구적 차원의 미래지향적인 인류사적 문화적 지표에 대한 창조적 모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포스트오리엔탈리즘의 궁극적인 지향성에 대해 한국발 21세기의 대안문명 운동이며 문화세계창조의 실천운동, 즉 네오르네상스와 상동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서양의 물질문명과 동양의 정신문화를 통정한 종합문명의 구현을 통해 추구해나가는, 네오르네상스는 조영식 박사가 주창한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사회의 대구상”²³⁾에 해당하는 문명적 지형도로서 14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에 대위되는 개념이다. 르네상스 운동이 중세의 종교적 암흑기로부터 인본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문화혁명이었다면, 네오르네상스 운동은 현대사회의 물질문명의 폐단으로부터 다시 생명가치의 복권을 추구하는 문화혁명에 해당한다. 그의 이러한 네오르네상스 운동은 세계영구평화와 문화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인류사회의 재건과 미래상을 바탕으로 기획된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정보, 교통, 통신의 혁명적 발달로 인해 세계는 일일생활권이 아닌 동시생활권으로 진입했으며, 다국적 기업의 발달과 교역량의 증대, 문화교류의 증진으로 Cross-Cultural Society 즉 교체문화 시대를 열어 동일한 문

22) 정진농, 『오리엔탈리즘의 역사』, 살림, 2003, 90 쪽 참조

포스트오리엔탈리즘이란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서구중심의 시각에서 타자화된 오리엔탈리즘의 성격을 벗어난 이후의 세계 문명의 창조적 주체의 위상을 지닌 오리엔탈리즘을 가리키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기로 한다.

23) 조영식, 「地球共同社會大憲章 -새로운 千年을 向한 人類社會의 大構想」, 1998년 제 17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 학술세미나의 기조 연설

화와 정서를 갖는 지구시민을 낳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국경이 필요 없는 Borderless Society가 되어감으로써, 국가패권주의를 앞세워 군비를 확장할 필요가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제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이제 우리는 배타적 국가주의, 패권적 민족주의, 계급적 사회주의 체제를 허물고 만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지표 Common Goal, Common Norm, Common Task를 세워 지구인이 共存共榮하는 지구공동체 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²⁴⁾

이러한 그의 세계사적 시대인식은 앞에서 살펴본 초국적 자본, 초문화 이동 현상 및 포스트오리엔탈리즘의 시대 인식과 미래 지향적인 문명적 지표의 요구와 근원 동일성을 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조영식 박사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네오르네상스운동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인간중심주의(H), 문화규범(C), 보편적 민주주의(G), 지구공동사회(U), Pax un(P)의 항목을 제시한다.

그가 제기하고 있는 네오르네상스 운동은 기본적으로 ‘전지구적 근대’²⁵⁾로 인한 문명적 위기로부터 신생의 출구를 찾는 동서양의 공통된 인류사적 과제에 직접 부합된다. 한류 현상이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과 미디어의 이동, 그리고 사람의 이동으로 일어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세계화시대의 ‘초문화화 현상’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탈오리엔탈리즘의 인류사회적 비전을 핵심적인 요소로 담보해야 한다는 당위적 과제를 염두해 둘 때, 네오르네상스 운동의 실천 방안은 한류 문화콘텐츠 기획의 밑그림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 맺음말

- 네오르네상스운동의 실현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천년대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한류 현상의 실체와 올바른 방향성을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작품의 실재에 대한 분석적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 이

24) 앞의 연설문 참조

25) 아리프 디릭(Arif Dirlik)은 세계화로 표현되는 자본주의의 최근 단계를 ‘전지구적 근대’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Arif Dirlik, 설준규·정남영 옮김,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눈뜨기』, 창작과비평사, 1998 참조

를 문화세계 창조 및 네오르네상스 운동과의 연속성 속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여 보았다.

오늘날 인류사회는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과 미디어의 이동, 그리고 사람의 이동으로 일어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세계화시대의 ‘초문화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동서양의 이원적, 대타적 관계 역시 이완, 해체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종전의 세계 문화의 하위 주체로서 존재했던 오리엔탈리즘 역시 서구 중심의 문화권에 반성적 충격과 상호 보완의 주체로 복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류 역시 이러한 일종의 포스트오리엔탈리즘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류의 바람직한 전개 방향은 아시아 각국의 문화는 물론 서양의 문화 부흥까지도 선도하고 추동하는 창조적 보편의 문화 창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또한 세계를 지구공동사회라는 인식 속에서 파악하고, 근대 기계문명의 한계와 폐단의 극복을 통해 인류의 문화 복지와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네오르네상스 운동의 실천 덕목이 포스트오리엔탈리즘으로서의 한류의 기본 구도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다시 말해, 한류의 궁극적인 지향성이 폐쇄적인 오리엔탈리즘을 넘어 인류문화사적 원형과 보편성으로 열려 있어야 하고 아울러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문화적 가치와 비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은 한국발(發) 대안명명운동에 해당하는 네오르네상스와 상동관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조영식 박사가 집중적으로 추구해온 네오르네상스 운동이 현실화될 수 있는 시류, 즉 환류²⁶⁾가 형성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네오르네상스를 위해 성숙되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된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원론적인 시론의 차원에서 개선해보면, 먼저, ‘네오르네상스 사상의 창안자와 젊은 대학생과의 대화’와 같은 대중적 이벤트를 통해 네오르네상스에 대한 계몽적 이해의 확산과 동시에 한류의 대중적 정서와 감각의 현장성을 네오르네상스의 이념과 실천 운동의 방법론으로 섭수해내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붉은 악마’의 스포츠를 통한 축제적 상상력, ‘촛불시위’의 정치적 상상력 등으로 분출된 우리 사회에 내재하는 디지털세대의 젊은 역동적 에너지

26) 환류란 정신적, 물질적 특수환경과 조건으로서 조영식 박사의 전일적 유기적 세계관에 입각한 우주변화와 존재원리에 대한 설명의 방법론에 해당하는 시간, 공간, 실체와 함께 하는 4차원적 논거의 하나이다.

지를 문화적 상상력으로 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과도 연관된다.

또한 이와 함께, 네오르네상스의 이념과 지향성을 한류 문화컨텐츠의 기획과 의미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네오르네상스 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을 인지적 정보에서 심미적 정보로 전환시켜, 이미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문화컨텐츠 산업(뮤직 비디오,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테마파크, 영화 등)과 인문학 및 예술의 소통 원리와 장치를 통해 재구성하여 대중화하는 것이다.²⁷⁾ 이러한 작업은 결국, 문화 세계가 만개하는 네오르네상스 운동이면서 동시에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류 문화사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27) 홍용희, 「문화산업시대와 네오르네상스 운동의 한 가능성」, 2004년 목요세미나 발표문, 참조

오토피아

제20권 제1호

2005년 12월 21일 인쇄

2005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겸 편집인 : 임 성 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472-86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2리 258-5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도서관 3층

Tel: (031) 570-7138/9 Fax: (031) 570-7129

E-mail: khsd2701@khu.ac.kr

ISSN 1229-2680

인쇄처 : **한다문화사**

Tel: (02)961-7500 Fax: (02)961-7400

E-mail: handapp@hanmail.net